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2021년 농식품유통과
사업시행지침

전라남도
JeollaNamdo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목 차

Contents

Ⅰ. 2021년 농산물 유통 · 농식품산업 방향

1. 2020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 3
2. 2021년 실천과제 ····· 5
3.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 달라진 내용 ····· 7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유 통 기 획

1. 친환경농산물 판로기반 구축 ····· 15
2.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 ····· 16
3. 대도시 판촉행사의 효율적 추진 ····· 17
4.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 21
5. 농수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지원 ····· 28
6. 소비자 및 유통업체 초청 생산지체험 추진 ····· 36
7. 남도미향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 선정 ····· 38
8.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 40
9.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 51
10.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 54
11.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 59
12. 전라남도 농산물 공동물류 구축·운영(전환) ····· 64
13. 농식품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 67
14. 광역 농산물 브랜드 활성화 추진 (전환) ····· 70
15. 유통·농식품업무 평가 ····· 73

농촌융복합산업

1. 향토산업 육성사업 ····· 77
2. 농식품 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 86
3. 농식품기업 제조·가공 지원사업 ····· 109
4.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 127
5.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 145
6. 농촌융복합산업화 활성화 지원 사업 ····· 173
7.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 191
8.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 214
9.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 224
10.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지원사업 ····· 240
11.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 ····· 259
12.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 265
13.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269
14.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 277
15. 농어촌진흥기금(식품가공분야) 융자 ····· 281
16.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 303
17.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 ····· 313
18. 전통술 산업육성 및 주류 제조면허 추천 ····· 322

양 곡 유 통

1.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 335
2.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선정 ····· 402
3.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 ····· 405
4. 전남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 지원 ····· 408
5.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 410

Contents

6. 공공비축미곡 매입 벼 도정수율 결정 ····· 412
7.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 ····· 415
8.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 417
9. TRQ 가공용 쌀 관리 ····· 419
10. 양곡표시 혼합 부정유통 지도·단속 ····· 421
11. 정부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 계약 관리 ····· 422
12. 정부양곡 사고처리 ····· 428
13. 양곡관리 특별회계 결산 ····· 430

유 통 시 설

1.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사업 ····· 433
2. 농산물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 481
3.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선별비) 지원사업 ····· 495
4.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 ····· 521
5.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 550
6.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사업 ····· 579
7.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 628
8.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 634
9.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 661
10. 학교무상급식 지원 ····· 664
11.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 670
12.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 686
1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 704
14.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융자사업 ····· 713
1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730
16.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 745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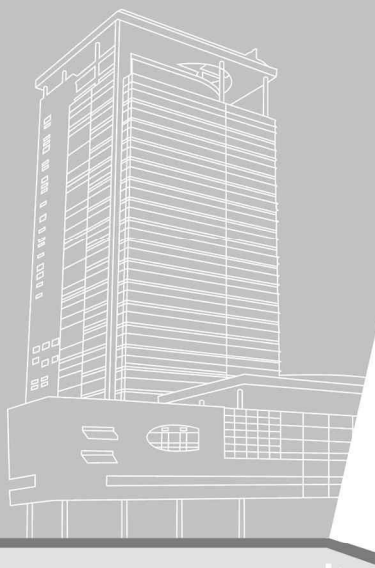

Ⅰ. 2021년 농산물 유통·농식품산업 방향

1. 2020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점
2. 2021년 실천과제
3.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 달라진 내용

www.jeonnam.go.kr

1. 2020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 주요성과

○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남도장터**」**'매출액 300억 원' 돌파**

- 매 출 액 : '19) 63.8억원 → **'20) 326억원**
- 입점규모 : '19) 565업체, 5,624제품 → **'20) 1,250업체, 15,698제품**
- 회 원 수 : '19) 28,493명 → **'20) 294,223명**

※ '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 '20. 7. 16.

○ 전국 최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1, 2차)

- 전국 최초 시행 → 타 시도 확산 롤 모델

※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15개 시·도 확산

- 친환경농산물 공급량 : 1,428톤(곡류 736, 채소류 594, 과일류 58, 기타 40)
- 남도장터를 통해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농수축산물을 구매하여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서울시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중소농가의 판로확대 지원

- '20년 : 도농상생 지자체(4개 시군), Non-GMO 식재료 (2개 시군)

> **○ 도농상생 : 나주시 - 금천구/ 담양군 - 성북구/ 강진군 - 동작구/ 영광군 - 중랑구**
> **○ Non-GMO : '18)담양농협 → '19)담양농협 → '20)담양농협, 강진농협**

- '20년 납품실적 : 도농상생 573톤(44.1억), Non-GMO 22품목(10.8억)
- 서울시 학생꾸러미(친환경쌀55만개165억원/농산물20만개40억원)공급

○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 및 판로 개척 강화로 유통 활성화

- 이랜드 리테일, GS 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와 구매약정 체결(13개 업체, 2,070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 선정(전국 22개 중 4개, 46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51개소, 911억원), TV홈쇼핑 판매 지원(38개 업체, 66억원 매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2,279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영체 육성으로 지속가능 체계 구축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 2개소(순천 매실, 곡성 멜론), 인증경영체 확대 육성 : 309개소

○ 농식품산업 관련 중앙부처 각종 평가에 우수상 수상 : 3점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대상),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우수상, 장려상)

○ 현장체험이 어려운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학습기회 제공과 6차산업 경영체의 소득창출을 위한 전국최초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실시

- 134개교, 24천개 체험박스, 345백만원 지원

○ 농산물 수급조절 위한 농식품 가공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 22개소, 49억원,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 3개소, 13억원

□ 아쉬운 점

○ 도내 식품업체의 경쟁력강화와 고부가가치 식품 제조·판매 기반 필요

- 2019년말 기준 도내 농식품업체는 2,221개소로 총 2조 6,94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업체는 1,153개소(51.9%)로 영세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HMR), 밀키트(Meal Kit) 시장과 노인인구 증가세에 대응한 고령친화식품 등 성장세에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요구

2. 2021년 실천과제

☐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판촉 확대

○ 20~40대 소비층을 겨냥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 농특산물 판매 확대

* 라이브 커머스 : 라이브(live)와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이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용어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쇼핑이 결합한 형태

- 라이브커머스 확대 : '20년) 34회, 매출 6억 → '21년) 100회, 매출 20억

○ 농수축산물 위주의 남도장터를 '뭐든지 팔아드립니다'로 개편, 매출(*목표 500억원)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농어업인	농어업인, **소상공인**
판매품목	농수축산물	농수축산물, **공산품, 관광·여행상품**
거래방식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B2C, **B2B**(기업 간 거래) **유통**

☐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확충으로 농업소득 창출

○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남도장터 온라인 국내외 마케팅 강화

- 중국,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판매망 구축으로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
- 모바일 시장 공략을 위한 남도장터 홈페이지 재단장 및 앱 운영

○ 소비자 접근의 용이성과 편리성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 '19) 42개소 → '20) 51개소 → '21) 70개소
-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 2종, 11억원
-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설치 지원 : 1개소, 20억원
-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로컬푸드 큰잔치 개최 : '21. 10월중, 서울광장

☐ 광역단위 통합 마케팅 및 공동물류 기반 구축

○ '상큼애', '오매향' 등 전남 광역단위 브랜드 통합 마케팅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 판매 촉진 마케팅 및 공동브랜드 상품화 지원 : 17개 지역농협, 4억원

○ 전라남도 농산물 공동물류 구축·운영으로 농산물 유통·물류비 절감

- 물류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농가 수취가 제고 : 37개 농협·법인, 10억원

☐ 농촌융복합산업화 및 부가가치 높은 농식품산업 육성

○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식품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 확대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 6개소, 52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육성(330개소), 농촌융복합 지구조성 1개소(8억원)

○ 농식품 제조·가공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농식품 가공 및 HACCP 시설 확충(161개소)과 전통식품 산업화(61개소)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홍보 강화 및 전남쌀 유통활성화

○ 시·군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1~2개) 선정결과 홍보 강화

- 겨울철 영농교육 등을 통해 못자리 이전 시·군 매입품종 선정결과 농가홍보

○ 전남쌀 홍보·마케팅 강화 및 대량소비처 발굴

- 최대의 쌀 소비처인 수도권 중심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및 안전성 강화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Non-GMO 식재료 지원

- (학교급식) 2,419개교, 251천명, (무상급식) 722개교, 140천명, (Non-GMO 공급): 5품목, 2,263개교, 201천명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원) 2,288건, 572백만원

3.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 달라진 내용

☐ 유통기획팀

<table>
<tr><th>사업명</th><th>2020년 기존 내용</th><th>2021년 달라진 점</th></tr>
<tr><td>비대면 온라인 판촉 확대</td><td>○지원대상 : 농어업인
○판매품목 : 농수축산물
○거래방식 : B2C(기업소비자간 거래)</td><td>○지원대상 : 소상공인까지 확대
○판매품목 : 공산품,전통술,관광·여행 상품까지 확대
○거래방식 : B2B(기업간 거래)확대</td></tr>
<tr><td>전라남도 농산물 공동물류 구축·운영</td><td>○ 물류단가(부가세 포함)
- 상온(카고)물류 : 55천원
- 냉장물류 : 63.8천원
- 제주도권역 : 132천원
- 연륙교 이외 산지 : 기준단가+실비</td><td>○ 물류단가(부가세 포함)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단가(천원)</th></tr>
<tr><th>냉장</th><th>상온</th></tr>
<tr><td colspan="3">공동물류</td><td>60</td><td>60</td></tr>
<tr><td rowspan="7">단독</td><td rowspan="2">I (10~14P)</td><td>전남권</td><td>270</td><td>260</td></tr>
<tr><td>전남외</td><td>600</td><td>550</td></tr>
<tr><td colspan="2">II (1P, 차당)</td><td>240</td><td>190</td></tr>
<tr><td colspan="2">III (2P, 차당)</td><td>240</td><td>240</td></tr>
<tr><td colspan="2">IV (3P, 차당)</td><td>250</td><td>240</td></tr>
<tr><td colspan="2">V (4P 이상, P당)</td><td>70</td><td>70</td></tr>
<tr><td colspan="3">제주도권</td><td colspan="2">132,000원</td></tr>
<tr><td colspan="3">연륙교 이외 산지</td><td colspan="2">기준단가 + 실비</td></tr>
</table></td></tr>
</table>

☐ 농촌융복합산업팀

<table>
<tr><th>사업명</th><th>2020년 기존 내용</th><th>2021년 달라진 점</th></tr>
<tr><td>농식품 제조·가공 지원</td><td>○ 사업분야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농식품 제조업체 HACCP시설 확충
○ 원료사용 기준 : 친환경농산물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지원액 : 1억원 이내</td><td>○ 사업분야 통합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원료사용 기준 완화 : 일반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포함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지원액 확대 : 3억원 이내</td></tr>
</table>

☐ 양곡유통팀

사업명	2020년 기존 내용	2021년 달라진 점
라이스랩 설치 · 운영 사업	o 라이스랩을 독립매장형 (단독매장, 층 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 또는 숍인숍 형식으로 상시(주5일 이상) 운영 필수	o < 삭제 > ** 온라인 판매 등 사업범위 확장
	o < 신설 >	o 기존 사업자가 차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할 경우 선정평가시 신규사업자와 함께 재평가
	o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식재료,교육.홍보비, 연구개발비, 인테리어비 등	o 인건비: 행사.교육 등소요되는 인력 등 o 식재료비: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 등 o 홍보.유통비: 방송.온라인등 매체 활용한 홍보비 및 온라인 판매 등 o 행사비 등: 시제품 시식회, 지역 행사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 등
	o < 신규 >	o 각 시.도와 시.군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
	o 사업시행기관은 라이스랩의 세부계획서 추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반기별 진행상황 보고 - 점검시기: 당해연도 3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제출	o 지자체는 라이스랩의 세부계획서 추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중간 추진상황보고 - 점검시기: 당해연도 7월말을 기준으로 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제출
	o < 신설 >	o e나라도움을 적극활용한 사업집행을 위한 정산지침 안내

☐ 유통시설팀

사업명	2020년 기존 내용	2021년 달라진 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 지원비율 - 도 18%, 시군 42%, 학교부담 40%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비율 - 도 15%, 시군 45%, 학교부담 40%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대안학교 ○ 공급시기 - 어린이집 : 1월부터 공급 추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 지원비율 : 도 30%, 시군 70%	○ 지원비율 : 도 25%, 시군 75%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 지원비율 : 도 30%, 시군 70%	○ 지원비율 : 도 25%, 시군 75%
학교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초중학교	○ 지원대상 : 초·중학교, (인가)대안학교 - (인가) 대안학교 추가
GAP 인증신청 수수료	○ 지원비율 : 도 30%, 시군 70%	○ 지원비율 : 도 25%, 시군 75%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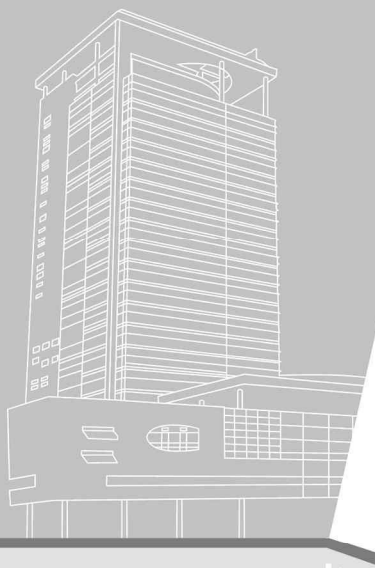

Ⅱ.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

1. 유 통 기 획 팀 소관 / 013
2. 농촌융복합산업팀 소관 / 075
3. 양 곡 유 통 팀 소관 / 333
4. 유 통 시 설 팀 소관 / 431

www.jeonnam.go.kr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유 통 기 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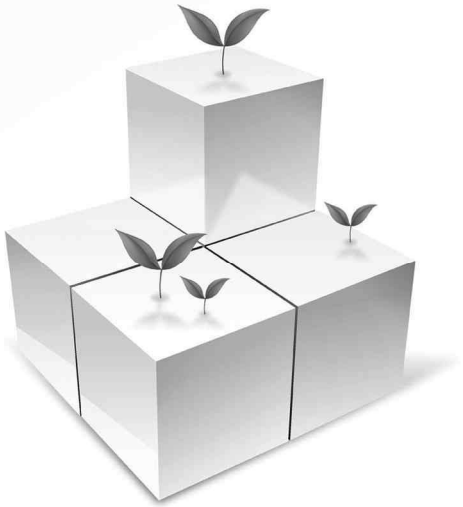

1. 친환경농산물 판로기반 구축

【담당자 박일규 ☎ 286-642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전국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각종 대책 추진

☐ 추진방향

○ 친환경 전문 유통업체와 협력체계 강화로 계약재배 확대 추진

○ 수도권 학교·공공급식 납품확대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

○ 친환경 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및 활용으로 수급안정 중점 추진

☐ 추진계획

○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거점 확보하여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체계 구축

- 수도권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협,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 광역 물류 시행

○ 농산물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와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 대형유통업체와 품목별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홍보 및 마케팅

○ 농협과 협력 광역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구축

- 상큼애 육성품목 4종에 대한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공공급식센터 건립 지원

- 중소농 중심 기획생산 조직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지원, 공공급식 핵심 주체인 시군 단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지원

○ 도내 생산·유통업체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 자연과농부들,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순천농협 등 학교급식 공급업체 중심

☐ 시·군 추진사항

○ 시·군 친환경 농산물 유통대책 수립·추진 : ’21. 2월

- 수도권 학교급식 확대, 계약재배, 전문 유통업체와 협력사업 등

○ 지역 향토기업의 가맹점 확충 노력 및 지원계획 적극 홍보 : 연중

2.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

【담당자 박일규 ☎ 286-6421】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도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서울시 공공(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군에 출하농가의 순회수집, 소포장,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공공(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군

- 서울시 산지지자체 공공급식 지원 : 4개 시군(나주, 담양, 강진, 영광)
- 서울시 Non-GMO 학교급식 지원 : 2개 시군('21년 서울시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21. 1. ~ 12.

○ 사업내용 및 사업비

① 서울시 산지지자체 공공급식 지원 : 640백만원

- 사 업 비 : 640백만원(도비 160 $^{25\%}$, 시군비 480 $^{75\%}$)
- 사업내용 : 공공급식 출하 농산물의 순회 수집 및 서울까지 공급을 위한 물류비,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② 서울시 Non-GMO 학교급식 지원 : 160백만원

- 사 업 비 : 160백만원(도비 40 $^{25\%}$, 시군비 120 $^{75\%}$)
- 사업내용 :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가공식품 공급을 위한 물류비,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공급업체 공모 추진(서울시) : '21. 1월

○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 시달 : '21. 2월

○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1. 3월

3. 대도시 판촉행사의 효율적 추진

【담당자 이수형 ☎ 286-6424】

대도시 직거래 장터 및 판촉 행사 운영으로 생산농가 소득 증대 및 전남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추진방향

○ 도지사 품질인증, GAP 인증 농어가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로 소비자 신뢰 확보
○ 구매력이 높은 지역은 정례화 하고, 다중 집합장소 선정 직거래 장터 확대
○ 소비자 선호품목 적극 발굴 및 대형 유통업체 연계 통한 특판 행사 개최
○ 생산자와 소비자 간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지역 교류 활성화 기여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추진체계

○ 연간 직거래 행사 추진계획 수립·통보(도 → 시・군) : 2월까지

○ 직거래 행사별 기본계획 수립·통보(도 → 시・군) : 행사 3주 전
- 도 주관 및 서울시 등 타 기관 주관 직거래 행사

○ 참가업체 추천(시·군 → 도) : 행사 2주 전
- 업체별 균등 추천 및 신규 참가업체 지속 발굴

○ 참가업체 확정 통보(도 → 시·군) : 행사 1주 전
- 시·군별·업체별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시·군별 판매부스 배치결과 및 현장근무자 편성결과 통보

○ 참가업체 사전교육 실시(시·군) : 행사 2 ~ 3일 전
- 판매물품 품질관리, 원산지표시 및 양곡표시사항 준수 등

○ 행사결과 제출(시·군 → 도) : 행사종료 후 즉시

☐ 추진일정

○ 수도권 위주 직거래(정기 · 수시) 장터 실시 : 연중

- 도 및 서울시, 세종시 등 타 기관 주관 직거래행사(설, 추석, 수확기 위주)

○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가 : 4 ~ 11월(혹서기 제외)

- 4개소(광화문광장, 만리동광장, 덕수궁돌담길, 도시농업공원)

○ 대형유통업체 제휴 특판행사 전개 : 연중

- 도 및 시·군, 생산자단체 공동마케팅 전개, 고정 입점업체 발굴

☐ 참가업체 선정기준

○ (필수자격) 전남 농수산물 또는 지역 특산물을 직접 생산·제조·가공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작목반, 농업법인 등)로 시·군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대사항) 도지사품질인증, 우수농산물(GAP), HACCP 인증 등을 획득한 업체, 신규업체, 남도장터 입점 업체,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 업체

○ 직거래장터 담당자 요청 시 원산지 증명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및 자가생산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 가능한 농어업인

☐ 참가업체 선정방법

○ 각 시·군에서 1차 서류 심사 후 적격자 추천

○ 적격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품목군별로 2차 심사

○ 2차 심사 결과, 직거래 장터 참가 여부 및 예비 농가·단체*를 선정

* 예비 농가·단체 : 대형유통업체 또는 (사)남도미향 추천을 받은 자

※ 수수료 매장(백화점, 마트 등) 경우 매장 측에서 최종 업체 선정

신청서 제출		심사 및 추천(1차)		최종 선정심사(2차)		선정자 통지
농가 및 단체	⇨	해당 시군	⇨	전남도	⇨	전남도

☐ 참가업체 준수사항

○ 모든 판매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의무

○ 마스크, 위생 장갑, 위생모, 앞치마 착용 등 개인 위생 철저

○ 소비자에게 친절 응대 및 고객 관리 철저

○ 행사 기간 쓰레기 처리 및 행사장 원상복구 등 청결 유지

○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임의 변경 금지(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지)

○ 행사 담당자의 점검 모니터링 및 매출액 집계에 적극 협조

○ 기타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행사 운영시간 미준수, 일방적인 불참, 연락 두절 및 행사 운영에 비협조적인 농가 및 단체는 향후 직거래장터 업체선정 시 페널티 적용

☐ 시·군 추진사항

○ 자체 연간 판촉행사 계획 수립

- 시·군별 직거래 행사 추진계획 및 도 주관 ·타 기관 주관행사 참가계획 수립

○ 수도권 및 시·군 직거래장터 개설

- APT 부녀회, 자매결연 시·구청, 지역 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직거래 장터 참가업체 확보 및 품질관리 강화

- 시·군 대표 농특산물과 제철 신선농산물 비중을 높여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 원산지 증명, 표기사항 준수 통한 전남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귀농인회, 청년농업인 및 신규업체 참가 유도
- 참가업체 사전교육으로 각종 표기사항 및 위생상태 사전 점검 철저

○ 행사 기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업체에 대한 수시 관리·감독

☐ 행정사항

○ 시·군별 연간 판촉행사 계획 제출 : ’21. 1월까지

○ 시·군별 연간 판촉행사 결과 제출 : ’21. 12. 20일까지

○ 홍보용 샘플 쌀 제공 협조 : 직거래행사 개최 시

【붙 임】

도 주관,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안)

연번	장 소	기 간	참 가 업체수(개)	판매실적 (천원)	주 관 (비고)
계	16회				
1	킴스클럽 야탑점 (성남)	1. 20. ~ 1. 26.	20	125,000 ('20년)	도 주관
2	킴스클럽 산본점 (군포)	3월 중	25	130,000 ('19년)	도 주관
3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광주)	4월 중	22	216,971 ('20년)	도 주관
4	롯데백화점 본점 (서울)	5월 중	22	155,525 ('19년)	도 주관
5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	5월 말	15	135,000 ('20년)	도 주관
6	킴스클럽 강남점 (서울)	7월 중	25	103,101 ('20년)	도 주관
7	킴스클럽 분당점 (성남)	8월 중	20	-	도 주관
8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세종)	9월 초	30	148,620 ('19년)	세종시
9	서울광장 (서울)	9월 중	30	130,990 ('19년)	서울시
10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광주)	10월 초	25	216,971 ('20년)	도 주관
11	창원	10월 중	30	-	도 주관 (향우회 대상)
12	수도권	11월 초	25	-	도 주관 (전남, 경북)
13	부산	11월 중	25	-	도 주관 (향우회 대상)
14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광주)	12월 초	25	100,000 ('19년)	도 주관
15	킴스클럽 산본점 (군포)	12월 중	20	130,000 ('19년)	도 주관
16	AK플라자 (분당점)	미정	20	-	도 주관 (업무협약 후 진행)

4.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담당자 김용한 ☎ 286-6422】

전남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홍보·판촉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남도장터' 위탁운영

○ 운영기관 : ㈜리얼커머스('21. 1. 1. ~ 12. 31. / 1년간)

○ 입점업체 : 1,250업체, 15,698품목

○ 매출실적('20년말) : 326억원 (전년도 63.8억원 대비 411% 증가)

☐ 추진계획

○ 농산물 산지 온라인경매 등 유통경로 개척을 통하여 매출 강화

- aT, 서울신문사, 배민 등 협력운영으로 대량수요처(B2B) 매출 극대화

○「뭐든지 팔아드립니다」남도장터 개편('21. 2. ~ 7월)

-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동영상 기반 홈페이지 개편 및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판매 지원강화

○ 수도권 향우회와 연계, 남도장터 회원 확보 및 판매 확대

- 월별 기획 이벤트 홍보, 명절(추석, 설) 선물세트 홍보 및 구매요청 등

○「남도장터 법인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추진(~ '21. 3월)

- 500억원 이상 매출 시 위탁운영 한계, 법인화(출자・출연기관) 추진

☐ 시·군 추진사항

○ 국내외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개척을 위한 품평회 및 설명회 참여

- 라이브커머스 기반의 남도장터 홈페이지 개편 및 권역별 온라인 마케팅 판매자 교육 및 상품 등록업무 협조

○ 시군별 남도장터 입점업체의 매출확대

- 입점업체의 상품력 강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해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평가

[붙임]

남도장터 신규입점 안내

1 입점 추진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입점서류 신청접수	○ 입점 신청서류 접수 - 접수시기 : 연 중 - 전라남도 시·군 담당자 추천	
신청서류 검토 (서 류 심 사)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적격심사 - 심사자 : 시 · 군 업무담당자 -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 구비서류 확인	
입점업체 현장실사	○ 시·군별 서류심사 합격업체 현장실사 - 조사자 : 시·군 담당자 및 남도장터운영요원 - 방 법 : 방문조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 판매수수료, 결제 · 배송시스템 등 사전 안내	
입점업체 선정 및 품목분류	○ 입점업체 선정 및 입점품목 선정 - 대 상 : 입점업체 현장실사 적격업체	
선정결과 통보	○ 입점업체 및 입점품목 선정결과 통보	
입력자료 조사	○ 전산입력 자료조사 - 대 상 : 입점업체 -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 취합 및 촬영	
입점상품 정보등록	○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정보 DB등록	
판 매 개 시	○ 남도장터를 통하여 해당상품 판매개시	

2 입점자격 및 상품 선정기준

가. 입점자격

○ 등록일 현재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자

○ 등록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 생산하는 자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

※ 남도미향 브랜드, 도지사품질인증 사용업체는 입점심사를 생략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입점확정토록 조치

나. 입점업체 우선 선정사항

○ 품질관련 인증을 받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 및 생산자 단체
- 친환경, 도지사 품질인증 및 기타 품질인증 등

○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생산자 단체나 기존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

○ 연구기술개발을 통한 가공식품의 제조 및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 또는 조합

○ 22개 시 · 군에서 출하되는 대표 농수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개인

○ 품질개선 활동 및 유지 업체 우선 입점
-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 상품화 판매 업체
- 품질향상 및 배송, 포장 등 자체 물품에 대해 상품화하여 제작, 판매하는 업체

다. 상품 선정기준

○ 입점상품은 입점 신청서 및 상품성, 품질, 공급능력, 사업 추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상 품 성 : 고객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수명주기(Life Cycle) 등
- 품 질 : 제품보증능력, 상품의 인증·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 체계 등
- 공 급 능 력 : 물품공급 · 배송능력, 거래이력 등
- 사업추진도 : 사업화 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 선정제외 ① (1차 농축수산물) 수입제품 및 타 시도에서 생산된 제품
② (가공품) 수입산 원료, 타 시도 원료 20% 이상 사용 제품

라. 입점 계약 시 필요서류

①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③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 시·군 신고)

④ 통장사본

⑤ 남도장터 참여 확약서

남도장터 입점 신청서

<table>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업 체 명
(단 체 명)</td><td colspan="3"></td><td>직원수</td><td>명</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대표자정보</td><td>전화</td><td></td><td>팩스</td><td></td><td>핸드폰</td><td></td></tr>
<tr><td>주문담당자</td><td>전화</td><td></td><td>팩스</td><td></td><td>핸드폰</td><td></td></tr>
<tr><td>정산담당자</td><td>전화</td><td></td><td>팩스</td><td></td><td>핸드폰</td><td></td></tr>
<tr><td rowspan="6">생 산
농수축산물</td><td colspan="6">분 류 1)농산물 2)축산물 3)수산물 4)가공상품 5)기타</td></tr>
<tr><td colspan="2">품 명</td><td>판매 가격</td><td>공급 가격</td><td>공급 물량</td><td>판매시기</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생산자
유형</td><td>개 인</td><td colspan="5">1) 신지식농어업인 2) 친환경생산농가 3) 품질인증농가
4) 기타( )</td></tr>
<tr><td>법인/조직</td><td colspan="5">1) 작목반 2) 영농어법인 3) 농협 4) 수협 5) 회사</td></tr>
<tr><td>E-Mail
주소</td><td colspan="2"></td><td>홈페이지
주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td><td colspan="5">☐ 예(종류:) ☐ 아니오</td></tr>
<tr><td colspan="7">기타 하고싶은 말</td></tr>
</table>

남도장터(jnmall.kr)에 입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 청 인 : (인)

○ 상품 및 회사 소개

제품 설명 (특징 3가지 기입)	1.
	2.
	3.
회사 설명	
인증 내역	*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인증서 및 인증 번호 등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상세페이지 제작 요청	
사진촬영 요청여부	※ 남도장터로 제품 택배 발송!!

※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참여 확약서

남 도 장 터
참 여 확 약 서

당사는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운영할 예정인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이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당사는 상품배송 및 수송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제공받은 회원자료는 절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자료가 유출될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 라 남 도 지 사 귀 하

5.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담당자 이수형 ☎ 286-6424】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TV 홈쇼핑 방송 판매지원을 통해 전남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추진방향

○ 도지사품질인증, GAP 인증 등을 취득한 농특산물 홍보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 TV 홈쇼핑 방송사와 협력 통한 히트상품 및 지역 특산품 적극 발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2월(12개월)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농수특산물 제조·가공 업체 및 단체

- 친환경 및 GAP인증 농산물, 유기가공 농식품, 도지사품질 인증품목 등
- 홈쇼핑 방송사의 업체 방송판매 기준(제조환경, 공정관리 등) 적합한 업체
- 공영홈쇼핑, NS홈쇼핑, K쇼핑과 상생 협력방송 가능 업체

○ 규　　모 : 40회(공영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수요에 따라 선정)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50\%,}$ 시·군비 200$^{50\%}$)

- 지원액 : 업체당 10백만원(도비 5, 시·군비 5)

○ 지원내용 : TV 홈쇼핑 방송비(송출료) 지원

- 공영홈쇼핑(라이브) : 15,000천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자부담 5,000)
- K 쇼 핑(티커머스) : 10,000천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자부담 없음)
- NS홈쇼핑(라이브, 티커머스)
  · 라 이 브 : 20,000천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자부담 10,000)
  · 티커머스* : 13,200천원(도비 5,000, 시군비 5,000, 자부담 3,200)
  * NS홈쇼핑 티커머스 지원은 1업체 2회(6,600천원*2회) 방송 지원

※ 방송비 10백만원(도 5, 시군비 5) 제외한 판매수수료(공영 8%, K쇼핑 15%, NS홈쇼핑 15%) 및 인서트영상 제작비, 택배비, 전화주문비 등은 업체 자부담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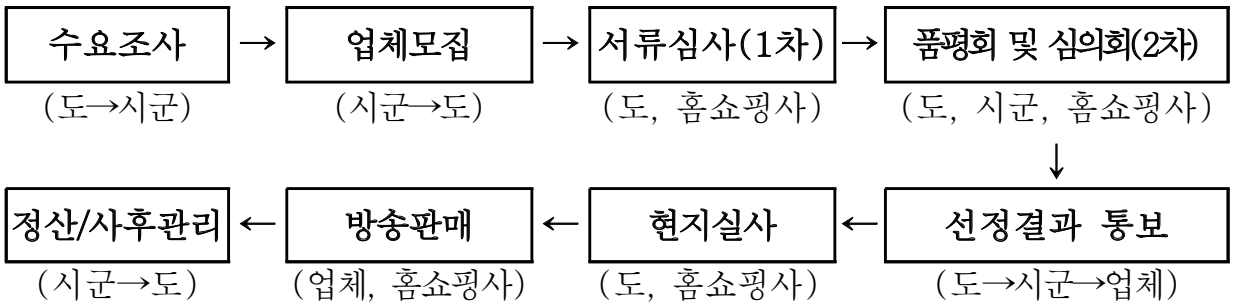

※ 사업량 미달(포기업체 발생 등) 시 2, 3차 업체 모집(1~3분기 내)

- ○ 신청서 및 상품기술서 제출(업체 → 시·군 → 도) : '20. 12월 중
- ○ 선정결과 통지(도 → 시·군 → 업체) : '21. 1. 14.(금)
-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시·군 → 도) : 선정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 시·군) : 시·군 신청서 검토 후
- ○ 보조금 교부신청(업체 → 시·군) : 방송판매 계약 후 5일 이내
- ○ 청구서 제출(업체 → 시·군) : 홈쇼핑 방송 후 5일 이내
- ○ 정산서 제출(시·군 → 도) : 홈쇼핑 방송 후 30일 이내

☐ 시·군 추진사항

- ○ 신청업체 방송판매 신청서 및 상품 기술서 검토 및 제출
- ○ 선정업체 TV 홈쇼핑 방송판매 추진 상황 점검 및 관리
- ○ 선성업체의 방송 포기 발생 시 즉시 전남도로 통지
- ○ 보조사업 정산서(증빙자료 첨부) 및 실적보고서 제출

붙임 1. TV홈쇼핑 방송판매 신청서(서식) 1부
2. TV홈쇼핑 방송판매 평가표 1부
3.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4. 보조금 청구서 1부
5. 보조사업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1부

【붙임 1】(업체 → 시·군 → 도)

TV 홈쇼핑 방송판매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공 장 등 록 번 호	영 업 신 고 번 호
주 소		

매 출 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신청제품		예상 판매가		홈쇼핑 방송사		방송 예정일	
원료 생산지							
주요판매처							
제품특징							

TV 홈쇼핑 방송판매 매출액		
2018년	2019년	2020년
회/ 백만원	회/ 백만원	회/ 백만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천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천원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천원
일사천리사업 (중소기업과)	천원	일사천리사업 (중소기업과)	천원	일사천리사업 (중소기업과)	천원

HACCP 유무		
친환경 인증	유 기 농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무항생제)	
도지사품질인증		
기타 인증		

【붙임 2】(도, 시·군, 홈쇼핑사)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선정품평회 평가표

업 체 명		판매가격	
상품구성	[본 구 성] [추가구성]		

구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
배점 기준	10점	8점	6점	4점	2점

※ 합격기준 :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상품

평가항목		등급					평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홈쇼핑 적합성 (30점)	TV 홈쇼핑에 적합한 고객 니즈가 있는지 평가(10점)	10	8	6	4	2		
	소구 포인트가 명확한 제품인지 평가(10점)	10	8	6	4	2		
	방송 중 표현이나 시연성이 충분한지 평가(10점)	10	8	6	4	2		
상품만족도 (30점)	기능성, 편의성, 활용성, 디자인 등을 평가(10점)	10	8	6	4	2		
	품질의 우수성 평가(10점)	10	8	6	4	2		
	상품의 독창성 및 참신성을 평가(10점)	10	8	6	4	2		
가격만족도 (10점)	경쟁상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평가(10점)	10	8	6	4	2		
구성만족도 (10점)	상품구성이 적정한지 평가(10점)	10	8	6	4	2		
런칭적합성 (10점)	최근 트랜드 및 시즌성을 평가(10점)	10	8	6	4	2		
판매자의지 (10점)	판매주체의 홈쇼핑 참여의지 (10점)	10 ○	8	6	4	2		
합 계	100점							

심사위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 평가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붙임 3】(시·군 → 도)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신 청 자</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기 관 명</td><td colspan="4"></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교부신청금액</td><td colspan="5">일금 원(₩)</td></tr>
<tr><td rowspan="2">총 사업비
(단위 : 천원)</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자부담</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개요</td><td colspan="5">○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td></tr>
<tr><td colspan="6">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6">붙 임 : 사업계획서 1부</td></tr>
</table>

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사업위치	◦
시설 규모	◦
사 업 비	◦ 00원(도비 000, 시군비 000)
시행주체	◦
사 업 비 세부내용	◦
사업추진 일 정	◦ ’21. 0월 : ◦ ’21. 0월 : ◦ ’21. 0월 : ◦ ’21. 0월 :
사업완료후 기 대 효과	◦
기 타	◦

【붙임 4】(업체 → 시·군)

2021년 농수특산품 TV홈쇼핑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자

주 소	법인명	대표자	대표전화	담당자 HP

□ TV홈쇼핑 판매방송 개요

○ 방 송 일 시 : 2021년 월 일 00:00 ~ 00:00

○ 홈 쇼 핑 사 :

○ 방송판매 내역

상품명	규격	납품 단가(원)	수수료 단가(원)	판매 단가 (원)	판매량 (개수)	총매 출액 (원)	총수수 료(원)	수수료 비율(%)

□ 보조금 청구액 : 천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첨부 1. TV홈쇼핑 방송판매 현장사진 1부
2.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3. TV 홈쇼핑 방송판매 계약서 사본 1부

2021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인)

【붙임 5】(시·군 → 도)

보조사업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1.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사업계획			도비보조금 교부액 (A)	보조금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B)	시군비	

2. 집행실적

연번	시·군명	업 체 명 (대표자)	품 목 (상품명)	홈쇼핑사	방송날짜
1	*00시 군*	*00 농업회사법인 (000)*	*김치 (000)*	*공영홈쇼핑 NS홈쇼핑 K쇼핑*	*'21. 00. 00. 14:50 ~ 16:50*

3. 수범사례

○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TV홈쇼핑 방송 확인서 또는 현장사진 첨부 1매 제출

○ 보조금 청구서 사본 1매 제출

6. 소비자 및 유통업체 초청 생산지체험 추진

【담당자 여윤선 ☎ 286-6425】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 및 소비자단체·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초청한 생산지체험 행사로 전남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과 유통·제조시설 방문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고정고객 확보

○ 생산지체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험과 견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생산·가공시설 대상 추진

☐ 추진계획

○ 시　　기 : ’21. 3. ~ 11월

○ 초청대상 : 학교급식·로컬푸드 소비자, 소비지 유통업체 대표 등

○ 규　　모 : 14회 490명(회당 35명 이상)

○ 사 업 비 : 50백만원

- 1박2일(12회) : 도비 4,000천원　　- 당일(2회) : 도비 1,000천원

※ 추가비용 발생 시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부담

○ 내　　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견학 및 체험
-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 탐방, 남도음식 체험

○ 신청절차

- 공고(도 홈페이지) → 사업신청(업체 → 도) → 현지실사(도) → 사업자선정(도) → 보조금 심의(도) → 생산지체험 행사 추진(업체)

☐ 시·군 추진사항

○ 소비자단체 생산지체험 행사 신청업체 신청(업체 → 도) : ’21. 2월

- 우수 농특산물 생산·가공·판매 시설, 음식 및 숙박시설 정보 제공

○ 생산지체험 행사 시 체험장소 안내,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등

유통바이어 및 소비자단체 초청
2021년 산지체험행사 신청서

생산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매출액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초청소비자 단체명	초청시기	인원	대표자 성명	연락처
	월			
주 소				

사업비							
합계		도비		생산단체 자부담		소비단체 자부담	
	%		%		%		%

체험행사	체험내용	예산계획
기대효과		

7. 남도미향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 선정

【담당자 박일규 ☎ 286-6421】

전라남도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식품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사용 제품 선정 추진

☐ 추진 방향

○ 친환경 농산물·농식품, 유기가공식품,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등 도내에서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가공업체 선발

○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 사용 제품 엄격한 심사·선정

☐ 선정 개요

○ 시　　기 : ’21. 2. ~ 6월

○ 대　　상 : 도내 생산(70% 이상)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매출액 1억원 이상 업체

○ 선정절차 : 사용 신청 → 현지조사 → 자문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 (사용신청)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및 1차 농산물
- (현지조사) 유통 전문 컨설팅 업체 위탁, 현장평가 60점 이하 선정 제외
- (심 의 회) 남도미향 자문위원회(14명) 최종 사용제품 선정

※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기간 : 2년

☐ 추진 일정

○ 기존·신규업체 브랜드 사용 신청(업체→시군→도) : 2월까지

○ 1차 서류심사(매출액 충족여부, 도내 생산제품 사용 여부 등) : 3월 중

○ 2차 현지 조사 및 컨설팅(전문 컨설팅 업체) : 3~5월

○ 남도미향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제품 선정 : 6월 중

○ 남도미향 제품 사용 승인 및 사용 : 7월~

[별첨] - 시·군작성

2021년 남도미향 브랜드사용 신청서(시군 작성)

■ 업 체 명 :

■ 업체개요

<table>
<tr><td rowspan="2">사업자
등록번호</td><td rowspan="2"></td><td rowspan="5">전 화
번 호</td><td>공장</td><td></td></tr>
<tr><td>사무실</td><td></td></tr>
<tr><td>설립년도</td><td></td><td>HP</td><td></td></tr>
<tr><td rowspan="2">주소</td><td rowspan="2"></td><td>FAX</td><td></td></tr>
<tr><td colspan="2">업태</td><td></td></tr>
<tr><td rowspan="2">대표자성명</td><td rowspan="2"></td><td colspan="2">종목</td><td></td></tr>
<tr><td colspan="2">e-mail</td><td></td></tr>
<tr><td rowspan="2">신청품목</td><td rowspan="2"></td><td colspan="2">홈페이지</td><td></td></tr>
<tr><td colspan="2">제품</td><td></td></tr>
<tr><td rowspan="2">매출액(백만원)</td><td>2017년</td><td>2018년</td><td>2018년</td><td>2020년</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 종합의견

제품우수성	
품질관리	
시장전망/ 개척	
기타의견	

8.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담당자 윤상대 ☎ 286-6423】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공간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 추진방향

○ 로컬푸드 직거래 공간인 직매장과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등) 지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및 소통·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생협,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 현황

시군	보조 사업자	구분	면적(㎡)	사 업 비(천 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5개소			6,396,700	1,339,000	401,700	3,816,000	840,000	
순천	순천로컬푸드(주)	일반	400	446,700	134,000	40,200	272,500	-	신규
광양	광양농협(용강점)	일반	191	850,000	255,000	76,500	178,500	340,000	신규
장흥	정남진장흥농협	일반	126	500,000	150,000	45,000	205,000	100,000	신규
장성	장성군(직영)	대도시	1,488	3,600,000	500,000	150,000	2,950,000	-	신규
신안	임자농협	일반	130	1,000,000	300,000	90,000	210,000	400,000	신규

○ 설치유형 및 면적기준(순수 판매면적)

- 일반직매장(100㎡ 이상) : 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벽체분리형 매장 등
- 대도시형직매장(200㎡ 이상) : 도 단위 또는 인접 시·군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광역단위 직매장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200㎡ 이상) : 일반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공동작업장 포함)은 필수이며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2개 이상 함께 운영하여야 함

○ 재원비율

- 일반·대도시형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복합문화센터 : 국비 2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40%

○ 보조금 지원한도(국비·지방비 기준)

- 1년차 사업 : 최대 복합문화센터 18억원, 대도시형 10억원, 일반 6억원
- 2년차 사업 : 1년차는 설계비 등 지원, 2년차는 건축비 등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최대 총액은 1년차 사업자와 동일

○ 지원용도

- 1년차 사업 : 컨설팅·설계·감리비, 토목·건축공사, 인테리어·부대공사, 기자재구입비* 등

  * 단, 기자재의 경우 테이블, 의자, 싱크대 등 필수기자재 등에 대해 인정하며, 소규모·소모성 기자재 등은 지양

- 2년차 사업 : 직매장 설치 인허가 절차 이전에 필요한 설계비 등

○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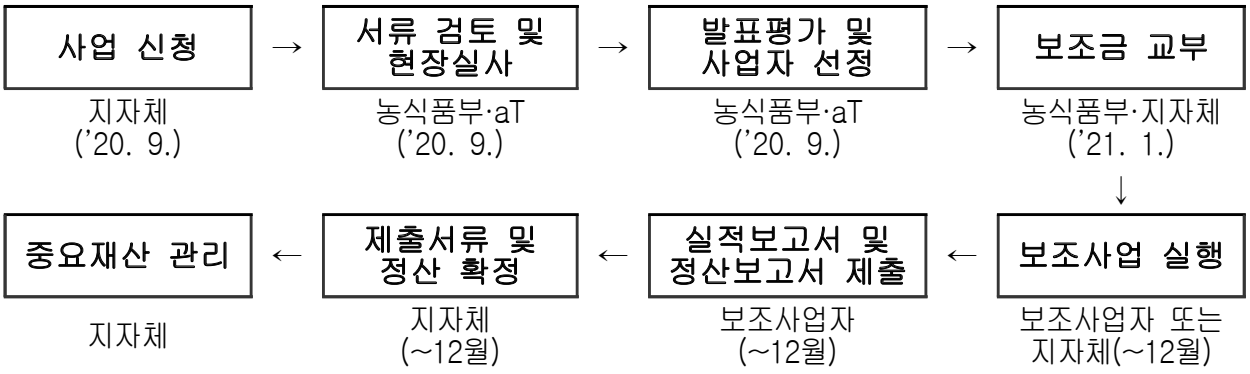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도 → 시·군 → e나라도움) : 1월말까지

○ 실시설계(보조사업자) 및 설계검토(시·군) : 2월말까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시·군) : 3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보조사업자) : 4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시·군, 보조사업자) : 5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사업 착공(보조사업자) : 6월말까지(선금, 기성금 집행)

○ 사업 준공 및 사업비 정산(시·군, 보조사업자) : 12월말까지

붙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table>
<tr><td>지자체명</td><td colspan="2">○○시·○○도</td><td>사업주체</td><td colspan="3">○○도 ○○과, ○○시 ○○○○과</td></tr>
<tr><td rowspan="2">담당자
(광역)</td><td>사무실</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담당자
(기초)</td><td>사무실</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이메일</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사업종류</td><td colspan="2" rowspan="2">☐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 일반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td><td>푸드플랜 협약 체결 여부
(농림축산식품부)</td><td colspan="3">☐ 체결 ☐ 미체결</td></tr>
<tr><td>생활SOC지원사업 선정 여부</td><td colspan="3">☐ 선정 ☐ 미선정</td></tr>
<tr><td>매장운영방식</td><td colspan="2">☐ 지자체(직영)
☐ 지자체(민간위탁)
☐ 민간공모</td><td>인력
계획</td><td colspan="3">○명(공무원 ○명, 정규직 ○명, 신규고용 ○명 등)</td></tr>
<tr><td>법인(조합)명</td><td colspan="2">이하 출자금까지는 민간 위탁·공모인 경우에만 작성</td><td>대 표 자</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법인설립일</td><td colspan="2"></td><td>출자금(원)</td><td colspan="3"></td></tr>
<tr><td>매장주소</td><td colspan="6"></td></tr>
<tr><td>사업연차</td><td colspan="2">☐ 단년도 ☐ 2년차</td><td rowspan="2">설계
자체추진</td><td colspan="3" rowspan="2">☐ 가능 ☐ 불가능</td></tr>
<tr><td>국고신청액
(백만원)</td><td colspan="2">* 2년차인 경우 설계비 등 기재</td></tr>
<tr><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총사업비</td><td>국비</td><td>지방비 확보액</td><td colspan="3">자부담</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 2년차사업자는 총사업비부터 자부담액까지 2년차까지의 총액 기재</td></tr>
<tr><td>부지 확보여부</td><td colspan="6">☐ 매입(확보) ☐ 계약 ☐ 가계약(매입일정: ○○○○년 ○월)</td></tr>
<tr><td rowspan="6">참여농가
조직현황
('20년 신청일
현재 기준)</td><td rowspan="3">참여
농업인
현황</td><td>계</td><td colspan="2">연령별 분포</td><td colspan="2">경작면적별
분포</td><td colspan="2">성별별 분포</td></tr>
<tr><td rowspan="2">00농가</td><td>65세
이상</td><td>65세
미만</td><td>0.5ha
이상</td><td>0.5ha
미만</td><td>남성농</td><td>여성농</td></tr>
<tr><td>00농가</td><td>00농가</td><td>00농가</td><td>00농가</td><td>00농가</td><td>00농가</td></tr>
<tr><td colspan="8">품목 조직화 현황</td></tr>
<tr><td>양곡류</td><td>채소류</td><td colspan="2">과실류</td><td>특용작물
류</td><td colspan="2">축산류</td><td>기타</td></tr>
<tr><td>00%</td><td>00%</td><td colspan="2">00%</td><td>00%</td><td colspan="2">00%</td><td>00%</td></tr>
</table>

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직매장 개요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3">내 용</td></tr>
<tr><td>직매장명</td><td colspan="3"></td></tr>
<tr><td>개장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설치유형</td><td>○ 일반직매장( )
○ 대도시형직매장( )
○ 로컬푸드 복합센터( )</td><td>직매장
유형</td><td>○ 단독매장 ( )
○ 벽체분리형 매장( )
○ 층분리형 독립매장( )</td></tr>
<tr><td>시설구성</td><td colspan="3">○ 직매장( ) ○ 공동작업장( )
○ 농가레스토랑( ) ○ 로컬카페 ( ) ○ 공유부엌 ( )
○ 기타(교육·체험장 등) ※ V 표시. 기타는 괄호 안에 시설명 기재</td></tr>
<tr><td>시설면적</td><td colspan="3">○ 총면적 : ㎡
○ 직매장 면적 : ㎡</td></tr>
<tr><td>입지여건</td><td colspan="3">○ 생산 : 주변 생산여건 등
○ 소비 : 주된 소비층, 주변 소비여건 등
○ 경쟁 : 인근 직매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민원발생소지 등
<사업대상지 사진>
<table><tr><td>위성사진</td><td>대상지 사진</td></tr><tr><td colspan="2">지 번(면적)</td></tr></table>* 사진은 가급적 주변환경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많이 첨부</td></tr>
</table>

2. 직매장 운영 관련

구 분	내 용
운영조직개요	○ *직매장 운영을 담당할 운영조직의 구성·업무분장 등* ○ *운영조직 미확보 시 확보계획 작성*
역할분담 및 관리계획	○ *운영조직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및 지자체에서 운영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작성*

3. 사업신청 관련

구 분	내 용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총사업비
지방비 확보	○ *본예산 확보계획 작성*

4. 농가조직화 현황 및 계획

구 분	내 용
참여농가 확보현황	(신청일 현재 기준) 명 ※ 증빙서류 첨부 : 직매장 참여확인서, 출하약정서, 직매장교육 수료자명단 등(농업인 서명 필수)
농가조직화를 위한 노력(교육 등) 및 계획	○ *신규농가 모집 및 농가보수교육 등* ⋮

5. 직매장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직매장 운영관리	○ *직매장운영규정, 출하규정 제정 여부* ○ *상품기획 및 조달 방법* ○ *가격결정, 정산방법 등*
품질안전관리	○ *안전성관리규정 보유, 출하농가 교육 등* ○ *자체 안전관리계획 또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계획 등*
홍보계획	○ *주요 고객층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계획 작성*
유관기관 협력 계획	○ *유관기관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농약 안전성 교육 및 계약재배 컨설팅 지원 등 직매장 운영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계획 작성*

6. 보조금 사용계획(국비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총액으로 작성)

(단위: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 및 산출단가	집행금액
	○	
	○	
	○	
합 계		

* 단, 2년차 사업자의 경우 필히 2년차 지출액까지 작성(1년차만 작성 시 심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향후계획	○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월별계획 작성* *ex) 본예산확보(O월) → 보조금 교부(O월) → 기본설계완료(O월) → 실시설계완료(O월)→ 건축허가 승인(O월) → 직매장 착공(O월) → 직매장 완공((O월)*

8.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 신청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매장 지원)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직거래법')」 제9조에 따라 정부(이하 '농식품부')가 설치를 지원한 농산물 직매장에 대하여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이란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된 농산물 직거래 상설 판매장을 말한다.

② '독립매장'이란 독립된 건물 또는 층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운영하는 직매장을 말한다.

③ '복합매장'이란 일반 유통매장의 일부로 설치되어 병행 운영되는 직매장을 말한다.

④ '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이하 '지자체'라 한다),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직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매장 관리업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단, 본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한 더 강화된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직매장 시설 및 운영기준

제4조(직매장 개설) ① 직매장은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 농산물 판매면적을 100㎡(복합센터, 대도시형 직매장은 2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 설치 유형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등 사업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독립매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취급품목) ① 직매장에서는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통한 판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에서는 직거래법 제2조 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을 매출액 기준 50% 이상 취급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상 지역 내에서 수급이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연접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포함하여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외에는 매장 내 로컬푸드 구역 내에서 직거래법 제2조 3호에 따른 직거래 농산물 및 직매장 간 제휴를 통한 농산물 취급이 가능하다. 이때 출

하자 성명, 주소, 생산 일자 등 정확한 생산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형 직매장에서는 관할 시·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출액 기준 75% 이상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출하농업인 선정) 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교육 이수 등 직매장 사업자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직매장 사업자가 출하농업인을 선정할 때에는 중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 상대적으로 약세인 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 입점 농업인은 출하 시 포장, 진열, 가격결정,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도시형 직매장의 경우에는 순회수집을 통한 포장, 진열까지 인정한다.

④ 출하농업인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하수수료) 직매장 사업자는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출하농업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출하수수료율은 출하농업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품질안전관리) ① 직매장 사업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판매 농산물에 대한 품질안전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점검사항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유통기한 표시 및 확인
2. 식품 허위·과대광고
3. 냉동·냉장식품 온도관리
4.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취급 준수
5.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확인
6.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
7. 즉석제조식품, 가공식품 등의 품질관리
8. 제조·가공업체 현지 점검 등

② 자체 또는 외부기관이 시행한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출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 관리

제9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지자체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직매장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또는 부속시설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 · 장비 등의 설비는 구매일로부터 5년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 중 직매장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의 개 · 보수, 증축 등을 실시할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해당 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직매장 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 · 장비에 대하여 별표의 농산물 직매장 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직매장의 사후관리 해제 검토 · 조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사업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직매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하며, 해당 시설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군수는 해당 매장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 · 장비 등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 · 교환 · 대여, 담보제공)하거나 시설물의 이전, 구조 변경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시 ·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 등을 관리기간 내에 처분·양도, 시설물 이전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지도 및 점검

제12조(운영활성화 지원)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매년 직매장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직매장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 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직매장 시설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는 직매장 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 · 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시 · 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매장 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경우 1회 이상은 농산물 직거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⑤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별표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 · 도지사는 그 결과를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시장 · 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지도 · 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직매장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및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 · 장비 등을 직매장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 · 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제13조 제3항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투아웃(1차 ‘경고’, 2차 ‘보조금 회수’) 조치를 받았을 때
   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나. 도매시장·공판장·전통시장 등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5. 제13조 제3항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삼진아웃(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보조금 회수’) 조치를 받았을 때
   가. 사후관리 점점 결과 총점 기준 70% 미만의 경우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때에는 기본규정 별표5의 중요재산 처분기준과 동 규정 제80조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병 · 통합 등의 구조조정 촉진,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한 양수도 등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담당자 윤상대 ☎ 286-6423】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 추진방향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정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인증 민간 분석기관,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의뢰·실시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4,000건 * 지원단가 : 150천원/건(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150^{25\%}$, 시·군비 $450^{75\%}$)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사업추진

○ 검사대상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하는 농산물 및 축산물

- 시·군에서는 관할 구역 내 직매장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무작위 추출하여 도내에 소재한 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

○ 검사(분석)기관 선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다만, 시·군 자체 분석실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 사업목적이 같은 시군 친환경·유통부서의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검사”,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과 일괄 발주 예산절감 방안 강구

○ 검사횟수 : 예산범위 내 검사횟수를 로컬푸드 직매장 수로 나누어 실시

- 도·시군비 보조 검사, 자체검사, 농관원 등 타 기관검사 포함하여 실시하되, 농산물의 경우 간이분석은 검사횟수에 미포함
- 직매장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시료 구입비 지급 가능(도비 보조 검사에 한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와 협조하여 설·추석 및 농축산물 다소비 시기(휴가철 등) 검사 강화

○ 검사항목 : 잔류농약(농산물), 항생제 등 잔류물질 및 미생물(축산물)

○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민간분석기관(이상 농산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기관에 직접 집행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도에 보고

□ 행정사항

○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분석기관 선정결과 제출 : ’21. 2. 20.까지

사업계획(건, 백만원)			선정결과				비고
사업량	사업비	계약방식	공동입찰 여부	계약일자	계약방식 (입찰 또는 수의)	검사비 (천원/건)	

○ 검사실적 제출 및 검사결과 통보

- 상반기 안전성 검사 실적 제출(시·군 → 도) : 7월 10일까지
- 분석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결과는 해당 직매장 및 농가에 통보하여 로컬푸드 폐기 및 주의 조치(1차 주의, 2차 출하정지(2개월), 3차 로컬푸드 출하 계약해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결과 제출

- 시장·군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분석기관에 직접 자금(검사비) 집행
-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2. 1월 말

[참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배정내역

시 군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100%)	도비 (25%)	시군비 (75%)	
계	4,000	600,000	150,000	450,000	
목포시	267	40,000	10,000	30,000	
여수시	800	120,000	30,000	90,000	
순천시	-	-	-	-	지역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나주시	-	-	-	-	지역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광양시	400	60,000	15,000	45,000	
담양군	667	100,000	25,000	75,000	
곡성군	160	24,000	6,000	18,000	
구례군	133	20,000	5,000	15,000	
고흥군	-	-	-	-	직매장 없음
보성군	133	20,000	5,000	15,000	
화순군	-	-	-	-	지역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장흥군	-	-	-	-	직매장 없음
강진군	267	40,000	10,000	30,000	
해남군	187	28,000	7,000	21,000	
영암군	187	28,000	7,000	21,000	
무안군	346	52,000	13,000	39,000	
함평군	160	24,000	6,000	18,000	
영광군	160	24,000	6,000	18,000	
장성군	-	-	-	-	지역푸드플랜 (안전·품질관리)
완도군	133	20,000	5,000	15,000	
진도군	-	-	-	-	직매장없음
신안군	-	-	-	-	직매장없음

10.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담당자 윤상대 ☎ 286-6423】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18개 시·군(로컬푸드 직매장 51개소)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자(보조사업자), 출하 농업인(지원대상)

- 선정 우선순위 : 경작규모가 0.5㏊ 미만인 소규모·영세농가, 여성농업인
- 광주·전남 상생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75$^{15\%}$, 시·군비 275$^{55\%}$, 자부담 150$^{30\%}$)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포장재(비닐) 제작·구입비 지원

☐ 사업추진 방법

○ 사업신청(직매장 운영사업자 → 시·군)

- 직매장 운영사업자는 포장재 지원을 희망하는 출하농가의 사업량을 파악하여 포장재 지원신청서를(붙임 1)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내시(시·군 → 직매장 운영사업자)

- 시장·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별 사업비를 배정하고, 직매장 운영사업자에게 사업 선정결과 통보

*** 농업인 지원기준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경작(임차)면적 0.5㏊ 미만 소규모 및 영세농가,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시·군 자체 선정기준 마련 지원 가능)**

***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직매장별 특성을 반영한 농가 지원 한도 설정**

○ 보조금 교부신청(직매장 운영사업자 → 시·군)

- 직매장 운영사업자는 교부 내시된 보조금액을 바탕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농가 명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 직매장 운영사업자)

- 시·군에서는 직매장별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등)를 최종 검토하여 교부결정 통보

○ 포장재 제작(구매) 및 농가 공급(직매장 운영사업자 → 출하 농업인)

- 직매장 운영사업자는 선 자부담을 투입 포장재(필름 등) 일괄 제작 또는 구매 후 출하농업인에게 공급

*** 직매장 운영사업자는 포장재 제작(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세부사업 분야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는 종목 등재 필한 전문업체인지 확인 후 계약**

- 포장재 지원 농업인에게 포장재 수불대장 서명 받은 후 포장재 공급

※ 포장재 제작단가의 보조금(70%)을 제외한 자부담금(30%)을 받고 농업인에게 공급

○ 보조금 청구(직매장 운영사업자 → 시·군)

- 직매장 운영사업자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보고서와 함께 보조금청구서, 구입확인서류(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농가별 수불대장(서명날인본),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시·군 → 직매장 운영사업자)

- 시·군에서는 직매장 운영사업자의 포장재 구입 및 사용내역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포장재 제작·구입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직매장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실태 관리

☐ 행정사항

○ 직매장별 포장재 지원 사업비 배정 결과 제출 : ’21. 2. 20.까지

시군	직매장명	수요조사 농가수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15%)	시군비 (55%)	자담 (30%)	

○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제출(시·군 → 도) : ’22. 1월말

[참고]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배정내역

시 군	직매장(개소)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55%)	자부담 (30%)	
계	51	500,000	75,000	275,000	150,000	
목포시	2	23,500	3,500	13,000	7,000	
여수시	5	76,500	11,500	42,000	23,000	
순천시	4	36,500	5,500	20,000	11,000	
나주시	7	36,500	5,500	20,000	11,000	
광양시	5	40,000	6,000	22,000	12,000	
담양군	5	50,000	7,500	27,500	15,000	
곡성군	1	16,500	2,500	9,000	5,000	
구례군	1	10,000	1,500	5,500	3,000	
고흥군	-	-	-	-	-	직매장 없음
보성군	1	10,000	1,500	5,500	3,000	
화순군	4	53,500	8,000	29,500	16,000	
장흥군	-	-	-	-	-	직매장 없음
강진군	2	20,000	3,000	11,000	6,000	
해남군	2	17,000	2,500	9,500	5,000	
영암군	5	17,000	2,500	9,500	5,000	
무안군	2	26,500	4,000	14,500	8,000	
함평군	1	10,000	1,500	5,500	3,000	
영광군	2	10,000	1,500	5,500	3,000	
장성군	1	36,500	5,500	20,000	11,000	
완도군	1	10,000	1,500	5,500	3,000	
진도군	-	-	-	-	-	직매장 없음
신안군	-	-	-	-	-	직매장 없음

【붙임 1】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
(직매장
운영사업자)</td><td>법인명</td><td></td><td rowspan="2">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 rowspan="2"></td></tr>
<tr><td>대표자</td><td></td></tr>
<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4">로 컬 푸 드
직 매 장 현 황</td><td>명 칭</td><td></td><td>개 장 일</td><td></td></tr>
<tr><td>소 재 지</td><td></td><td>매 장 형 태</td><td>전문매장, 샵인샵</td></tr>
<tr><td>총매출액
(백만원)</td><td>-’19년:
-’20년:</td><td>직매장면적(㎡)</td><td></td></tr>
<tr><td>출하농가</td><td>명</td><td>출하농가 매출</td><td>품 목 수 : 품목
매 출 액 : 백만원</td></tr>
<tr><td>사업계획</td><td colspan="4">
<table>
<tr><td rowspan="2">출하
품목</td><td colspan="2">포장재</td><td rowspan="2">단가
(원)</td><td rowspan="2">수량
(개)</td><td colspan="4">사 업 비(천원)</td></tr>
<tr><td>종류</td><td>포장
단위</td><td>계
(100%)</td><td>도비
(15%)</td><td>시군비
(55%)</td><td>자담
(30%)</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위와 같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 .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2】사업 정산 보고서

가. 사업비 정산

(단위 : 원)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별	보조금 지급농가 (호)	사업비				집행액				도비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나.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로컬푸드 직매장별	종류 (비닐)	규격	단위	수량 (매)	단가 (원)	총사업비

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 사업성과(사후관리 계획 등)

○

○

11.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담당자 김용한 ☎ 286-6422】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 운영으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농어민 이윤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목적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쌍방향 소통을 통한 매출증대 및 온라인 유통채널 다각화

☐ 추진방향

○ 뉴노멀 시대 신 유통 모델로의 민첩 대응으로 전남 농수축산물 판로개척 및 온라인 유통 선도

○ 라이브커머스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매출효율이 높은 플랫폼 송출 등으로 생산농가 매출 극대화

〈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 수행업체 자격안내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업종코드 921501)
► 라이브커머스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인기 셀럽과 호스트 섭외가 가능한 업체
► 네이버쇼핑라이브, 카카오, 그립, 보고 등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송출이 가능한 업체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지원대상 : 남도장터 쇼핑몰 입점업체

○ 사 업 량 : 200업체(22개 시군)

- 지원단가 3,000천원 × 200업체(지원단가 내에서 사업량 조절 가능)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150^{25\%}$, 시군비 $330^{55\%}$, 자부담 $120^{20\%}$)

※ 시군비는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가능

○ 사업내용 : 라이브커머스 운영

※ 라이브커머스 저작권 및 소유권은 도·시군·지원대상 업체 간 공동소유로 함

☐ 사업프로세스

구 분	담당기관	담 당 업 무
주관	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	⇅	
사업시행기관	시 · 군	○사업지침 안내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수행 송출 전문 업체 공모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 및 지급 ○정산 및 결과 보고
⇅	⇅	
사업 수행조직	사업대상자 (온라인 판매 농가, 업체)	○송출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 제출

☐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시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관내 온라인 판매농가·업체 안내
- 온라인 판매농가·업체 →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사업수행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통해 세부적인 송출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송출 전문 업체 공모 및 선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에 대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농가 및 판매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자·사업량 확정시 사업 수행할 송출 전문업체를 공모하여 자체 평가 후 선발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안내(권고사항)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송출 전문업체를 통해 시행

※ 사업 확정 후 사업대상자 및 송출 전문업체 변경 시 도에 변경 승인 요청

○ 사업비 청구(사업대상자)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상자는 지체 없이 사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라이브커머스 송출결과 등)를 사업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제출한 사업증빙서 및 사업완료 실적을 검토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4. 30.한)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성명	주소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추진 실적 보고(7. 30.한)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사업내용)	추 진 실 적(○, ×)				비고
	성명	주소		미계약	계 약 (월일)	착 수 (월일)	완 료 (월일)	

○ 사업비 정산보고(12. 31.한)

시군	사 업 자		사 업 비				집행액(천원)				잔액
	성명	주소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 성과보고(12. 31.한)

시군	사 업 자		사업내용	매출액(천원)			비고
	성명	주소		계	직접매출	간접매출	

【붙임 1】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업 체 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 colspan="2"></td></tr>
<tr><td>방송 상품명</td><td colspan="2"></td><td>종업원수</td><td colspan="2">명</td></tr>
<tr><td rowspan="4">기업현황</td><td>전화번호</td><td></td><td>팩스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홈페이지</td><td colspan="4"></td></tr>
<tr><td>사업자번호</td><td></td><td>법인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직 위</td><td></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핸드폰</td><td></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온라인시장
판매현황 체크</td><td colspan="5">① 판매 중(판매처 : 남도장터, 우체국쇼핑, 카카오, 오픈마켓 등)
② 입점 신청 중(남도장터)
③ 해당사항 없음(사유:)</td></tr>
<tr><td rowspan="2">매출현황
(백만원)</td><td>구 분</td><td>2018년</td><td>2019년</td><td colspan="2">2020년</td></tr>
<tr><td>금 액</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송출
전문업체</td><td colspan="2"></td><td>방송상품
재고현황</td><td colspan="2">개</td></tr>
<tr><td rowspan="2">라이브
커머스
사업신청</td><td colspan="2" rowspan="2">계(천원)</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자담</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이 온라인 판매확대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시장 · 군수 귀하</td></tr>
</table>

【붙임 2】

2021년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 시군별 배정(안)

시·군	사업량(개소수)	사업비(천원)			
		계(100%)	도비(25%)	시군비(55%)	자부담(20%)
계	200	600,000	150,000	330,000	120,000
목포	4	12,000	3,000	6,600	2,400
여수	10	30,000	7,500	16,500	6,000
순천	15	45,000	11,250	24,750	9,000
나주	15	45,000	11,250	24,750	9,000
광양	10	30,000	7,500	16,500	6,000
담양	12	36,000	9,000	19,800	7,200
곡성	7	21,000	5,250	11,550	4,200
구례	8	24,000	6,000	13,200	4,800
고흥	10	30,000	7,500	16,500	6,000
보성	8	24,000	6,000	13,200	4,800
화순	8	24,000	6,000	13,200	4,800
장흥	7	21,000	5,250	11,550	4,200
강진	7	21,000	5,250	11,550	4,200
해남	15	45,000	11,250	24,750	9,000
영암	6	18,000	4,500	9,900	3,600
무안	12	36,000	9,000	19,800	7,200
함평	5	15,000	3,750	8,250	3,000
영광	12	36,000	9,000	19,800	7,200
장성	10	30,000	7,500	16,500	6,000
완도	9	27,000	6,750	14,850	5,400
진도	5	15,000	3,750	8,250	3,000
신안	5	15,000	3,750	8,250	3,000

12. 전라남도 농산물 공동물류 구축·운영(전환)

【담당자 윤상대 ☎ 286-6423】

잡곡 및 원예농산물의 권역별, 품목별, 시기별, 小량, 多배송처 농산물 출하를 목적으로 차량 대형화, 수송체계 구체화, 물류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추진방향

○ 수도권·영남권 등 전국 소비지까지 농산물 공동물류 체계 구축

○ 공동물류 규모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 및 농가 수취가격 제고

☐ 지원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농협전남지역본부(시행주체),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참여)

○ 물류업체 : ㈜농협물류 *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300$^{30\%}$, 자부담 700$^{70\%}$)

○ 사업내용 : 물류업체가 생산지 농산물을 수집 → 전국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물류센터, 중소마트까지 수송

○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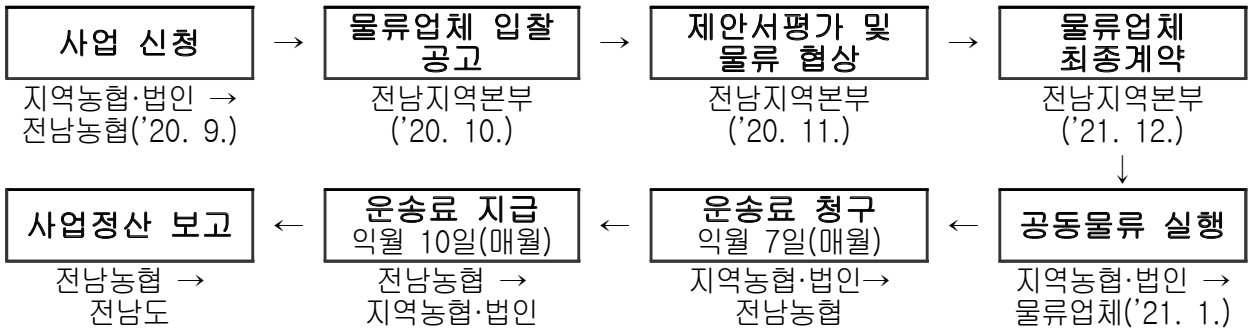

☐ 행정사항

○ '21년 농산물 공동물류 참여업체 추가 모집 및 홍보 : '21. 1월중

[참고 1]

2021년 농산물 공동물류 운송료 기준

1. 운송료는 아래의 단가를 적용한다.
   - 공동물류, 단독물류 5 : **파레트당 단가 적용** / 단독물류 1,2,3,4 : **차량당 단가 적용**
     (유통업체 소분료·피킹 비용 **미포함**, 익일 하차조건 **포함**)

구 분			단가(천원)		비 고
			냉장	상온	
공동물류			60	60	부가가치세 포함
단독	Ⅰ(10~14P)	전남권	270	260	
		전남외	600	550	
	Ⅱ (1P, 차당)		240	190	
	Ⅲ (2P, 차당)		240	240	
	Ⅳ (3P, 차당)		250	240	
	Ⅴ (4P 이상, P당)		70	70	
제주도권			132,000원		
연륙교 이외 산지			기준단가 + 실비		

※ 단독물류(Ⅰ)의 경우, 착지 추가당 55천원 적용.

※ 단독물류(Ⅰ)의 경우, 15~16p차량은 55천원 추가.

※ 단독물류 Ⅰ·Ⅱ·Ⅲ·Ⅳ·Ⅴ는 착지별 구분 적용한다.

※ 반품 및 회송물량은 상기단가에 미포함, 단, 참여업체와 협의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운송료 기준 : 산지 상차기준 파레트당/차량당 지급.

※ 운송료는 다음 사항에 해당 시 쌍방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기상상황 악화, 계절별 특수상황, 거래처간 거리, 물량 규모, 기타 운송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등

※ 농산물 이외 품목은 상기 운송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농협과 협의하여 적의 조정할 수 있다.

2. 기준단가 외 인하단가는 “계약상대자”와 “전남 광역물류 참여농협” 추가계약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합의 시 우선으로 적용 할 수 있다.
3. 전남 광역마케팅 홍보판촉 행사시 공동물류 활용 기준단가 우선 적용
   - 공동물류 미참여농협은 협의단가 적용

[참고 2]

2021년 농산물 공동물류 신청업체 현황

구 분	시·군	사무소명	주 소
계	14개 시군	37개 농협 및 법인	
농협군 (27개)	여수	여수농협	여수시 좌수영로 355
	순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순천시 중대길 15
	나주	나주배원예농협	나주시 청동길 32
		노안농협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12
		봉황농협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1
		세지농협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2
		영산포농협 가야지점	나주시 왕곡면 영산포로 22
		호남권친환경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6187-8
		나주조공	나주시 왕곡면 영산포로 22
	담양	담양농협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60
		창평농협	담양군 창평면 의병로 128
	장흥	용두농협	장흥군 장동면 곰치로 9
	해남	땅끝농협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화산농협	해남군 화산면 해남화산로 1055
	영암	서영암농협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83
		영암낭주농협	영암군 도포면 마한로 683
		월출산농협	영암군 시종면 금월로 27
	무안	서남부채소농협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381
		서남부해제사업소	무안군 해제면 달바위길 87
	함평	천지농협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13
	영광	영광농협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9
	장성	남면농협	장성군 남면 못재로153-1
		백양사농협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2
	신안	남신안농협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947-4
		신안농협	신안군 암태면 중부로 1963
		압해농협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4
		임자농협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52
법인군 (10개)	순천	참솔영농조합법인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510
	보성	보성키위영농조합법인	보성군 조성면 조성로 50
	장흥	제이앤제이	장흥군 장평면 청용1길 17-110
	강진	㈜탐진들	강진군 강진읍 남당로 97-49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강진군 칠량면 칠관로 414
	해남	구슬샘영농조합법인	해남군 옥천면 용산리 235-1
		무화담	해남군 화원면 문내화원로 807
		㈜해주물산	해남군 송지면 어란로 153
	영암	티알엠농업회사법인	영암군 시종면 태간로 141
	장성	초록향기옥정뜰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253-9

13.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균특전환)

【담당자 박일규 ☎ 286-6421】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전남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 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으로 생산자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가 대형 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고정 납품 및 직거래 판매망 구축으로 소비촉진 여건 마련

○ 지자체와 대규모 전문 유통업체 간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에 따른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및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품목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 사 업 비 : 625백만원(도비 $500^{80\%}$, 자부담 $125^{20\%}$)

○ 지원한도 : 개소당 25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농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활성화 지원

- 크리에이터 상품 판매, 라이브 커머스 판매 등에 소요되는 지원
-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B2B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상품화 개발(포장재), 물류비, 시식·판촉비(도우미, 시식용 원물, 홍보 및 증정품 등), 할인쿠폰(판매가격의 최대 20% 이내), 경품 제공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소재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붙임 9)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프로세스

전라남도		사업자		전라남도		보조사업자		전남도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계획서 제출	⇨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보조금 지급	⇨	사업진행, 사업비 정산	⇨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검토, 사후관리

☐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전라남도 : 사업계획 수립·통보, 모집공고 및 접수, 사업자 선정 평가
- 시·군 :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 안내
- 사업자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배정 단계

- 전라남도 :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자별 지원자격 및 요건 등 적합여부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사업용도별로 적합하게 집행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단계

- 전라남도는 사업추진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도비, 자부담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시·군 협조) : 연중

○ 사업 성과 분석 및 정산 : ’22. 1월

[별지 서식]

2021년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신청서

<table>
<tr><td>신청단체명</td><td colspan="2"></td><td colspan="2">대 표 자</td><td></td></tr>
<tr><td rowspan="3">주 소</td><td colspan="2" rowspan="3"></td><td colspan="2">사업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출 자 액</td><td colspan="2">백만원</td><td colspan="2">법인설립일자</td><td></td></tr>
<tr><td rowspan="3">담 당 자</td><td>직책</td><td>성명</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td><td></td></tr>
<tr><td></td><td></td><td>휴대폰</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e-메일</td><td></td></tr>
<tr><td rowspan="2">사 업
신청내용</td><td>판매품목</td><td>판매처</td><td>세부사업명</td><td colspan="3">사업비(천원)</td></tr>
<tr><td>(개품목)</td><td></td><td></td><td>계</td><td>도비</td><td>자담</td></tr>
<tr><td>다른사업
지원이력</td><td colspan="5">○ 해당사업이외의 외부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현황 작성
○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작성</td></tr>
<tr><td>인증취득</td><td colspan="5">○ 남도장터 입점업체, 남도미향·도지사품질인증·기타 취득 인증 작성</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5">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증빙자료</td></tr>
</table>

상기와 같이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를 하여 적용되는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전라남도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자 선정 및 사업관리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14. 광역 농산물 브랜드 활성화 추진(전환)

【담당자 윤상대 ☎ 286-6423】

전남 과실 공동 브랜드 '상큼애', 전남 아열대 과일 브랜드 '오매향'의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시장 교섭력 제고

☐ 추진방향

○ 광역 단위 농산물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전남 과실 공동 브랜드, 아열대 과일 브랜드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산지 통합 마케팅조직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시행주체 :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17개 지역농협 및 참여농가)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50\%}$, 자부담 200$^{50\%}$)

* 자부담 상세 : 전남지역본부 100, 참여 지역농협 50, 참여농가 50

○ 사업내용 : 판매 촉진 마케팅 및 공동브랜드 상품화 지원

- 판촉행사 소요 비용(홍보물 제작, 시식용, 증정품 원물 구입 등)
- 포장·용기 디자인, 상품 개발비, 바이어 초청 사업설명회, 박람회 참가비
- 상기 명시 되지 않은 항목은 도와 별도 협의 후 진행

☐ 사업프로세스

구 분	담당기관	담 당 업 무
주관	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예산지원 및 관리 감독 -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	⇅	
사업시행기관	농협 전남지역본부	○사업 안내 및 참여조직 선정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비 교부 및 지급 ○정산 및 결과 보고(도)
⇅	⇅	
사업 수행조직	지역농협, 농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출(전남본부)

☐ 사업추진방법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전남지역본부)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지역농협, 참여농가 안내

*** 도 본부에서는 지역농협과 협의, 농산물 출하 시기별·지역별 균분 안배 철저**

- 지역농협, 참여농가 → 전남지역본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전남지역본부 →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송금(도)

- 사업계획 검토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송금(도) → 전남지역본부

○ 사업비 집행(전남지역본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게 보조 사업비와 자부담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전남지역본부·지역농협·참여농가)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역농협에는 지체없이 사업증빙서류(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자료 등)를 첨부하여 전남지역본부에 정산 제출
- 전남지역본부는 행사 판매실적, 행사사진, 사업추진 일체 자료를 첨부하여 도에 정산 보고

☐ 행정사항

○ 자체 추진계획 제출(전남지역본부) : 2월말까지

○ 사업 홍보(전남지역본부, 시·군 협조) : 연중

○ 사업 성과 보고회(전남지역본부) : 12월초

[별지 서식]

2021년 광역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참여 신청서

<table>
<tr><td>법인 명칭</td><td colspan="3"></td><td>법인 대표</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
(FAX)</td><td></td></tr>
<tr><td>품목광역조직여부</td><td></td><td>참여농가수(명)</td><td></td><td>전년도
매출액</td><td>백만원</td></tr>
<tr><td rowspan="2">신청법인
담당자</td><td>직위</td><td>성명</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e-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 광역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사업계획 ◇</td></tr>
<tr><td rowspan="5">‘20년
농산물
마케팅사업
신청액
및
추진계획</td><td rowspan="4">사업비
신청액
(천원)</td><td colspan="2">재 원</td><td colspan="2">금액</td></tr>
<tr><td>도비보조</td><td>50%</td><td colspan="2"></td></tr>
<tr><td>도농협 자부담</td><td>25%</td><td colspan="2"></td></tr>
<tr><td>지역농협·
농가 자부담</td><td>25%</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계</td><td colspan="2"></td></tr>
<tr><td>농산물
마케팅
추 진
계 획</td><td colspan="4">○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 판촉행사 소요 비용(홍보물 제작, 시식용, 증정품 원물 구입 등)
- 포장·용기 디자인, 상품 개발비, 바이어 초청 사업설명회, 박람회 참가비</td></tr>
</table>

상기와 같이 광역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붙임 사업 세부계획 1부

신청인 : o o o 지역농협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15. 유통 · 농식품업무 평가

【담당자 박일규 ☎ 286-6421】

2021년도 농산물 유통·농식품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 시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통업무 발전 기회로 활용

☐ 기본방향

○ 유통시스템 개선 노력 및 도 시책 추진실적 등 중점 관리

○ 평가분야별 도 소관부서에서 시·군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 및 다음년도 사업 반영 등 연계성 강화

☐ 평가계획

○ 평가기간 : 2021. 1 ~ 11월 (11개월) *** 평가시기 : 2021년 12월초**

○ 평가대상 : 21개 시·군(목포시 제외)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 확인 평가

- 시·군(자료제출) → 농식품유통과 해당팀(확인) → 유통기획팀(종합평가)

※ 평가계획 통보(3월) – 전년도 평가결과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반영

○ 우수 시·군 선정 : '21년 12월초

☐ 시상계획

○ 시상시기 : 2021. 12월 중

○ 시상내역 : 6개 시·군(상사업비 50백만원 / 포상금 500만원)

- 대 상(1시·군) : 상사업비 15,000천원 / 포상금 1,500천원
- 최우수(2시·군) : 상사업비 각 10,000천원 / 포상금 각 1,000천원
- 우 수(3시·군) : 상사업비 각 5,000천원 / 포상금 각 500천원

※ 전년도 평가대비 최고로 향상된 1개 시·군과 시·군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위가 郡단위만 해당될 경우 점수가 높은 1개 市는 우수상 수여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농촌융복합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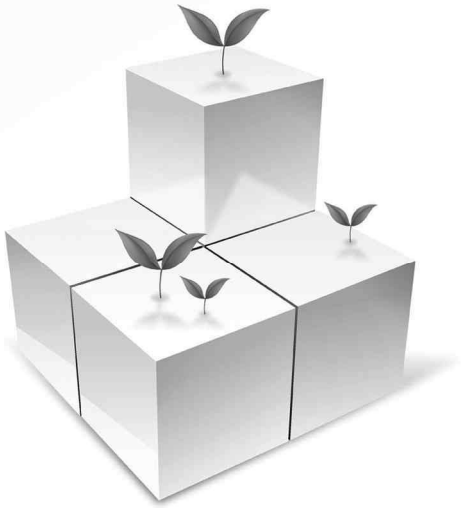

1. 향토산업 육성사업

【담당자 허은희 ☎ 286-6431】

□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3. 추진방향

○ '20년부터 지역 포괄보조(균특회계) 사업이 시도지사에게 이관됨.

- 예산편성, 사업선정 권한 등 모든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이관

□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다만, 사업단이 비영리법인 등을 구성하였을 경우,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단, 신규지구 선정지침 내 신규법인 설립 기준* 준수)

* 최고 출자한도 1인 최대 총출자액의 30% 미만, 출자인 10인(법인의 경우, 1인으로 간주) 이상으로 구성(농업인 5인 이상)

3.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단, 해당자원의 지역내 생산량·면적(전국 내 지역비중), 생산농가 수 및 기타 산업화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자원

○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구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영체(들녘별경영체 등)나 생산자조직과 연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부여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시스템 후보군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 시 우대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20. 7월말 기준)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부산·경남	세종	제주
8개 시군 9개 품목	13개 시군 30개 품목	10개 시군 11개 품목	12개 시군 19개 품목	14개 시군 26개 품목	16개 시군 27개 품목	17개 시군 36개 품목	19개 시군 37개 품목	1개 시군 2개 품목	2개 시군 4개 품목
• 여주(쌀) • 화성(포도) • 김포(새싹인삼,가공) • 이천(돼지, 쌀밥) • 평택(쌀) • 파주(산머루) • 양평(쌀가공식품) • 안성(쌀)	• 원주(고구마, 토종다래) • 동해(포도, 찰옥수수) • 인제(오미자,곰취) • 횡성(더덕, 한우) • 홍천(잣,인삼,한우) • 평창(황태, 한우,약콩, 배추) • 양구(사과) • 강릉(한과, 감자,산채) • 태백(곰취) • 영월(장류, 곤드레포도) • 정선(황기, 사과) • 양양(산채, 곶감,떡) • 화천(토마토)	• 충주(당뇨바이오) • 제천(약초) • 보은(대추) • 영동(포도) • 증평(인삼) • 단양(아로니아) • 옥천(한우) • 괴산(친환경 잡 곡 , 버섯) • 청주(사슴) • 음성(들깨)	• 태안(고추, 화훼) • 예산(사과) • 당진(쌀) • 공주(알밤, 한우) • 보령(돼지) • 서천(소곡주) • 논산(장류, 딸기) • 아산(쌀) • 천안(호두과자) • 금산(인삼, 깻잎,흑삼, 약초) • 청양(구기자, 맥문동) • 부여(토마토)	• 군산(흰찰쌀보리) • 완주(로컬푸드) • 김제(로컬푸드) • 순창(장류, 무매실절임) • 고창(복분자) • 익산(과채류, 고구마,쌀, 보리) • 정읍(귀리, 구절초, 수박, 지황) • 장수(레드푸드) • 임실(치즈, 로컬푸드) • 진안(로컬푸드,김치) • 부안(양파, 오디) • 전주(마나리) • 무주(천마) • 남원(고사리,팥)	• 여수(갓,쑥) • 순천(야생차, 매실) • 나주(배,멜론) • 광양(매실) • 곡성(멜론, 매실,토란) • 고흥(유자) • 영광(쌀모시, 찰보리) • 보성(녹차) • 장흥(표고버섯) • 장성(컬러푸드,편백, 사과) • 해남(밤호박) • 영암(무화과) • 강진(맥주보리,장류) • 진도(울금, 검정쌀) • 완도(흑염소) • 무안(고구마)	• 경북(사과) • 김천(포도, 자두) • 안동(사과, 마,콩,생강) • 영주(인삼, 사과) • 경산(대추, 복숭아) • 영천(포도, 복숭아,마늘) • 문경(사과, 오미자,콩) • 의성(마늘, 한우,자두) • 청송(사과) • 고령(딸기) • 청도(감,반시, 미나리) • 성주(참외) • 예천(사과, 곤충,참깨) • 상주(쌀,오이, 곶감,포도) • 봉화(로컬푸드) • 영양(고추) • 구미(감자)	• 부산(대저토마토) • 울산(배) • 진주(딸기) • 함안(연근, 참외) • 창녕(양파) • 통영(고구마, 유자) • 양산(딸기, 사과) • 남해(시금치, 마늘) • 합천(양파) • 김해(단감, 산딸기) • 산청(쌀, 양잠,딸기) • 밀양(사과, 깻잎) • 함양(산양삼, 여주,오미자) • 의령(망개떡) • 거창(사과, 산양삼) • 하동(매실, 녹차,딸기,배) • 창원(단감, 연근) • 거제(유자) • 고성(단감, 쌀보리)	• 세종(복숭아, 로컬푸드)	• 서귀포(감귤) • 제주(청귤, 블랙푸드,당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고객관리 프로그램 도입, 온라인 거래 도입 및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는 보조율 별도 적용하여 제한적 지원 허용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숙박시설을 예외적으로 인정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전라남도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지방이양재원

○ 지원기준 : 균특이양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이상)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균특이양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20~30억원(균특이양 50%, 지방비·자부담 50%), 2~4년간 지원

- '18~'19년(4개년, 30억원), '20년(3개년, 30억원), '21년(2개년, 20억원)

□ 사업추진체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 시·군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시・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사업계획 최종 확정(전년도 12월)

*** 컨설팅 위원 중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30% 포함, 컨설팅 계획 보고**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신청

- 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성과목표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

*** 사업계획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이내로 제한(1년차 사업계획 변경은 가급적 지양)**

○ 시・군은 사업지구별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도에 제출(매년 1월)

* 세부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조치사항을 반드시 포함,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

○ 도는 매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세부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매년 2월)

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 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2. 자금배정단계

도

○ 각 시·군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도, 시·군

○ 도는 분기별 배정된 지방지양재원 및 도비를 시·군에 자금을 배정(시도별로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부)하고 시·군은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 및 사업단(보조사업자 포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관련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도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연 3회 이상)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4.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 ·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관련내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의거, 중요재산 처분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15.3.3.)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 및 정산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보조시설 등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경영실적(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시·군에 제출, 시·군은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13년 착수지구까지는 사업종료 후 3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14년 착수지구부터는 4년간 재산 및 경영실적 보고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 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복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시도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도, 시 . 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도에 제출 : 매 분기말(서식 별도 통보)

- 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

○ 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시·군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 익년 1월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도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시·군에 지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추진결과 보고(사업완료 후)》

도, 시 . 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도에 제출 :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 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2. 농식품 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담당자 허은희 ☎ 286-6431】

☐ 지원목적

○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 역할 및 기능 정립을 통해 전체 식품산업에서의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개소 * 농식품부 공모 선정

- 고흥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해남 옥천농업협동조합, 해남 맛샘(영)

○ 지원기간 : 2021. 1. ~ 12.

○ 지원조건 :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시군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사 업 비(백만원)			반가공 품 목	가공 유형
			국고 (28%)	지방비 (28%)	자부담 (44%)		
	3개소	3,783	1,044	1,044	1,695		
고흥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1,500	**405**	405	690	유자	식자재형 농축착즙형
해남	옥천농업협동조합	783	**235**	235	313	마늘	식자재형
해남	맛샘영농조합법인	1,500	**404**	404	692	고구마	분말형,추출형

☐ 지원 자격요건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산업분류	세 분 류
일반식품 소재(19)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1),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29),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09), 동물성 유지 제조업(10401),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10403),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 곡물 제분업(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61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설탕 제조업(10720), 식초 ·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장류 제조업(10743),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 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2), 주정 제조업(11121)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1079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749)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지역 푸드플랜 운영 · 참여기관(지자체 출연기관,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농식품부와 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중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식품기업은 가, 나, 라, 마 항목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선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 정한 요건 준수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63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2.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단체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⑨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사업 선정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없이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전 이행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반가공 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 시 준수사항은 [덧붙임6] 참고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경우 및 지역 푸드플랜 운영·참여기관의 경우 신축 가능 (이외에는 신축 불가)

○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절단 등), 반가공시설(농축, 분말, 추출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팰릿,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등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 시설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요건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농식품부 (전년도 6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전년도 8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전년도 8~9월)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서면평가 실시,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사업여건 현장확인>
-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발표평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조건부 사업대상자 선정 >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선정 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비의 1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10%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 **사업비의 10%이상, 3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추진 실적 및 실제 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 시·군 → 도 → 농식품부에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연 1회 이상)

《 제 재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자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임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 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 (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 · 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 · 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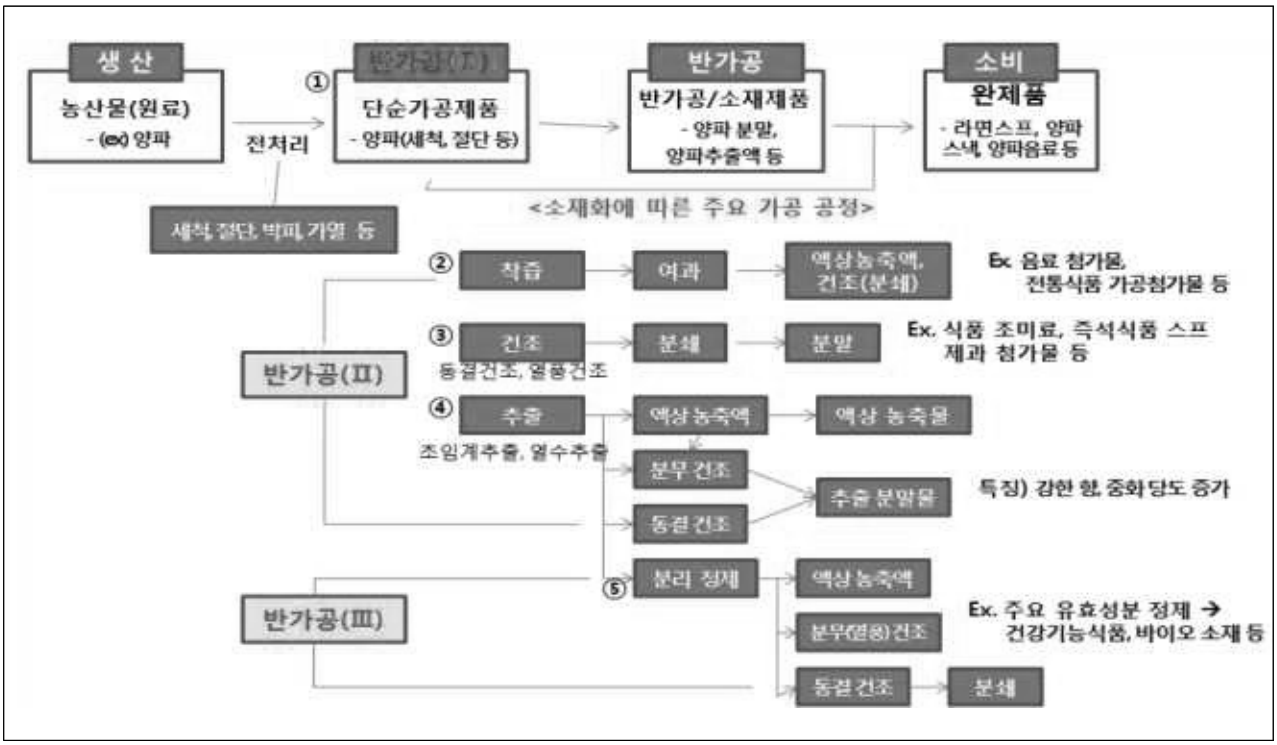

[서식]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법인(생산자단체) 명칭</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영농·식품업 종사경력</td><td>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5">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기타</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 colspan="2">호</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3">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td><td colspan="2">반가공유형
(덧붙임1 참조)</td><td colspan="2">1~5 중 택1
(중복가능)</td></tr>
<tr><td rowspan="3">사업예정지
(도로명,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4">농지이용계획</td></tr>
<tr><td colspan="2">농업진흥지역안</td><td colspan="2">지구</td></tr>
<tr><td colspan="2">농업진흥지역밖</td><td colspan="2">지구</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 colspan="6"></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지자체에서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재정현황('20.6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자본총계 (C=A-B)	자산총계(A=a+b)			부채총계(B)	부채비율(B/C)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7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0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경영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1. 매출액			
1) 반가공 매출			
2) 완제품 매출			
3) 기타 매출			
2. 매출원가			
3. 판매비 및 관리비			
4. 영업이익			
5. 영업외수익			
6. 영업외비용			
7. 당기순이익			

※ 작성요령: 손익계산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되, 반가공 매출 증빙자료 제시

라.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O동(㎡)	O동(㎡)	O동(㎡)	O동(㎡)	O동(㎡)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6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17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18년					
	'19년					
	'20년					
	평균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면적 : ㎡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자동포장기	*포장설비 (제품포장)*	*00분말 (소재 : 00)*	*1식 (3~5kg 개별포장)*			*건조·분쇄기 라인과 연계설치를 통한 생산 공정단축*	*00반가공품 제조공정 중 포장단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인하 등*
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분량 3페이지 이내)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 *사업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로 표시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 계획(2021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2021년 또는 2022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시설설치 전 · 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6월)			
2020년(7~12월)			
2021년			
2024년			
2026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 비율(%) (A/B)
			국내산(톤/억원)				외국산 (톤/억원)		
			계 (톤/억원) (A)	직접 생산	계약 재배	일반 구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6월)									
2020년(7~12월)									
2021년									
2024년									
2026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원료 사용계획 증거자료(계약재배, 국산 농산물 등) 제출*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국산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덧붙임4) 제출

7. 기타 특기사항

※ 생산농가, 당사, 납품기업간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현황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확보(가능)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농식품부 제출
	③ 사업부지확보		
농업경영정보 등록 또는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 여부 등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여부		
	③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여부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 지방비 확보(예정) 증빙자료는 농식품부에 제출, 나머지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확인자) 소속(시·군·구)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시·도) 성명 서명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冷矯])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0℃) 기준

* 천장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 패널을 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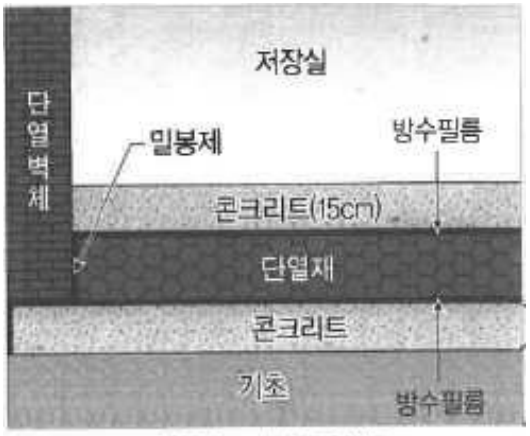

저온저장고 바닥시공 단면도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 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쿨러의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 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밸브를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및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을 실시한다.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3.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담당자 허은희 ☎ 286-6431】

□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 기회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지원형태

○ 재　　원 : 지방이양재원

○ 지원기준 : 균특이양(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　　계	45,400	4,900	4,902	4,000	계속
균특이양재원	22,700	2,450	2,450	2,000	계속
시군비·자부담	22,700	2,450	2,452	2,000	계속

☐ 202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추진체계

○ 사업 대상자 :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법인) 및 개인, 시장 · 군수, 지역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사 업 주 관 : 도지사

○ 시 행 기 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9.9.26.)」[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

(보조금+자부담)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 저장, 유통 시설 포함

5. 중복·편중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 결정 내용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 : 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 : 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참조

□ 사업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1. 추천개요

○ 추천건수 : 시 · 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자인 경우 추천 제외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 · 농촌 식품산업발전 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 · 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 · 군비 부담(10%) 가능 여부(부담 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는 신청불가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를 시 · 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 ·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 · 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전년도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견적서

□ 사업별 추진계획

1.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신청 및 선정기준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업체 및 법인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HACCP시설 의무(확대) 품목 가공 업체

* 의무 품목 : 어묵, 어류연체류, 조미가공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 확대 품목 : 어묵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비가열식품제외),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 2021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5개소 내외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250, 시군비 250, 자담 1,000)

- 개소당 지원한도 : 500백만원 이내(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도내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

○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HACCP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 · 집기류구입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HACCP 시설 구축 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2.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 신청 및 선정기준

○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2021년 추진계획

○ 사 업 량 : 5개소 내외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750, 시군비 150, 자담 600)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도내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

○ 사업내용 : 소규모 HACCP,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개보수, 기계·장비류 지원
※ 총 사업비 1억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

☐ 기관별 역할

1. 사업신청

사업 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19. 11월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중복·편중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3. 세부계획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도에 제출 : 「붙임 1」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4. 사업 시행

시·군

○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반드시 명시

5.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총사업비 기준, 자부담만 늘어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사업추진

- **총사업비의 2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도지사에게 제출. 단, 2회 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최초 사업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 **총사업비의 20%이상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 **보조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 변경금액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 변경액 적용 : 증된 사업비 합계와 감된 사업비 합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20% 변경 적용
→ 사례) 총사업비 300백만원의 사업계획 변경시 : 증된 사업비 합계 70백만원(23%), 감된 사업비 합계 50백만원(16%)으로 320백만원이 된 경우 23% 변경된 것으로 봄

6.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도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도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시군에 권고

《제　　재》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도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7. 성과 측정

○ 일자리 창출,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전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사업대상 시·군에서는「붙임 1」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 ‘21. 1. 17.까지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2」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21. 12. 28. 한

<보고서식>

「붙임 1」

1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 '21. 1. 17. 까지

○ 업 체 명 : (대표자 , ☎)

○ 위 치 :

○ 생산품목 :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19	'20	'21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붙임 2」

2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 : '21. 12. 28.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 (대표자 , ☎)

○ 위 치 :

○ 생산품목 :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20	'21	'22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2021년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자</td><td>업체명
(대표자)</td><td colspan="3"></td><td>대표자 생년월일</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d>전화번호
(휴대폰)</td><td></td></tr>
<tr><td>업체설립일</td><td colspan="3"></td><td>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생산품목</td><td colspan="3"></td><td>연간생산량</td><td></td></tr>
<tr><td>연매출액</td><td colspan="3"></td><td>종 업원수</td><td></td></tr>
<tr><td></td><td></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7">신청내용</td><td>사업분야</td><td colspan="5">□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td></tr>
<tr><td>사업예정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세부사업명</td><td rowspan="2">건축</td><td>신축</td><td>부지 ㎡</td><td></td><td>시설 ㎡</td><td></td><td>사업비(천원)</td></tr>
<tr><td>HACCP 개보수</td><td>부지 ㎡</td><td></td><td>시설 ㎡</td><td></td><td>사업비(천원)</td></tr>
<tr><td colspan="2">기계·장비</td><td>가공설비</td><td></td><td>사업량</td><td></td><td>사업비(천원)</td></tr>
<tr><td colspan="2"></td><td>기타장비</td><td></td><td>사업량</td><td></td><td>사업비(천원)</td></tr>
<tr><td colspan="2">사업비
(천원)</td><td>계(100%)</td><td>도비(50%)</td><td>시군비(10%)</td><td colspan="2">자부담(40%)</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상기와 같이 2021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3. 전년도 재무제표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기타 확약서 등)
5.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자부담 증빙서류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7.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 견적서, 설계서 등
8.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 영농조합(농업인 5인이상), 농업법인(농업인 1인 이상)
9.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 : 계약재배 농가내역, 인증서 사본, 구매확인서 등
10. 각종 특허권, 상표권, 인증서(도지사,전통식품,인증경영체,HACCP)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 모든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신청분야 :

○○ 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참여 농가수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생산품목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평)	
	공 장 건 물	㎡ (평)	
경영상황 (2019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 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 료 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20)		사 업 후 전 망					
			2021		2022		2023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

4.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담당자 허은희 ☎ 286-6431】

□ 사업개요

1. 추진체계

○ 대 상 자 :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 및 개인 업체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 · 군수

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전통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1년 이상 운영 실적(연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 · 가공법인 제외)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참조

3. 지원조건

○ **사업은 시군에서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 (보조금+자부담)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 ·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 · 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 · 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 · 가공 시설 및 기계 · 장비

- 농식품 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5. 지원형태

○ 재원 : 지방이양재원

○ 지원기준 : 균특이양(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6. 중복 · 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 · 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 : 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 : 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참조

7. 선정 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순위	보조금지원	조직화	원료사용
1	보조지원 사실 없음	5인 이상 농업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2	보조사실은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개별업체이나 농가 10호 이상 간접참여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3	3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농가 미참여	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적격업체 선정

□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 → 도)

1. 추천 개요

○ 추천건수 : 시 · 군별 1건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 · 군 농업 · 농촌 식품 산업 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 · 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 · 군비 부담분 가능 여부(불가할 경우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 · 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 설정 부지는 신청 불가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 전년도 재무제표
-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
- 사업부지 확보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 등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토지대 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등기부 등본)
- 사업 견적서

□ 세부 공모계획

1. 신청 및 선정기준

○ 김치·절임류, 전통술, 한과류, 차류 등 전통식품 분야 제조업체 및 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 또는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2. 선정계획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340백만원(도비 $670^{50\%}$, 시군비 $134^{10\%}$, 자담 $536^{40\%}$)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도비 50%, 시군비 10%, 자담 40%)

○ 사업내용 : 공장, 생산시설 현대화, HACCP 시설 등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 운영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서류심사·현장확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

□ 기관별 역할

1.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19. 11월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등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또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속한 사업대상자에게 가점 부여

3. 세부계획 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도에 제출 :「붙임 1」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4. 사업 시행

시·군

○ 시공업체 선정, 계약체결, 사업비를 직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반드시 명시

5.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총사업비 기준, 자부담만 늘어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사업추진

- **총사업비의 2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도지사에게 제출. 단, 2회 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최초 사업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 **총사업비의 20%이상 변경시** : 시장·군수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 **보조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 변경금액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요청

* 변경액 적용 : 증된 사업비 합계와 감된 사업비 합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20% 변경 적용
→ 사례) 총사업비 300백만원의 사업계획 변경시 : 증된 사업비 합계 70백만원(23%), 감된 사업비 합계 50백만원(16%)으로 320백만원이 된 경우 23% 변경된 것으로 봄

6.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완료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의 재량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도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시군에 권고

《제 재》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도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보고

7. 성과 측정

○ 일자리 창출,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 도 및 시·군에서는 매년 전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지방재정법」,「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사업대상 시·군에서는「붙임 1」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 ’21. 1. 17. 한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2」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21. 12. 28. 한

[참고자료]

2021년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지원계획

업 체 명	주 요 사업내용	품목	사업비 내역(백만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3개소	-	1,340	670	134	536	
순천주조 (순천, 대표 조병준)	생산라인	전통주, 탁주	480	240	48	192	
추성고을 (담양, 대표 양대수)	생산라인	전통주	380	190	38	152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진도, 대표 김애란)	가공공장, 생산라인	진도홍주	480	240	48	192	

[보고서식]

「붙임 1」

1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제출서식 : '21. 1. 17. 까지

○ 업 체 명 : (대표자 , ☎)

○ 위 치 :

○ 생산품목 :

○ 주요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단가	수량	사업비 지원계획(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 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20	'21	'22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호)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붙임 2」

2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시설물 등 사진첨부) : '21. 12. 28. 까지

□ 사업개요

○ 업 체 명 : (대표자 , ☎)

○ 위 치 :

○ 생산품목 :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명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계										

□ 사업추진 실적

(단위 : ㎡, 대, 개, 식 등)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계				

□ 성과목표 달성도 및 향후계획

(단위 : 백만 원, 명, 개소, 톤)

성 과 지 표	목표치	추진실적	비율	향 후 계 획			비 고
				'20	'21	'22	
○ 기업 매출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 일자리 창출(명)							
○ 원료사용량(톤)							
○ 친환경원료사용량(톤)							

<신청서식> - A4용지 5~6장 내외

2021년도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자</td><td colspan="2">업체명
(대표자)</td><td colspan="3"></td><td>대표자 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소재지</td><td colspan="3"></td><td>전화번호
(휴대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업체설립일</td><td colspan="3"></td><td>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생산품목</td><td colspan="3"></td><td>연간생산량</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연 매 출 액</td><td colspan="3"></td><td>종 업원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9"></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 colspan="2">사업예정지</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세부사업명</td><td rowspan="2">건축</td><td>신축</td><td>부지</td><td>㎡</td><td>시설</td><td>㎡</td><td>사업비
(천원)</td><td></td></tr>
<tr><td>HACCP
개보수</td><td>부지</td><td>㎡</td><td>시설</td><td>㎡</td><td>사업비
(천원)</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계·장비</td><td>가공설비</td><td></td><td>사업량</td><td></td><td>사업비
(천원)</td><td></td></tr>
<tr><td>기타장비</td><td></td><td>사업량</td><td></td><td>사업비
(천원)</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 업 비
(천원)</td><td colspan="2">계(100%)</td><td colspan="2">도비(50%)</td><td>시군비(10%)</td><td colspan="2">자부담(40%)</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able>

상기와 같이 2021년 전통식품 산업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3. 전년도 재무제표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기타 확약서 등)
5.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자부담 증빙서류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7.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 견적서, 설계서 등
8.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법인의 경우) : 영농조합(농업인 5인이상), 농업법인(농업인 1인 이상)
9.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 : 계약재배 농가내역, 인증서 사본, 구매확인서 등
10. 각종 특허권, 상표권, 인증서(도지사,전통식품,인증경영체,HACCP)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 모든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계획서

1. 사업 필요성

○ 사업여건, 방향, 시설·장비 확충 필요성 등

○ 사업완료후 기대효과

2. 업체현황

<table>
<tr><td>업체명</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설립년월일</td><td colspan="2"></td><td>참여 농가수</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2"></td><td>대 표 자
전화번호</td><td>일 반)
휴대폰)</td></tr>
<tr><td>생산품목</td><td colspan="4"></td></tr>
<tr><td>주거래처</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주요시설</td><td colspan="4">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td></tr>
<tr><td>공 장 부 지</td><td colspan="3">㎡(평)</td></tr>
<tr><td>공 장 건 물</td><td colspan="3">㎡ (평)</td></tr>
<tr><td rowspan="5">경영상황
(2019년)</td><td>자 본 금</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총 자 산</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매 출 액</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순 이 익</td><td colspan="3">백만원</td></tr>
<tr><td>종 업 원 수</td><td colspan="3">명(상시 , 일용직)</td></tr>
<tr><td>지적재산권</td><td colspan="4">*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td></tr>
<tr><td>품질인증</td><td colspan="4">*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td></tr>
</table>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3. 보조사업 계획

○ 사 업 명 :

○ 대 상 지 : 시군 읍면 번지(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공장설립 가능지역 확인이 가능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자부담 조달 계획 : 현금보유, 융자 등 구체적 조달 계획 제시

*** 현금 보유시 통장사본, 회사 자산 활용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세부사업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산출근거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가공공장	00㎡/1동					견적
생산라인	1식(oo등)					

***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 견적에 의한 산출은 '견적' 으로 표기하고 첨부**

○ 시공업체 선정방법

- 가공공장
- 생산라인

4. 사업 추진계획

○ 월별 추진계획 * 실제 추진 가능한 추진계획

- 00월 : 사업부지 토목공사, 사업설계 등
- 00월 : 자부담 예치 및 시공업체 선정
- 00월 : 가공공장 사업 착수
- 00월 : 생산라인 설치
- 00월 : 사업 완공

5. 식품원료 조달 실태 및 향후계획

○ 현 재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참여농가(호)	비 고
계				

*** 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첨부**

6.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7.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전		사 업 후 전 망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 원료사용량

원료 사용량(톤)								
원료명	사업전 (2020)		사 업 후 전 망					
			2021		2022		2023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원료총 사용량	친환경 원료량
계								
…								
…								
…								

※ 실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 사용량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량을 구분하여 표기

- 타 업체 원료납품 등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료량은 제외

5.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담당자 박진아 ☎ 286-64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방연	044-201-158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촉진 및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 거점 육성 →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2.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조

3. 사업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 인프라,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품질관리, 기업애로 해소,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공동 홍보·마케팅, 규제 발굴·개선 등

4. 지원기준

○ **사업비 : 지구당 30억원**(국비 50%, 지방비 · 자부담 50%)

- 자부담은 사업추진단에 참여하는 1·2·3차 산업주체가 부담하되, 민간 H/W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의 경우 해당H/W 지원 총금액의 30%이상 자부담 필수

* 시군 소유의 HW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만 사용

○ **사업기간 : 4개년**(1년차:2년차:3년차:4년차 국비배정 = 2억원 : 4 : 6 : 3)

* '18까지 착수지구는 3개년 지원(1년차:2년차:3년차 국비배정 = 4.5억원 : 4.5 : 6.0)

5.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구(이하 시·군)은 시·군 내 농업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참여한 **사업추진단을 시군 직속조직(T/F등)으로 구성**(지역특화기관 등 활용)

* 부득이 시군 직속조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민법에 의한 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

** 시군 직속조직의 사업단은 사업기간 종료 후 시군이 직접운영하거나 의무적으로 법인형태(민법에 의한 법인, 상법에 의한 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운영

- 추진단내에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사무국, 자문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시군 관련부서 및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관련기관, 협회 등의 관계자(인사)를 참여시켜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 행정관련 관계자 70%, 민간 관계자 30%

II 사업 기본방향

◇ **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 된 곳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지역 경제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1 지역 대표자원 기반, 新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경관,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활용

○ 신 기능성 제품개발, 체험·관광·외식·치유 등 신서비스 분야 적극 발굴

2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역량 강화

○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주체 양성, 농업과 2·3차산업과의 연계, 귀농귀촌자 활용, 관련기업 유치,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

3 기존 인프라 활용

○ 기 조성된 인프라의 연계·활용을 통해 재정의 경제성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개별 공장이나 유통시설을 하나 더 건설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 인프라시설을 최대한 보완·활용

4 집적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효과 극대화

○ 농특산물 주산지, 가공·체험 인프라 등이 집적화된 곳을 생산·제조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 유도

5 지역주도 사업 추진

○ 지자체 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지구발전계획 수립

○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농업과 연계 강화

6 규제개선, 기업애로 지원,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 지구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

○ 지구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판로개척,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

○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농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각종 규정·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1차·2차·3차 산업주체(경영체) 등

- 시·군·구와 지역의 1·2·3차 산업주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단 구성
  * 사업추진단은 시군 직속조직(TF 등)으로 구성 (지역특화기관 등 활용)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지원대상인 1·2·3차 산업주체(경영체)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구 발전계획이 수립된 지역(시·군·구)

- 지구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시·군·구(이하 시·군)가 수립
- 지구 발전계획 기간은 시·군·구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4~5년으로 설정
- 발전계획의 세부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으로 추진하는 본사업*과 기타 재원으로 추진할 연계사업**으로 구성

* 본 사 업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 연계사업 : 본사업 외에 기타 재원의 타 정책사업

- 발전계획에는 성과지표(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지표 등) 포함

○ 사업추진시 사업참여주체 중 계약재배 상위업체와 인증사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선적 지원

○ 농업경영체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지원대상자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적합하여야 함

- 법인이 아닌 산업주체 등의 경우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특화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14개):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의 공간적 범위

- 농식품 관련 자원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업인 – 제조·가공업체 – 유통업체·관광 등 농촌산업 주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

- 특화되는 1차 농산물의 주산지, 기 조성된 2, 3차 융복합 인프라 설치지역, 향후 지구 지정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구획

  *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구획하는 것은 지양하되, 동일 시·군 내 뿐만 아니라 필요시 연접 시·군(타 시·도 포함)의 지역도 포함가능. 이 경우 지구 발전계획은 구획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서 수립

- 넓게 분산되지 않게 집적화 및 특화정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집약적으로 설정

○ 지원 요건

- 당해 지역에 생산되는 특화 품목의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생산량이 전국 차원에서 집중도가 높아야 함
- 2, 3차산업 융·복합 기초인프라의 조성 정도가 양호해야 함
- 역사·문화 등 무형적 요소,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특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1, 2, 3차 산업이 개별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유형

- 농촌융복합산업 하고자 하는 부존자원과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유형 가능

주산지형 (+가공시설집적)	가공집적형 (+원료생산집적)	특화품목 · 기능형
산, 밭, 과수원 등이 큰 규모로 집적화되어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 농촌관광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	특화농공단지 또는 집적된 가공시설 등이 인근 지역의 해당품목을 집중 생산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특화품목·기능을 중심으로 1·2·3차 산업자원이 개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산업자원 간 연계가 가능한 지역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 - 제조·가공 - 관광·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 기존자원(농촌산업 인프라)과 연계·보완이 가능한 공동사업(H/W, S/W)

- 공동인프라 조성,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고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지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
- 지구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팩키지 형태로 지원하되, 기존자원의 연계·보완에 초점을 맞춰 H/W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인프라(생산, 가공, 체험·관광 등)를 기반으로 자원간 연계 및 역량제고, 제품개발 등 S/W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원대상 (예시) >

지원분야	세부 지원대상(예시)
① 6차산업 공동 인프라 조성	ㅇ 원칙적으로 시설의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보완·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ㅇ 생산,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 간의 연계를 위해 공동 이용 등이 가능한 시설의 보완·리모델링 ㅇ 농촌융복합산업관* 조성(기존 유사시설 활용, 기능보완 원칙, 신규필요시 최소화) * 지구 내 생산되는 농산물·가공품의 직매장, 홍보코너, 체험장 등 ㅇ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조성 * 지구 계획에 따라 시설의 증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ㅇ 공동 품질관리 시설 ㅇ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창업 공간 조성 ㅇ 지구 내 체험·관광에 필요한 부대시설 ㅇ 농촌융복합차산업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장비
②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ㅇ 농업인, 귀농귀촌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사업화 교육(필수) ㅇ 제조·가공업, 유통,체험·관광 등 기존 사업자 품질관리, 기술 및 경영컨설팅, 기업애로 발굴 지원 ㅇ 농촌융복합산업를 위한 1,2,3차 산업 주체간 연계 협력 지원 ㅇ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③ 고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ㅇ 특화품목을 활용한 신상품・신서비스 개발· 표준화·규격화·제품개선관련 인증 등을 위한 공동 R&D지원 및 시제품 제작 ㅇ 5대 유망식품(정부혁신성장 5차 발표, 12.4) S/W 지원 * 특수・기능・간편・친환경・수출 식품 신제품 개발 및 기능성 연구 ㅇ 시장조사, 판로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수출정보 제공 등 ㅇ 농촌융복합산업 공동 마켓팅 지원 등 ㅇ 규제 개선과제 발굴

* 상기의 3가지 부문 중 한 부문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사업계획 수립하되, H/W는 50% 이내로 계획

** 지역네트워크사벙을 완료한 지구의 경우는 중복지원 지양을 위해 네트워크사업에서 추진한 동일내용의 사업은 제외 또는 최소화하여 반영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 토지·부지의 매입비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 · 농약 · 사료 · 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사업 참여 경영체 및 사업추진주체(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와 일회성 행사비
- 해외 선진지 견학
- 기존제품 및 신제품 직접생산비 지원(신제품의 시제품 제작비는 예외)
- 기존제품 포장비 지원
- 신규시설 사업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자부담은 사업추진단에 참여하는 1·2·3차 산업주체가 부담하되, 민간 HW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의 경우 해당H/W 지원 총금액의 30%이상 자부담 필수

* 시군 소유의 H/W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만 사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당 30억원(국비 15억원)

- 연차별 국고지원 : 1년차(2억원) → 2년차(4) → 3년차(6) → 4년차(3)

* '18까지 착수지구는 3개년 지원(1년차:2년차:3년차 국비배정 = 4.5억원 : 4.5 : 6.0)

Ⅳ 사업추진계획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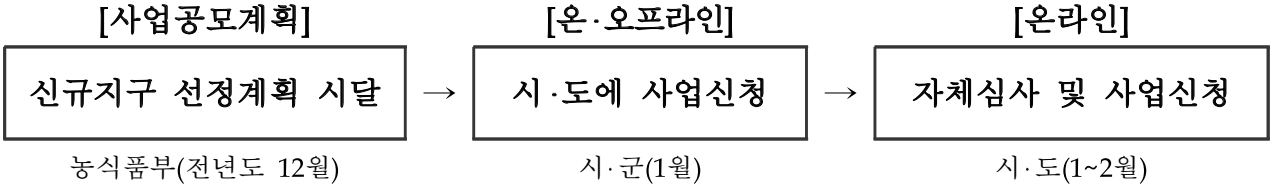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공모계획을 시달하고, 시·도는 시·군에 사업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 시·도는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시 자체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등에 따라 해당 지구를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신청 지구는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20.12월 현재 112개 시·군 210개 품목)에 사전 선정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신청계획서(이하 지구발전계획서)는 농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에 의거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 여건, 지구지정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내용(교육청·상공회의소·관광·농협·문화·외식·기업 등 사업간 연계계획과 계약재배 계획 의무포함) 등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작성

○ 시·군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사업추진단 구성

- 사업추진단은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의 기본구조 형태로 구성

  * 운영위원회는 시군 관련부서 및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관련기관, 협회 등의 관계자(인사)를 참여시켜 구성 (인원비율 : 행정70%, 민간30%)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가능하며, 공동인프라시설·장비(H/W)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해당 농촌융복합산업에 재투자하여 지역단위 사업의 지속적 선순환 구조 마련

  * 공동인프라시설은 필요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의 효율화 도모 가능

구 분	내 용
사업 추진단장	• 본 사업의 총 책임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겸임 가능) - 관련부서간 조율,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총괄하기위해 부단체장을 추진단장에 보임
운영 위원회 (10명내외)	• 사업 관련 의사결정 최고 기구 - 시군 관련부서 및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구계, 관련기관, 협회 등의 관계자(인사)를 참여시켜 구성 (인원비율 : 행정70%, 민간30%) * 해당 사업과 관련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이해관계자는 제외 -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각 분야별 인사로 구성 -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인사는 제외하고, 생산분야는 반드시 1명이상 포함
자문 위원회 (5명내외)	• 사업실행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자문기구 - 사업추진을 위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한 인사로 구성 - 각 사업 분야별 1인씩 선정 * 회계분야는 반드시 포함
실무 추진단 (8명내외)	• 사업참여자 중심으로 구성된 각 단위사업별 실행 기구로 실질적 사업시행 - 각 사업 분야(1차,2차,3차산업)별 연합회 관계자 2명씩 선정 - 자문위원 격의 인사는 참여할 수 없음
사무국 (3명내외)	• 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집행업무 등을 처리하기위한 기구로 통상 사업추진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 - 산업간 연계, 사업자 선정, 용역 체결, 예산 집행, 각종 회의 지원 등 - 사무국장, 사무원 등 2명 이하의 상근직원 운영 가능

* 필요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 사무국의 인원은 조정 가능

< 사업추진단 구성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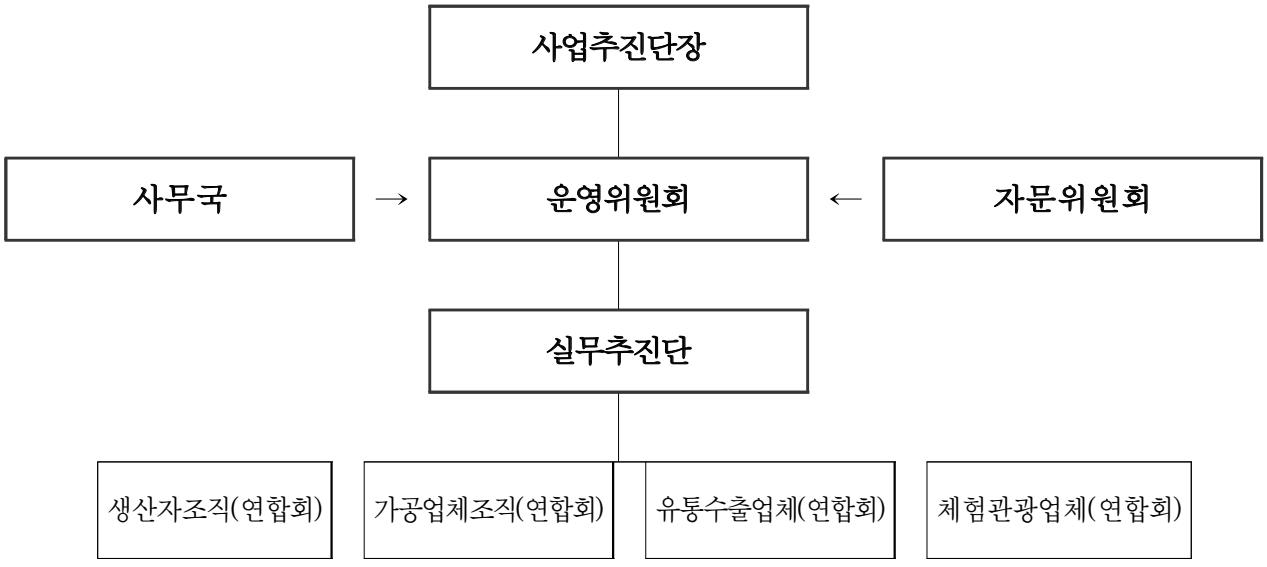

* 실무추진단에 참여하는 1·2·3차 산업주체는 각 산업주체별 연합회를 우선 구성하고 그 연합회의 대표격의 관계자가 참여

2. 사업선정단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서류심사(현장실사)	→	발표심사	→	선정결과 통보
중앙자문단(2~3월)		중앙자문단(2~3월)		농식품부(3월)

○ 농식품부는 농경제,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융복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융복합산업 중앙자문단(이하 '중앙자문단'이라 함) 내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시·도 신청지구에 대해 심사 실시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2개년 3억원 지원)'을 완료한 지역에 지구 선정시 가점(3점)을 부여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는 서류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발표심사 2단계로 진행

- 1차(서류심사) : 시·군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
- 2차(발표심사) : 시·군 관계자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농식품부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

3. 사업계획 수립단계

[지자체]		[지자체]		[농식품부]
지구발전계획서 보완	→	지구발전계획서 및 세부시행계획서 수립·완료	→	법적 지구지정
(3~5월)		(6~7월)		(7~12월)

○ 사업 선정 시·군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지구발전계획) 수정·보완

- 시·군은 농산업, 제조·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구 전담전문가(지역 Family Doctor, 이하 '지역FD'라 함)를 구성

  * 지역 FD 구성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추천하는 R&D 기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R&D 사업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추진

- 지역FD와 농식품부가 추천한 중앙자문단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지구발전계획서 수정·보완

< 자문회의 개최(예시) >

- 개최횟수 : 4~5월기간중, 시·군별 2회 실시
- 주　　관 : 시·군
- 장　　소 : 시·군 회의실
- 참 석 자 : 시·군 담당과장, 중앙자문단, 지역FD
  - 지역FD 참석자는 중앙자문단 전문분야(유통·제조·관광) 외 경영, 지역개발 등 전문가 참여(지역FD 참석자 자문 비용 등은 해당 시·군 부담)

- 시·군은 자문회의 내용 및 의견 반영결과 등을 포함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종 지구발전계획서를 확정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1개월내에 지구발전계획서에 기초하여 시·군에서 작성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후 승인

○ 농식품부와 사업계획 협의후 확정된 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36조 지정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을 추진

지구 발전계획수립	⇒	지정 신청	⇒	부처협의,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	지정·고시
시·도(시·군) (~6월)		시·도→농식품부 (7월)		농식품부, 시·도, 시·군 (7~10월)		농식품부 (11~12월)

- 지자체(시·도, 시·군)는 지정 신청서 및 발전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법 제32조 제1항 의제사항 관련 서류 제출)
-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 지구발전계획에 대해 주민,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조치하고 법 제32조 제1항의 의제사항 해당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요청
- 시·도는 지구발전계획를 공보에 공고하여 지역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은 시·군 및 해당 읍·면 등 공람장소에 발전계획 서류를 비치하여 주민열람(14일 이상) 후 의견서, 조치계획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주민·지역전문가 의견서 및 조치계획 등을 검토 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4. 사업시행 단계

❍ 보조사업비 집행 단계

- 국　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추진단
- 지방비 : 시·군(또는 시·도 → 시·군) → 사업추진단

  * 국비·지방비(자부담 포함) 모두 시·군 또는 사업추진단에서 직접 집행

❍ 경상보조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 사무국 인건비 : 통상 연봉기준 4대보험 포함 사무국장은 40백만원이하, 사무원은 20백만원이하 수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적정 결정
- 회의비, 자문료 : 시·군 지급기준에 준하여 결정
- 여비 : 지자체의 지방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 기타, 운영경비, 홍보, 교육, 세미나 개최비 등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5. 사후관리 단계

○ 사업 시행중인 지구의 계획적·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유도,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해 매분기별 서면 모니터링 실시 및 매년 2회 현장점검 실시

- 시·군은 분기말 기준(누계) 사업성과지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지침 준수여부 등을 붙임5 제출 양식에 따라 다음달 첫째주간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후 즉시 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증빙서류는 4/4분기 모니터링 결과 제출시 한번만 제출

- 농어촌공사는 시·도가 제출한 매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사업 시행 중인 지구에 대해 연 2회 (5월,10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개선계획에 대한 현지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6월, 11월)
- 농식품부(농어촌자원개발원)는 사업 시행중인 지구에 대해 연 1회(12월) 현장점검을 실시

○ 사업추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농어촌자원개발원)는 사업추진 중인 지구에 대해 중간평가(2년차 산업지구)와 최종평가(사업종료 산업지구)를 매년 2/4분기 중 실시

- 평가는 중앙자문단내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별도수립)

* 중간평가결과 미흡지구의 경우 지역FD 또는 중앙 자문단 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의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할 변경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컨설팅 비용은 지자체 부담)

** 최종평가결과 우수지구가 포함된 시도는 차년도 지구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지구가 포함된 시도는 차년도 지구사업 신청시 감점 부여

○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사업여건 변동, 참여주체 변동, 사업단구성원 등의 변경 또는 사업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시·군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변경내용을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원칙적으로 계획변경 승인 불가

- 다만, 각 지원분야별(공동인프라, 주체역량강화, 고부가치화) 간 사업비를 20%를 초과하여 변경시에는 시·도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시·도 및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발전계획서(양식)

Ⅰ. 사업개요

1. **명 칭** : *(지자체명 +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자원명 + 융복합산업지구)*
2. **목 적** :
3. **위 치** : *(해당 지자체내 위치도 첨부)*
4. **면 적** : *(㎢) (밀집도를 높이고 범위는 최소화)*
5. **기 간** : *(기본적으로 4년)*
6. **사업비** : *(발전계획 동안 투자할 재원 예정액)* * 본사업비+연계사업비*

Ⅱ.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현황

1. 지구 지정(예정)지 일반 현황

(해당지역의 위치, 환경, 인구현황, 농업현황 등 기술. 또한 해당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획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명기)

2. 지구 농촌융복합산업화 여건

① 융복합 자원의 현재 현황(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생산량, 종사자, 면적 등) 및 3년후, 5년후 장기적인 추계치도 함께 제시

② 지구 내 부존자원을 중심으로 한 2, 3차 융·복합 기초인프라의 조성 정도(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현황(업체·종사자·매출액) 등도 기술)

** 연계 가능한 농공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도 포함*

③ 지구 내 및 지구 인접지역 역사·문화 등 무형적 요소, 지리적 요소 등을 기술

④ 그동안 특화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실적 기술

⑤ 그동안 지구 내 및 지구 인접지역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 및 성과 기술(최근 5년간)

※ 지구 내 자원 등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별도 첨부

⑥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현황

⑦ 농촌융복합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농산물의 품질·수급관리, 생산조직화 등 현황

⑧ 기존 농촌융복합산업화 시설의 운영 현황

3. 지구지정의 필요성

(지역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SWOT 분석을 통해 명확히 진단하여 제시하고,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를 도모해야 하는 사유 기술)

4. 지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제반 기대효과를 기술하되, 특히 농업 생산자(지역농업) 측면의 기대효과는 반드시 포함)

Ⅲ. 사업계획

1. 개 요

가. 비전

나. 목표

(농촌융복합산업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구의 발전방향을 기술하고, 사업추진기간 이후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측정이 가능한 다양한 수치로 명시)

사업시행 前	사업시행 後

(목표와 함께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 시행 전·후의 모습 비교 제시)

다. 추진전략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기술)

라. 주요 사업계획

(지구발전계획 기간 동안의 주요사업만 기술)

<주요사업 개요>

주요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주체	비 고
ㅇ ㅇ ㅇ				* 주요사업명이 타부처 지원 또는 지자체 독자사업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를 명시

마.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기간(4년)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후의 성과지표를 기술, 즉 2가지(추진기간 내, 완료 후)로 나눠서 기술)

성과지표	'20년	사업기간				'25년	'29년
		'21년	'22년	'23년	'24년		
① 특화품목 관련 매출액(백만원)							
② 특화품목 관련 방문객(천명)							
③ 특화품목 관련 일자리(명)							
④ 특화품목 계약 재배율(%)							
⑤ 특화품목 생산농가 당 소득(천원)							
⑥ 특화품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수(개소)							
⑦ 기타 지표							

* 사업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기간(4년)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후의 성과

* 사업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기간(4년)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5년후의 성과지표를 기술하고, 목표치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표아래 자세히 작성

- 특화품목 관련 필수 성과지표 작성 기준

① 지구사업 내 1·2·3차 참여경영체의 총 연간 매출액

② 지구사업 내 1·2·3차 참여경영체의 총 연간 고용 일자리수(정규직 기준, 일용직의 경우 총 고용일수를 정규직으로 환산하여 반영 : 일용직 고용인원×고용일수/250일)

③ 지구사업내 1·2·3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체험,축제 등의 총 연간 방문객수

④ 지구사업내 2차 참여경영체의 지역 특화품목에 대한 계약재배율(지역특화농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받는 비율도 포함)

⑦ 기타지표는 선택 성과지표로 미작성 가능

2. 본사업 *(총사업비 30억원, 4년차사업, H/W 사업은 50%이내)*

가. 시행주체

나. 총사업비(연차별)

지원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	지방비	민간	
공동인프라	○○○ △△△																						
주체역량강화	△△△ ○○○																						
고부가가치화	△△△ ○○○																						
합계																							

□ 지원분야별 작성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 연차별 작성

(*세부사업중 R&D관련 전문성 및 실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계획서 상의 신상품·신기술 개발 등 R&D관련 세부사업은 미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를 하여 유사한 특허, 논문, 공개기술 등 선행 문헌 유무를 발전계획서상에 명시*)

< 동일·유사기술 정보제공 적용 예 >

▪ 구체적으로 제시된 제안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기술요소와 비교

- [구체적인 제안기술] 제안기술(고구마)→고구마 가공방법, 고구마 원료로 한 음료 제조 방법 등 구체적인 고구마를 활용하는 방법 구체적인 기술내용 제시 필요
- [선행기술] 특허문헌, 논문내용, 블로그 등에 공개된 기술, 노하우 등

< 21년 사업>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단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 세부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라. 계약재배 계획 *(농협, 생산자 연합회, 참여업체 등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계획)*

(2차산업경영체가 1차산업경영체와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 계약재배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마. 민·관 협력 산업간 연계 계획

<산업간 연계조직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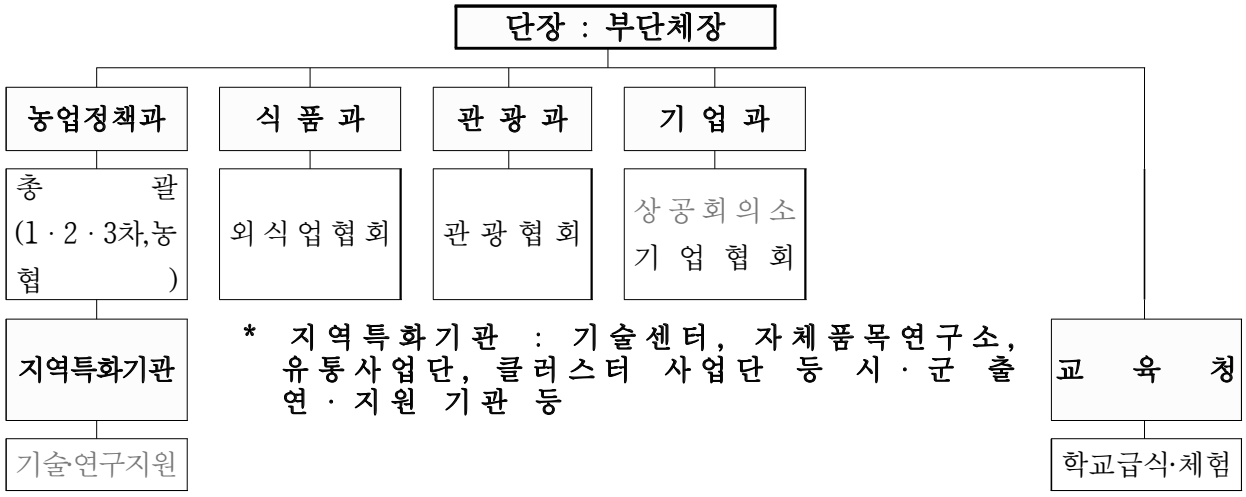

(총괄조직 및 부서간 업무분장 등 기술하고, 농업부서와 관광 및 식품, 기업지원 관련부서 참여,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회 등 역할 참여방안 포함)

3. 연계추진 사업 *(지구발전계획 기간 동안 농특재원 외로 추진할 사업)*

가. 시행주체

나. 총사업비(연차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 △△△																						
△△△ ○○○																						
△△△ ○○○																						

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 연차별 작성

< 21년 사업>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단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 세부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4.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방안

5.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를 통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확대 방안 포함*

6. 사업 추진 일정

Ⅳ.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단 구성(사업단장은 부단체장 보임)

<사업추진단(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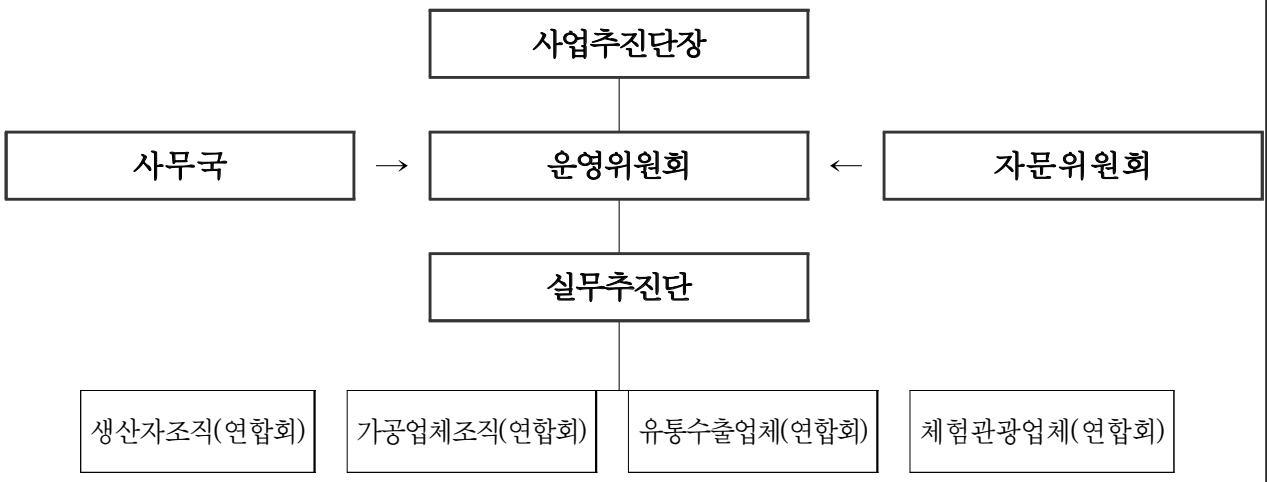

* 실무추진단에 참여하는 1·2·3차 산업주체는 각 산업주체별 연합회를 우선 구성하고 그 연합회의 대표격의 관계자가 참여

** 각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명시(참여인원, 참여자(소속,직책,이름,연락처 등) 등 포함)

2. 1·2·3차 산업주체(연합회)간 협력 협력 체계 구축방안

* 아래 사업에 참여하는 1차, 2차, 3차 산업주체 전체 현황내용도 포함 작성

연합회 명칭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체 성격 (개인,사단법인,농업법인, 영농법인 등)	비고
		직책	성명	주소	연락처		
1차 ( )							
2차 ( )							
3차 ( )							
계	00 개						

Ⅴ.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1. 성과 관리 방안

(성과지표(6개이상) 목표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 및 측정방법 제시)

2. 사후관리 방안

(예산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에 대한 자립화 및 사후운영 방안 등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특히 사업추진단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술할 것)

Ⅵ. 가점 근거자료

1. 특화품목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비율

(예시) 1·2·3차 참여경영체수 50개소중 인증사업자 10개소시 참여비율 20%

* 인증업체 참여 확약서 첨부

2.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추진현황

(사업추진 현황, 주체별 조직화, 역할 등 내용 기술)

3.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해당시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참여실적

* 향토산업, 자원복합, 지구사업, 네트워크사업 등

* 세부사업계획서는 동 지구발전계획이 실제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작성

붙임 2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 신청서(양식)

<table>
<tr><th colspan="6">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신청서</th></tr>
<tr><td colspan="3">지 정 목 적</td><td colspan="3">1~2줄 간단히 서술</td></tr>
<tr><td rowspan="3">지구개요</td><td colspan="2">명 칭</td><td colspan="3">○○시·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시군명 + 특화품목)</td></tr>
<tr><td colspan="2">위 치</td><td colspan="3">00도 00시·군 00면 00리, 00읍 00리</td></tr>
<tr><td colspan="2">면 적</td><td colspan="3">000㎢</td></tr>
<tr><td rowspan="7">지구현황</td><td rowspan="3">일반</td><td>인 구</td><td colspan="3">천명</td></tr>
<tr><td>토지이용</td><td colspan="3">000㎢ (임야 000, 논 00, 밭 00, 기타 00)</td></tr>
<tr><td>농 업</td><td colspan="3">농가수 000호, 농가인구 000명,</td></tr>
<tr><td rowspan="4">특화
품목
(○○)</td><td>생 산 액</td><td colspan="3">•(○○) 지구 / 전국 (억원)</td></tr>
<tr><td>재배면적</td><td>지구 / 전국 (㎢)</td><td>재배농가수</td><td>00호</td></tr>
<tr><td>제조업체</td><td>00개소</td><td>고용인원</td><td>00명</td></tr>
<tr><td>6차산업
인증자수</td><td>00명</td><td>지역특구
지정여부</td><td>O, X</td></tr>
<tr><td colspan="2">특화농공
단지</td><td>0개소</td><td>주산지여부</td><td>O, X</td></tr>
<tr><td rowspan="4">사업계획</td><td colspan="2">성과목표</td><td colspan="3">• 3개 대표 지표(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 총매출액 : ('00) 00억원→ ('00) 00 → ('00) 00
- 총일자리수 : ('00) 00명→ ('00) 00 → ('00) 00
- 총방문객수 : ('00) 00명→ ('00) 00 → ('00) 00
* 사업시행전년도 → 본사업준공 다음년도 → 완료후 5년경과년도</td></tr>
<tr><td colspan="2">주요 사업내용</td><td colspan="3">지원분야별로 각 3개이상 대표 사업내용(본사업, 연계사업 구분 불요)
•
•
•</td></tr>
<tr><td colspan="2">협력체계 구성</td><td colspan="3">사업단 구성 등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연계방안 1~2줄 기술</td></tr>
<tr><td colspan="2">투자계획</td><td colspan="3">본사업비 + 연계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고 00, 지방비 00, 민간 00)</td></tr>
<tr><td colspan="3">규제개선 및 특례 활용방안</td><td colspan="3">1~2개 대표 사항(제목)
- 기조치 또는 진행중사항, 향후 건의사항 등</td></tr>
<tr><td colspan="3">기타 특기사항</td><td colspan="3">지구 특성 등 중점 참고사항 기술(필요시)</td></tr>
</table>

붙임 3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지표 및 평가기준

□ 주요 개선 내용

○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지구발전계획 타당성 : △3점(40→37점)
- 지구지정 기대효과 : △2점(10→8점)
- 사업추진체계 : 5점(20→25점)
- 가점조정
  - 삭제 : 예산 증가 시·도 가점(1점), 지역관광·체험연계 가점(1점)
  - 조정 : 지역단위네트워크 완료지구 : 2점 (2→3점)
  - 추가 : 지원센터 지역단위 특화품목육성사업 참여 실적 존재시 : 1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농촌융복합 산업화 기반 (25점)	지구지정 필요성 (5점)	○ 지구 지정 이유, 필요성 제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지구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하여 제시
	사업지구 공간구성 적합성 *(10→5점)*	○ 사업지구의 공간적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기존 인프라 고려, 융복합이 가능한 구역 설정 정도 - 집적화 정도, 산업 주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가 가능한 지역인지 - 집적화·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면적이 최소화되어 있는지
	사업지구의 6차산업화 여건 (10점)	○ 농촌융복합산업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 기초인프라 정도, 집적화 정도, 융복합 가능성, 추진정책 및 성과제시 정도, 사회문화적·지리적 여건 구비 정도 - 농산물의 품질·수급관리, 생산조직화, 계약재배 정도 - 기존 자원현황 및 시설의 운영실태 조사의 충실성
	융복합 자원의 적절성 (5점)	○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존자원(품목, 기능)을 선정하였는가? - 지역자원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테마를 구성한 것은 아닌지
지구 발전계획의 타당성 (40→37점)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5→4점)	○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부합성 (5점)	○ 사업목표와 세부사업과의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본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화와의 부합성
	산업 연계 구체성·합리성 (7점)	○ 본사업의 산업 연계 계획이 충실하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산업연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 사업비 세부내역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며, 지방비 확보계획이 구체적인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5점)	- 본사업 및 연계사업의 재원확보 의지 및 가능성
	예산의 효과성 (8→7점)	○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전시성이 강하며 "나누어먹기식"은 아닌가 여부
	성과지표의 적정성 (5점)	○ 성과지표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제시되었으며, 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는가? ○ 목표치 설정이 충실하며 신빙성이 있는가?
	연계사업의 실효성 (5→4점)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사업을 적절히 설정하였으며, 연계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 연계사업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정도
지구지정 기대효과 (10→8점)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10→8점)	○ 지역주민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지역농가의 생산·매출증가에의 기여 정도 ○ 지역주민, 참여 경영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있는가? - 소득 증가, 고용창출효과, 방문객수의 증가효과 등 ○ 기업유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추진체계 (20→25점)	사업주체 역량 *(5→6점)*	○ 추진주체(기초지자체)의 책임성과 추진의지가 있는가? - 그동안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정책 추진 및 성과가 있는지, 노력도, 산업주체 양성 등 역량강화 정도
	추진체계의 적절성 *(10→12점)*	○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가 산업간 연계를 위해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 시·군 관련부서가 참여한 추진단이 시군 직속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민·관 협력체계가 갖춰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민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가능성) - 지자체내 농업, 관광, 기업유치 부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성 정도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절성 *(5→7점)*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시 기존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 등 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 제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측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종료 후 자립화 등 후속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청년 · 고령농 참여 (5→4점)	청년농 참여정도 (3점)	○ 청년농이 본 사업에 적절히 참여하는가? - 청년농 참여수, 전체 참여농가중 청년농 비율 정도 - 청년농 참여유도를 위한 추진정책 및 성과(가능성)
	고령농 참여정도 (2→1점)	○ 고령농이 본 사업에 적절히 참여하는가? - 고령농 참여수, 전체 참여농가중 고령농 비율 정도 - 고령농 참여유도를 위한 추진정책 및 성과(가능성)
가점 (5→6점)	가점 (5→6점)	○ 1·2·3차 참여경영체 인증자 비율 20% 이상(1점) ○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사업 완료지구 (3점)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해당시도 지역단위 특화품목 육성사업 참여실적 존재시 (1점)

붙임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절차

전년 12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계획 시달** - 사업추진방향 및 시행지침 수립 - 신규지구 선정계획 시달	농식품부 → 시·도
1~2월	▸**신규 사업지구 신청** - (시·군) 지구발전계획(안) 마련, 시·도에 사업신청 - (시·도) 자체 심사 및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지구 신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3월	▸**신규 사업지구 심사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중앙자문단 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1단계) 서면심사(현장실사) → (2단계) 발표심사	농식품부
3~6월	▸**지구발전계획서 보완·확정** - (시·군) 지구 전담전문가(지역FD) + 중앙자문단 참여, 자문회의 개최 → 사업계획 보완(안) 마련 - (시·도) 지구발전계획서 확정·보고 - (농식품부)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사항 등 검토, 시·군 발전계획(안) 협의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6~12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법적 지구지정 추진** - (시·군) 법적 지구지정 신청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발전계획 주민 열람·의견수렴 - (시·도) 지구발전계획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 (농식품부) 법적 지구지정계획 시달, 지구지정 및 고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6월이후	▸**사업시행** - (시·군) 사업추진단/지역 FD 구성·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시행·평가 관리 - (시·도) 필요시 세부시행계획 변경승인,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 시·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농식품부) 예산 편성 및 배정,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점검	시·군, 시·도, 농식품부

붙임 5 | **○○지구 ○○년 ○○분기(누계) 추진실적 보고 (양식)**

□ 지구명 및 사업기간 : 지구(00년 ~ 00년)

① 성과지표 달성실적

성과지표		사업기간				사업완료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① 특화품목 관련 매출액(백만원)	목표						-	-	-	
	실적									
② 특화품목 관련 방문객(천명)	목표						-	-	-	
	실적									
③ 특화품목 관련 일자리(명)	목표						-	-	-	
	실적									
④ 특화품목 계약 재배율(%)	목표						-	-	-	
	실적									
⑤ 특화품목 생산농가 당 소득(천원)	목표						-	-	-	
	실적									
⑥ 특화품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수(개소)	목표						-	-	-	
	실적									

○ 성과실적 산출 근거 및 증빙 서류

성과지표	산출근거	증빙서류
① 특화품목 관련 매출액(백만원)		
② 특화품목 관련 방문객(천명)		
③ 특화품목 관련 일자리(명)		
④ 특화품목 계약 재배율(%)		
⑤ 특화품목 생산농가 당 소득(천원)		
⑥ 특화품목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수(개소)		

② 예산집행실적

○ 예산 실집행 총괄 실적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00년 00분기말기준 교부된 예산				00년 00분기말기준 실집행 실적(누계)				실집행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A)	국비(B)	지방비	민간	계(C)	국비(D)	지방비	민간	C/A	D/B

○ 세부사업별 실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발전계획서)	계획(백만원)					00년 00분기말 실집행 실적(백만원)(누계)					실집행률 (%) B/A
			계(A)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계(B)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계												
H/W													
S/W													

③ 사업추진 계획·실적 및 조치계획

구분	세부사업명				추진 결과				
					정상	추진실적	지연	지연사유	지연시 향후조치계획
H/W		1차년	1/4						
			2/4						
			3/4						
			4/4						
		2차년	1/4						
			2/4						
			3/4						
			4/4						
		3차년	1/4						
			2/4						
			3/4						
			4/4						
		4차년	1/4						
			2/4						
			3/4						
			4/4						
S/W		1차년	1/4						
			2/4						
			3/4						
			4/4						
		2차년	1/4						
			2/4						
			3/4						
			4/4						
		3차년	1/4						
			2/4						
			3/4						
			4/4						
		4차년	1/4						
			2/4						
			3/4						
			4/4						

④ 지침 준수 여부

항목	준수내용	비고
① 사업단 구성 관련		
② 자부담 부담 관련		
③ 지원분야별 지원자금 사용용도 적정추진 여부		
④ 공동인프라시설 적정 관리		
⑤ 시도 현장점검 반기별 실시		
⑥ 기타		

붙임6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후보군 현황 ('20. 12월 현재)**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계	112	210			
부산·울산	2	2	• 부산(대저토마토) • 울산(배)		
경기	8	9	• 여주(쌀) • 화성(포도) • 김포(새싹인삼+가공)	• 이천(돼지,쌀밥) • 평택(쌀) • 파주(산머루)	• 양평(쌀가공식품) • 안성(쌀)
강원	13	30	• 원주(고구마,토종다래) • 동해(포도,찰옥수수) • 인제(오미자,곰취) • 횡성(더덕,한우) • 홍천(잣,인삼,한우)	• 평창(황태,한우,약콩,배추) • 양구(시래기) • 강릉(한과,감자,산채) • 태백(곰취)	• 영월(장류,곤드레,포도) • 정선(황기,사과) • 양양(산채,곶감,떡,버섯) • 화천(토마토)
충북	10	11	• 충주(당뇨 바이오) • 제천(약초) • 보은(대추) • 영동(포도)	• 증평(인삼) • 단양(아로니아) • 옥천(한우)	• 괴산(친환경잡곡, 버섯) • 청주(사슴) • 음성(들깨)
충남	12	21	• 태안(고추,화훼) • 예산(사과,쪽파) • 당진(쌀) • 공주(알밤,한우)	• 보령(돼지) • 서천(소곡주) • 논산(장류, 딸기) • 아산(쌀)	• 천안(호두과자) • 금산(인삼,깻잎,흑삼,약초) • 청양(구기자,맥문동,고추) • 부여(토마토)
전북	14	29	• 군산(흰찰쌀보리,주박짱아치) • 완주(로컬푸드) • 김제(로컬푸드, 쌀) • 순창(참두릅,장류,무·매실절임) • 고창(복분자)	• 익산(과채류,고구마,쌀,보리) • 정읍(귀리,구절초,수박,지황) • 장수(레드푸드) • 임실(치즈,로컬푸드) • 진안(로컬푸드,김치,돼지)	• 부안(양파,오디) • 전주(미나리) • 무주(천마) • 남원(고사리,팥)
전남	16	28	• 여수(갓,쑥) • 순천(야생차, 매실) • 나주(배,멜론) • 광양(매실) • 곡성(멜론,매실,토란) • 고흥(유자)	• 영광(쌀모시,찰보리) • 보성(녹차) • 장흥(한우,표고버섯) • 장성(컬러푸드,편백,사과) • 해남(밤호박,고구마)	• 영암(무화과) • 강진(맥주보리,장류) • 진도(울금,검정쌀) • 완도(흑염소) • 무안(고구마)
경북	17	36	• 경북(사과) • 김천(포도,자두) • 안동(사과,마,콩,생강) • 영주(인삼,사과) • 경산(대추, 복숭아) • 영천(포도,복숭아,마늘)	• 문경(사과,오미자,콩) • 의성(마늘,한우,자두,산수유) • 청송(사과) • 고령(딸기) • 청도(감(반시),미나리) • 성주(참외)	• 예천(사과,곤충,참깨) • 상주(쌀,오이,곶감,포도) • 봉화(로컬푸드) • 영양(고추) • 구미(감자)
경남	17	37	• 진주(딸기) • 함안(연근,참외) • 창녕(양파) • 통영(고구마,유자) • 양산(딸기,사과) • 남해(시금치,마늘)	• 합천(양파,밤) • 김해(단감,산딸기) • 산청(쌀,양잠,딸기) • 밀양(고추,사과, 깻잎, 딸기) • 함양(산양삼,여주,오미자) • 의령(망개떡)	• 거창(사과,산양삼) • 하동(매실,녹차,딸기,배) • 창원(단감,연근,화훼) • 거제(유자) • 고성(단감,쌀보리)
세종	1	2	• 세종(복숭아, 로컬푸드)		
제주	2	5	• 서귀포(감귤)	• 제주(맥주보리,청귤,블랙푸드,당근)	

6. 농촌융복합산업화 활성화 지원 사업

【담당자 박진아 ☎ 286-64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정명희 주무관 송민정	044-201-1584 044-201-1585

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① 인증사업자 심사 및 선정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은 상시 접수받아 심사 후 선정

  * 다만 지원센터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심사 실시

② 인증사업자 사업현황 및 사업실적을 DB 등록하고, 사후관리 강화

- **(관리내용)** 사업현황(시설규모, 생산제품 상세페이지, 시설 인증취득 등), 사업실적(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수 등)

- **(관리방법)**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사이트(www.6차산업.com) 내 구축된 성과관리시스템에 수시 또는 월 1회이상 현행화 추진(지원센터 수행)

  * 서비스 화면(www.6차산업.com/bpms)에 정보누락이 없도록 사업자 정보, 성과정보 등 관리 철저

  ** (등록) 인증사업자 등록(건별 등록), 인증사업자 일괄등록(엑셀양식 다운 후 작성 및 등록)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교육 및 인증제 홍보 등

① **(교육)**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사업자 및 인증사업자 교육, 순회설명회, 인증제 홍보 등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사업자 창업교육 및 스타트업 스쿨*,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및 서비스교육(필수)을 포함한 6차산업 관련 교육 실시

  * 특히,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지원정책, 성공전략, 우수사례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인증 사업자로 역할과 경영자로써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경영·서비스 교육 실시

- 인증 갱신기준, 절차 등 인증(갱신)제도 개정내용 설명회 추진
- 지원센터별로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인증사업자 소속감 제고 및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 정착 도모

② **(홍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및 인증제 관련 대국민 홍보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 사업수행방식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위탁

*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도에서 인근 광역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원업무 추진

❑ 사업비 규모(총사업비) : 40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2 사업 추진절차

❑ 사전홍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홍보 및 사전 설명회* 실시

* 인증제 안내 및 신규 인증/갱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 인증심사

○ 지원센터를 통한 인증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인증사업자 신청서 접수(상시접수) → 서면·현장 심사(상시 또는 분기별 1회 3,6,9,11월) → 인증추천 (지원센터 → 도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류 최종검토 및 결과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인증사업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 도 및 지원센터 → 인증사업자)

❑ 인증갱신 심사

○ 지원센터를 통한 인증갱신 신청 및 심사

- 인증사업자 인증갱신 신청서 접수 → 서면·현장 심사 및 결과보고 (지원센터 → 도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류 최종검토 및 결과보고(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농식품부·도/지원센터 → 인증사업자)

○ 인증사업자 갱신 및 통보(농식품부 → 도 및 지원센터 → 인증사업자)

※ 인증 갱신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운영요령' 별도 통보

❑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 홍보

○ 교육(집합 및 순회) 및 모니터링(실적 및 사업운영 모니터링)

- 예비사업자 창업교육 및 스타트업 스쿨 운영
-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및 서비스 교육(필수)
- 반기별 인증사업자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추진

* 특히, 인증사업 신청 시 인증조건 유지 및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점검

○ 지역별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등 우수 사업모델 발굴 및 홍보

3 기타사항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신규 인증/갱신 절차 안내, 인증심사,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원센터별 인증사업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사업계획서 이행상황 등 모니터링 실시

* 인증기준 : 대상주체, 사업장 입지, 주원료 사용비율, 2년간 평균매출액 등

❑ 각 지원센터별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단계별 교육 실시

○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스타트업 스쿨을 운영하고,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및 서비스교육 강화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6차산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안내

*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aT식품유통교육 등의 교육기관에서 매년 품목별, 단계별 6차산업 교육실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 등 해외연수 추진 예정

- 각 지원센터에서는 인증사업자 대상 해외연수 안내 및 연수인원 조사 협조

첨 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혜택

구 분	주 요 내 용
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지원 (이자율 2.0%) - 대출규모 : 3억원 ~ 3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선정 우대	• 인증사업자를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등 선정 우대 · (제조·가공)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지원, 산림가공시설 지원 등 · (식품·외식·유통) 찾아가는 양조장, 고부가식품산업 및 컨설팅 지원, 우수외식업지구, 농가맛집, 농가교육농장, 식품관련 R&D 등 · (관광) 체험휴양마을지원, 농촌테마공원 등 · (복합)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 지역단위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행복생활권연계협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 등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로확대 지원	• 대형마트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제품 및 브랜드 개발·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판로 확보 지원 - 제품 브랜드 개발 및 개선 지원 - 온라인 판매 지원(상세페이지 제작, 입점 등)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안테나숍 등 입점 지원
홍보 지원	• 인증사업자는 TV, 신문,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중점 홍보 - 월별 2~3개소씩 공중파, 종편 등을 통해 중점 홍보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및 홍보(1월~)

II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1 사업개요

❑ **목적** :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 상담 및 현장코칭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 유도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 · 법인, 농촌체험 휴양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 등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조항 예외 적용

- 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 **시행기관 : 도지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 **지원 분야**

분 야	지원 대상 분야
경 영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 술	○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 · 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 타	○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 **사업기간** : 모집공고일 ~ 12월까지(센터별 예산 소진 시까지)

❑ **상담·코칭기간** : 분야별 내용을 고려하여 상담 및 코칭기간 설정

* 상담 및 코칭사업 신청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기간을 조정 가능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공모 →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진행* → 사업결과 분석 및 정산 보고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 → 전문가 매칭 및 통보 → 자부담 입금(신청자) → 수행계획서 제출(전문위원) → 수행(전문위원) → 결과보고서 제출(전문위원) → 만족도조사·수행완료 점검 → 수임용 정산 → 수행결과 분석

❑ **사업비 규모(총사업비) : 368백만원**(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

* 사업비 규모는 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도 승인에 따라 집행

2 전문위원 POOL 구성 방법

❑ **전문가 풀 구성방법**

○ **(운영)** 각 지원센터별 현장코칭 전문위원(보육매니저포함)로 위촉되어 농촌융복합산업 포털사이트(www.6차산업.com)에 공개된 전문가 Pool 활용

※ 단,포털사이트 내 정보공개에 동의한 전문위원에 한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제

- 위촉 : 전년도 실적제출, 신규 전문위원 공모·추천(지원센터) → 실적평가, 자격요건 검토·선정(한국농어촌공사) → 6차산업 포털사이트에 게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해촉 : 전년도 실적 및 만족도 평점 60점 미만(한국농어촌공사)

* 보육매니저는 전문위원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에서 선정·추천하며 보육매니저 운영 관리는 현장코칭 전문위원과 동일

○ **(위원구성)** 경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굴을 위해 민간분야 전문가를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단체)를 위촉

- (신규위원) 공모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자격 요건 검토·선정

○ 전문위원 자격요건

전문위원 자격 요건

농촌융복합산업 보육매니저 및 현창코칭 전문가는 경영, 회계, 세무, IT, 유통, 상품개발, 식품개발, 디자인, 관광, 외식 및 브랜드개발, 인증, 제조가공 시설·설비 등의 관련분야에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1. 4년 대학을 졸업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능장,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농업마이스터,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
6. 전문자격증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등)을 보유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7. 매출액 30억원 이상 및 사업기간 15년 이상인 인증사업자 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증사업자 CEO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자

* 농식품부 개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3 현장코칭 세부 추진계획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세부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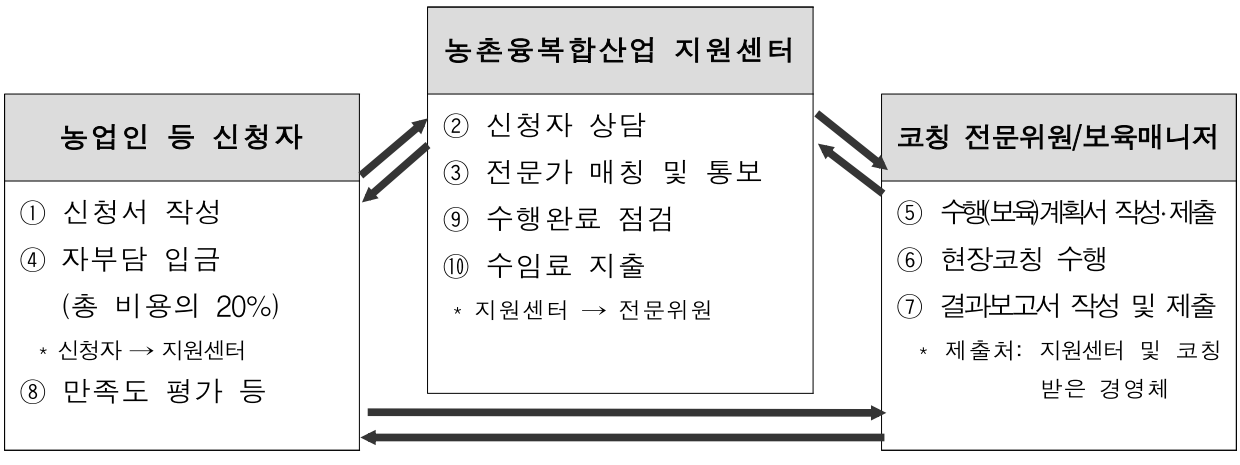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자 → 지원센터

○ 신청기한 : ’20년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 접수

* 지원센터 여건에 따라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활용 가능(사업비 내 예산 활용 가능)

❑ 상담 : 지원센터 → 신청자

○ 지원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유선상담 또는 현장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시 전문위원 매칭 추진

❑ 수행계획서 접수

○ 지원센터는 신청내용, 신청인과 상담내용 등을 전문위원에게 제공

○ 전문위원은 **현장코칭 수행(보육)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와 신청인에게 제출

* 방문시기, 코칭분야·범위 등에 대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작성

○ 전문위원의 수행(보육)계획서 제출은 협약으로 간주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수행

○ **(규격)**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수행은 횟수/월로 진행하되, 시간은 유형①②의 경우 회당 최소 2시간이상, 유형③은 월당 4시간 이상 원칙(이동시간 제외)

- 다만, 경영체와 전문위원이 합의하면 1회에 한해 보완코칭 가능

○ **(제한)** 유형① 단가 50만원의 경우에는 경영체당 최대 4회 / 유형②단가 300만원의 경우에는 경영체당 최대 2회 / 유형③ 월단가 100만원(월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 **(경영진단)** 경영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한 분야별 경쟁력 파악

* 보육매니저 상시컨설팅 시 경영진단 매뉴얼(서식5-1) 활용

❑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위원은 상담 및 코칭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서식 3)를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원센터와 경영체에 제출

* 수행결과 보고서 추가내용 보완 필요 시 1회에 한해서 지원센터 협의 하에 기간 연장 가능

○ 보육매니저는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월 1회, 지원센터와 경영체에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는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

❑ 완료점검 실시

○ 지원센터 담당자는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이 완료되면 수행결과의 적정성, 경영체의 만족도(서식 4) 등을 유선 또는 방문하여 점검

4 현장코칭 세부사업 일정

추진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시행지침 통보	2~3월	[농식품부→시도 및 지원센터]
⇩		
사업 공고	3월	[시도 및 지원센터] -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 활용 사업공고
⇩		
사업신청	연중	[신청자→지원센터] - 유선, 메일,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한 접수
⇩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추진	연중	[전문위원→신청자] - 전문가 매칭 후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추진
⇩		
모니터링	연중	[농식품부 또는 시도→지원센터] -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		
운영 결과 및 사업정산 보고	'21. 1월	[지원센터→시도→농식품부] - 연내 추진한 결과를 총괄 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비 정산 보고서 제출

5 기타사항

❑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 등 농촌융복합산업 취약농업인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낙후된 접경지역 시군의 신청자 우대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후관리 강화 및 사업성과 제고**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수행 전후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점검 철저 및 만족도 조사표 제출

- 각 지원센터는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완료 후 만족도조사표를 농식품부(농어촌공사)로 제출하고,
- 농어촌공사는 전문위원의 만족도를 6차산업 홈페이지에 등록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수행 이후 경영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 보육매니저 등 우수 코칭 전문위원 선정・홍보

Ⅲ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안테나숍, 판매플랫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촉진**

- 소비자 왕래가 많은 지역에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향토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및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품개발에 반영하는 마케팅 활동 거점으로 활용

  * 안테나숍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 및 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까지(1년)

○ 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규모(총사업비) : 447.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수행방식 :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 또는 민간위탁

  * 지원센터,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위탁받은 기관은 부분 재위탁 가능

❑ 자금의 사용용도

○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차료·인테리어, 상품 발굴 품평회, 전문가 수당, 출장비, 홍보비, 민간위탁수수료 등

2 사업추진 절차 및 위탁기관의 임무

❑ 추진절차

※ 기 설치된 안테나숍을 연장운영 등 여건에 따라 아래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추진일정)	(담당기관)
사업계획 수립·시달	(2~3월)	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설치장소 섭외 등)	(3월)	지자체
↓		
안테나숍 설치	(4월)	지자체
↓		
제품 발굴 및 전시·판매	(5~12월)	지자체
↓		
운영결과 및 정산보고	(익년. 1월)	지자체

❑ 위탁기관의 임무

○ 위탁기관은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테나숍 설치 장소 발굴

* 안테나숍은 '6차산업 안테나숍 운영매뉴얼'을 적용한 매장 인테리어 구성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안테나숍 운영매뉴얼 다운로드 : www.6차산업.com/자료실)

○ 유통품평회를 개최하여 상품 발굴 및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한 평가분석

○ 선정된 상품 디자인, 포장재, 포장단위 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코칭 연계 지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코칭 지원사업으로 연계 가능)

○ 판매실적과 소비자 반응이 좋은 품목은 중앙에 추천하여 중앙단위 판촉사업 참여

○ 입점제품 뿐만 아니라 안테나숍 홍보를 통해 운영 내실화 도모

○ 정기적으로 소비자 반응도, 판매실적,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경영체에 피드백하고 안테나숍 이전 검토

3 세부 추진계획

❑ 안테나숍 운영방법

○ 온오프라인 활용이 가능하나, 시도별 온라인 몰(mall)이 구축·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안테나숍 별도 구축 불가

❑ 안테나숍 설치장소(입지)

> • **지자체별, 전국단위별 안테나숍 2트랙으로 운영**
> ① 지자체가 주관하여 지역 내 설치한 안테나숍 + ② 수도권에 설치한 안테나숍(전국제품 입점)

○ **(지역내)** 지역 내 소비자 접점 활용을 위해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도심지가 있는 지역에 상시(연중) 또는 일정기간(2~3개월) 설치 가능(수도권 내 입지는 배제)

* 가급적 대형마트 내 Shop-in-shop 형태로 설치 운영하되, 지역 내 관광지 등에 설치 가능

○ **(지역외)** 수도권(서울지역) 내 전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설치

* (설치/운영방법) 농식품부와 협의 후 입지를 결정하여 추진

❑ 사업수행 방식

○ 지자체 산하기관에 직접 위탁하거나 공모를 통해 안테나숍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민간기관에 위탁

- **(직접위탁 시)** 지원센터 또는 경제진흥원 등 관련업무 전문 산하기관에 별도 공모 없이 위탁 가능함

* 단, 운영계획 및 상품발굴건수, 매출목표액 등 성과목표 제시 필요

- **(공모 시)** 안테나숍 프로그램 운영, 상품발굴 건수, 매출 목표액, 방문객 수 등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선정 심사를 거쳐 적격한 위탁기관 선정

* 선정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 달성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재계약 추진

**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5% 내외) 외 일반이윤 보장

❑ 취급품목 및 제품선정

<제품발굴 및 결과 피드백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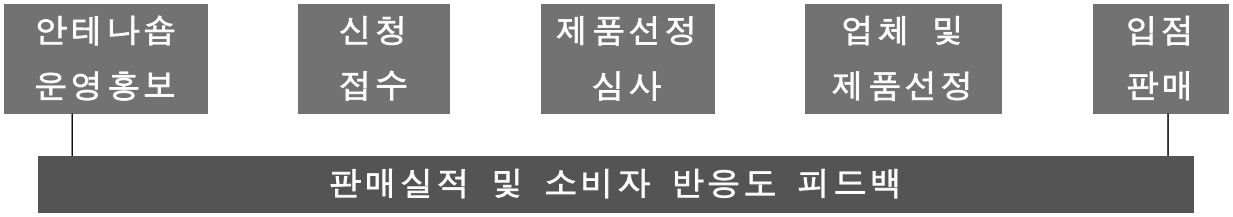

○ 인증사업자 생산제품,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진청·산림청 지원 사업 등으로 생산된 제품

○ 유통업체 MD, 유통전문가, 컨설턴트 등 중진공·지역농협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품평회를 거쳐 안테나숍 입점 업체 및 제품 선정

* 제품 선정·입점 :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착된 제품(QR 등)은 특별 선정·입점 혜택 부여

○ 정기적으로 입점업체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업체 퇴출, 신규업체 진입이라는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선의의 경쟁 유도

○ 판매실적, 소비자 반응도 조사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체에 피드백하여 제품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판매실적과 소비자 반응이 우수한 제품은 중앙단위 품평회 및 판촉전에 추천

❑ 고객관리

○ 우호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테마가 있는 다양한 판촉행사(시식 포함)를 개최하여 소비자 판매활성화

- 고객관리카드 등을 작성하여 방문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정보, 판촉행사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메일링 서비스

❑ 발굴제품에 대한 입점 및 중앙단위 판촉전 추전

○ 위탁 운영기관은 안테나숍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중진공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스토리텔링, HIT500플라자, 코레일 유통망 등에 입점 지원

○ 판매제품(제품재원), 업체정보, 판매경로 등을 작성하여 지자체 및 농식품부에 제출

❑ 안테나숍 입점제품 구성 다양화 및 안테나숍과 연계한 대형유통매장 내 문화강좌 연계

○ 원물·가공·체험이 결합된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의미와 가치를 소비자에게 홍보

○ 안테나숍 입점 제품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모객 확대

○ 안테나숍과 연계한 대형유통매장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연계하는 등 제품구매와 융복합산업 이미지를 연계한 소비층의 관심도 제고

* (예) 안테나숍 입점 제품을 활용한 요리강좌, 안테나숍 입점 기업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강좌 등

4 기타사항

❑ 안테나숍 기능 강화하여 사업성과 제고

○ 안테나숍 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의 점포 및 부실운영 점포는 폐점 추진

○ 일정기간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부진제품 퇴출, 신규제품 진입으로 경영체의 참여 확대 및 정보 제공

*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 등의 취약농업인의 6차산업 우수제품의 안테나숍 입점 기회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공통된 브랜드아이덴티티(BI) 구현하고, 매장관리를 매뉴얼화하여 진열대, 판매원 등 매장관리 강화

❑ 소비자 반응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제품 입점 지원하고, 부진제품은 제품개선 사업 지원

○ 우수제품은 aT의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부진제품은 실용화재단의 제품 브랜드 개발 및 실용화 사업 연계 추진

Ⅳ 농촌융복합산업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에 대한 대형마트 등에 기획판촉전을 개최하여 유통업체에게 상생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는 판로 및 홍보의 기회 제공

- 경영체가 융복합산업을 통해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매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사업 활성화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음

○ 소비시장에 우수제품을 알리고 시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력이 큰 대형마트를 활용한 지속적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

-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통해 제품 홍보 효과 극대화 및 경영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

판매플랫폼과 안테나숍과 차이점

◇ 판매 플랫폼은 대형마트에서 우수제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고 기획판매전 형태로 운영(지역내외에서 가능, 수도권도 가능)

◇ 안테나숍은 지역내 소비자 접점 활용을 위해 소비자 왕래가 잦은 대형마트 등에 설치하고, 제품 발굴, 입점 및 판매, 상품의 시장성 조사,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상시적 또는 일정기간(2~3개월) 운영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까지(1년)

○ 시행주체 : 도지사

❑ 자금의 사용용도

○ 판매플랫폼 설명회, 제품 발굴, 판매대·냉장고 등 임차 및 판매장 설치, 대행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안테나숍과 연계한 판촉행사로 운영 가능하나, 수도권 등 도시권 내 시즌판촉이 필요할 경우 활용 권고

❑ 사업수행 방식

○ 판매플랫폼 사업은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모를 통해 전문 벤더를 통한 위탁 수행방식도 가능

2 사업 추진 절차

사업내용	(추진일정)	(담당기관)
사업계획 수립·시달	(2~3월)	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대행사 공모 및 선정)	(3월)	지자체
↓		
제품발굴(2회) (품평회 개최)	(4월)	지자체
↓		
기획판매전 개최(3회 이상) *행사기간 : 4~15일이내	(5~12월)	지자체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익년 1월)	지자체

3 세부 추진계획

❑ 판촉장소 및 행사기간

○ 판촉전은 지역내외(수도권 포함) 대형마트, 홈쇼핑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단, 지역축제의 경우 대형축제 1회에 한함

○ 행사기간은 주말을 포함해서 4일(목~일) 또는 15일 범위 내에서 개최하되, 시기별 · 지역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단, 홈쇼핑의 경우 행사기간 1일 가능하며,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판매제품 및 제품발굴

○ **(판매제품)** 인증사업자 생산제품,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복합산업화사업, 농진청·산림청 지원으로 생산된 제품

*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착된 제품(QR 등)은 우선 선정 가능

※ 식품과 비식품 포함, 융복합산업화 제품과 연관된 원물 판매 가능

○ **(제품발굴)** 유통업체 MD, 유통전문가, 컨설턴트, 중진공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품평회'를 거쳐 우수제품 선정

※ 판매실적과 소비자 반응도가 높은 제품은 중앙단위 품평회 및 판촉전에 추천

4 기타사항

❑ 우수제품에 대해 연휴기간과 연계한 특별판매행사 추진

○ 명절, 계절별 여행주간, 휴가철 등 연휴기간과 연계한 특판행사 진행 및 판촉홍보 실시

❑ 우수제품의 국내외 주요 온라인몰에 런칭 및 판촉을 지원하여 내수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추진

* 온라인몰(예시) : 국내(eaT마트, a마켓, Naver, a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 CJ오쇼핑, 티몬, 위메프, 이지웰 등), 해외(웨이줌, 동북아실코로드, 상해훈춘 등)

○ aT의 수출사업과 연계한 해외 안테나숍, B2B 또는 O2O매장 등에 입점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해외 온라인몰, 박람회 참가 등 해외 판촉지원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진행

7.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

【담당자 박진아 ☎ 286-643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2. 기본 방향

❑ 지역 가공용 농산물 생산실정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업계-식품기업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 제고**

❑ 농업계-식품기업 간 **연계 촉진에 필요한 항목 및 성과관리 지원**을 통해 농업-기업 연계의 **실질적 성과 제고** 및 **확산 도모**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50\%}$, 도비 $300^{50\%}$)

* '21년 전국 사업비 : 4,200백만원(국비 2,100, 지방비 2,100)
* '20년 전남도 사업비 : 260백만원(국비 130, 도비 130)

❑ 사업내용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 하는 생산자단체에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지역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 사업 설명회, 수요 발굴을 위한 농업-기업 간 상담회,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 관리, 사례 발굴, 실적점검 등 연계 강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식품산업연구센터에 업무 위탁하여 수행

4. 사업 추진방식

<table>
<tr><td>사업계획 확정·통지</td><td>‘20.12월</td><td>농식품부 → 지자체
* 지자체별 사업위탁기관 선정(‘20.12)</td></tr>
<tr><td>⇓</td><td></td><td></td></tr>
<tr><td>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수립</td><td>‘21.1~2월</td><td>지자체
* 세부사업계획(붙임 1) 농식품부 보고(2월)</td></tr>
<tr><td>⇓</td><td></td><td></td></tr>
<tr><td>사업추진</td><td>‘21.2~12월</td><td>지자체</td></tr>
<tr><td>⇓</td><td></td><td></td></tr>
<tr><td>사업 추진실태 점검</td><td>‘21.3~12월</td><td>농식품부 → 지자체·사업대상자
지자체 → 사업대상자
<table><tr><th>점검주체</th><th>점검주기</th><th>대상</th></tr><tr><td>농식품부</td><td>반기별 1회 이상</td><td>부진 시·도, 사업대상자</td></tr><tr><td>지자체</td><td>반기별 1회 이상</td><td>사업대상자 전체</td></tr></table>* 점검결과(붙임 2) 농식품부 보고</td></tr>
<tr><td>⇓</td><td></td><td></td></tr>
<tr><td>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td><td>‘22.1월</td><td>지자체</td></tr>
<tr><td>⇓</td><td></td><td></td></tr>
<tr><td>사업 결과 보고</td><td>‘22.1월</td><td>지자체 → 농식품부</td></tr>
</table>

5. 사업 추진체계

담당기관	담 당 기 능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사업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 ○ 성과관리(현장점검 · 모니터링) 및 사업비 결산 ○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인센티브 발굴 등 대외 협력
도·센터(시·군)	○ 지자체별 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 사후관리(현장점검 ·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Ⅱ 사업 주요 내용

1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나. 사업 내용

❑ 운영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예산액 :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추진방안

○ (계획수립) 생산자단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식품·외식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외식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외식업체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기업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지원 가능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기준 고려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교육 및 컨설팅** : 매뉴얼 보급,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위탁관리 등의 비용

② **품질관리** : 인증 수수료, 안전성검사,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

* 시범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③ **영농환경 개선** :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 재배지역 환경 정리, 농약·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의 비용

④ **장비·시설 임차** : 농산물·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싸일로 등의 시설과 파종·경작·방제·수확·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⑤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체험활동 개최 등 식품업체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자본적 경비(장비 구입 등)는 지원 불가하며, 공동시설·장비의 단기 소모성 품목 정비는 가능. 시범포 조성 목적 이외의 생산요소(종자·비료 등) 구입은 지원 불가

○ (예산지원)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고 40%, 도비 40%, 자부담 20%**

② **지원한도** :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10백만원** 이내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

2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30백만원** 이내

4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는 국비와 도비만 포함한 금액임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 중단·환수

* 생산자단체와 식품업체가 2019년도 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서에 따른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생산자단체 귀책 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 목	내역	지급기준	비 고
기술습득	강사비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개발 및 보급비	실비	실용적 재배기술·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선진지 견학비	실비	국내 우수사례 견학 * 국외 견학은 지원 배제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비, 검사비 등	실비	농산물 품질 제고
	시범포 조성	실비	품목(품종) 테스트
영농환경 개선	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	실비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
시설장비 임차	임차비	실비	농산물 생산·수확·보관·운송 등
전문기관 위탁	위탁 수행비	실비	재배·병해충 관리 위탁
행 사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2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지자체)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업체 지원

○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중소 식품업체의 신제품 개발, 안전성 검사, 제품홍보 등 지원

나. 사업 내용

❑ 운영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예산액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 주요내용 : ①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수요 조사, 마케팅 등의 판촉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②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제품의 판매를 늘릴 수 있는 홍보활동 지원 등

❑ 추진방안

○ (계획수립) 식품업체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

○ (대상선정)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업체 대상 사업 공모 및 심사(신청서는 붙임3 참조)

* 식품업체(단순 유통분야는 제외)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지원대상 요건 >

① 참여 규모 : 5농가 이상

② 계약 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업체, 생산자단체-제3자(지역농협 등)-식품업체

③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④ 지원 배제 : 유사사업(들녘경영체육성,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계된 생산자단체가 지원받는 경우(중복지원 방지)

*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속지원 가능

○ (선정기준) ①연계의 효과성(30%), ②연계의 지속성(30%), ③사업계획의 적절성(20%) ④향후 파급효과(2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할 사항 >

① 연계의 효과성 :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효과를 평가

② 연계의 지속성 :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

③ 계획의 적절성 :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

④ 파급효과 :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하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최종 선정 이전에 시설, 인력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

○ 지원범위

① **신제품 개발**(필수항목) : 안전성·성분 검사 및 인증 수수료 등의 비용

* 외부 전문기관·업체를 통한 위탁수행 가능

② **판촉·홍보** : 신제품의 시장 조사, 시식행사, 마케팅 및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원재료 금액 또는 중량 기준) 이상 사용한 기존 제품의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 기존 제품은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지원

③ **시설·장비 임차** :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장비·저장시설 등을 임차하는 비용

④ **기타** : 협의회, 간담회, 소비자 체험활동 개최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

※ 생산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

○ (예산지원) 실비 지원(50% 자부담)

① **예산부담** : 사업비 기준 **국비 25%, 도비 25%, 자부담 50%**

②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국비 및 도비)

* 지원 금액은 실소요 경비의 50%이며 총 사업비가 4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 (이행실적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실적점검 항목 >

① 참여 농가수 ② 농산물 거래량 및 금액 ③ 예산지원 항목의 성과 등

①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예산지원 중단·환수

* 농가와 식품업체가 2020년도 농산물 조달을 위해 계약서에 따른 계약재배를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기업측 귀책사유인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② 근거자료 제출 :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지원 배제

다. 예산집행 기준

항 목	내 역	지급기준	비 고
신제품 개발	검사수수료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제한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원료비는 지원 배제
판촉·홍보	판촉비 홍보비 ※ 사업비의 50% 이내에서만 집행 가능	실비	(신제품) 시장성 테스트, 판촉, 홍보
			(기존제품) 지역(광역지자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금액·중량 중 선택 가능)한 기존 상품의 홍보 *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장재·홍보물 등에 스티커·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임차비	실비	계약재배 농산물의 운송 및 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
소통	행사비	실비	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

3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별 농업생산 여건에 맞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으로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를 유도

○ 지역에서의 농업-기업 연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벤치마킹

❑ 농업-기업 간 협력수요 발굴 및 계약재배를 통한 연계 강화 지원

○ 농업-기업 연계 추진을 위한 지자체 세부계획 수립

○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농업계-식품업체 만남의 장 제공

❑ 성과창출을 위한 관련부서 참여 등 관리 시스템 마련

○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실적점검 등 구체적 성과 도출

나. 사업운영 계획

❑ 운영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예 산 액 : 전체 사업비(국비+도비)의 20% 이내

❑ 운영기관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주요내용 : 설명회·간담회·상담회 개최, 지원대상 선정 및 실적 점검·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업범위

○ (계획수립)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범위

① **협의회 운영** : 농업·식품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 사업계획 심의, 대상자 선정 심사 등 주요 사업 심의·의결

② **설명회** : 사업 설명회·상담회·간담회 등 개최

*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타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 가능

** 공모 이전 또는 공모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③ **공모·심사** :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고 협의회에서 심사

* 응모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적합한 단체 추천 가능

협의회에서 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 이전 현장을 반드시 확인

④ **이행점검** : 실적점검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⑤ **사례발굴·확산** : 우수 협력사례 발굴 및 확산

* 장기 계약재배를 통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운영 등 농업-식품업체의 연계 사례로 농업계·기업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 중심

⑥ **기타** : 농업계-식품업체 연계 및 촉진에 필요한 활동 지원

○ (성과관리)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위탁비는 전체 사업비(국비+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예산집행 기준

항목	내역	지급기준	비고
성과관리	사례 발굴·확산	실비	우수사례 조사 및 확산(경진대회 컨설팅비)
	협의회 운영	지자체 정산 기준 준용	사업계획 심의, 사업자 선정 등 사업 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
	공모 설명회 등 행사	실비	수요 발굴을 위한 공개 모집 및 설명회·간담회·상담회 등 개최
	실적점검	실비	현황점검 및 개선,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
	기타 연계 촉진	실비	농업-식품기업 연계에 필요한 활동
	위탁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농업-기업 연계 강화 사업의 전체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Ⅲ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

1. 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21년 농업-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 수립, 시·도 통지(’20.12월)

지 자 체

❑ 위탁기관 및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사업계획(붙임 1) 수립·제출(’21.1~2월)

○ 생산자단체 및 기업계 예산 지원의 적정성 검토(상시)

* 관련 부서, 전문가,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식품업체 중 어느 한쪽으로 과다편중되지 않도록 해야함

2.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국고 보조금 교부(’21. 1월)

지 자 체

❑ 위탁기관,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교부(’21. 1. ~ 2월)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3. 이행점검 및 완료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식품산업연구센터),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농업-기업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계, 기업계 의견수렴 병행

○ 지자체별 **사업결과 보고서 검토 및 정산**('21.1월)

지 자 체

❑ **사업대상자 점검 및 관리**(상시)

○ 자체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붙임 2) 작성, 농식품부 제출(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21.1월)

4.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공무원) 인센티브 부여**('21.12월)

○ **평가항목**

- 우수사례 발굴 건수(성과지표)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2건 이상 제출

○ **(평가절차)**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농식품부 자체 집계(9월)

○ **(환류)** '22년 국고보조금 차등 배정(10월)

* 관내 농가수, 식품기업 수, 평가결과 반영

○ **(기타)** 사업목적외 사용 적발 시 국고 환수 조치, 성과지표 미달성 시 장관표창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세부사업계획 보고 서식** * '21. 2월까지 농식품부 제출

□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합 계	국 비	도 비	자부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 항목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합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 계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00개소)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00개소)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				
…				
…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				
사례발굴 및 확산				
협의회 운영				
성과관리 및 이행점검				
설명회 등 행사				
위탁비				

□ 대상별 사업비 편성

(단위 : 천원)

단체명(기업명)	국비	도비	자부담	계
합계				

붙임 2 점검결과 보고 서식 * 반기별 1회 이상 농식품부 제출

(단위: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생산자 단체 지원					
기업 지원					
성과 관리					
계					

붙임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

<table>
<tr><td>신청구분</td><td colspan="6">□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td></tr>
<tr><td rowspan="9">생산자
단체</td><td>단체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설립일</td><td colspan="2"></td><td>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사무실</td><td></td><td>팩스</td><td colspan="2"></td></tr>
<tr><td>핸드폰</td><td></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실무자</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주요품목</td><td colspan="2"></td><td>매출액</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참여농가수</td><td colspan="2"></td><td>계약재배</td><td colspan="2">(ha)</td></tr>
<tr><td rowspan="4">식품기업</td><td>업체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실무자</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주요상품</td><td colspan="2"></td><td>매출액</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rowspan="8">사업계획</td><td>주요내용</td><td colspan="6">○
○
○</td></tr>
<tr><td rowspan="7">세부
사업내역</td><td>세부사업명</td><td colspan="5"></td></tr>
<tr><td></td><td>계</td><td>국비</td><td>시도비</td><td>자부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중복지원여부</td><td colspan="5">농림축산식품부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 □ 해당없음 / □해당</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0000000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3. 소속농가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계약재배 약정서 등)

[사업대상자용]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

2. 사업개요

○ 단 체 명 :

○ 취급품목 :

○ 참여농가 : 000명 / 총 농가수 : 000명

○ 계약재배 : _____ha / 총 재배면적 :_____ha

○ 계약재배 매출액 : _____(백만원) / 총 매출액 : _____(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00. 00 ~ 2021. 12. 31

○ 사 업 비 : 천원(국비 000천원, 도비 000천원, 자부담 000천원)

○자부담 조달계획 및 예산확보 증빙서

◦ 자부담 통장내역

3.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추진계획

○ 과거 추진실적

구 분		생산자단체명	식품기업명	참여농가수	거래량	거래액
원물 공급	품목명				톤	백만원
	품목명				톤	백만원
MOU체결 여부		□ 여		□ 부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차별화 전략

○

○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장기 추진계획

○

○

4. 세부사업계획

< 생산자단체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기술습득						
농산물품질관리						
영농환경경개선						
시설장비임차						
전문기관위탁						
행사						

< 기업용 >

항목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산출기초
		계	국비	도비	자부담	
합계						
신제품개발						
홍보						
농산물 운송 및 저장						
소통						

○ ( ) 세부사업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 ) 세부사업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5. 성과목표

○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한 성과목표

구 분	기존 성과		성과 목표(향후 3개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참여농가수(호)					
계약재배면적(ha)					
계약물량(톤)					
계약금액(백만원)					

6. 기대효과

[참여농가 명단]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참여농가 명단

연번	성명	주소(읍면동 기재)	계약재배면적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4 사업계획 관련 Q&A

기업지원 사업계획에 '신제품 개발'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 네,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은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포함하지 않고 **기업의 홍보만 지원하는 것**은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제품 개발 항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만** 홍보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아니오,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을 다양화**

② 제품의 맛과 영양을 차별화하기 위한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지원 제외**

③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제품 개발**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식품업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아니오,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동 사업의 취지는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다만, 유통업체라도 계약재배 농축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이후 판매·유통하는 경우(일부 로컬푸드협동조합 등)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나 별도의 법인으로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계성을 인정하는지?

□ 네, 연계성이 인정됩니다.

○ 단,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의 구성원이 동일**하며, 해당 법인 간에만 계약재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작황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 지원액의 3배 이상 거래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

□ 아닙니다, **계약단가와 계약당시 거래예상 물량**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상 **계약단가×거래예상량(계약면적×평년단수)이 지원금액의 3배를 넘으면**, 실제 거래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

□ 아니오, 제한이 있습니다.

○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비용이 다르므로 생산요소 구매비용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품목과 면적에 상응하도록 적정량의 생산요소를 구입** 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의도로 과도하게 구입할 경우,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지원배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8.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담당자 박진아 ☎ 286-6432】

1. 사업목적

○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농업인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유도

***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지원)**

2.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균특이양 $300^{50\%}$, 시군비 $60^{10\%}$, 자담 $240^{40\%}$)

- 경영체당 지원한도 : 100백만원(균특이양 50, 시군비 10, 자담 40)

○ 사 업 량 : 7개소('21년 사업대상자 선정완료)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분야 : 2·3차 산업에 대한 S/W분야, H/W분야

- 1×2차형 :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1×3차형 : 2차 산업(제조·가공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S/W분야, H/W분야

- (S/W)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H/W)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3.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 *** 2020년 10월말 기준**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50%이상을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연접 시·군 포함) 생산된 농산물 사용 원칙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등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①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공모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② 시설 형태의 보조금을 보조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영체

* 매출액 : 재무제표 확인원(대표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국세청 홈택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을 제출받아서 확인

③「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향토산업 등 2, 3차 산업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중복산업으로 신청 불가**

4.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시 사유 첨부

5.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 (서류심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7인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서류 심사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예정건수의 2배수 이상 선정, 다만 응모건수가 적어 2배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2배수기준 미적용
- (현장심사) 제출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
  - 사업신청인과 면담,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수준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대상자 확정) 1차(70점)와 2차 평가점수(30점)를 합산, 최종 순위 결정

6. 사업시행

①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담당기관	담 당 기 능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 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빙자료(최근 2년간), 통장 사본(자부담 확보 확인용), 등기부 등본(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용)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
시·군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군 자체심의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하여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 받으면 사업시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를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도에 제출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도	○ 사업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 ○ 도 공모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②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담당기관	담 당 기 능
도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확인(모니터링/ 서식 2) ○ 정산결과 취합
시·군	○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계획,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제출(모니터링/ 서식 2) ○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결과와 추진실적 제출
사업대상자	○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서식 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경영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농촌융복합 산업인증번호</td><td></td><td rowspan="4">연락처</td><td>자 택</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직 위</td><td></td><td>직 장</td><td></td></tr>
<tr><td>주 소
(사업장 자택)</td><td colspan="5">우편번호 :</td><td>핸드폰</td><td></td></tr>
<tr><td>설 립 일</td><td colspan="5">년 월 일</td><td>이메일</td><td></td></tr>
<tr><td colspan="2">경영체의 형태</td><td colspan="7">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td></tr>
<tr><td colspan="2">경영체의 융복합 산업화 형태</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5">사업신청내용</td><td>농장
(상세주소)</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사업비</td><td rowspan="2">사업명</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지방이양재원(천원)</td><td rowspan="2">시군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과거지원내역</td><td></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사업비</td><td rowspan="2">사업명</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지방이양재원(천원)</td><td rowspan="2">시군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1부(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4.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자부담 확보 증빙 1부.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문서로 작성하고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대표자 H/P		**농촌융복합산업 인증번호**	(인증일 :)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8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생산(원물) 백만원
			가 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 거 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18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 계	톤(100%)	톤(%)	톤(1%)	톤(1%)

☐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주 생산품

제품 사진					
제품명	착한양파				
주원료	양파(무안)				
연판매액	5천만원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시설 리모델링, 홍보 및 판촉 등 추가 작성

☐ 자금 세부집행계획

세부 내역사업	금 액(천원)
합 계	

* 견적서 별첨(비교 견적도 포함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담에 포함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참고자료]

서류 및 현장 심사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체성 (10)	- 사업내용의 구체성·타당성	10	10	8	6	4	2
	정책과의 부합성 (10)	-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0	10	8	6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 (10)	-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0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 경영체의 경영 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정도	10	10	8	6	4	2
	자립화 가능성 (10)	-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목표치 측정의 구체성 (10)	-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기여도 (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 기여도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농촌융복합 산업 발전 기여도 (10)	-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 복합농장 조성을 통해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10	8	6	4	2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합계			100					

서식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제출 서식(모니터링)

□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천원(균특 , 시군비 , 자담)

○ 사업내용 :

□ 추진상황

○

○

○

○

○

○

○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	집행잔액	집행예정액	불용예상액

□ 문제점 및 대책

○

□ 향후계획

○

○

9.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담당자 박진아 ☎ 286-64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정명희 주무관 송민정	044-201-1584 044-201-1585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차 장 한지수	02-2080-758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2. 지원대상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1년	2021년
융 자	300	150	150	계속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5.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대출**(농협은행→농업인)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체단체 포함

3. 지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를 제외한 일반 가공업체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취급은 사업대상자(대출자)가 희망하는 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지점) 또는 지역조합

* 농협은행 이외 금융기관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농식품부와 약정 미체결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토지구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토지구입 사용용도: 농촌융복합시설(2·3차산업)을 운용하기 위한 용도로, 1차 원물 생산을 위한 토지구입은 해당하지 않음

예시 : ① 현 사업장 시설확장을 위해 건축 신축이 가능한 인근 토지 매입의 경우
② 기존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③ 타 소유시설물 구입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 지원형태: 융자 100%(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총 사업비 100%(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소요자금 100%(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7.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

- 사업대상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부동산 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부동산), 공정률 증명자료(시설) 등 객관적 자료

❍ 사업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소요자금 범위를 결정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액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사전대출
- 잔여대출금 실행 전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대로 투입되었는지 확인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완료 전 대출규모: 대출금 30% 범위(운영자금 70%)이내 실 소요액

Ⅲ 사업시행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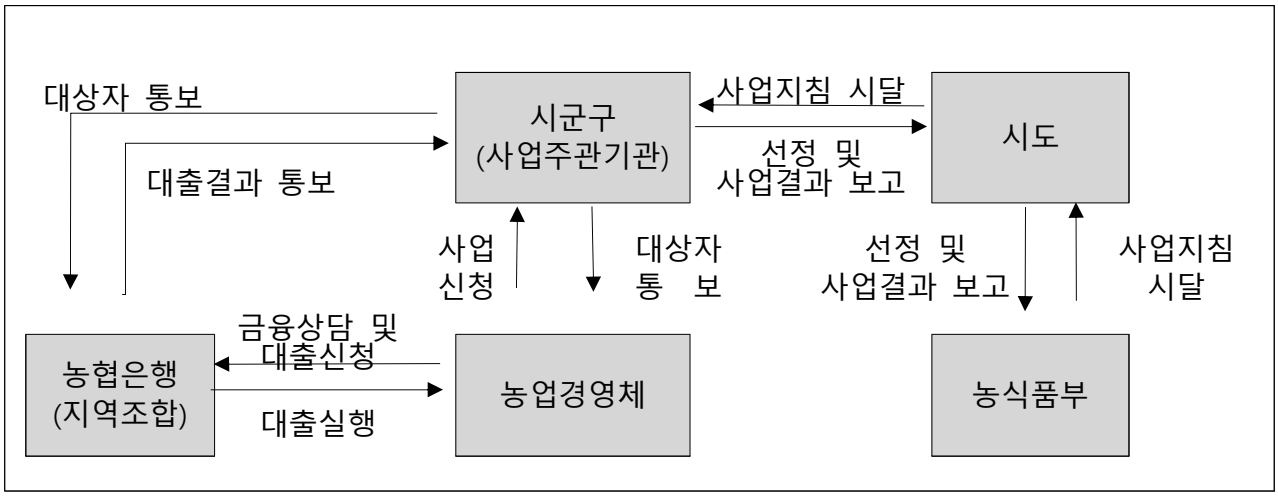

* 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연초에는 전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2. 사업신청 단계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자체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사업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안내

○ 사업대상자

- 연중 신청(다만, 대출 연장을 고려하여 연말에는 대출 자제)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부서에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각 1부

* 사업 신청 전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3. 사업자 선정 단계

○ 지자체(시·군·구)

- 사업신청인이 농협에서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했는지 확인, 미이행 시 사전 금융상담 안내

- 신청인의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여부,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심사(서류·현장)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심사는 공정성을 확보하되,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자체 자율
  * 사업계획서 심사표는〈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되 일부 변경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신청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별지 제5호)

4. 대출 실행단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당해연도 12.31일(대출마감시간)까지 대출

○ 부득이하게 12.31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에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를 제출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 연장기간 내 대출 가능
- 익년 6월말까지 1회 연장 가능, 연장 자금 중 사업완료 후 행정절차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체되는 경우 12월말까지 재연장
  * 시·군·구는 사업현장 확인 후 연장신청 검토의견서(별지 제8호)를 연장신청서와 함께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취합하여 1.4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연도 중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익년도로 이월하여 지원액 확정 및 대출실행 가능
  * 연도 중 지원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출연장 신청만 가능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에 정책 합치여부, 시설설치 제한여부, 인·허가 사항, 지원제한 여부, 보조금 중복여부 등 사전 확인

○ 시설물이 완공되면 대출취급기관 또는 시·군·구는 현지 확인 후 지원

5.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대출자금 상환까지 매년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영실태조사 실시, 사업계획 이외 타용도 사용 수시 확인
  *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 회수 통보

6. 행정사항

❍ 시·도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및 대출금 지원현황,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 현황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6호)

* 시·군·구는 반기 익월 5일까지 시·도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 요청 시 해당 시·군·구에 자료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성 별	□ 여성 □ 남성				
경영체 등의 형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기타				
경영체의 6차산업 유형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취득 유무		□ 유(인증번호 :) / □ 무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사업신청내용	사업예정지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한글문서로 작성,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 표 전 화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생산(원물)	백만원
			가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자가생산,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자가생산,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 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20년 기준)

(단위 :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a+b+c)	자가생산(a)	계약재배(b)		농협 매입(c)	
			지 역	타 지역	지 역	타 지역
합계	톤(100%)	톤(%)	톤(%)	톤(%)	톤(%)	톤(%)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현황

○ 농촌융복합산업 추진현황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부지확보계획(건축공사)이 있는 경우는 별도 추가 작성

□ 소요자금

구분		항목(내역)	금액 (백만원)	사전대출		자금 투입시기
				신청 여부	사유	
소요금액	시설자금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 이후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					
	합계					
조달계획		자체자금				
		금융기관 조달				
		합계				

※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자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자체조달이 가능한 금액과, 동 사업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기타 자금조달 방법으로 나눠서 작성

※ 운영자금 중 대출 실행 전 실적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어려운 경우, 사전대출 희망란에 "√"표시 후 사전대출 사유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신청사유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대상자 여부 및 동 자금 사용가능 금액(사업범위) 설정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별지 제3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심사표(안)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명)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25	
경영체의 사업추진역량	경영체의 조직, 재무구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보유정도 평가	20	
사업화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사업 내용이 자금지원을 통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 내실화 등으로 연계 가능성	25	
투자계획의 적절성	세부사업별 투자규모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투자계획의 구체화 포함 * 운영자금 중 사전대출신청 금액이 있는 경우, 사유 적정여부 등 포함	20	
기대효과	사업계획서 전반을 평가할 때 사업종료 후 기대되는 효과	10	
가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5	
총 점 (100점 만점+가점 5)			

□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총 사업비			실적확인금액
	계	융자금	자부담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자금,*				
총 계				

※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위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자금을 사용코자 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　　장(직인)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양식(지자체→대출취급기관)

시도	시군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자금용도[1]	소요금액[2] (천원)	자금한도[3] (천원)	대출 희망지점	사업 계획서 사본[4]	대상자 선정일 (연월일)

※ 본 선경결과는 지자체에서 융자금 신청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지점에 송부

<작성요령>

1. 자금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로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 작성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세부시설 병기
2. 소요금액 : 자금이 필요한 총 소요금액
3. 자금한도 : 지자체에서 소요금액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출가능액으로 결정한 한도금액. 단, 금융권의 실대출한도 금액 아님
4. 사업계획서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지점에 사업계획서 사본 송부

※ 사업실적확인 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청구용 또는 영수용), 견적서, 계약서 등 첨부한 서류명시(단, 단가, 수량 등이 포함되어 산출금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필첨)

<별지 제6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양식(지자체→농식품부)

시도	시군 (담당자 / 연락처 병기)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자금용도[1]	지자체 승인한도[2] (천원)	대상자 선정일[3]	대출취급 기관[4]	농협 대출액 (천원)	대출일 (연월일)

※ 본 선경결과는 지자체에서 융자금 신청자가 대출을 희망하는 지점에 송부

<작성요령>

1. 자금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로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 작성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세부시설 병기
2. 승인한도액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승인한 금액
3. 대상자 선정일 :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보일
4. 대출취급기관 : 세부적 지점명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연장신청서(사업대상자 작성용)

사업대상자	시도/시군			연락처	자 택	
	경영체 등의 명칭				직 장	
	성 명		직 위		핸드폰	
	주 소 (사업장·자택)	우편번호 :			이메일	

신청내용	사업대상자 선정일	0000.00.00.	사업기간	0000.00.00. ~0000.00.00.	신청금액 (통보금액, 원)	
	자금 사용용도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	□ 연장일자(사업완료일자) : 0000년 00월 00일까지 □ 연장사유 ○ _ ○ _				

위와 같이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대상자로, 승인받은 대출실행을 다음 연도로 연장하여 신청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연장신청 검토의견서(시·군·구 작성용)

<table>
<tr><td rowspan="5">사업대상자</td><td>경영체 등의 명칭</td><td colspan="3"></td><td>대표자명</td><td colspan="2"></td></tr>
<tr><td>주 소
(사업장·자택)</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사업대상자 선정일</td><td>0000.00.00.</td><td>사업기간</td><td>0000.00.00.
~0000.00.00.</td><td>신청금액
(통보금액, 원)</td><td colspan="2"></td></tr>
<tr><td>자금 사용용도</td><td colspan="6"></td></tr>
<tr><td>연장기간 및 연장사유</td><td colspan="6">□ 연장일자(사업완료일자) : 0000년 00월 00일까지
□ 연장사유 :
○
-
○
-</td></tr>
<tr><td rowspan="3">시군구 검토의견</td><td>현장방문자</td><td colspan="3">소속 :
직위 :
성명 :</td><td>방문일자</td><td colspan="2">0000.00.00.</td></tr>
<tr><td>사업 추진현황</td><td colspan="6">□
○
-
□
○
-
※ 필요시 관련 사진 첨부</td></tr>
<tr><td>검토의견</td><td colspan="6">□ 연장 필요성
○
-
○
-
○
-
□ 종합의견
○
-
○
-
○
-</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0.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지원사업

【담당자 박진아 ☎ 286-64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사무관 김방연	044-201-1586

1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의 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유도하여 공동사업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사업단의 단기적 매출액 향상 보다는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조직화, 참여업체 역량제고 등**을 통한 **장기적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 유도**

❑ 조직화 정도, 가공·유통·체험·관광 기반, 품목별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완전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화 조직으로 육성**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의 조직화가 진전된 지역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육성 지원**

3) **지원근거 :** 「농촌융복합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제26조(홍보 및 교육) 등

4) **사업개요**

❑ **지원 지구수** : 14개소(계속 7, 신규 7)

* 2021년 예산 1,050백만원(계속 525, 신규 525)

❑ **지원기간** : **2년간**(1차년 : 2차년 = 50% : 50%)

❑ **지원규모**(총사업비) : **지구당 30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가능하고,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참여업체가 사업목적상 필요할 경우 총사업비와 별도로 자금투입 가능)

❑ 사업시행기관 : 시·도 및 시·군

❑ 주요 지원사업

지원분야	지원내용
① 사업단 자립화	○ 사업단의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 - 지역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네트워크 추진체계 연구 및 컨설팅, 1·2·3차 연계 및 활성화 모델 개발 등
② 참여자 역량강화	○ 사업단 주관 및 참여업체의 사업추진 역량강화 지원사업 - 연구회운영,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자문,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해외 선진지 견학은 제외)* 등 * 견학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함
③ 시장조사 및 정보 수집 지원	○ 공통품목 및 타깃시장에 대한 소비자트렌드 조사 및 시장조사 · 분석 등
④ 신제품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 사업단의 2,3차 산업과 연계성강화를 위한 품질관리메뉴얼 등 품질관리시스템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 1차 생산물 품질관리(재배기술, 종자개량 등)를 위한 지원사업은 제외 ○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 비용 등 * 시제품은 실용화 가능한 연구개발성과품에 한해서 제작하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 구입비는 제외 ○ 참여자간 연계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관광연계 프로그램개발, 농촌관광축제 운영 등
⑤ 공동마케팅 및 홍보	○ 온·오프라인 공동마케팅 - 판로확보, 소비자 대상 기획판매전, 임차료(시설·차량등), 인건비,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 임차료는 총사업비의 일정 범위(20%) 내에서 가능 • 임차 건물의 용도는 제품·서비스의 전시·판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인근건물의 임차료 수준과 비교하여 적절하여야 함 • 1차 농산물과 제품의 운송과 체험마을 투어버스 차량 임차료로 활용 가능 • 인건비는 직원 상시고용은 불허, 판매요원의 경우 임시적 고용의 경우에만 인정 ○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분야	지원내용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
지원제외	○ 개별 경영체에서 사용하는 상시적 인건비 및 기계장비 등 하드웨어 구입비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경우 * 다만, 사업목적에 맞는 현장 공동판매 등에 필요한 소규모의 시설·장비는 자부담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조금 지원사업, 중소식품기업 협력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

※ 위 지원대상사업 이외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 가능

2 지원 대상 및 절차

1) 사업대상자 : 특화품목 생산단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 **지역에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사업신청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특화품목 후보군('20.12월 현재 112개 시·군 208개 품목)에 사전 선정되어 있어야 함

❑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아래 요건을 갖춘 지자체

* (지원 요건) ①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또는 로컬푸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 ②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2) 지원요건 : 특화품목 생산단체가 주관업체가 되어 1차,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연합하여 사업단을 구성

❑ **특화품목 생산단체 성격**

○ 1차 품목 생산단체의 경우 : 지역 특화품목의 **참여 농가수**(30농가 이상 참여) 또는 **생산물량**(시군 내 생산량의 15% 이상)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어야 함

○ 2차품목 생산단체의 경우 :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 실적과 법인의 **운영 실적이 총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의 경우에도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준하여 적용

○ 특화품목 생산단체(주관업체)가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 네트워크 사업단 형태

○ 특화품목 생산단체(주관업체)가 주도하여 1차, 2차, 3차 산업분야의 주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구성

* 공동규약 내에 사업단 참여기관 이외에 지원기관(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포함 가능

- 사업단은 사업을 주관하는 특화품목 생산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판매·농촌체험관광 등(3차)을 전담하는 주체와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모화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들녘별경영체 등)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야 함

** 사업단은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원칙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구성체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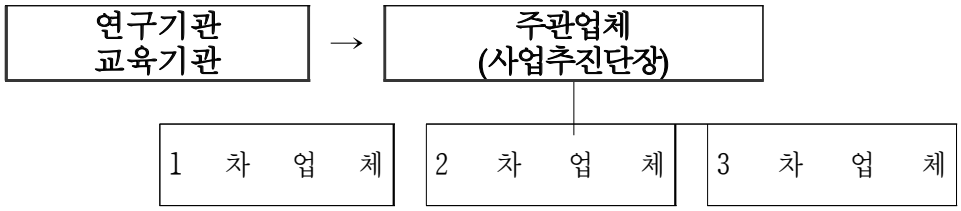

* 주관업체 대표가 사업추진단장 겸임 가능

○ 2차, 3차 주체와의 연계는 농식품의 판매 증진,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2차 또는 3차 주체와 연계사유가 명확해야 함

*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단 구성체계 및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등을 명시

3) 사업 추진체계

구 분	담당기관	담당업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공모계획수립,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	⇅	
사업시행기관	시 · 도	○ 사업지침 공지 및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추진현황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사업비 교부 및 지급 - (시·도) 시·군에 사업비 교부 - (시·군) 사업단에 사업비 지급 ○ 정산 및 결과 보고
	⇅	
	시·군	
⇅	⇅	
사업 수행조직 (사업대상자)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 공모에 의해 선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 사업수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제출 ○ 사업실적 및 성과 제출

4) 추진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사업 공모계획 통보('21.1월, 농식품부) → 공모기간('21.1.31.까지, 사업대상자 → 시·군→ 시·도→ 농식품부) →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20.2.28.까지,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 사업시행('21.3~'21.12월, 사업대상자) →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반기별 1회 이상, 시·군/시·도,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 정산(해당 회계연도 12월말, 사업대상자 → 시·군/시·도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3 신규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7개소) 선정방법

1)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2021.1.21.(목) 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계획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의 구성 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등을 포함

❑ **(지자체)** 해당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포함)를 검토후 **2021.1.27.(수)까지 해당 시·도에 제출하고, 해당 시·도는 2021.1.29.(금)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사전 실무검토 후 검토의견을 함께 제출**

- 실무검토기관 : 시 · 군 농촌융복합산업 담당부서
- 실무검토사항 : 사업추진요령에 의한 요건 적합 여부, 타사업 중복투자 여부, 농식품부 정책 부합 여부 등

* 해당 시·도에서도 필요시 '사전 실무검토' 후 의견제출 가능

※ 실무검토 의견은 신규 사업지구 선정 시 「전문심사단」의 심사 및 평가 자료로 활용

2) 신규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선정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심사절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발표 포함)심사 **2단계로 진행**

<1차>	<2차>
서류심사	**현장실사(발표포함)**
【선정건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예정건수의 1.5배수 이내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30점으로 환산	**【선정건수】**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산정방법】** 100점 만점으로 채점 ⇒ 70점으로 환산

【최종점수 산정방법】 1차 점수 30% + 2차 점수 70% + 가점 10점

❑ **(심사방법) 민간 전문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발표포함) 실시

○ **(서류심사)**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현장심사)** 서류심사에 통과한 사업단에 한해 심사위원(3명 이상)이 현장(발표* 포함)을 방문하여 현장검증 및 평가

- 서면심사위원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출한 서류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

* 발표는 주간업체 대표(또는 사업단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전문심사단 구성)** 대학교수, 연구원, 유통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농경제·산업, 제조·가공, 경영·마케팅, 관광,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

* 사업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사단 구성인원 조정 가능

○ 전체 심사위원의 1/2은 농식품부의 중앙FD 중에서 선정 고려

❑ **(신규 사업단 선정)**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단 중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평가점수(30점)와 2차 평가점수(70점)**에 **가점(10점)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결정

○ **최종 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순위 결정**

* 다만, 최종선발된 사업단이 선정대상 사업단수보다 적을 경우 최종평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적용 가능

3) 심사기준

❑ 사업추진체계 및 수행주체(40점),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25점), 사업비조달 및 자부담 분담계획(15점), 성과창출 가능성(20점)

* 서류심사 평가표는 <별첨 1>

❑ (가점 : 10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참여(1~2점), 농협 참여(1~3점), 소농·고령농·여성농·청년농 참여비율(1점), 사업단의 사단법인화(4점)

* 가점 평가표는 <별첨 2>

4 사업시행

1)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구 분	주 요 역 할
사업 대상자 (주관업체)	○ 사업대상자는 **사업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시·군 → 시·도 →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네트워크 **공동사업계획, 협약서, 자부담 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의 각종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고, ○ 사업내용의 변경 시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군→시도(필요시 농식품부)승인을 득한 후 추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으면 사업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검토 후 시·도에 제출**
시·도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시·군을 통해 제출한 사업세부시행계획서에 대해 **검토 후 농식품부에 즉시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시군의 검토를 거쳐 변경 요청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와 함께 농식품부로 변경 승인 요청** - 다만, 사업계획서의 경미(총 사업비의 20% 이내 등)한 변경사항은 시·도에서 그 내용을 검토·승인하고, **변경사항과 검토의견서를 농식품부로 통보**

2)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구 분	주 요 역 할
시·도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내역이 적정한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에 자금 교부
시·군	○ 시·군에서는 사업세부시행계획, 공동자금 조달여부,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여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주관업체)**에 보조금 집행** - 시·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의 세부내역을 검토 후 사업목적과 자금집행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주관업체)에 조정을 요구하여야 함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의 사업이 종료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결과와 사업추진실적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사업 대상자 (주관업체)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주관업체)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단 명의의 보조금 통장 즉시 개설** ○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보조금 집행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자금배정은 농식품부에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로 보내는지, 자금배정을 받는 기관은 언제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하는지, 지급조건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등을 간략히 기술

5 사후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1) 모니터링 실시

❏ (**사업대상자**)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주관업체)은 아래의 포함사항을 참조하여 사업실적자**료를 작성**하여 반기별(**5월말과 11월까지**)**로 지자체**(시·군 → 시·도)**에 제출**

< 사업실적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사업비 집행실적(세부내역)
2. 성과지표 목표치(매출액, 사업단 내의 원물 소비량·율 및 가공품 판매량·율 등) 대비 실적
   * 실적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 제시
3. 사업실적(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각종 사업추진 실적)
4. 추진요령 준수여부 등 종합적 자체평가 의견 등

❏ (**시·군 및 시·도**)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주관업체)이 제출한 사업실적 자료와 현장점검실적을 바탕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시군→시도**)하여 해당년도 12월 10일까지 **농식품부**(**농어촌공사포함**)**에 제출**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는 시도에세 제출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적평가를 실시후 그 결과를 12.20일까지 농식품에 즉시 보고

○ 평가결과 하위 30%사업단의 경우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현장점검 실시하고 필요시 2년차 사업비 최대20%이내 감액

○ 2년차 종합적 평가결과 상위10%의 사업단이 속한 시도는 향후 동사업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시 가점(5점)부여 및 하위 10%의 사업단이 속한 시도는 향후 동사업과 산업지구 선정시 감점(5점)부여

2) 현장점검 실시

❑ 시·군 및 시·도는 **반기별 1회 이상(6월초,12월초)** 사업추진 상황을 현장점검하여야 함

○ 점검항목 : 사업세부시행계획의 이행 여부, 자금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추진요령 준수여부 등

*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단독 또는 시·군 및 시·도 합동으로 부진사업단에 대해 연 1회(12월～1월) 이상 현장 점검 실시

< 제 재 사 항 >

◇ 현장점검결과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하고, 부당 집행한 경우에도 환수 조치 (세부사항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함

** 지원금 환수 사업대상자는 동 사업에 한하여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Ⅲ 행정사항

❑ **(시·도)**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신규 사업신청서를 2021.1.29.(금)까지 우리부로 제출**

○ 사업신청서 상의 관련 제출서류를 확인·검토하고, **시·군의 실무검토의견서와 함께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21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지구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

○ 본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신규사업단(7개소) 선정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을 우리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 별지 제1호 서식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신청서(안)

<table>
<tr><td>사업명</td><td colspan="6">*전체사업으로 총괄하는 사업명칭을 기재</td></tr>
<tr><td rowspan="2">시군구</td><td>시군구명</td><td colspan="2"></td><td>기관장명</td><td colspan="2"></td></tr>
<tr><td>사업부서명</td><td colspan="2"></td><td>담당자(연락처)</td><td colspan="2">(　　)</td></tr>
<tr><td rowspan="5">수행조직 및 참여주체</td><td>네트워크명</td><td colspan="2"></td><td>단장</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인원</td><td colspan="5">총　　명(남성　　명, 여성　　명)</td></tr>
<tr><td>1차
(생산)</td><td></td><td>2차
(제조가공)</td><td></td><td>3차
(관광,유통 등)</td><td></td></tr>
<tr><td colspan="5"></td></tr>
<tr><td rowspan="4">특화품목 생산단체
(주관업체)</td><td>소　속</td><td colspan="2"></td><td>직　위</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전　화</td><td colspan="2"></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팩　스</td><td colspan="2"></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실　무
책임자</td><td>소　속</td><td colspan="2"></td><td>직　위</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전　화</td><td colspan="2"></td><td>휴대전화</td><td colspan="2"></td></tr>
<tr><td>팩　스</td><td colspan="2"></td><td>이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사업비
(천원)</td><td>합　계</td><td colspan="5"></td></tr>
<tr><td>국　비</td><td colspan="5"></td></tr>
<tr><td>지방비</td><td colspan="5"></td></tr>
<tr><td>자부담</td><td colspan="5">* 국고, 지방비 신청액 매칭</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6">20　. 　. 　. ~ 20　. 　. 　. (2년간)</td></tr>
</table>

본인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네트워크 사업단장 또는 주관업체 대표 :　　(인)

붙임 1. 사업계획 요약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부담금 입금 증빙서류(공동명의 통장사본 등) 1부
4. 업무협약서 1부
5. 네트워크 구축 주관업체의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계획 요약서(안)

사업명		
네트워크 구성		
사업개요	추진목적	*총괄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기술*
	추진 필요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기술*
	주요 사업내용	*총괄 사업내용을 기술*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과 세부사업 간의 관계 등을 기술)*
세부사업	세부사업 1	*세부사업내용 등을 기술*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소요예산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사업				
	××사업				

< 별지 제3호 서식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안)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 전체사업을 대표하는 사업명을 기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 특성 및 산업기반,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작성*
3. 네트워크 구축 주관업체(특화품목생산단체) 및 참여업체 소개
   가. 수행조직
   나. 사업단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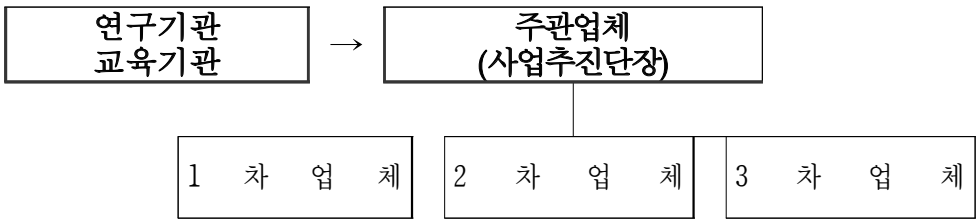

* 사업단은 사단법인화가 원칙

다. 사업단 참여 구성원 간 역할분담

구분	사업 유형	참여 업체명	주 요 역 할
주관 업체	1차 2차		○
참여 업체	1차		○
			○
	2차		○
			○
			○
	3차		○
			○
			○

* 참여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작성(참여인원, 참여업체(소속,직책,이름,연락처 등) 등 포함)
* 참여 구성원에게는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등의 직접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

<참고>

구분	사업 유형	참여 업체명	참여업체별 참여농가수						비고
			합계	일반농	고령농	청년농	여성농	소농	
주관 업체									
참여 업체									
계									

※ 참여업체 또는 참여업체의 계약재배 농가 기준으로 고령농(경영주 65세 이상 농가),

청년농(경영주 40세 미만 농가), 여성농(여성 경영주 농가수), 소농(경영주 경작규모 1ha 미만 농가), 일반농(청년농·고령농·여성농·소농에 미포함 농가)

Ⅱ. 사업지표 및 추진전략

1. 사업지표 * 총괄 및 연차별 목표치 제시

사업지표				'18~'20	사 업 목 표	
대항목	소항목			년평균	'21년	'22년
1주관업체 실적	①매출액	농산물 매출액(억원)				
		제조•가공품 매출액(억원)				
	②일자리 창출	고용인원수				
2참여업체 실적	①매출액	농산물 매출액(억원)				
		제조•가공품 매출액(억원)				
	②체험 • 관광 실적	방문객수				
		체험 • 관광 매출액(억원)				
	③일자리 창출	고용인원수				
3.네트워크 사업단 내 부거래 실적	①참여한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소비 확대 ⇒참여한 2차 및 3차 업체가 구입한 실적	계약재배	농가수			
			농산물 구입액(억원)			
	②참여한 제조·가공업체의 생산제품 판로 확대 ⇒참여한 3차 업체가 구입한 실적	생산제품 구입액(억원)				

* 최근 3년간 평균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되 목표치 설정근거는 개관적인 자료에 의해야함

2.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3. 기대효과

Ⅲ. 사업비

1. 총 사업비

지원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투자계획(백만원)												비 고
			계				'21년				'22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계	국비	지방비	민간	
	○○○ △△△														
	△△△ ○○○														
	△△△ ○○○														
합계															

□ 지원분야별 작성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재원확보방안 제시)*

2. 연차별 사업비 편성 및 산출내역

< 21년 사업>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합계							

□ 세부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 세부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사업비 : (사업비 총액 및 부담, 세부산출 근거 제시)

Ⅳ. 사업 추진 일정

Ⅴ.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1. 성과 관리 방안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 및 측정방법 제시)

2. 사후관리 방안

(예산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에 대한 자립화 및 사후운영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Ⅵ. 가점 근거자료

[참고]
1. 수행조직 및 참여주체 현황(참여농가 현황 포함)
2. 자부담금 내역(통장사본) 등

별첨 1 신규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선정 심사기준

지 구 명		지자체명	시·군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평가분야	선정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추진 체계 및 수행주체 (40)	사업 추진체계 (2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10	10	8	6	4	2
		· 사업단 운영 지속성	10	10	8	6	4	2
	사업수행 주체의 역량(10)	· 주관업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10	10	8	6	4	2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10)	· 사업추진을 위한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의 구체적인 제시 정도	10	10	8	6	4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25)	사업내용의 구체성(15)	· 세부사업계획의 구체성	5	5	4	3	2	1
		· 네트워크 구성의 타당성	5	5	4	3	2	1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성	5	5	4	3	2	1
	사업의 기대효과(10)	· 사업추진 기대효과의 구체적 명시여부	5	5	4	3	2	1
		·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발전 파급효과	5	5	4	3	2	1
사업비 조달 및 자부담 분담계획 (15)	사업비 산출근거의 구체성(5)	· 세부사업별 재원별 용도의 구체적 제시정도	5	5	4	3	2	1
	자부담금 조달정도(10)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부담금 확보 정도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	사업목적 달성가능(10)	· 사업목표치 달성 가능 여부(구체적인 방법 제시)	10	10	8	6	4	2
	사업의 실행 가능성(10)	· 제시된 사업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 여부	10	10	8	6	4	2
합 계			100					

<종합의견>

별첨 2 신규 네트워크 사업단 선정 가점표 : 최대 10점

1 인증사업자 참여 : 가점 최대 2점

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참여** : 1개 사업자(1점), 3개 이상 사업자(2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2 사업단내 **농협 참여 : 가점 최대 3점**

① **산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화 원료공급 역할 수행**(1점)

② **농촌융복합산업화 제조·가공 역할 수행**(1점),

③ **농촌융복합산업화 유통 및 수출 역할 수행**(1점)

※ 사업단내에 농협의 역할이 사업계획서 상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 인정

3 소농·고령농·여성농·청년농 참여도 : 가점 1점

○ 신규 신청사업단의 **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의 참여 농가수를 기준으로 상위 1~2위 사업단 : 1점**

4 사단법인화한 사업단 : 4점

* 사업단이 사업신청(1월말까지)시 사단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별첨3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품목 후보군 현황 ('20. 12월 현재)

시도	시군	품목	지역 및 품목		
계	112	208			
부산·울산	2	2	• 부산(대저토마토) • 울산(배)		
경기	8	9	• 여주(쌀) • 화성(포도) • 김포(새싹인삼+가공)	• 이천(돼지,쌀밥) • 평택(쌀) • 파주(산머루)	• 양평(쌀가공식품) • 안성(쌀)
강원	13	30	• 원주(고구마,토종다래) • 동해(포도,찰옥수수) • 인제(오미자,곰취) • 횡성(더덕,한우) • 홍천(잣,인삼,한우)	• 평창(황태,한우,약콩,배추) • 양구(시래기) • 강릉(한과,감자,산채) • 태백(곰취)	• 영월(장류,곤드레,포도) • 정선(황기,사과) • 양양(산채,곶감,떡,버섯) • 화천(토마토)
충북	10	11	• 충주(당뇨 바이오) • 제천(약초) • 보은(대추) • 영동(포도)	• 증평(인삼) • 단양(아로니아) • 옥천(한우)	• 괴산(친환경잡곡, 버섯) • 청주(사슴) • 음성(들깨)
충남	12	21	• 태안(고추,화훼) • 예산(사과,쪽파) • 당진(쌀) • 공주(알밤,한우)	• 보령(돼지) • 서천(소곡주) • 논산(장류, 딸기) • 아산(쌀)	• 천안(호두과자) • 금산(인삼,깻잎,흑삼,약초) • 청양(구기자,맥문동,고추) • 부여(토마토)
전북	14	29	• 군산(흰찰쌀보리,주박짱아치) • 완주(로컬푸드) • 김제(로컬푸드, 쌀) • 순창(참두릅,장류,무·매실절임) • 고창(복분자)	• 익산(과채류,고구마,쌀,보리) • 정읍(귀리,구절초,수박,지황) • 장수(레드푸드) • 임실(치즈,로컬푸드) • 진안(로컬푸드,김치,돼지)	• 부안(양파,오디) • 전주(미나리) • 무주(천마) • 남원(고사리,팥)
전남	16	27	• 여수(갓,쑥) • 순천(야생차, 매실) • 나주(배,멜론) • 광양(매실) • 곡성(멜론,매실,토란) • 고흥(유자)	• 영광(쌀모시,찰보리) • 보성(녹차) • 장흥(표고버섯) • 장성(컬러푸드,편백,사과) • 해남(밤호박,고구마)	• 영암(무화과) • 강진(맥주보리,장류) • 진도(울금,검정쌀) • 완도(흑염소) • 무안(고구마)
경북	17	36	• 경북(사과) • 김천(포도,자두) • 안동(사과,마,콩,생강) • 영주(인삼,사과) • 경산(대추, 복숭아) • 영천(포도,복숭아,마늘)	• 문경(사과,오미자,콩) • 의성(마늘,한우,자두,산수유) • 청송(사과) • 고령(딸기) • 청도(감(반시)),미나리) • 성주(참외)	• 예천(사과,곤충,참깨) • 상주(쌀,오이,곶감,포도) • 봉화(로컬푸드) • 영양(고추) • 구미(감자)
경남	17	36	• 진주(딸기) • 함안(연근,참외) • 창녕(양파) • 통영(고구마,유자) • 양산(딸기,사과) • 남해(시금치,마늘)	• 합천(양파,밤) • 김해(단감,산딸기) • 산청(쌀,양잠,딸기) • 밀양(사과, 깻잎, 딸기) • 함양(산양삼,여주,오미자) • 의령(망개떡)	• 거창(사과,산양삼) • 하동(매실,녹차,딸기,배) • 창원(단감,연근,화훼) • 거제(유자) • 고성(단감,쌀보리)
세종	1	2	• 세종(복숭아, 로컬푸드)		
제주	2	5	• 서귀포(감귤)	• 제주(맥주보리,청귤,블랙푸드,당근)	

11.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

【담당자 최연우 ☎ 286-6433】

☐ 사업목적

○ 도내 식품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여 업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시제품 제작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개 업체

○ 지원기간 : 2021. 1. ~ 12.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50\%}$, 자담 $50^{50\%}$)

- 업체당 지원액 : 10백만원(도비 5, 자담 5)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에 따른 식품산업연구센터 장비 사용수수료 지원

☐ 추진방식

○ 시행기관 :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 추진절차 :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제품생산을 위한 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사업안내 및 공모	⇒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도 ('20. 12월)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21. 1월)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10개소, '21. 1월)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21. 2. ~ 12월)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사업 공고 후 선착순 신청(단, 사업 신청기간 중 제품 개발 및 생산 제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야 함)

※ 식품센터 구축 장비특성에 맞는 제품이어야 하므로 선 상담 후 지원 업체 선정

- 도내 소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중 제품 개발은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업체 또는 장비수수료 지원이 필요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 지원제한 기준(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거나 예정인 업체

※ 행안부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중기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초기기업성장지원 사업 등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업체는 내년도 사업 배제

○ 세부추진 요령

① 신청업체 접수 후 상담협의(식품산업연구센터) 일정 결정

② 생산 및 제품개발 관련 상담(식품산업연구센터 방문)

※ 식품센터 구축 장비에 적용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 개발 및 생산 제품은 상담을 통해 결정(업체의 이의제기 방지 목적)

③ 제조 견적서 작성 및 업체 발송(식품산업연구센터)

④ 장비사용 신청서 접수(식품산업연구센터)

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정산(선 결제)

⑥ 공정조건 테스트(필요시) 및 제품 생산

⑦ 제품 출고

예시) 장비지원 수수료가 총 5,000천원이면, 식품센터 사업비 계좌에서
(보조) 2,500천원 + 장비사용 업체에서 3,000천원(부가세 500천원 포함)
= 총 금액 5,500천원 세금계산서 발행

※ 회계절차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은 업체에서 부담해야함

▢ 추진체계

담당기관	담 당 기 능
도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예산 확보 및 배정, 사업비 송금 ◦ 성과관리 및 사업비 결산
식품산업연구센터	◦ 공모 세부계획 수립·안내·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10개 업체) 및 결과 보고 ◦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 이행점검 및 정산보고 : 식품산업연구센터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서식 2) : ’21. 2월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서식 3) : 3, 6, 9, 12월

○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서식 4) : ’22. 1월

【 참 고 자 료 】

① 식품산업연구센터 주요 장비류

- 스틱포장기, 분무건조기, 제환기, 캅셀포장기, 음료라인, 임상검체 제작 제제연구(정제, 캅셀), 과립제제연구 등

② 식품산업연구센터 지원가능 제품류

- 식품소재 : 추출 및 농축, 분무건조, 동결건조
- 완 제 품 : PET음료생산(340ML), 스탠딩파우치
- 고형제류 : 제환, 캅셀, 정제
- 완제포장 : 스틱포장, 블리스터포장, 사면포장, 병포장(제약용기)
- 시제품 제작 및 임상시험검체 제작

6. 사업신청 구비서류 : 장비사용신청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서

서식 1 **장비사용 신청서**

장비사용신청서 **(시제품제작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번호**	**접 수 확 인**	
			담 당 자	**팀 장**

1. 신 청 인

업 체 명		전화번호/FAX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호실)			

2. 신청내용

사용 장비명			
장비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시간)
장비사용료 (VAT 제외※)	계(100%)	지원액(50%)	업체부담(50%)
작 업 내 용			
특 기 사 항			

※부가세는 업체가 부담함

* 구비서류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서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귀하

※ 장비사용시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중이나 사용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장비사용 업체가 책임을 진다.
2. 장비의 사용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 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다.

장비사용 승인번호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서식 * '21. 2월까지 전남도에 제출

(단위 : 천원)

연번	업 체 명	계	도 비	자 부 담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3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서식 * 3, 6, 9, 12월 제출

(단위 : 천원)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개발 및 생산 제품	사 업 비		
				계	도 비	자 부 담
합계						
1						
2						
3						
4						
5						
6						
7						

서식 4 정산결과 제출 서식 * '22. 1월 제출

(단위 : 천원)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도비
합계									
1									
2									
3									
4									
5									
6									
7									

12.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담당자 최연우 ☎ 286-6433】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 도모

☐ 지원목적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유기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2%)	시군비(28%)	자담(60%)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100개소	200,000	24,000	56,000	120,000

☐ 사업추진

1. 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
-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서에 의거 확정(친환경인증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2. 1월

3.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유기가공식품 생산 업체 및 농가의 인증서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원
- 신규품목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품목이 없을 경우 기존품목 연장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비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실소요 비용

○ 지원기준 : 200백만원(도비 $24^{12\%}$, 시군비 $56^{28\%}$ 자담 $120^{60\%}$)

- 업체당 2,000천원(도비 240, 시군비 560, 자부담 1,200)

○ 유기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 : 1년

☐ 세부사업 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 도에서 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시군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접수(연중)

○ 시군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 홍보

2. 사업선정 및 교부결정 단계

○ 시군은 사업신청자 적격성 여부 심사를 위해 신규 또는 갱신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반드시 확인

○ 인증 갱신의 경우, 갱신된 인증서를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 통보

○ 사업대상자는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 책임하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집행은 구비서류 확인 후 집행

○ 인증비 보조지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경영체)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행정사항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수요신청 : 전년도 10월 말까지(별지 2호)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보고 : ’22. 1. 15.까지(별지 3호)

【별지 제1호 서식】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농가(조직)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4">인증
내역</td><td>인증품목</td><td colspan="4"></td></tr>
<tr><td>인증유효기간</td><td colspan="4">20　.　.　. ~ 20　.　.　.</td></tr>
<tr><td>인증번호</td><td colspan="2"></td><td>인증일자</td><td></td></tr>
<tr><td>인증기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인증
수수료
납부
내역</td><td>계</td><td>신청비</td><td>심사원
출장비</td><td>심　사
관리비</td><td></td><td></td></tr>
<tr><td>원</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입금
계좌</td><td>은행명</td><td></td><td>예금주</td><td></td><td>계좌번호</td><td></td></tr>
</table>

구비서류 1. 인증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2021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시군	인증경영체명	대표	인증품목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별지 제3호 서식】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22. 1. 15.까지

업체명(대표자)	사업량(건수)			예 산 액(원)				집 행 액(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13.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담당자 최연우 ☎ 286-6433】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검사비 등 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 생산과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목적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인증제품 생산

☐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20%)	자담(60%)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120개 업체	270,000	54,000	54,000	162,000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

※ **'21년부터 자가품질검사비 외 <u>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 시험검사비</u> 등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확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 사 업 량 : 120개 업체(도지사품질인증 제품)

○ 지 원 액 : 270백만원(도비 $54^{20\%}$, 시군비 $54^{20\%}$, 자담 $162^{60\%}$)

- 업체당 지원한도 : 2,250천원(도비 450, 시군비 450, 자담 1,350)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가공 사업자

※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라남도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 사업신청(업체)

①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2021년 시험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구비서류(검사계획서, 도내 공인 품질검사기관의 견적서)를 시군에 제출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에서는 도내 공인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 실시 후 관할 시군에 구비서류(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 검사비 지원 항목 : ①자가품질검사, ②잔류농약검사, ③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④영양성분검사, ⑤참고용 시험검사

※ 단, 도내에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 시험·검사기관 가능

< 자가품질검사 도내 기관 >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061-336-9620),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061-240-5111),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061-286-6131),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
-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061-276-1671), 목포시 고하대로 719번길

○ 지원방법(시군)

- 지원대상 업체별로 '21년 시험검사 계획을 제출받아 검사비 지원계획 수립
- 업체가 시험검사 후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제출시 도지사품질인증 제품명이 기재된 성적서 등 구비서류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시군 추진사항

○ 시장·군수 책임하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자가품질검사비 등 검사비 보조지원은 도지사품질 인증제품을 도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제품명이 기재된 성적서를 받은 사업자(경영체)에 직접 지원 ※ **시군은 검사기관에 사업비 직접집행 불가**

○ 도지사품질인증 가능 업체에 대한 관리 등 도지사품질인증 취득 지도

○ 시군에서는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 행정사항

○ 업체별 품질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시군) : ‘21. 1. 29.까지(별지 2호)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 9월, 12월 말) (별지 3호)

○ 자가품질검사비 지원결과 및 정산 보고 : ‘22. 1. 15.까지(별지 4호)

【별지 제1호 서식】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품질검사비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업 체 명</td><td colspan="3"></td><td>대 표 자</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5">통합
상표
사용
허가
내역</td><td rowspan="2">사용기간</td><td rowspan="2">허가번호</td><td colspan="4">대상품목</td></tr>
<tr><td colspan="3">제품명</td><td>식품유형</td></tr>
<tr><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td><td></td><td colspan="3"></td><td></td></tr>
<tr><td rowspan="5">품질
검사
내역</td><td colspan="2">검사기관</td><td colspan="3">검사제품명</td><td>검사비(부가세포함, 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5">합계</td><td></td></tr>
<tr><td rowspan="2">지원
금액</td><td colspan="2">총 검사비(원)</td><td colspan="2">자부담금(원)</td><td colspan="2">**지원금**(원)</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입금
계좌</td><td>은행명</td><td></td><td>예금주</td><td></td><td>계좌번호</td><td></td></tr>
</table>

구비서류 1. 도내 공인기관 시험검사 성적서 사본 1부(도외 기관의 경우, 사유서 포함)
2. 거래명세서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2021년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품질검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도지사품질인증 검사비 지원 계획

(단위:천원)

시군	업체명(대표)	인증품목	검사항목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 추진상황 보고 서식(6월, 9월, 12월)

(단위:천원)

시군	지원건수 (검사항목)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사 업 비			
		주소	업체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별지 제4호 서식】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022. 1. 15.한

(단위:천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	사업량(건수)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참고1 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란?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자가품질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 인력, 시설, 장비, 실험능력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평가하여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 전남(4) : 식품산업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 자가품질검사 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주문자 상표부착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 자가품질검사 방법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 단,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두 개 이상의 품목을 제조·가공할 때는 식품 유형별로 실시

* 유형 : 발효식초, 과채주스, 액상차, 고형차, 커피 등

□ 자가품질검사 주기

○ 「식품군」에 따라 검사주기가 달리 규정되어 있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두부류, 절임류, 조미김 등 : 3개월
-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 6개월
-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 두유류, 기타음료류, 식용유지류 등 : 2개월
- 그 외의 식품 : 1개월

참고2 자가품질검사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0. 4. 13.>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3)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5)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1)·3)·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제4호에 따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2)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14.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담당자 최연우 ☎ 286-6433】

타 제품과 차별화된 특성과 소비자 감성을 반영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소비자 구매동기 유발 및 상품가치 향상

☐ 추진방향

○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휴대, 저장, 보호 등 기능적 요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경쟁 상품보다 돋보이도록 디자인 개발·제작

○ 종합 또는 시각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제작함으로써 우수한 포장디자인 제작

○ 도지사 품질인증업체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판매 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4개 업체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 중 포장재 개발 희망 업체

- 포장재 개선이 시급한 도지사품질인증 업체 우선 지원

○ 사 업 비 : 640백만원(도비 86.4$^{13.5\%}$, 시군비 233.6$^{36.5\%}$, 자담 320$^{50\%}$)

- 업체당 지원 한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포장재(포장용기 포함)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지원제외 : 단순포장지 및 상품안내 카탈로그·전단지·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 디자인 제작업체 자격 요건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로 종합 또는 시각/포장디자인 분야 신고업체

※ 신고를 필한 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홈페이지 : www.kidp.or.kr - 디자인전문회사(지역별, 분야별 조회 가능)

나. '가.'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아닌 디자인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

*** 디자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 이 기재된 업체**

※ 전문인력 자격 기준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 소지자
(b)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c)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d)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e)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f)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g)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h)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i)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 1. 디자인, 일반미술 분야를 제외한 전공은 (h)항목에 해당
2. 대학전임강사 이상은 전문인력에서 제외
3.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의거
-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등

☐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 포기서를 징구하고, 수요조사 시 사업을 신청한 업체로 신규로 선정하여 도에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물량, 기타 경미하게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경우 시장·군수가 승인 추진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비 집행시 사업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나.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은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21. 1. 31.까지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4. 사업내용

5.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				교 부 신청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6.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업체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0	0	0	0	

다. 포장재(용기) 개발 및 제작

○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하고 종합 또는 시각포장디자인 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 디자인전문회사 :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

○ '디자인 전문회사'가 아닌 디자인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제품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

□ 행정사항

○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사업 확정(1월) 및 보조금교부결정 : '21. 2월

○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추진상황 보고 : 3회(6월, 9월, 12월) (별지1)

○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사업 정산보고 : '22. 1. 31.까지 (별지2)

[별지1호 서식]

☐ 추진상황 보고서식 3회(6월, 9월, 12월)

(단위 : 천원)

시군	업체현황			예산액				사업추진 또는 진행상황	사업 완료 여부	부진 사유	향후 계획
구분	업체명	품목	대표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별지2호 서식]

☐ 사업정산 서식('22. 1. 31.까지)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량		예산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비고
구분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제품명	개선내용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0	0	0	0

○ 디자인 개선 결과 사진

· 업체명 : · 품 목 :		· 업체명 : · 품 목 :	
전	후	전	후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15. 농어촌진흥기금(식품가공분야) 융자

【담당자 조도연 ☎ 286-6434】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융자신청 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갖추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가공업체에게 육성자금(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업체에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1. 세부사업개요

가. 융자계획 : 80억원('20년 융자계획 69억원)

나. 실행기간 : 2021. 1월 ~ 12월 말

다.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라.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함

- 단, 다음의 경우는 도내거주 1년 이상 제한의 예외 임
  - 귀농어가 및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 타 지역 업체가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기업
  -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따른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주
  -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마. 대 상 자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자금종류

○ 시설자금 : 공장 증설, 시설자동화·현대화 등 시설확충 사업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 제품생산, 판매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 원료구입,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등

사. 지원조건

○ 융자한도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 이율 : **10%**)

○ 상환조건 : **시설(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2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추진체계

가.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송금(대여)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및 사후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나. 추진체계도

기금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전년도 12월~당해연도 2월)	- 사업지침시달(도→시군) - 사업계획, 지원대상, 사업비, 신청요령 등
⇓		
융자사업신청서 제출	(전년도 12월~당해연도 2월)	- 신청서작성 제출(농어업인 등→읍면동→시군) - 신청서 취합결과 제출(시군→도) **※ 신청서 제출 시 금융기관 신용확인**
⇓		
사업비 배정 (도, 시군별 배정)	당해연도 (1월)	- 시군별 사업비 배정(확정) - 도 시책 사업별로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도, 시·군별)	당해연도 (1~2월)	- 도 : 시책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시군 : 자금배정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도-시군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시군 → 사업자)	당해연도 (1~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시군 → 농업인, 금융기관) - 도 사업대상자 선정통지(도 → 실과 및 금융기관)
⇓		
융자실행 및 융자사업비 송금 (도 → 금융기관)	익월 3일 한	- 사업완공 후 대출실행(시설자금 중도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협의,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 제출) - 사업완료시 융자금 대출신청(신청자 → 시군) - 융자금 배정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 - 융자사업비 송금(도 → 금융기관, 시군) - 융자금 실행(금융기관 → 사업대상자)
⇓		
융자실적 제출 (금융기관 → 도)	익년 1. 5. 한	- 시 군 : 매월 말 융자 실적제출 - 금융기관 : 매 익월 3일까지 제출
⇓		
사업비 정산 (시군, 금융기관→도)	익년 2. 5일한	- 기금 융자사업 정산보고((금융기관→도) ※ 12.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은 도에 반납 조치

다. 추진 일정

○ 신청기간 : ’20. 12. 7. ~ 23.　　※ 접수결과에 따라 추가 접수 가능

○ 신청절차 : 농어업인 등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 및 신청 결과 제출(시・군) → 도(농식품유통과)

○ 대상자 선정 :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후 사업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제출

-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해 도 시책사업, 시군별 자체사업 비율에 따른 사전 배정절차 없음(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배정)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 ’21. 1월부터(대상자 확정 후)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절차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서식 2】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

○ 현지조사 시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서식 3】작성

○ 관련 실과 담당자, 금융기관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융자대상자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 요망

나. 지원대상자 선정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추진 총괄부서(도 농업정책과)에서 선정

※ 시·군 추천 대상자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및 신청량 등을 고려 최종 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금융기관(농·수협)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부족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공정히 선정해야 하며 사업선정자 통지서【서식 5】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 포기자는 1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다.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실행 여부 및 가능금액에 대한 상담 후 사업에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서식 6】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서식 7】를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운영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시 전에 신청할 경우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서식 8】를 제출, 사업 완료 후에 신청할 경우는 사업완공확인서【서식 7】를 제출, 이를 발급(직인날인)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융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하여(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대상자에게 통보

4. 사후관리

가.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나.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다.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시·군 추진사항

가. 사업장 및 융자 대출관리

《시군》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다음 순위자로 즉시 대체 선정

○ 융자 실행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자금의 적절한 지원

○ 사업완료시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서식 6】제출받아 보관

《읍면》

○ 운영자금 사업자 중 사업완공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 확인서'에 의거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사업 완료 후 사업자로부터 대출자금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비치(사업연도 12월 말까지)

-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추진 다음연도부터 10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단을 작성 관리하여 제재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하여 농어업인의 자금난 해소

○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된 사업자에게 융자실행, 필요시 중도대출 가능

나. 사업관련 보고 및 통보(시·군, 금융기관 → 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신청자에게 융자대상 선정 통지서【서식 5】를, 금융기관에게는 사업대상자 명단【서식 10】을 통보하고, 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를 도에 보고【서식 10】,【서식 11】

○ 융자금 자금배정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자금소요액을 도에 신청【서식 12】

○ 시·군은 분기 말 융자실적【서식 13】,【서식 14】을 분기 다음달 5일까지 도에 제출

○ 금융기관은 매월 말 융자실적을 다음달 3일까지 도 총괄부서로 제출

다. 사업비 정산(시·군, 금융기관 → 도)

○ 시·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서식 15】

○ 금융기관은 2021. 12. 31.일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고 남은 잔액을 전라남도에 반환 조치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전남도 농업정책과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다.

[서식 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table>
<tr><td rowspan="3">①신청자</td><td>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td><td colspan="3"></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설 립 일
(운영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
(년 개월)</td><td>생산제품</td><td colspan="2"></td></tr>
<tr><td>②매출액</td><td></td><td>수출금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수출국가</td><td></td></tr>
<tr><td>③시설규모</td><td colspan="7">부지 ㎡, 건물 ㎡, 주요 장비·시설 :</td></tr>
<tr><td>④기융자
연 도</td><td>년</td><td>기융자
자금명</td><td></td><td>기융자
기 관</td><td></td><td>기융자
금 액</td><td>백만원</td></tr>
<tr><td>⑤신 청
내 역</td><td>융자
금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자금
종류</td><td>시설( )
운영( )</td><td>상환
기간</td><td>2년거치 3년 상환( )
2년거치 5년 상환( )</td></tr>
<tr><td>⑥첨 부
서 류</td><td colspan="3">사업계획서 1부</td><td colspan="2">⑦대출희망
금융기관</td><td colspan="2">농협( ), 수협( )</td></tr>
<tr><td colspan="2" rowspan="4">⑧농협대출담당자
확 인</td><td>담보물종류</td><td>해당지번</td><td colspan="2">가능금액</td><td rowspan="4">서명 또는
인장 날인</td><td rowspan="4"></td></tr>
<tr><td>예) 축사, 농지</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행정기관 보관용)

정보 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4. 귀하는 본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지부 포함)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소, 영농현황, 학사농어업인 인적사항, 융자현황, 대출가능여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융자금 상환종료일까지
5. 귀하는 본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포함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ex.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사업계획서 (식품가공분야)

□ 법인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고 용 인 원	명
사 업 규 모		연 매 출 액	만원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 자담)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공공장	㎡	
	예) 기계장비류	조	

[서식 3]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신청자 주소 및 이름		사업명	

항 목	검 토 의 견	평점
사업 운영 실태		
지원대상 사업의 장래전망		
사업자 신용도		
도, 시·군 시책사업과 관련성		
종합의견(약술)	※ 융자 적격 여부, 융자 가능액 등	

[서식 4]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700점)		
①사업자 추진 의지 (50점)	○ 강함(50) 보통(30) 미흡(20)	
②사업 규모(50점)	○ 대(50) 중(30) 소(20) ※ 시·군 자체기준 설정	
③해당 사업관련 전문성(100점)	○ 영농·영어 경력 ·5년이상(50) ·5년~3년(30) ·3년이하(20) ○ 도지사품질인증, 전통식품인증, 명인인증, 기타 국내외 특허획득(50)	
④사업성(200점)	○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전망 ·상(100) ·중(70) ·하(50) ○ 원료조달 및 생산·판매능력 ·상(100) ·중(70) ·하(50)	
⑤사업자 신용도 (250점)	○ 담보제공 능력(융자가능금액 : 백만원) ·상 (70) ·중 (50) ·하 (30) ○ 사업자금 조달능력 ·상 (70) ·중 (50) ·하 (30) ○ 재무제표 건전성 ·상 (40) ·중 (20) ·하 (10) ○ 해당사업 투자관련 자기자본 비율 ·80%이상(70) ·50%이상(50) ·50%이하(30)	
⑥도·시·군 시책사책 관련성(50점)	○ 상(50) 중(30) 하(20)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 . .

조사평가자 (공 무 원) 소속 이름 (인)

(금융기관) 소속 이름 (인)

[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융자지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융 자 액	**금 백만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 상환 년거치 일시 상환	이율	연 1% (연체이율 연10%)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발부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3개월)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대출이 안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1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⑥항의 경우 제외)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1. . .

시장・군수

[서식 6]

사업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table>
<tr><td rowspan="2">사 업 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td></tr>
<tr><td>진흥기금
융자금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중도대출
요구금액</td><td colspan="2">만원</td></tr>
<tr><td>사 업 비
집행비율</td><td colspan="2">총 사업비의 %</td><td>사 업
추진비율</td><td colspan="2">총 공정의 %</td></tr>
<tr><td rowspan="3">사 업 비
집행명세</td><td colspan="5">계 획(천원)</td><td colspan="5">집 행 실 적(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사업추진
상 황</td><td colspan="5">계 획</td><td colspan="5">추 진 실 적</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5"></td></tr>
</table>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서식 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table>
<tr><td rowspan="2">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3">사업비
투 자</td><td colspan="5">계 획 (천원)</td><td colspan="5">실 적 (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주 요
추 진
사 항</td><td colspan="5">계 획</td><td colspan="5">실 적</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11">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td></tr>
<tr><td colspan="11">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td></tr>
</table>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서식 8]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table>
<tr><td rowspan="2">사업대상</td><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td><td></td></tr>
<tr><td>업 체·
농어가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td><td></td></tr>
<tr><td>대 출
신 청 액</td><td colspan="5">천원(융자금)</td></tr>
<tr><td rowspan="6">사업내용</td><td>세부사업명</td><td colspan="2">사업물량</td><td colspan="2">소요액(천원)</td></tr>
<tr><td>계</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추진일정</td><td colspan="5">예시) 구매계약 및 계약금 집행('2. 8월), 원료구입 및 사업비 잔액집행('21. 10월),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21. 11월)</td></tr>
<tr><td colspan="6">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운영자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며, 불이행 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 등 어떠한 행정 제재도 감수하겠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td></tr>
</table>

[서식 9]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비 집행 명세

세부시설 (사업) 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총 계							
○○○○	소 계 ○○○○ ○○○○ ○○○○						

【작성요령】

○ 다음 중 해당하는 사업비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사본을 붙임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 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서식 10]

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결과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식품가공분야						

□ 융자 대상별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가공・유통		학사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사업유형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 거치 3년 (5년)		2년 거치 5년 (7년)		3년 거치 7년 (10년)		10년 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 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11]

202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원 대 상 자				자금 종류	융자 금액	융자 기간	사업 내용	사업 분야	금융 기관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시설					

※ 기재요령

1. 자금종류 : 시설자금, 운영자금
2.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은 “2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5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은 “10년”, 10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0년 균분상환은 ‘10년’으로 기재
   -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상환이며, 조경 및 과원조성 사업의 경우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서식 12]

2021.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신청

□ 총 괄

(단위 : 백만원)

상환 기간	배정액(A)			송 금 액									잔 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2년															
5년															
10년															
13년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 청 자			사업내용		대출 은행	상환 기간	송금내역			
주 소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배정액 (계)	기송금	금회 송금	잔액

<서식 1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행률 제고를 위한 추 진 실 적 보 고 서 식 (시군)

- 2021. 00. 00.현재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금융기관	융자 계획(A)		융자금 송금(배정)액		융자 실행(B)		미배정 사업비	융 자 실행율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 사업대상자별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성 명 (법인)	융자 계획	융자금 송금액	사업 내용	추 진 상 황					미 추 진 사 유
				착공 여부	점검기준일 추진 상황	완공 여부	융자 여부	융 자 실행액	

※ 융자 실행액은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실행한 금액

□ 융자 실행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

○

□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

○

○

<서식 1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분기보고)

- 2021년 / 분기 현재 -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률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분기보고)

- 2021년 / 분기 현재 -

1. 〔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 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2. 〔추진중인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 상 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 료 예정일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체적)	연락처	
	주 소	이름							전화	핸드폰
계										

3. 〔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 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 료 예정일	미착수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이름	주 소							
계									

[서식 15]

농어촌 진흥기금 정산서

□ 융자 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식품가공분야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5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 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16.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담당자 조도연 ☎ 286-6434】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R&D와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강화

☐ 추진방향

○ 전통식품 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 극대화

-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 주도적 사업 추진 유도

○ 전통식품 매출로 연계해 신규소득 창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통식품 제조업 계승발전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100, 자담 60)

- 업체당 지원액 : 40백만원 이내(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 지원대상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가공업체

- 전통식품인증 업체 우선 선정(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 86품목/참고자료)

○ 사업내용 : R&D, 브랜드, 마케팅(박람회 참가포함),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비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시설 개·보수, 기계 장비류 구입 등 자본성 자금집행 불가

☐ 지원요건

○ 연 매출액('18~'19년도 평균)이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 우선 선정 지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중복·편중지원 금지 >

○ 기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배제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등에서 결정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지원분야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R&D	시스템개발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시스템	외부위탁(용역)만 가능
	공정개선연구개발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레시피, 판매기법, 제조기법	
브랜드	브랜드개발	·브랜드 네이밍, BI, 캐릭터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마케팅	광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6차산업화
	행사	·체험행사, 전시회, 박람회(이벤트 포함)	
	관광·체험	·스토리텔링, 지역관광지 연계 관광코스, 전통식품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물제작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네트워크	온라인구축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입점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업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하되, 실비정산

○ 개발업체(브랜드 및 네트워크)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브랜드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보유한 개발회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 발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네트워크	▪ **업력 2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일 기준 ▪ **3인 이상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보유** ▪ **최근 3년 이내에 홈페이지, 쇼핑몰 개발 실적 3건 이상** * 단일실적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사업자 * 발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사업추진요령

○ 사업은 업체에서 선정 사업추진

-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 주도적 사업 추진 유도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집행실적 확인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이행

○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확인

- 일부 세부 사업내용이 변경 시 시군에서 승인 후 도에 보고

☐ 행정사항

○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공모 : 전년도 12월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붙임 1), 시군 점검표(붙임 2)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회(7월, 10월) (붙임 3)

○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정산보고 : '22. 1. 15.까지(붙임 4)

[붙임 1]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관할 시·군	
신청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자메일	
	업태		생산품목(제품명)	
	종업원 수		연락처	
	소재지(주소)			
	담당자명		연락처	
신청분야	상품개발 / 포장 및 용기개선 / 브랜드마케팅 (세부내용 :)			
신청금액	총사업비 원			
	도비(20%) 백만원	시군비(50%) 백만원	자부담(30%) 백만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신청서 등 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위와 같이 2021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을 신청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4.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5. 최근 3개년도('17~'19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세증명원 등) 각 1부 6. 최근 3개년도('18~'20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발급본) 1부 7.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식품 관련 국내외 인증 증명서류 각 1부 8. 최근 3개년도('18~'20년) 정부지원 품평회·대회 수상실적 증명서류 1부 9. 최근 3개년도('17~'19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10.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별도 요청시 제출)

[붙임 2]

시군 점검표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함.

년 월 일

평 가 자	소속 :	성명 :	(서명)
업 체 명		대표자	

❖ 점검기준

1 신청요건 적부 확인 (적격 / 부적격)

○ 유사보조사업 지원여부, 연간매출액(20억원 미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2 점검표

항목		심사지표	A	B	C	D	평점
계량 (50)	품질인증	2개 제품 이상(10점), 1개(7), 없음(5)	10	7	5	-	
	수출실적	최근 3개년('17~'19년) 수출실적 평균 - 10만불 이상(15점), 5만불 이상 10만불 미만(10), 3만불 이상 5만불 미만(7), 3만불 미만(5), 없음(0) * 식품명인은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10점, 없을 경우 7점 처리	15	10	7	5	
	국산원료 사용실적	직전년도('18) 원료농산물 국산 매입비율 - 100%이상(15점), 85%이상(10), 70%이상(7), 70%미만(3),없음(0)	15	10	7	3	
	수상실적	최근 3년간('17~'19년) 정부지원 품평회·대회 수상실적 - 4개이상(10점), 3개(7), 2개(5), 1개(3), 없음(0)	10	7	5	3	
비계량 (50)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10	5	3	
	정책부합성	정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부합성	10	7	5	3	
	상품경쟁력	상품의 독창성, 시장확대 및 수출증대 가능성	15	10	5	3	
	예산편성 적합성	지원항목별 예산편성의 합리성	10	6	3	1	
합 계 (100)							점

❖ 종합의견

[붙임 3]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심사기준

1 계량평가 (30점)

항 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출액 증가율	'18년 대비 '19년도 매출액 증가율	13	10%이상	8~10미만	5~8미만	3~5미만	0~3미만
			13	11	9	7	5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	13	150%미만	150~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이상
			13	11	9	7	5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보유 여부	4	3개이상	2개	1개	-	-
			4	3	2	-	-

주1> 매출액 증가율(%) : ('19년 매출액 - '18년 매출액) / '18년 매출액 × 100

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19년 기준)

주3> 신설기업으로 과거년도 매출실적 및 재무제표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매출액증가율', '출고액증가율', '부채비율' 평가시 해당항목의 평균배점(7점) 부여

2 비계량평가 (70점) :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항 목	세부 평가내용	평 가 점 수				
		A	B	C	D	E
①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정성	20	16	12	8	4
② 정책 부합성	정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 부합성	20	16	12	5	4
③ 상품경쟁력	상품의 독창성, 시장확대 및 수출증대 가능성	20	16	12	8	4
④ 예산편성 적합성	지원항목별 예산편성의 합리성	10	8	6	4	2

3 가점 (5점)

구분	항 목	점수	
전통식품 (5)	국내외 인증*	2개 이상	2
		1개	1
	최근 3년간('17~'19) 정부지원 품평회·대회 입상업체	3	

○ 국내외 인증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은 제외)

- 국내 : ISO, HACCP, GAP, GMP, 유기가공식품,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KS, 지리적표시, 유기축산물, 친환경축산물, 한국할랄, 농업벤처인증
- 국외 : 미FDA, FSSC22000, HALAL, 러시아GOST, 러시아CU, BEGAN, KOSHER, SQF2000, 일본JAS, 중국보건식품등록, Global-GAP, 미USDA Organic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선정 우선순위

(1순위) 대한민국 식품명인(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업체

(2순위) 비계량평가 고득점자

- 비계량평가 점수 동일시 : ① 계획의 적정성 ② 정책 부합성 ③ 상품경쟁력 ④ 예산편성 적합성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붙임 4]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표(7월,10월)

☐ 세부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업체명	지원 분야	세부 사업명	추 진 실 적	부진 사유	향후 대책	비고 (완료여부)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군	업체명	예 산 액				집 행 실 적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붙임 5]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 업 비				집 행 실 적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계										
R&D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부 사업명	추 진 실 적	비고
R&D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 기대효과

○

○

※ 사진첨부(사업 전・후 장면)

참 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8-85호)**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가루, 솔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족발, 칡즙, 수정과, 곡물식초,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찌는 떡, 치는 떡, 과실식초, 뽕잎차, 삶는 떡, 고추장 장아찌, 된장, 장아찌, 간장 장아찌,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절임류, 고구마말랭이, 쑥차, 두유류, 절임배추

17.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담당자 조도연 ☎ 286-6434】

☐ 사업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전통식품 산업 발전 도모

* 종균 보급 기관과 균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유용 균주 보급 및 상품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생산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비 : 120백만원(국비 $60^{50\%}$, 시군비 $60^{50\%}$)

○ 지원대상 :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장류·식초류 식품제조업체

○ 사업내용 : 종균보급비, 재료구입비, 제품생산비 등

※ 종균보급기관 : 유용균주를 배양·개발하여 제조업체에 보급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사업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군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 → 시·도(11월하순)		시·도(11월 하순)		시·도 → 농식품부(12월 초)

⇒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 (12월)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	⇒	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도 → 시·군 ('21.1월)		시·도, 시·군 ('21.1~2월)		시·도, 시·군/ 종균보급기관(1~12월)		시·군 → 도 ('22. 1월)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업체]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원료 사용량(톤)	*콩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고추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쌀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등*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실무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지원신청내역]

생산 제품명		예상 생산량(톤)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계약재배계약서, 구매내역서 등) 1부.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위와 같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사업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최대 50백만원	**예상 사업기간**	~ (개월)
사업목적 및 제품목표	○ 종균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및 업체의 목표(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맛·풍미 등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 종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량 * 사업비 사용용도인 국산원료 구입비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작성		
사업 필요성	○ 종균 활용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필요성(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요구, 소비자 등 고객의 요구사항, 기타 소비 트랜드 등)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신청한 제품을 포함하여 업체 전체 규모) - 생산시설 규모: -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 연간 매출액: ('18) 000백만원 → ('19) 000백만원 → ('20) 000백만원 ○ 신청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원료 조달계획: 신청한 사업 수행을 위한 원료의 구매계획 제시 - 국산 원료의 경우 계약재배 또는 주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 수입산 원료의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특성 * 과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기재할 것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제품 활용 방법(학교급식, 마트, 건강식 등) 등 기재		

수행내용

① 사업비 적정성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 종균 활용 상품 개발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구입비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합 계			

※ 원료구입비가 제조업체 사업 예산에서 40%를 넘지 않아야 함(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전체 사업비의 최대 50%)

②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月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 양산화 계획

○ 판매 계획

○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출 증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 파급효과

-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신청현황

○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주생산품 :

○ 사 업 명(참여품목) :

☐ 신청자격 확인내역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장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적정/부적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등 제조업 등록을 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하는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받은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신청일 현재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여부 검토 결과		
- 지방비 부담분, '20년 4월까지 추경 수립 가능 검토 결과		( )월 추경 편성
-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 지원제한 등 관련 사항 검토 결과		

. . .

확인자

소속(지자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1. 제조업체 서류심사>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20)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10)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30)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특성 및 활용도(20)	◦ 종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10	10	8	6	4	2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판매방식 등 활용 방안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
사업비의 적정성(10)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원료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함	10	10	8	6	4	2
추진일정(10)	◦ 사업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소 계		**100**					
전통식품품질인증 가점(5)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하였는가?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제출 시 가점 반영				
합 계(소계+가산점)							

<별표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1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 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가 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취득 여부	5	5				0
합 계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0)	변경(2021)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업체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생산자단체 지원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
<사업신청 제한> -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업신청 제한 항목 추가 (지원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시)

현행(2020)	변경(2021)	변경사유
III. 사업추진체계 **2. 사업자 선정** ○ 제조업체 심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서류심사 평가로 상위 20개소를 선정	**III. 사업추진체계** **2. 사업자 선정** ○ 심사 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서류심사 평가로 상위 30개소를 선정 ○ 심사 방법 - 동점 발생 시 선정기준 : (1순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보유 업체, (2순위)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3순위) 서류평가 고득점 업체	○ 예산 증액으로 인한 사업량 증가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및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해 동점 등 발생 시 우선 선정
III. 사업추진체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III. 사업추진체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4월말 까지 추경 미반영 등 부득이 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의 연도 내 완료를 위하여 종균보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하에 예산을 사전 소급하여 사용 가능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비 확보 시기 변경 및 예산을 소급 적용하여 사용 가능(지자체와 종균보급기관간 협의 필요)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① 사업비 적정성** ※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 (최대 50%)	**[별지 제2호 서식, 제조업체]** **① 사업비 적정성** ※원료구입비가 제조업체 사업 예산에서 40%를 넘지 않아야 함, 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	○ 비목별 사업비 적정성을 위한 원료구입비 제한

18. 전통술 산업육성 및 주류 제조면허 추천

【담당자 조도연 ☎ 286-6434】

☐ 추진목적

○ 우수 전통술 발굴, 술 품질향상 및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소규모 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화 및 조직화로 경쟁력 제고

○ 수도권 직판행사 등 적극적인 판촉행사로 전통술 홍보 강화

☐ 사업개요

가.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 추천

○ 추천대상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

- 자가 생산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 주　　종 : 12종(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등)

○ 추천권자 : 전라남도지사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농업인 확인서, 추천대상 및 요건 증빙서 등

나. 친환경 막걸리 공동브랜드 '만월' 보급 및 육성

○ 목　　적 : 전남 막걸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및 공동 마케팅 추진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탁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 술 품질인증 또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업체(제품)
- 주원료를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쌀을 사용하는 제품

○ 신청절차

- 사용허가신청서, 리콜준수각서 등 첨부 신청(사용 30일전)
- 시장·군수 자료검토, 현장조사 후 도지사 추천(신청접수 15일 이내)

사용신청 (업체)	⇨	업체추천 (시·군)	⇨	사용 심의 (도)	⇨	약정체결 및 허가 (도)	⇨	공동브랜드 사용 (업체)

다. 술 품질인증 추진

○ 대상주종 : 7종(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국세청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제품

○ 심사내용 : 제조방법, 공장기준, 제품품질, 관능평가

○ 구비서류 : 제품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설명서, 분석감정서, 제조방법 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주상표 및 부조상표 등

○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기관)

※ 우리 도 술 품질인증 실적('20. 12월말 기준) : 6개 업체, 14개 제품

라. '이 달의 남도 전통술' 선정 · 홍보

○ 목　　적 : '이 달의 남도 전통술' 선정, 홍보로 이미지 제고 및 판매촉진

○ 선정대상 : 남도 전통술 품평회 입상 브랜드

- 남도 전통술 품평회 입상 브랜드를 계절별 테마에 맞게 매월 선정

○ 선정기준 : 24절기 관련 술, 향토이야기, 원료 수확시기 등을 고려

마. 전통술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사 업 량 : 2개 사업

- 도내 우수 축제장, 주류박람회 등 전통술 홍보관 운영
- 우수 전통술 홍보물 제작·배포

○ 사업 내용 : 우수 전통술 시음회, 홍보 및 판매 등

□ 행정사항

○ 친환경막걸리 공동브랜드 보급 확대로 유기농막걸리 공동 브랜드화

○ 전통술 업체 발굴, 「지역 특산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도록 지도

○ 술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술 품질인증 확대

[참고자료]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지침

☐ 법적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10. 8. 5. 시행〉

☐ 추천대상 및 요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자(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경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단체

-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경우

☐ 대상주류

○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 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 계획서

○ 농업인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품관원장 발행) 또는 어업인 확인서(읍·면·동장 발행 또는 접수자 직접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지정서 사본 등)

○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 제조장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주류제조면허 추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 주원료 농산물의 자가생산(농지원부), 계약생산(임대차 계약), 구입 등 관계 증빙서

□ 추천서 검토 및 경유

○ 추천심사 검토사항 및 추천 시 이행사항(시장·군수)

- 사업장 설치 여건, 주원료 조달,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
  - ·적 합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부적합 :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조치

○ 도지사는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를 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위반사실을 통지

□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효력을 상실하며 1년 이내 재추천 가능

[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 열람 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단체명)	추천 주류	추천대상자 유형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계획	주류의 종류(품목)						
	연간 제조 예정 수량	kℓ		kℓ		kℓ	kℓ
	제조장 위치						
	시설 규모	부지	㎡	건물	㎡	자금소요액	백만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의 추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뒤쪽)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kℓ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설비	계
	㎡	㎡	종	-
자금 소요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대표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경 력		
재산현황 (백만원)	동 산	부동산	계	부 채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조합(구성)원수	출자 총액	원 료 생 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백만원		ha	M/T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 : 천원)

시 설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소요액				자금조달계획			
계	건물	설비	부지	계	자담	금융기관차입	기타

다. 생산계획

구분 / 제조 주류별	제품명	생산능력(kℓ)		생산계획(kℓ)		원료소요량(톤)		
		월간	연간	월간	연간	원료명	월간	연간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 ha, M/T)

구분 / 제조 주류별	원료명	원료 소요량	조달계획						
			계		자가 생산		계약 생산		일반구매 등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구입량 및 금액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 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차입목적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잔액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유자	물 건	평가액	소재지	비 고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주류제조면허 추천 검토의견서

추 천 개 요

○ 신 청 자 :
○ 제조주류 :
○ 제조장위치 :
○ 연간제조 예정수량 : kℓ

□ 검토사항 및 결과

구 분	세부 기준	현황검토(예시)	적합 유무
추 천 대 상 및 요 건	○ 신청인 자격 - 중요무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주류부문의 식품명인 - 농업인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 주원료 소요량 및 조달계획 - 농산물 자가 생산 또는 인접 및 관할 시·군·구 생산	- 주 원 료 : ○○ - 재배면적 : ○○ha - 생 산 량 : ○○톤(자가생산 ○○, 계약생산 ○○, 구매 ○○)	
제조장 시 설 기 준	○ 건물 - 원료처리실 : 6㎡이상 - 담금실 ・탁주, 약주, 청주 : 10㎡이상 ・과실주 : 20㎡이상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 25㎡이상	○ 건물 - 원료처리실 : ○○㎡이상 - 담금실 : ○○㎡이상	
	○ 부대시설 - 여과시설 - 세병시설 - 병입시설 - 타전시설	○ 부대시설 - 여과시설 : ○조 - 세병시설 : ○조 - 병입시설 : ○조 - 타전시설 : ○조	
	○ 시설 - 온도계 : 0.2℃눈금 1개 - 주정계 : 0.2℃눈금 0~100℃ 1조 - 간이증류기 : 1대	○ 시설 - 온도계 : ○개 - 주정계 : ○조 - 간이증류기 : ○대	
기 타	○ 제조장 입지여건 및 사업타당성	○ 주세법에 정한 시설기준 등이 적합하고, 해당 주류생산 추진이 가능	

□ 종합의견

○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인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적합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함

년 월 일

○ ○ 시장·군수 (직인)

[참고자료]

술 품질인증 추진

우리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술 품질인증 확대 추진

※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상품목 및 사업자의 범위

○ 대상품목 : 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 인증절차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 등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신청서 등을 작성 직접 제출

- 첨부서류 : 제품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신청제품 주상표 및 보조상표 등

○ 제조방법 및 공장기준, 제품 품질기준의 판정은 별도기준에 따라 실시

※ 술 품질인증 판정기준은 www.lms.naqs.go.kr 적합판정기준 참조

○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한 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적합 판정인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

☐ 인증 및 정기심사 수수료

가. 경상비

-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경상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함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걸리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인 2인으로 함

다. 제품시험 검사비 및 시료운반비 등

- 인정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적용함

라. 기타 참고사항

- 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품시험 수수료를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직접 그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대상품목에 속하는 다른 품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1품명 추가시 해당 경상비(제조장심사)의 75%를 감면함
- 같은 작업장에서 탁주(막걸리)·청주·약주를 함께 생산하면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1품목 추가시 해당 경상비(제조장심사)의 50%를 감면함. 인증 및 정기심사 수수료 테이블이며 구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증표시

○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표지', '인증기관기호', '인증번호' 표시

- "가"형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
- "나"형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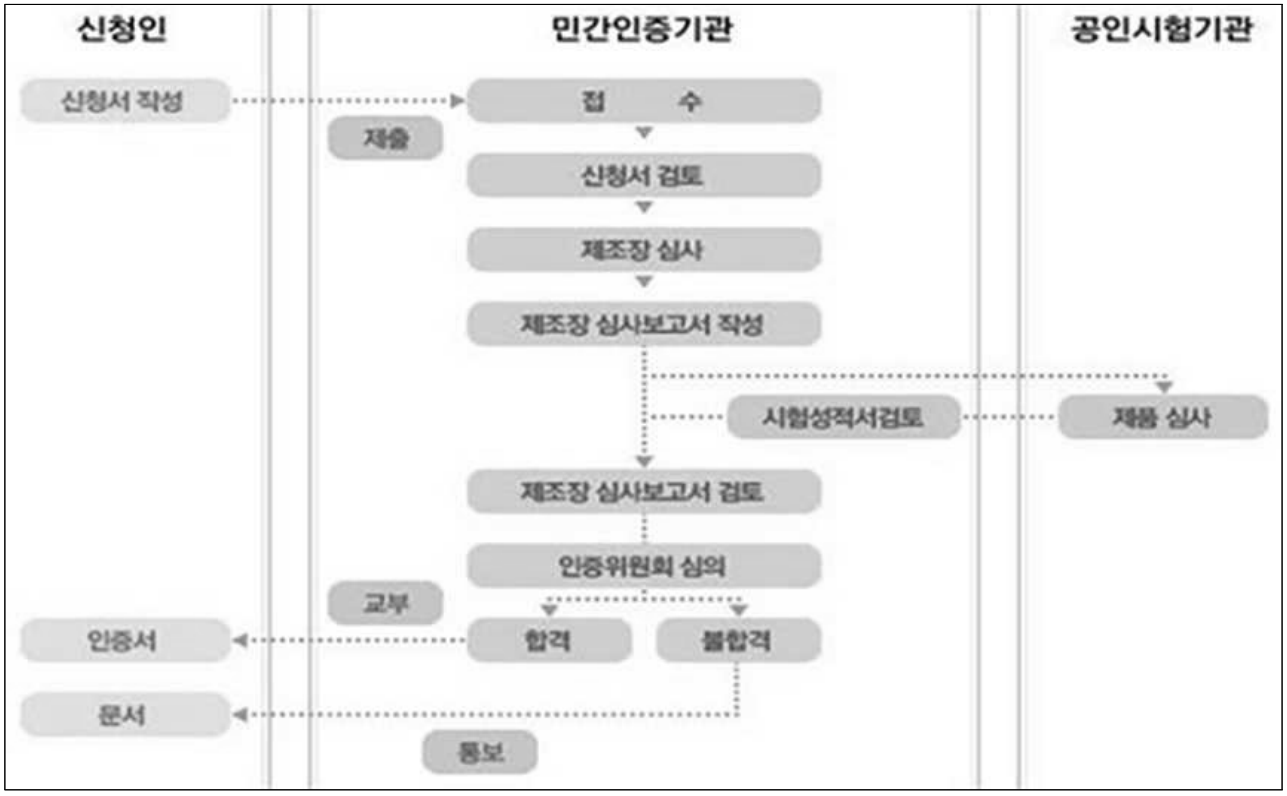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양 곡 유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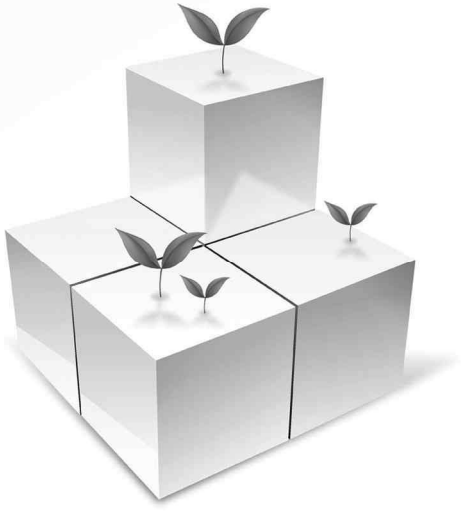

1.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담당자 선춘석 ☎ 286-6441】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육성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전남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벼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해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 육성및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수확기 벼 안전관리 및 품위유지 도모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사업 대상자 및 사업비(총괄)

가.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21~'22년 / 2개년 사업)

(단위 : 백만원)

시 군	대 상 자	총사업비	2021년 사업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4,850**	**6,600**	**4,644**	**697**	**1,625**	**4,644**	
담양	담양통합	6,500	3,260	1,304	196	456	1,304	
해남	해남농협	8,350	3,340	3,340	501	1,169	3,340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21~'22년 / 2개년 사업)

(단위 : 백만원)

시 군	대 상 자	총사업비	2021년 사업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7,900**	**4,920**	**1,760**	**294**	**686**	**2,180**	
담양	담양통합	4,000	2,400	960	144	336	960	
고흥	흥양농협	1,800	1,120	350	66	154	550	
고흥	흥양농협	300	300	120	18	42	120	자본자장고
장흥	천관농협	1,800	1,100	330	66	154	550	

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

(단위 : 백만원)

시 군	대 상 자	총사업비	2021년 사업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500**	**500**	**200**	**60**	**140**	**100**	
해남	황산농협	500	500	200	60	140	100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비 생산자단체는 '22년부터 융자지원 예정

2. 지원 자격 및 요건

※ '19년부터는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부여(붙임 6 참고)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공통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①, ②, ③ 동시 충족 조건)

- 다만,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①, ②를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자격 부여(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2007년부터 1개 시·군에 최대 2개소(농협 1, 민간 1)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계획과 벼 생산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 추가 가능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 개별기준

- 농협RPC : 통합RPC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단,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

②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RPC에 준해 지원 자격 부여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농협RPC 통합 추진 방안>

▶ 목표 : (현행) 135개소 → (목표) 120개소

▶ 대상 : 벼 생산량 1만톤 이상 118개 지역(36개소는 제외)

▶ 현황 : (완료) 39개소, (통합 중) 10, (연합) 10, (미 추진) 59

* 벼 생산량 1만톤 미만(36개소)는 인근 시·군 통합RPC에 참여(광역통합)

▶ 방안 : 3년간 연합RPC 운영(69개소) 후 통합법인 설립 추진

※ 우대자금 3년간 지원, 시설 개보수는 취급물량 5년 이내 조건부 충족

-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되는 시설 투자 또는 통합 추진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20년 신청자부터는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②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③ ’25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④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정부지원 RPC로 한정하여 지원

다. 별도요건(비 농협조직)

※ 신청자가 농협조직이 아닌 경우(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액(자본금)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

* 경과규정 :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비 농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운영실적 승계 인정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출자액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임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생산자단체로 전환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장함(권고사항, '22년부터 적용 예정)

※ 생산자단체 전환 민간RPC는 벼 매입자금 인센티브(무이자) 제공)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10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라. 지원제한 기준

○ 해당 시·군 벼 재배면적*이 RPC 및 DSC 진입기준** 중 지역기준(RPC 1,500ha, DSC 1,000ha)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벼 재배면적은 최근 시·군별 행정통계 기준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 참고

○ 당해연도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DSC 신청자 중 ② 정부지원 DSC, ③ 비RPC 농협, ④ 정부지원 RPC·DSC가 없는 시·군의 도정업체 등은 지원 가능

○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향후 10년간)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 · 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3. 지원대상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기존 정부지원 RPC 증 · 개축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감리, 기계 · 장비, 건축 · 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단, 특수미 도정라인 및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 가능)

* 통합RPC에 한해 10억 이상의 가공시설 개보수와 3억 이상의 소포장 라인 신설 및 증설 지원 허용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되, 별도 부지로 이전·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시설 활용계획(가공시설 폐쇄, 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 위성 가공시설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시 · 군

② 최근 5년간 도정시설 가동률이 80% 이상인 정부지원 RPC 사업자가 건립하는 가공시설

나. 벼 건조 · 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 · 저장시설 지원>

○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 및 기존 시설 증축(단순 개보수는 제외)으로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 · 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 · 토목, 감리 등
- 설치규모 : 조곡 기준으로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단, 저온저장시설은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가능)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입 · 출고시설, 건조시설,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노후화된 벼 건조 ·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 벼 건조 · 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 가능(대체 시설 설치시 일부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폐기하지 않고 활용 원칙)
*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만 설치 가능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엘리베이터, 체인 · 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벼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과 연계하여 집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된 연계 시설물의 경우, 5년 이내 폐쇄 및 신축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간이설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 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현미가공장, 백미가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 · 설비 · 장비류 설치 공사

- 현미부 :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 백미부 :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무세미 등) 등
- 포장부 및 제어부 :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PET 등 소포장기 포함),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 유통시설 · 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 · 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유통 및 위생시설 • 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RP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나. 벼 건조 · 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 · 저장시설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단, 컨설팅은 15백만원 이내로 제한)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하되 핵심 기계 · 설비 보호를 위한 면적으로 최소화

○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기계 · 장비별 설치 기준

- 입 · 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 · 건조 · 저장 · 출고 · 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 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DS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집진시설 설치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30㎎/Sm³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 시공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

5.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40%, 지방비 20, 자부담 50 또는 40
  * 통합RPC 및 저온저장시설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일반RPC 및 DS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단, 민간RPC 중 신청연도 직전 2개년간 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 A등급 RPC는 통합RPC에 준해 지원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3년

○ 사업주관 : 지자체장(시장 · 군수)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 · 저장 · 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 · 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저온저장고는 3억원,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2~5억원)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 · 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2021년 사업 신청자)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시 · 군]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RPC 등(2~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매년 12.31.까지)

사업자(신청업체)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해당 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 · 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농가조직화 등 들녘단위 공동농업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 · 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 · 반영

나. 벼 건조 · 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 · 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 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 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다.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라.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비 농협조직)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비 농협조직)

* 사업신청(2월28일) 총 5%, 가내시(9월5일) 추가 5%(총 10%), 보조금교부 결정 전(다음년도 2월28일) 추가 40%(총 50%)

* 비 농협조직의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 병행 사용 등)한 경우에만 인정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라.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시 · 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 · 도에 제출(매년 3.31.까지)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식량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 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 ·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첨부 제출

지자체(시 · 도)

○ 시 · 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매년 4.30.까지)

- 시 · 도지사는 해당지역 식량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 · 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aT에서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 →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 · 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매년 6.30.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현장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 · 군)
- 평가내용 : 계약재배농가 면담, 부지 및 투자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확인 사항과 서면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4단계 : 발표평가 >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 · 군)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 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10.까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매년 6.15.까지)

다. 사업비 심의 · 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 · 학 · 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 · 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 · 조정

○ aT는 사업비 심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25.까지)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세부 사업비 조정 및 통보(매년 6.30.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aT로 제출(매년 9.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매년 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 · 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15.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 · 도)

○ 사업대상 시 · 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0.까지)

지자체(시 · 군)

○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5.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2021년 사업 대상자)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 · 군에 승인 요청(매년 9.3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 · 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 · 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 이하는 자체 조정 가능, 15% 초과부터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 · 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 자 체

○ 시 · 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10.15.까지)

○ 시 · 도는 관할 시 · 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0.31.까지)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 · 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 · 군에 제출(매년 9.5.까지)
- 총 자부담의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 · 군에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 총 자부담의 추가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 · 군에 제출(자부담 50% 집행완료시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 · 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시행(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9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 · 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 • 시공

○ 설비업체 등 : 건축 · 건설 · 전기 · 통신 · 소방 · 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 • 감리 • 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나. 시행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 · 군 홈페이지, 관련 시행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사업자(농협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단,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다. 설계 · 감리 및 기계 · 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 ·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 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 · 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 · 장비는 사용 의무화)

라.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 · 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자체 성능시험 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협회 관계자의 입회와 결과 보고서 제출(농협중앙회 • 협회 → 지자체)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성능시험 대행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자체(시 · 군)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 · 도에 제출(매년 9.7.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시 · 도에 제출(매년 10.31.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시 · 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 · 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 · 군 토목 ·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 · 도)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9.1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1.1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 · 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15.까지)

※ 관련 인·허가 미완료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자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 · 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 · 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 · 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0.까지)

○ 시 · 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 · 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 · 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매년 12.25.까지)

○ 사 · 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5.까지)

* 단, 비 농협조직의 경우에는 시행업체 선정 이후에 통보 가능(다음년도 2.28.까지)

○ 사업자가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것을 확인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후 배정(수시)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 · 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 · 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 · 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매년 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수시)

5. 이행점검단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금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 · 도,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다음 연도 초에 시도(시군은 시도에 자료 제출)에서 농식품부에 정산보고시 중요재산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사업완료시 중요재산에 보조금 취득 사업임을 표시하는 명폐를 부착하여야 함

지자체(시 · 도 및 시 · 군)

○ 시장 · 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 ·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 ·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 · 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6. 사후관리단계

○ 시장 · 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준공일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5 ~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 · 용도변경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
부동산의 종물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준공일 부터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부터	5년간	

○ 모든 시설 · 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시설 · 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 · 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점검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 · 폐휴업 · 사업포기 · 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년 실적을 2월말까지 조사

< 붙 임 1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붙임 2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 colspan="2">업체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대표자</td><td colspan="2"></td><td colspan="2">전화번호
(휴대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법인 설립일</td><td colspan="2"></td><td colspan="2">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조직형태</td><td>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td><td>전년
매출액</td><td>00억원</td><td>계약재배
농가수</td><td>00호</td><td>대표
브랜드</td><td></td></tr>
<tr><td rowspan="6">신청내역</td><td colspan="2">사 업 명</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가공시설
현대화</td><td>계(백만원)</td><td colspan="2">국 고</td><td colspan="2">지방비</td><td colspan="2">자 부 담</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건조저장
시설</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사업별
규모</td><td>가공시설
현대화</td><td colspan="7"></td></tr>
<tr><td>건조저장
시설</td><td colspan="7"></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해당 시·군 일반현황

(2개 시·군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시·군 현황 모두 적시)

○ 지 역 : *시 · 도* *시 · 군*

○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가비율 등 기재*

○ 쌀 생산현황

- 재배면적 :
- 주 재배품종명 :
- 생산실태 : *쌀 전업농 현황, 생산법인 현황 등 기재*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세부 생산현황>

구 분	농가 (호)	벼 재배면적 (ha)	생산량(톤)		생산비중(%)	
			조곡	정곡	전국대비	시 · 도대비

* 최근 3년 실적 기재

○ 쌀 산지 유통현황

- 관내 산지유통업체 현황 : *RPC, DSC, 임도정업체, 가공·판매하는 생산법인 등 기재* - 각 산지유통업체 현황

순위	업체명	구분	법인격	취급규모(톤)		시설능력		
				연간 벼 매입량	수확기 벼 매입량	건조 (조곡톤)	저장 (조곡톤)	가공 (정곡톤)
1		*RPC, 임도정업체 등*	*조합공동법인, 농협, 영농법인 등*					
2								
…								

- 생산 처리현황

구분	총생산량 (A+B+C)	자가소비 (A)	공공비축 (B)	민간매입(C)		
				농협RPC	민간RPC	기타
물량(조곡톤)						
비율(%)	100					

나. 해당 시·군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향후 5년)

○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요약해서 기재*

다.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ha)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라. 신청RPC 사업실적

○ 운영실적

구분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 최근 3년 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 · 유통실적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구분	브랜드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계	-			

○ 시중 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실적 기재)*

- 계약재배 매입량 및 그 중 친환경쌀 매입량: *조곡 00톤*

-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 매입량/RPC 총 매입량 × 100)*

- 친환경쌀 매입비율 : *%(친환경쌀 매입량/계약재배 매입량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세부내용

조직명(단지명)	참여 농가수 (호)	약정현황		약정 중 RPC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재배면적(ha)	생산량 (톤)		
합계					

* 계약재배는 서면약정 기준, 농가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계약재배 쌀전업농수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여건분석

○ 해당 RPC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RPC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주요 실적목표>

구분	총 생산량	벼 매입 물량	매출액	손익	계약재배				
					약정		RPC 매입		재배 단지수
					면적	생산량	물량	전체 매입량 대비 계약물량비율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대표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대표브랜드		품질지표			
	대표브랜드 물량	총 취급물량 대비 대표브랜드비율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함량 (%)	재배 품종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고품질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 야적 현황, 야적벼 가공 및 판매현황, 향후 5년간 저장시설 확충 계획 등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매입 현황, 향후 5년간 매입물량 확대 계획 등

○ 수확기 반입예약제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반입예약제 운영 현황, 향후 5년간 확대 계획 등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사업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자체보조	자부담
시설현대화 또는 벼 건조저장시설	감리 및 컨설팅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합계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처리용량 5~10톤/hr)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협회 등에서 지도, 점검

나. 부지확보 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확보완료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조건부	o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o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가능.
	농어촌정비법	기 타	조건부	o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o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o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o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조건부	o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o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o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o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o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 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o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o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 승인신청”에 의함. o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o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 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o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환경영향평가법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조건부	o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o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타	문화재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o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o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저감 대책 제출.
기타사항	[건축관련] o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o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o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o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다. 세부 시행계획

○ 시설현대화 계획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현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소계						
2-2) 백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현미부, 백미부 등)						
- 회의실						
-						
소계						
3-2) 토목및소방등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벼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통합RPC가 잉여가공시설을 DSC로 전환할 경우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마.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 · 군은 반드시 시장 · 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붙 임 2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집진시설 개보수) 신청서

<table>
<tr><td rowspan="8">신청자</td><td colspan="2">업체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대표자</td><td colspan="2"></td><td colspan="2">전화번호
(휴대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법인 설립일</td><td colspan="2"></td><td colspan="2">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조직형태</td><td>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td><td>전년
매출액</td><td>00억원</td><td>계약재배
농가수</td><td>00호</td><td>대표
브랜드</td><td></td></tr>
<tr><td rowspan="2">집진
시설
현황</td><td>RPC</td><td colspan="7">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및 설치년도(또는 개보수 시기)</td></tr>
<tr><td>DSC</td><td colspan="7">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및 설치년도(또는 개보수 시기)</td></tr>
<tr><td rowspan="3">신청내역</td><td colspan="2" rowspan="2">사업비</td><td>계(백만원)</td><td>국 고</td><td>지방비</td><td colspan="3">자 부 담</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업별
규모</td><td colspan="7">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 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ha)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

○ 집진시설 설치 현황

설치 위치(용도)	집진기 종류	설치년도	집진휀용량 (㎥/min)	동력(HP)	노후 상태 (기능 저하 내용)
현미부	*싸이클론*	*1998*	*120*	*7.5*	
원료조선기	*백필터*	*2001*			
정미기	*통합집진기*				
왕겨풍구					

* 설치위치 : 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현미.백미석발기, 정미기, 연미기, 원료투입구, 원료조선기, 원료정선부, 건조기 중 해당사항 작성(예시중 해당사항이 없을 시 별도 입력 가능 단, 이송기기, 탱크류 등 집진시 해당 공정 작성)
* 설치년도 : 수리 또는 교체 등 보수가 이루어진 년도 표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준공년도 표기)

2.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집진시설 개보수 필요성

- 노후도, 집진방식, 민원 발생 등 개보수 필요성 기재

○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기존 집진시설 교체 대상 상세 내역(집진기 개수, 교체 시설, 집진방식 변경 등)
- 개보수 소요기간, 개보수에 따른 기존 시설 가동중단 등 피해 최소화 계획
- 개보수에 따른 개선 효과 등

○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						
소계						
3. 건조시설						
-						
-						
소계						
4. 저장시설						
-						
-						
소계						
5. 가공시설						
-						
-						
소계						
6. 소방 및 전기공사						
-						
-						
7. 기타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사업추진 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3.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 · 군은 반드시 시장 · 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관련 사진(전경사진 및 세부사진), 기존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붙 임 3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서면&발표 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20점)	15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적절한가? - 지역내 식량산업 구조와 사업신청자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 생산구조 발전방안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통구조 발전발안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식량산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 시 · 군 단위 생산조정제 참여계획 및 목표는 적절한가? - 지역내 논 타작물 재배 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 (매우 우수 : 15% 이상, 우수 : 10% 이상, 보통 : 7% 이상, 미흡 : 5% 이상, 매우 미흡 : 5% 미만)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점)	10	○ 고품질 원료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은 적절한가?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10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10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10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수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10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시행 계획 적절성 (20점)	10	<부지선정 적절성>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건축 및 시설 적절성> ○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R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4. 종합 의견 (10점)	10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들녘의 공동농업경영체와 지역 대표 브랜드 경영체로 성공 가능한가? ○ 정상적으로 연내에 사업(공사)가 완료 가능한가?
합 계	100	< 최종점수 산정방법 >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붙 임 4 >

평가위원 평가의견서

□ **평가대상 :** □ **평가자 :** (서명)

평가 항목	배점	평가의견	평점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20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		
3. 시행 계획 적절성	20		
4. 종합 의견	10		
합 계	100		

< 붙 임 5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양곡)입니까?		
운영 실적	가공시설	최근 3년간 평균 벼 매입량이 1만톤 이상입니까?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입니까? (미 충족시 당해연도 쌀 판매계획 7,500톤 이상이 있는지로 대체 가능)		
		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입니까?		
		2007년부터 동일 시군에 지원한 개소수가 5개소 이내입니까?		
		농협RPC : 통합 또는 통합 추진 중에 있나요?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 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하나요?		
		금년도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신청하였나요?		
	벼 건조·저장시설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입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인근의 정부지원 RPC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에 대한 출하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법인요건 (비 농협조직)		총 출자액이 6억원(DSC는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DSC는 5년) 이상입니까(경과규정 적용)? (최근 10개년(또는 5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 기준)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법인은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인가요?		
지원 제한 기준 (대부분 '19년 신청부터 적용)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총 지원횟수가 3회를 초과하여 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자(포기는 신청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신청 제한)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 · 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19~'21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류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 규모	가공시설	기존 정부지원 RPC이고,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입니까?		
		(위성가공시설)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지역이고, 도정시설 가동율이 80% 이상입니까?		
	벼 건조 · 저장시설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이나 기존 시설 증축입니까?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입니까?		
		단순 개보수입니까?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 설치하는가?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자부담	농협조직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비 농협조직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5%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사업신청단계 총 5%, 가내시 이전 총 1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단계 총 50%)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시설 검토	공통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DSC는 15백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야적물량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가공시설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벼 건조·저장시설	건축공사가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었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2. 기본설계도(간이 설계도)		
		3. 조감도		
		4.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5.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6. 법인등기부등본		
	7.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8.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9. 지적도		
	10.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13.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14. 최근 5년간 결산재무제표		
	15. 최근 5년간 벼 매입량		
	16. 최근 5년간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17.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18. 지방세 납세증명서		
	19. 기본요건 점검표		
	20.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21.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2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3.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지자체 준비서류) 24.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2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6.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27.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붙 임 6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I.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쌀 이외 식량작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 하에서 생산·가공·유통 계획 수립 부재 및 지역 내 적정투자 소요 검토 미흡, 농가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 및 중장기 계획 하에서 체계적인 투자 부족

❑ 시·군별로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시설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 단위의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

○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위주로 수립

○ 지자체 주관으로 5개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 그동안 5개 시범지역* 선정 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실시

* 5개 시범지역(당진, 김제, 익산, 해남, 경주) 선정 후 예시 모델 제시

○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18.3 ~ 8월

○ 권역별 순회 설명회(3개 권역, 300여명) : '18.9.4 ~ 9.7(3일간)

○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등 안내 : '18.9.11(수)

○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 '18.11.19(월)

- 개별 시•군별 계획수립 및 협의회 실시 : '18.9월 ~ 11월

○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실시 : **4회, 42개소 선정**

- ‘18년 종합계획 평가 · 선정(**5개소***) : ‘18.12월

  * (경기) 여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 (경북) 경주시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평가 · 선정(**10개소***) : ’19.3월

  * (경기) 안성시, 파주시, (충남) 홍성군, 공주시, (전북) 김제시, 고창군, (전남) 장흥군, 해남군, 고흥군, (경남) 산청군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재평가 · 선정(**12개소***) : ’19.6월

  * (세종) 세종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 (전북) 군산시, 진안군,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경북) 안동시, (제주) 제주

- ’19년 하반기 종합계획 평가 · 선정(**15개소***) : ’19.12월

  * (경기) 평택시,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전북) 익산시, 부안군, (전남)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 (경북) 의성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함양군, 창녕군

Ⅱ. 식량산업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수립절차

❑ 주요 내용

○ 시 · 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지역단위 식량산업과 관련된 생산 · 유통 관련 유관기관 · 품목별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경과 포함

○ 지역 내 식량산업에 대한 생산 및 유통현황 기초분석, 품목별 생산조정제에 따른 생산계획 등

○ 미곡분야 생산 및 유통 체계화는 거점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 계약재배단지 및 들녘경영체 육성을 농가조직화 방안, 생산지도 계획, 마케팅 전략,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식량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는 타 작물 전환 계획,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방향, 공동경영체 및 공선출하회 등을 통한 농가조직화 방안, 마케팅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 운영 효율화 계획 등 제시

❑ 수립절차

❑ 계획수립 방향 및 운영 체계

○ **(성격)**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임

○ **(시간적 범위)** 수립 · 승인년도부터 5개년

○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주체)**

- 계획 수립은 지자체 · 조직이 자율적 수립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품목 : 미곡, 밭작물(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원예작물은 제외

○ **(재정적 범위)** 지자체의 경우 지역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과대 계획은 지양

○ **(계획 선정 · 평가)**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및 이행평가 실시

- (심사) 3단계(서면-현장-발표) 나눠서 심사평가 진행
- (승인요건)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승인

○ **(계획의 효력)** 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와 RPC 및 DSC,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참여농가에 대해 아래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하거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연계 지원사업(안)

사업명	세부사업	연계방식	적용시기	비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지원	신청자격	2021년	보조
	시설장비 지원	신청자격	2020년	
	사업다각화	신청자격	202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RPC 시설현대화	신청자격	2019년	
	DSC 시설지원	신청자격	2019년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가 점	미정	
공공비축미 배정		우선배정(일부)	미정	제도
정부보급종 공급		우선배정(일부)	미정	
RPC 벼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등	2019년	융자
농기계사업		가 점	미정	

○ **(평가환류)** 先 계획 - 後 지원 원칙하에 매년 이행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 점검

- 이행평가 과정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목표조정 및 변경, 보완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 구축
- 이행평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지원 보류

Ⅲ. 선정 · 평가절차

❑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을 통한 다단계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실시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

❑ 단계별 평가절차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평가
내·외부 평가위원		농식품부 또는 aT, 외부평가위원		내·외부 평가위원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1단계 : 서면평가(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 평가자 :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 평가내용 :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 시 · 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 등의 적정성
-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평가 1회 면제

❑ 2단계 현장평가(서면평가를 통과한 시・군)

-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자 :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 · 유통체계화, ⑤ 밭작물 생산 · 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현장평가 1회 면제

❑ 3단계 발표평가(현장평가를 통과한 시・군)

-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 평가자 : 산 · 학 · 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 · 유통체계화, ⑤ 밭작물 생산 · 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선정

< 참고 1 > 목표 지표(안)

❍ 공통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농가조직화	들녘경영체 재배면적(비중)	
		계약재배(약정출하) 면적(비중)	
		공동영농 면적(육묘, 이앙, 방제, 수확 등)	각 항목별 제시
	적정・고품질 생산	쌀 생산조정 면적(비중)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비중)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RPC 수확기 매입량(비중)	
		생산량 대비 저장시설 용량(비중)	상온, 저온 구분
		관내 RPC 수	통합 등
		RPC 취급량 대비 공동(대표) 브랜드 출하량(비중)	
밭작물	농가조직화	밭작물경영체 재배면적	공동 출하조직
		공동출하실적(매출액)	
	고품질・안전 생산	품목별 생산면적 또는 비중 / 계약재배 면적 또는 비중	
	유통・가공・소비	관내 생산량 대비 유통시설 경유율	품목별 기준 설정
		공동브랜드 판매실적(매출액)	

❍ 자율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농가조직화	수탁사업 면적(비중)	
		대표브랜드 계약재배 면적(비중)	
		· · · · · ·	
	적정·고품질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질소질 비료 저감율	저감 계획
		공동육묘량	
		· · · · · ·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현대화시설 RPC 정곡출하량(비중)	
		고품질쌀완전미 비율	감축 계획
		지역 내 소비량	로컬푸드, 급식 등
		· · · · · ·	
밭작물	농가조직화	공동출하실적(매출액)	
		수탁사업 면적(비중)	
		농작업 기계화율	
		· · · · · ·	
	고품질·안전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 · · · · ·	
	유통·가공·소비	식량작물 전문 유통조직 실적(매출액)	품목별 기준 설정
		대표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지역 내 소비량	
		· · · · · ·	

< 참고 2 > 선정지표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사업계획 (25점)	1.1.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적절성(10점)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		2~10
	* 식량산업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점)		
	* 지자체, 거점유통조직, 참여조직, 농가조직 등의 역할분담 체계는 적절한가?(5점)		
	1-2.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15점)		2~10
	*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10점)		1~5
	* 지자체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5점)		
2. 실행계획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2~10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10점)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	2~10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10점)	
		브랜드 육성 계획	1~5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는 적절한가?(5점)	
		적정시설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계획	1~5
		* RPC 및 DSC 등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5점)	
	2-2. 밭 식량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타작물 전환 및 전략품목 육성	2~10
		* 타 작물 전환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지역단위 식량작물의 전략품목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10점)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1~5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조직화, 이를 위한 생산지도는 적절한가?(5점)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방향	1~5
		* 품목별 대표 유통조직은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대표조직 육성을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5점)	
		마케팅 차별화 계획	1~5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5점)	
		시설운영 효율화	1~5
		* 산지유통시설 등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5점)	
3. 투자계획 (15점)	3-1.연차별실행계획(5점)		1~5
	* 연차별 실행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은 적정한가?(5점)		
	3-2.종합평가(10점)		2~10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10점)		
가점 (10)	GAP,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		0~5
	* GAP, 친환경 합산 재배면적 비율은 10% 기준으로 2%p 상승시1점씩 부여 (최대 5점)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조례 등 활성화 노력		0~5
	* 조례제정시 3점, 기타 노력 2점 (최대 5점)		
합 계			100점(110점)

< 참고 3 > 이행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이행 실적 (25점)	1.1 이행실적 보고서 적정성(10점) * 이행실적보고서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첨부하였는가? (15점)		3~15
	1-2.자율평가보고서 적절성(10점) * 자율평가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는가? 자율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10점)		2~10
2. 성과 목표 달성도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이행하였는가?(10점)	2~10
		RPC 운영효율화 및 거점화 이행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10점)	2~10
		브랜드 육성 및 통합 이행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를 이행하였는가?(5점)	1~5
		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2-2. 밭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 선정 *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의 생산계획은 적절하게 추진하였는가?(10점)	2~10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 농가조직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지도는 추진하였는가?(5점)	1~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의 실적은 향상되었는가?(5점)	1~5
		마케팅 차별화 실적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추진실적은 보유하는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3. 연차별 추진성과 (15점)	3-1.연차별 실행관리 방안(5점) * 연차별 사업추진 달성을 위한 실행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5점)		1~5
	3-2.종합평가(10점)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은 적정한가?(10점)		2~10
합 계			100점

2. 「전남 10대 브랜드쌀」 평가·선정

【담당자 선춘석 ☎ 286-6441】

우리 도를 대표하는 10대 브랜드쌀 선정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대도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전남쌀 판매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 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한 심층평가 실시

○ 선정된 브랜드는 다양한 홍보로 전남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

※ 전국 브랜드쌀 선정방법 등 개선방안 검토 중(농식품부)으로 기준 변경 예정

☐ 추진계획

가. 시군 추천자격

○ 종자산업법에 의해 국가품종 등록이 된 브랜드

○ '20년 단일브랜드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브랜드

○ 포장 단량이 4~20kg 단위로 연중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 양곡표시제 등 위반업체, 소비자가 15만원/20kg이상 고가 브랜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브랜드는 시군 추천시 제외**

나. 평가방법

○ 평가기간 : '21. 2. ~ 6월중

○ 평가항목 : 품종혼입율, 식미평가, 품위평가 등

*** 잔류농약 및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현장평가 점수 미달 브랜드는 선정 제외**

☐ 선정 및 인센티브

○ 분야별 평가기관에서 통보된 브랜드별 평가점수(순위)를 합산하여 선정

○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쌀』은 인센티브 지원, 공동 마케팅 추진

- 경영체별 홍보비, 포장재 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개소당 10~30백만원)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우선 추천 및 TV, KTX 등 언론 공동 홍보(연중)

<제출서식>

전남 10대 브랜드쌀 신청서

(시군마크) 000시군

<table>
<tr><td rowspan="4">신청단체
정 보</td><td>업 체 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0000
(세)</td></tr>
<tr><td>업무담당자</td><td colspan="2"></td><td>업무담당
연락처</td><td>010-</td></tr>
<tr><td>업체이력</td><td colspan="2">-
-</td><td>매출액
(재무제표)</td><td>’19) 억원
’20) 억원</td></tr>
<tr><td>시설현황</td><td colspan="2">-
-
-</td><td>인증현황</td><td>- (’00)
-
-(친환경)</td></tr>
<tr><td>신 청
브랜드명</td><td>000000쌀
(히토메보레)</td><td colspan="4">-(특징)
-
-</td></tr>
<tr><td rowspan="5">제 품
정 보</td><td rowspan="5">
</td><td colspan="2">< 표시사항 ></td><td>생 산 자</td><td></td></tr>
<tr><td>품 종</td><td></td><td>주 소</td><td></td></tr>
<tr><td>중 량
(포장단위별)</td><td>000kg</td><td rowspan="2">계약재배</td><td rowspan="2">’17) ha
’18) ha
’19) ha
’20) ha</td></tr>
<tr><td>매 출 액
(브랜드쌀)</td><td>억원</td></tr>
<tr><td>소비자가
(포장단위별)</td><td>000kg

</td><td>원
</td><td rowspan="2">택배비
원</td></tr>
<tr><td>생산 및
판매계획</td><td colspan="2">계약재배 : ha
농가벼매입 : t/ 호
교육실적 : ’19) , ’20) 회</td><td>판매
계획</td><td>온라인, 개별판매 등
자율 기재</td></tr>
<tr><td rowspan="7">판매처
*도내 및 광주권 판매처 5개이상 포함</td><td>매장명</td><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온라인</td><td colspan="2">www.00000.kr</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붙임 : 증빙서류 일체 각 1부

ㅇㅇ시장 · 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연도별『전남 10대 브랜드쌀』선정 현황

구분 / 연도별	브 랜 드 명(시군)
2005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드림생미(나주), 천명(강진), 달마지쌀(영암), 황토랑쌀(무안), 건강백세(해남), 참사랑해말그미(영광), 나비쌀(함평)
2006년	한눈에반한쌀(해남), 프리미엄호평(강진), 쌀의보약(무안), 황토랑(무안),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드림생미(나주), 참사랑해말그미(영광), 달마지쌀(영암),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백련미인쌀(무안)
2007년	한눈에반한쌀(해남),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쌀의보약(무안),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라이스큐(고흥), 달마지쌀(영암), 아르미쌀(장흥), 드림생미(나주)
2008년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굴비골진상미(영광), 한눈에반한쌀(해남), 하늘아래한쌀(영암), 쌀의보약(무안), 나비쌀(함평), 드림생미(나주), 왕건이탐낸쌀골드(나주)
2009년	달마지쌀골드(영암), 하늘아래한쌀(영암), 드림생미(나주), 봉황쌀(강진), 프리미엄호평(강진), 굴비골진상미(영광),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한눈에반한쌀(해남),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랑해미(고흥)
2010년	드림생미(나주),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굴비골진상미(영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프리미엄호평(강진), 달마지쌀골드(영암), 아르미쌀(장흥), 황토랑쌀(무안)
2011년	황토랑쌀(무안), 달마지쌀골드(영암), 나비쌀(함평), 프리미엄호평(강진), 대숲맑은쌀(담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아르미쌀(장흥), 드림생미(나주)
2012년	대숲맑은쌀(담양), 아르미쌀(장흥), 달마지쌀골드(영암),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나비쌀(함평), 하늘아래한쌀(영암), 프리미엄호평(강진),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황토랑쌀(무안), 한눈에반한쌀(해남)
2013년	나비쌀(함평),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달맞이쌀(영암), 드림생미(나주), 대숲맑은쌀(담양), 아르미쌀(장흥),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프리미엄호평(강진), 한눈에반한쌀(해남), 황토랑쌀(무안)
2014년	대숲맑은쌀(담양), 드림생미(나주),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프리미엄호평(강진), 한눈에반한쌀(해남), 황토랑쌀(무안), 나비쌀(함평), 아르미쌀(장흥), 달맞이쌀(영암), 녹차미인보성쌀(보성)
2015년	프리미엄호평(강진), 수호천사건강미(고흥), 대숲맑은쌀(담양), 황토랑쌀(무안), 드림생미(나주),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하늘아래한쌀(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달마지쌀골드(영암)
2016년	나비쌀(함평), 대숲맑은쌀(담양), 프리미엄호평(강진),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황토랑쌀(무안), 달맞이쌀(영암), 아르미쌀(장흥), 한눈에반한쌀(해남),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드림생미(나주)
2017년	대숲맑은쌀(담양), 나비쌀(함평), 달마지쌀골드(영암), 한눈에반한쌀(해남),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프리미엄호평(강진), 녹차미인보성쌀(보성), 사계절이사는집(영광), 황토랑쌀(무안), 아르미쌀(장흥)
2018년	한눈에반한쌀(해남), 대숲맑은쌀(담양), 나비쌀(함평), 황토랑쌀(무안), 수호천사건강미(고흥), 프리미엄호평(강진),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달마지쌀골드(영암), 갯벌에여문쌀(진안)
2019년	한눈에반한쌀(해남), 대숲맑은쌀(담양), 나비쌀(함평), 황토랑쌀(무안), 나주누리(순천), 프리미엄호평(강진), 사계절이사는집(영광),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달마지쌀골드(영암), 자연속에순미(화순)
2020년	대숲맑은쌀(담양),사계절이사는집(영광), 황토랑쌀(무안), 녹차미인보성쌀(보성), 달마지쌀골드(영암), 프리미엄호평(강진),나비쌀(함평),한눈에반한쌀(해남), 백세미(곡성),자연속에순미(화순)

3.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

【담당자 선춘석 ☎ 286-6441】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톤백 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보관창고 개보수 등 관련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톤백수매 기반구축

□ 추진방향

○ 톤백 수매가 가능하도록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추진

○ 마을단위 톤백 저울지원으로 톤백 수매 기반구축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00동(창고 개보수 50동, 톤백 저울 50기)

○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70, 자담 540)

- 창고 개보수 : 800백만원(16백만원 × 50동)

※ 창고 1동당 2개 출입문 개보수 원칙, 설계·시방서를 통해 창고문 1개 사업비 기준은 최대 8백만원 이내

*** 창고 개보수 시 캐노피, 방충망, 쥐막이판, 바닥·경사로 공사(지게차 출입) 반드시 포함**

- 톤 백 저 울 : 100백만원(2백만원 × 50기)

구 분	사업별 지원 내역(백만원)				비고
	계	도비(10%)	시군비(30%)	자담(60%)	
계	**900**	**90**	**270**	**540**	
창 고 개보수	800	80	240	480	
톤백 저울	100	10	30	60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30%, 자담 60%

○ 지원대상 : (창고문개보수) 정부양곡창고주, (톤백저울) 공동이용 마을 및 농협

○ 사업내용 :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및 톤백저울 구입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량 : 100동(창고 개보수 50동, 톤백 저울 50기)

○ 사업대상

- 창고문 개보수 : 정부 양곡창고 계약자(창고주)
- 톤 백 저 울 : 공동 이용이 가능한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농협장)

○ 사 업 비

① 창고문 개보수

- 창고문 개보수는 출입부분 바닥·경사로, 철문(레일), 방충망, 쥐막이판, 캐노피 등을 포함 창고문 1개당 최대 8백만원 이내
- 톤백용 지게차 출입 시 파손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바닥을 견고하게 하고, 창고문 높이를 톤백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시공

*** 특히 불용액 발생 시 톤백저울, 노면포장(창고 내·외), 지붕빗물 배수관(홈통), 벽체 페인트, 양곡 보관 창고 노후 시설물 수리(교체) 등으로 사업 추진하여 잔액발생 예방**

② 톤백저울 구입 : 톤백 1기당 구입비는 종류에 따라 최대 1.1~2백만원

- 톤백 저울은 1.5톤 / 눈금 측정단위 500g / 전자식 / 파레트 형식

*** 톤백저울은 기종별 가격차이가 상이함에 따라 시군에서 반드시 단가 확인**

○ 설계, 시공업체 선정

- (설계) 건축·건설관계법상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사용

  ※ 시군에서 현장 상황에 맞는 시방서를 제작 사업시행 가능

- (시공업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해 시공

  ※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시군별 시공·구입 업체 일괄 선정 가능

○ 감독·준공공무원 : 토목 · 건축부분은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준공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완료 보고 시 반드시 전·중·후 사진 첨부

-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타당성 검정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준용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 '21. 1. 25.한

○ 사업추진 실적 보고(시·군→도) : '21. 7. 5.한

○ 사업비 정산 보고(시·군→도) : '21. 12. 20.한

[보고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3. 25.한)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창고명	창고 소재지	창고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7. 5.한)

시군	사 업 자			사업량	추 진 실 적				비고
	창고명	창고 소재지	창고주		미계약	계 약 (월일)	착 공 (월일)	완 공 (월일)	

○ 사업비 정산보고(12. 20.한)

시군	사 업 자		사 업 비				집행액(천원)				잔액
	창고명	창고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진첨부 : 사업현장 전·중·후 사진

4. 전남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 지원

【담당자 선춘석 ☎ 286-6441】

수도권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및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한 전남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을 제작 각종 체험·판촉 행사에 활용

▢ 추진방향

○ 수도권 학교급식 및 대량 소비처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

○ 공공기관, 기업 구내식당 등 납품활동에 필요한 시식용 샘플 쌀 제공

○ 수도권 등 소비자 시식기회 제공 등 전남 쌀 판촉 활동에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량 : 샘플 쌀 120천개(500g/개) * 道 **홍보용 5,000개**

○ 사 업 비 : 360백만원(도비 54[15%], 시군비 306[85%])

○ 사업내용 : 홍보 시식용 친환경·브랜드 쌀 구입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 쌀·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

▢ 추진내용

○ 농협·영농조합 등 생산업체와 협의 브랜드 쌀 300~500g 포장단위 자체제작

- 학교급식, 공공기관 구내식당 납품, 소비자 시식체험 등에 활용

○ 샘플 쌀 활용은 행사 일정별로 필요량만 제작사용

- 홍보(배부)계획 수립과 수도권 기업체·대형마트·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공세적 홍보
- 담당 공무원은 사용처·사용량을 관리·감독하여 사업정산
- 전남 쌀 판매확대를 위한 도 단위 홍보·시식 행사에 샘플 쌀 적극 지원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 '21. 1. 25.한

○ 사업추진 실적 보고(시·군→도) : '21. 7. 5.한

○ 사업비 정산 보고(시·군→도) : '21. 12. 20.한

[보고서식]

○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7. 5.한)

구분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6.30.기준)				샘플쌀 수량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정산보고(12. 20.한)

<사업비 집행내역>

구분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주요 행사 추진실적>

- 서울 등 수도권 : 회,
- 타 시도 :

<문제점, 개선사항, 수범사례>

-

5.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담당자 선춘석 ☎ 286-6441】

수도권 등 타 시·도로 판매되는 전남쌀에 대해 택배비 지원을 통해 평생고객 확보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대도시 소비자의 전남 쌀 평생고객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유기농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타 시도 학교급식 공급업체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사 업 량 : 1,700천 포대

○ 사 업 비 : 2,550백만원(도비 382.5[15%], 시군비 2,167.5[85%])

○ 추진방법 : 시군 택배 단가 통일, 업체는 시군에서 계약

○ 지원단가 : 1,500원/포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명품쌀・전남 10대 브랜드쌀, 시군 대표 브랜드 쌀
- 친환경인증쌀(무농약・유기농 쌀), 전남지역 외 학교급식용 납품 쌀
- 「남도장터」 전남쌀 향우 전용 몰을 통해 판매되는 쌀(쌀 브랜드에 제한 없이 지원)
- 홈쇼핑, 단체급식 등 광주·전남 외 지역 대규모 납품 쌀

※ 지원 제외 대상자 : 광주·전남지역 구입자, 원료곡유통업자, 도·소매상인

○ 지원방법 : 생산자단체에서 택배비를 신청하면 시군은 증빙자료 확인 후 집행

※ 시군에서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보조금을 연초에 일괄 선 지급하는 사례 금지

○ 지원시기 : 택배비 지원 신청업체에 대하여 매월 집행 원칙

▢ 시군 추진사항

○ 택배비 보조금 집행 시 운송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집행

○ 택배비는 RPC 등 공급업체의 요청에 의해 시군에서 직접 집행원칙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 '21. 1. 25.한

○ 사업추진 실적 보고(시·군→도) : '21. 7. 5.한

○ 사업비 정산 보고(시·군→도) : '21. 12. 20.한

[보고서식]

○ 사업추진 실적 보고(7. 5.한)

구분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실적(6.30.기준)				택배 수량 (톤)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정산보고(12. 20.한)

<사업비 집행내역>

구분	사업비 계획(천원)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지원 업체별 집행 내역>

계		농 협		영농법인		개별업체		기 타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지원 브랜드별 집행 내역>

계		친환경 쌀		10대 브랜드쌀		시군 브랜드쌀		기 타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수량	집행액

6. 공공비축미곡 매입 벼 도정수율 결정

【담당자 정중기 ☎ 286-6442】

공공비축미곡 매입 벼 도정수율 결정을 위한 공시료를 시군별·품종별·등급별로 채취하여 도정수율 결정 자료로 활용

※ 근 거 : 정부관리양곡 도정수율시험실시요령(농식품부)

☐ 추진일정('21년산 기준)

○ 공시료 배정(농식품부 → 도 → 시·군) : '21. 12. 10.(잠정)
- 조사기준일 : 전국 매입실적이 매입계획량의 70% 이상 된 시기

○ 공시료 채취 및 혼합(시군, 농관원) : '21. 12. 27.까지

○ 공시료 수송(시·군 → 도) : '21. 12. 28.까지

○ 혼합 및 수송(도 → 시험연구소) : '21. 12. 30.(예정)

○ 도정수율 결정통보(농식품부 → 도) : '21. 3월 이후

☐ 추진방법

○ 실시기관 : 주관 도(협조 : 시·군), 입회 농관원 지원(시·군 사무소)

○ 채취대상 : '21년산 공공비축 매입벼

○ 조사단위 : 시·군별, 곡종별, 품종별, 등급별 구분 실시

○ 조사반 편성 : 본 업무에 능숙한 시·군, 농관원 직원 각 1명씩

○ 채취장소 선정
- 채취 대상지 선정표에 따라 창고 재고량 비율에 의거 채취장소 선정
- 채취대상 창고 보관물량은 채취대상 표본 가마수의 10배 이상 보유

○ 창고 및 채취더미 선정
- 채취장소에 보관창고가 2동 이상일 때는 보관물량이 많은 창고에서 채취
- 채취더미는 당해 창고에서 수량이 많은 더미를 선정 채취
- 추출방법은 더미의 상·하 각 1단을 제외한 노출부위 50%, 내부 50% 채취

○ **실중량 조사**

- 매 가마에 대한 실중량을 조사하되 쥐 피해품, 포장 파손품 등 비정상품 제외
- 조사결과는 곡종별·등급별로 평균한 후 수량비율에 의한 창고별로 구분 표시한 후 가중평균 중량을 산출
- 합성수지대의 매 가마 중량은 채취 장소별로 표본 추출물 중에서 출하자가 각기 다른 20가마를 발취하여 포장재 중량을 검근, 평균치로 사용하고, 표본 추출물이 20가마 미만은 50%의 포장재 중량을 검근 실중량 조사
- 저울은 50g 단위의 저울을 사용하되 정확성 여부 확인(톤백은 조사 생략)

○ **공시료 채취 및 혼합**

- 곡종별, 품종별, 등급별로 가마당 3kg씩 채취(톤백은 포대별 10~20kg)
- 공시료 채취로 감량된 가마니를 등급별로 중량화 하여 정상화시킨 후 가마에 “검”자 증인을 날인 별도 보관
-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는 전체물량을 한곳에 모아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균질 혼합 후 40kg 또는 대형포대 포장(발송용은 대형포대 사용)
- 품위 조사용 공시료 견본 채취는 공시료 채취와 병행 곡종별, 등급별로 균질 혼합 후 각각 2kg의 공시료 견본을 채취 봉함하여 농관원과 상호 서명날인 후 공시료 수송시 도에 인수인계

□ 공시료 취급관리

○ **(꼬리표)** 배부된 꼬리표 1매를 넣고, 외부는 포장지 전면에 흑색 매직으로 명기(년산, 곡종, 등급, 중량, 시군 등)

○ **(봉인)** 배부된 백색 봉함지에 서명날인 후 공시료 포대의 조리개 부위에 감아서 봉인(스카치 테이프 감기)

□ 공시료 수송(도 발송) 및 시·군 보관

○ **(공시료 수송)** 채취량 중 도 발송분은 ’21. 12. 28.(화) 10:00까지 나주시 동수농공단지 내 미가원 도정공장(나주시 기능길 20)에 인계인수(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공시료 보관)** 시·군 보관분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품위에 이상이 없도록 분임양곡관리관 책임하에 1급 이상 창고에 보관(도난, 쥐피해, 화재피해 없도록 관리 주의)

☐ 공공비축미 가공기별 도정수율 결정 통보

○ **(도정수율 결정)** 농식품부에서 통보한 기별 도정수율 결정에 따라 농관원에서 조사한 시·군별 원료품위로 지대별 도정수율 결정

○ **(지대구분 결정)** 공공비축 매입벼가 동일 등급이라도 시·군에 따라 제현율 및 수율에 차이가 있어 도정수율 결정시 지역별 편차를 두기 위해 지대 구분(도에서 농관원과 협의 결정)

- 지대구분 : 농관원 원료 품위내용(벼 제현율) 기준으로 한 품위 순위에 따라 곡종별,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내 전 시·군의 지대를 분류한다. (도별 지대수는 해당 시군 ÷ 3, 1지대, 2지대, 3지대 등)

○ **(도정수율 결정 통보)** 도는 유형별(밥쌀용, 가공용), 품종별(2개품종, 혼합벼), 등급별(특등, 1등, 2등), 지대별(1,2,3,4지대, 평균), 기별(1기, 2기, 3기 등)로 도정수율 결정표를 통보(시·군, 농관원)

☐ 행정사항

○ **(공시료 채취 준비사항)** 시·군은 칼, 바가지, 매직펜, 헌PP포대(40kg), 견본 채취용 봉투, 꼬리표, 테이프 등

○ **(사전 제출사항)** 원료중량 실태조사표, 공시료 채취 창고별 현황(분임양곡관리관 작성), 공시료 채취 창고별 작업 확인서 등

○ **(사후 제출사항)** 공시료 인수증, 품위조사용 견본 시료

- 공시료 수송(도 발송)시 제출

7.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

【담당자 정중기 ☎ 286-6442】

정부양곡 안전보관 기자재를 완비하고 순찰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양곡 사고와 품질저하 사전 예방

※ 근 거 :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농식품부)

☐ 추진방향

○ 보관시설·기자재 및 주위 환경정비 강화로 안전관리 및 품위유지 도모

○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정기적인 순찰강화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세부 추진계획

○ 정부양곡 안전보관 지도점검

- 안전기(11~4월) 월 1회 이상, 위험기(6~9월) 순기별 1회 이상
- 정부 양곡보관 도급계약 창고(1,211동, '19.12.30.현재)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창고시설, 기자재 비치 여부, 품위 이상 유무(흡습, 충해 우려 발생여부)
  - 보관기술(더미의 배치, 크기, 병해충방제 적정여부, 청소 등)
  - 실 재고와 보관대장 일치여부 등 재고관리 사항
  - 화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방화·수방시설 보유상황 등

○ 환경정비 보완지도 확인(시·군, 농관원 합동)

- 기 간 : 춘기(2. 10. ~ 2. 28.), 추기(10. 1. ~ 10. 31.)
- 확인사항(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 적용)
  - 창고등급 사정 기준표 및 안전보관 기자재 비치기준 등
  - 보관실태 확인표(보관시설 등 16개 항목)

○ 일제 훈증소독 실시

- 기　간 : 춘기(5. 10. ~ 6. 30.), 하기(하곡매입 종료 즉시)
- 조　치 : 정부관리 양곡의 해충 방제요령에 의거 방제

○ 보관업자(관리인)교육

- 기　간 : 4월중
- 교육내용 : 보관요령 및 안전보관 대책 등

※ 수시교육 : 신규보관업자(보관도급계약 체결 즉시)

○ 정부양곡 사고예방 대책 추진

- 지도점검 : 월 1회 이상 시·군 자체점검(도 : 2회 상·반기)
- 추진내용 : 창고여건, 재고량조사, 창고주변 환경정리, 기자재 확보 등

□ 시·군 추진사항

○ 정부양곡 보관창고 일제조사(등급 재사정) 실시

○ 양곡보관업자 이행(준수)사항 교육 및 조치

○ 정부양곡과 농협 자체양곡 구분 및 관리 철저

8.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담당자 고미호 ☎ 286-6443】

정부관리양곡의 재고량 파악 및 재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 부정 유출 등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통해 효율적인 양곡관리 도모

☐ 추진방향

○ 실측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지 창고는 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양곡 안전사고 예방

○ 창고별 실재고량, 품위, 안전관리실태 등의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양곡 품위 유지와 안전관리 도모

☐ 추진개요

○ 조사기관 : 시장·군수

○ 조사대상 : 도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

○ 조사기준일 : 매년 3월 31일, 10월 31일

- 상반기 : '21. 4. 1. ~ 4. 10.(10일간)
- 하반기 : '21.10. 1. ~ 11.10.(10일간)

○ 조사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2인1조)으로 실사

☐ 세부추진계획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상반기 3. 25.한, 하반기 9. 25.한

○ 정부양곡 재고조사 사전준비 사항

- 조사반(담당자) 전원에게 조사 및 사고 조치요령 교육실시
- 기간내 완료토록 농관원과 합동으로 2인1조로 조사반 편성
- 각종대장 정리(양곡보관 상황표, 더미별 양곡적재 상황표 등)
- 창고봉인은 상반기 3.31, 하반기 9.30, 12:00~18:00까지 완료

❍ 재고조사 실시

- 조사반은 조사당일 창고별 양곡보관 상황표와 시·군 비치된 양곡보관대장, 양곡수불대장 등 관련대장과 대사 후 재고 수량란에 날인
- 창고별 보관상황표의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로 대사 후 재고 수량란에 날인
- 창고별 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양곡보관책임자로부터 더미별 양곡적재 상황표를 받고, 출입문 봉인
- 양곡보관 상황표와 양곡보관대장 및 실 재고량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실재고량이 재고수량보다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확인증 징구
- 조사결과 부정사고(재고량 부족, 양곡부패, 충해) 적발시는 출입문을 봉인하고, 고발 및 양특 사무규정에 의거 처리
- 수송도중, 양곡미인도, 가공중인 양곡이 있을 경우 모두 조사

❍ 재고조사 결과 보고

- 시장·군수는 창고별(공장별) 보관확인증을 보관상황표 및 관련대장과 상호 확인한 후 재고일람표를 작성하여 도에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

9. TRQ 가공용 현미 관리

【담당자 정중기 ☎ 286-6442】

TRQ 가공용 현미 보관과정에서 우려되는 병해충 발생 및 품질저하 요인 사전 예방 등 수입현미 보관 · 관리 강화

☐ 기본방침

○ 보관 시설장비 및 주변 환경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병해충 발생 등 각종 품위 훼손 요인 사전 방지

○ 창고별·연산별·국가별 구분관리 철저로 수입현미의 품질 유지도모

☐ 보관요령

○ 1급 이상 우수창고에 한해 보관 관리

※ 국내곡과 혼합보관이 불가피할 경우 더미별로 구분 적재

○ 필수 안전보관 기자재 비치

- 온·습도계 : 동당 3개, 곡온계 : 더미당 3개
- 수분측정기 : 1대, 점검용체 : 1개, 확대경 : 1개
- 훈증용 복포(덮개) : 동당 1개 이상

○ 정부관리양곡 적재기준을 준용 수입 연도별, 국가별, 수송 선박별 구분 적재

○ 더미의 구성은 “다”형으로 하고 더미의 크기는 가로+세로가 12m 이내로 하며, 높이는 더미 상단과 처마도리 사이를 동절기(11~익년 4월) 1.5m, 하절기(5~10월) 2.0m 이상으로 하되, 6~8월에 입고될 경우 최고 높이를 3m로 함

- 더미 구성예시("다"형) -

평 면 도		측 면 도	
짝 수 단	홀 수 단	짝 수 단	홀 수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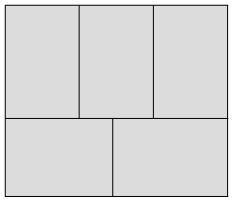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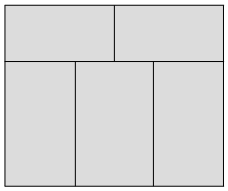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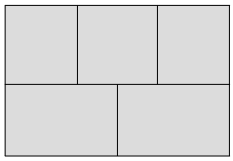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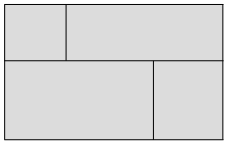

☐ 안전관리

○ 창고별로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 강화

- 품질실태조사, 보관창고 이상 유무, 수해 및 재해대비사항 등

○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에게 다음사항 준수 지도

- 적정 온습도 유지, 곡온 측정, 쥐피해 방지 및 통풍환기 실시
- 보관창고 환경정비, 창고관리요원 배치, 지시사항 이행 등

○ 양곡 보관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한 훈증 실시

- 월동 후 곡온이 15℃에 이르는 시기 해충의 활동 발견시
- 충분한 방제조치에도 번식이 중지되지 아니하고, 계속 증식되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훈증 재실시

☐ 시·군 추진사항

○ 매년 3~5월경 창고별 보관 희망 수요조사 실시

○ 정기점검(월 1회)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 보관 지도점검 강화

○ 이상 발견시 보고 등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의거 조치이행

10. 양곡표시 혼합 부정유통 지도 · 단속

【담당자 정중기 ☎ 286-6442】

수입산 및 국내산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관련 법에 의거 지도 단속을 통해 양곡표시제 조기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

☐ 주요내용

○ 국산과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로 양곡 유통질서 확립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로 품위유지 도모

※ 관련규정('15. 1. 6. 공포, '15. 7. 7. 시행)

「양곡관리법」 제20조의2·제20조의3 · 제20조의4, 제32조,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7조의4·제8조·제10조

☐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처벌

○ 상기 혼합 금지 위반시 제재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등

○ 혼합 판매 · 유통한 자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양곡의 거짓 · 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 ·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지도·단속 추진계획

○ 시　기 : 정기(3, 6, 9, 12월) 및 수시(설, 추석, 연말연시 등)

○ 단속반 : 시 · 군, 농관원 전남지원(시 · 군사무소) 및 양곡 명예감시원으로 편성

○ 대상별 중점단속 사항

- 미곡종합처리장 : 양곡표시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 임도정공장 : 양곡표시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수입쌀 국산 둔갑 재포장 행위, 혼합비율 부정표시 등
- 가공용쌀 공급업체 : 가공용쌀 부정유출 여부
- 대형유통업체 : 부적정 표시양곡 판매행위 여부
- 한과제조업체 등 대량 소비업소 : 부정유통양곡 사용여부 등

11. 정부양곡 도정공장 · 보관창고 계약 관리

【담당자 정중기 ☎ 286-6442】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보관창고의 소유자, 시설 등의 변경 및 신규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에 따라 계약 체결

※ 근 거 :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19.3.)

☐ 도급계약 체결방법

1. **계약대상 :** 정부양곡보관·가공·운반·하역도급계약 등 전반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3. 31.(3년간)

※ 단, A등급 이상 도정공장, 저온창고는 2025. 3. 31.까지(6년간) 가능

3. **계약구분**

가. 중앙계약

○ 계약 효력이 2개 시·도 이상에 미치는 계약

○ 농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출납명령관(이하 "특별회계재무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
단, 보관창고계약의 경우 도 특별회계 재무관 등이 지정

<중앙계약 대상>

계약 대상자	계 약 사 항
농협중앙회(4종)	• 정부양곡보관 도급계약(1급이상 창고) • 정부양곡 자동차 운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보관 화재공재 특약협정 • 정부양곡가공 화재공재 특약협정
대한통운(주)(6종)	• 정부양곡보관도급계약(1급이상 창고) • 정부양곡 자동차운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 철도수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 해송 도급계약 • 정부양곡 항만하역 도급계약 • 정부양곡 포장재 운송 도급계약
대한곡물협회(1종)	• 정부양곡 조작도급계약을 위한 업무협약

나. 지방계약

1) 도 계약

○ 전라남도 특별회계 재무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

○ 중앙계약 또는 시·군계약 대상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함

2) 시·군 계약

○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체결한 계약

○ 1급 이상 창고가 부족할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 보관계약 *** 계약이 필요한 경우 도와 사전 협의**

○ 기타 지역실정 등에 따라 특정 계약상대자간 체결한 계약

4. 계약체결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가. 중앙계약창고 지정

1) 재 지정시 :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이 재 지정 여부를 파악하여 도 특별회계 재무관 등에게 재 지정 요청

2) 신규 지정시 :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이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도 특별회계 재무관에게 진달

구비서류

① 지정신청서 1부

② 지정신청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농협군지부장 증명시 생략 가능)

④ 창고 실태조사표(행정, 농관원 합동조사, 분임양곡관리관 확인) 1부

※ 신규 지정시 추가첨부 서류 : 분임양곡관리관 의견서, 보관여석 판단조서, 창고등급사정표, 창고현황 사진(정면, 측면)

3) 지정여부 결정 : 도 특별회계재무관 등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에게 통보(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은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확정

나. 지방계약 체결

1) 시·군에서 계약신청서 접수

2) 도 계약대상은 도 특별회계재무관 등에게 진달하고 임시보관계약 대상(2급 이하 창고 및 새마을창고)은 시·군 특별회계분임양곡관리관 등이 직접 체결 *** 계약이 필요한 경우 도와 사전 협의**

3) 보관도급계약신청 구비서류

○ 도 계약

-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이 정한 1급 이상 창고

<곡협회원>

구비서류

① 계약서 : 소정양식 2부
②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곡협 연대보증) 각 1부
③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창고 실태조사표 1부
⑤ 전년도 조작비 월별지급액 확인서(신규는 인근 유사창고 적용) 1부
⑥ 계약보증금 납부서 1부(곡협 도지회장 확인)
⑦ 공동담보금 납부확인서 1부(곡협 도지회장 확인)
⑧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 신규 계약시는 중앙계약 추가 첨부서류 준용

<일반개인 계약자>

구비서류

① 계약서 : 소정양식 2부
②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창고 실태조사표 1부
⑤ 전년도 조작비 월별지급액 확인서(신규는 인근 유사창고 적용) 1부
⑥ 계약보증금 납부서 1부
⑦ 담보금 납부서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감정평가서
-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증권 및 보험료 영수증
- 보증증서(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담보 제공시)

⑧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 신규 계약시는 중앙계약 추가 첨부서류 준용

○ 시·군 계약

-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이 정한 2급 이하 창고
- 임시 보관계약(3급 새마을창고)은 사유서 제출

구비서류

① 계약서 : 소정양식 2부
②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새마을창고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3인의 연대보증, 일반계약자는 동업종 5인 이상 연대보증) 각 1부 * 농협은 관할 시·군지부장이 연대보증
③ 주민총회 회의록(새마을 창고) 1부
④ 창고 및 대지 등기부등본 각 1부(농협은 시·군지부장 증명서)
⑤ 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른 각서 1부(계약체결요령 제1호 서식)
⑥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4) 가공도급계약신청 구비서류

○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 신고(등록)를 필한 대규모 도정공장을 소유한 자로서 '19년 3월 현재 가공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미곡종합처리장 사업에 참여한 업체 제외)

구비서류

① 계약서 : 소정양식 2부
② 정부양곡 가공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계약신청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곡협 연대보증서) 각 1부
④ 공장 및 대지 등기부등본 1부
⑤ 전년도 조작비 월별지급액 확인서 1부
⑥ 계약보증금 납부서 1부(곡협은 지회장 확인) 1부
⑦ 공동담보금 납부확인서 1부(곡협은 지회장 확인) 1부
⑧ 담보금 납부서(개인) 1부
- 근저당설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근저당설정 부동산 감정평가서
- 보증조치 내역서(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담보제공시)

⑨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첨용

5. 계약금액의 산정방법

가. 계속계약인 때

○ 전년도 처리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20% 해당액

○ 전년도 계약금액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금액의 80% 이상

나. 신규계약인 때

○ 유사 동업종 계약자의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여 산정

6. 계약보증금 납부

가. 곡협회원(보관·가공 동일)

○ 전년도 월별 조작비 지급실적 중 최고 실적금액의 10% 이상을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하고, 계약 보증금 및 연대보증외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현금을 공동담보금으로 적립

나. 농업협동조합 등 : 계약보증금 면제, 각서 징구(계약체결요령 제1호 서식)

다. 일반 개인 :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

○ 전년도 월별 조작비 지급실적 중 최고 실적금액의 10% 이상

보증수단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사업자 발행 보증보험증권

라. 새마을창고 : 계약보증금 면제, 각서징구(계약체결요령 제1호 서식)

마. 보증기간 : 계약기간 종료 후 60일까지

7. 담보제공

가. 보관계약

<곡협회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공동담보금)으로 곡협에 납부하면 도 특별회계재무관과 곡협전라남도지회장이 공동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 확인서만 제출(곡협지회장 확인필)

<농업협동조합>

○ 관할 시·군 농협지부장의 연대보증으로 담보제공시(면제)

<일반개인 계약자>

○ 계약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부동산(농경지 제외) 평가액 한도 내에서 **도지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반적 보증수단에 의하여 납부하고, 동일업종 사업자 5인 이상의 연대보증 조치

<새마을창고 : 담보제공 면제>

○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농업인 중 재력이 있는 3인 이상 연대보증

나. 가공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공동담보금)으로 곡협에 납부하여 도 특별회계 재무관과 곡협 도지회장 공동명의로 은행에 적립하고, 공동담보금 납부서만 첨부(곡협 도지회장 확인필)

다. 해송도급계약 및 항만하역 도급계약

○ 계약금액의 100% 이상의 부동산(선박포함, 농경지 제외)을 근저당설정하거나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

□ 시·군 행정사항

○ 도급계약 체결요령 제22조(부정당업자 통보),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등) 이행 철저

○ 보관창고 등급 조정 : 매년 3월 31일 기준

- 창고주의 창고 등급 변동사항 통보시 등급 재평가 실시

○ 도정공장 등급 조정 : 매년 3월 31일 기준

○ 정부양곡 도정공장 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이행철저

-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 요령(별표 3)

12. 정부양곡 사고처리

【담당자 정중기 ☎ 286-6442】

정부관리 양곡의 부정유출, 화재, 도난 등 양곡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처리 조치 및 원활한 업무추진

※ 근 거 : 양곡관리특별회계 사무규정(제107조~제115조)

☐ 사고처리 개요

○ 양곡사고 발생시 시장·군수는 사고 진상을 조사 즉시 보고

- 보고대상 : 업무상 부정, 도난, 화재, 수송사고, 부패(변질) 등
- 사고발생 전말서에 관련증빙서류 첨부(양곡사고처리규정 참조)

※ 단시일 내 관련서류 첨부 곤란시 우선 개황을 신속 보고

○ 사고처리 : 시장·군수, 단 수송중 사고는 도지사가 처리

○ 사고변상 : 현금변상 원칙(현물, 대곡변상 가능)

-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 사고시 감면가능(농식품부장관 승인)

○ 기장정리 : 양곡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에 기장

○ 사고양곡 처리(시장·군수) : 식용가능 양곡은 관수용 등으로 우선 출하하고 식용불가 양곡은 공매처분 원칙

☐ 시·군 추진사항

○ 「1창고 1담당제」 확행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 정부양곡 보관 및 가공업자 양곡안전관리요령 교육 실시

○ 장마철, 도난 등 보관 위험기(6~9월) 안전보관지도 강화

○ 창고 출입문에 정부양곡 창고임을 알리는 경고문 표시

○ 민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감시기능 확대 및 보관업자 동향 관리

[사고발생 보고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양곡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발생 연월일 :

2. 사고발견 연월일 :

3. 사고발생 장소 :

4. 사고책임자 주소성명 :

5. 사고원인 :

6. 사 고 량 :

①연산또는 도입구분	② 곡 종	③ 단 량	④ 수 량	⑤ 중 량	⑥ 공가환산액	비 고

7.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

8. 기타 사고처리상의 참고사항 :

9. 본건 처리의견 또는 처리전달 :

10. 첨부서류 :

13. 양곡관리 특별회계 결산

【담당자 정중기 ☎ 286-6442】

양특회계의 재무상태와 양곡관리사업의 경영성적을 정확히 파악 양곡정책 수립과 양곡관리 회계의 합리적 운영 도모

※ 근 거 :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 규정

☐ 추진방향

○ 양특회계 결산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법 적용

○ 회계단위별(시도)로 결산하여 양특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회계연도 : '21. 1. 1. ~ 12. 31.

○ 결산기간 : '22. 1. 1. ~ 1. 31.

- 총 결산 사전 점검을 위해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예비결산 실시

○ 결산방법 : 시·군 합동집무(부속명세표 작성, 관계서류 대사 등)

○ 결산내용 : 양특세입·세출, 물품관리, 국유재산, 국가채권관리 등

○ 세부 추진일정

- 결산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시·군 → 도) : '22. 1. 1. ~ 1. 7.
- 시·군 합동집무(결산 기초자료 대사) : '22. 1. 10. ~ 1. 14.
- 결산자료 확정 및 제출(도 → 농식품부) : '22. 1. 25.까지

☐ 시·군 결산 기본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양곡수불상황표, 양곡매출보고서 등의 대장을 정확히 대조·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회계결산에 임할 것

○ 도에 보고한 각종 회계증빙자료(양특세입·세출, 물품관리, 국가채권관리 등)와 결산보고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유 통 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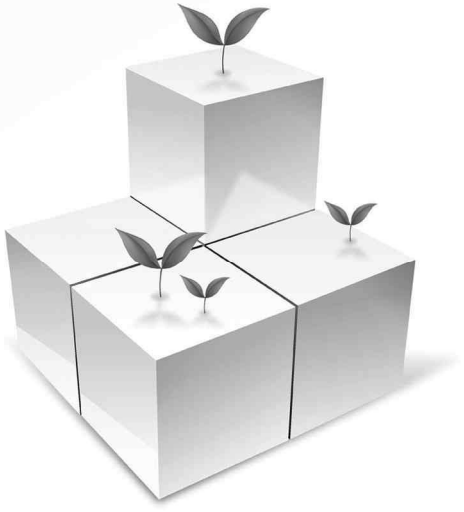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담당자 김지연 ☎ 286-645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제57조(기금의 용도)
사업 주요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사업부지 확정 등 기타 세부 지원자격 및 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40억원 내외), 보완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사업 신청	○ 지원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및 별도 안내사항 참조
지원대상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전년도 8월)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58,283	73,016	58,293	51,433
국 고	17,485	21,905	17,488	15,430
지방비	17,485	21,905	17,488	15,430
자부담	23,313	29,206	23,317	20,57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한태희	044-201-2223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시설팀	사무관 강성일	061-286-6450
		주무관 김지연	061-286-64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장 김효진 과장 김도형	061-931-1034 061-931-1039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원예산업종합계획 :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이 수립)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산지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단,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2) 사업규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 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 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 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의 연결성 인정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운영계획(APC 설치계획 등)을 승인받은 조직은 사업규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단,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신규 참여조직은 '22년 지원사업 신청 안됨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최근년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이상)의 개보수(상품화설비만 교체 가능)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AgriX 시스템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 이상)가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주주) 20명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농업인의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8조(자금지원 등의 제한)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④ 영업이익 5% 이상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 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5호, 제6호)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APC건축심의(12월) 전까지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 내 기반공사(파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증축·개보수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 투자

○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별표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경우에는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공공유형은 기존시설 보완만 지원 가능(국고 50%, 지방비 50%)

* 다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제한적으로 공공유형으로 신규설치 가능(연간 3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 사업기간 : 1~2년

○ 연차별 국고지원(2년차 사업 해당) : 1년차 40%, 2년차 60% 수준

- 세부사업비 심의결과에 따라 2년차 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고 사업계획 평가결과, 예산 확보·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월)		농식품부, 지자체(전년 5~6월)		산지조직 등(전년 6월)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 업 자

○ 예비사업 신청

- 차년도(2022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2.10까지)

* APC 사업신청 시 관할 산지통합마케팅조직(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예비사업을 신청하는 보완사업자 중 개보수 추진사업자는 aT의 사전진단을 신청

○ 본사업 신청

-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21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농정심의회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조직화 취급액**) ⑩산지통합마케팅조직(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 추천서 ⑪농정심의 결과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나. 지원요건의 (2)사업규모' 증빙을 위한 자료임.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및 조직화 취급액 증빙자료 제출(참여조직의 경우,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취급액 및 조직화 취급액,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 취급액 자료 추가 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 전산출력 자료 인정

※ 보완사업 중 개보수 사업자는 토지관련서류(⑥, ⑦, ⑧) 제출 생략

<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및 AgriX시스템(사업신청)에 등록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21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15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 · 도에 제출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 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6.25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신청서를 aT에 제출(AgriX시스템 시·도 마감처리, 6.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 제외**

○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참여조직 포함)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액 비율 30% 이상, 조직화 취급액 30억원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 취급액 15억원 이상인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류, 양곡부류의 경우 지원 대상 충족 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결과 제출 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AgriX 시스템 등록(사업신청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조직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지자체(전년 6월)		선정위원회(전년 7~8월)		농식품부(전년 8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로 통보(4.30.까지)

-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aT)

○ 시 · 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7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APC(혁신밸리 당 1개소에 한함) 사업자 선정은 단계별 평가(서면·발표평가)는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만 시행(원예산업종합계획 포함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 여부, 사업실적 규모 등)

< 2단계 : 서면평가 >

○ 선정위원회에 의한 서면평가(7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7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선정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 최종순위 결정 >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 이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추진 시 사업비 이월 실적이 없는 산지유통 혁신조직,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관련 APC 사업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 가능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지자체, 8월초)

다. 사업비 심의 · 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시행 前단계(사업비 심의조정 후~APC건축심의 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업비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는 aT의 타당성 검토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APC 건축심의

○ APC 부실시공 예방 및 적기건립 유도를 위한 전문심의단 APC 건축심의(12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출서류 :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가능도서, 추정가격 내역서, 선별장비 배치도, 선별장비 내역서 등), 부지확보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서, 자부담확보(50%)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농업법인 해당) 등
- 제출기한 : 건축심의 7일전까지 완료 및 제출(aT)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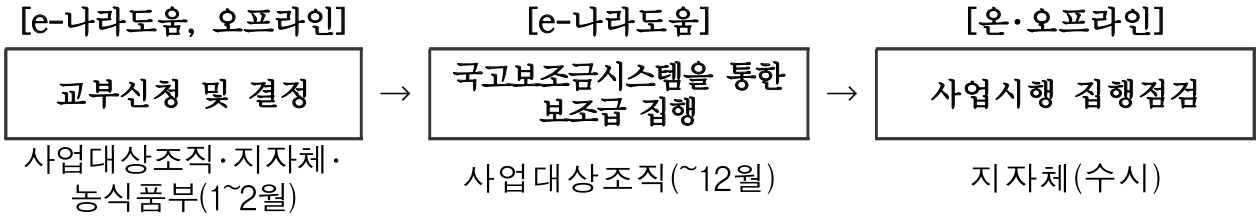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사업신청년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사업개시년도 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 ·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사업개시년도 2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10.까지)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예고) '21년 이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확인하여, 불성실 이월한 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자금 금리를 0.5%p 가산 적용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0.까지)

○ 시 · 도는 관할 시 · 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월 말)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 통

※ 세부시행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조정 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건의 승인 요청은 총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①설계・가설공사~⑨위생설비 등 대분류 항목간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차지 범위에 따라 승인주체 상이함

내 용		승인 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보고
건축 설계변경, 상품화설비 설계변경		시·군 승인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0~15%	자체 조정
	총 사업비의 16~30%	시·군 승인(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
	총 사업비의 31~50%	시·도 승인(승인 후 검토결과를 aT로 제출) * 9개항목 중 한 항목 전체가 제외 또는 추가 시 금액 관계없이 시·도 승인
	총 사업비의 51% ~	aT 검토후 농식품부 승인
사업부지, 총사업비 변경		aT 검토후 농식품부 승인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30억원 이상이면 aT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1톤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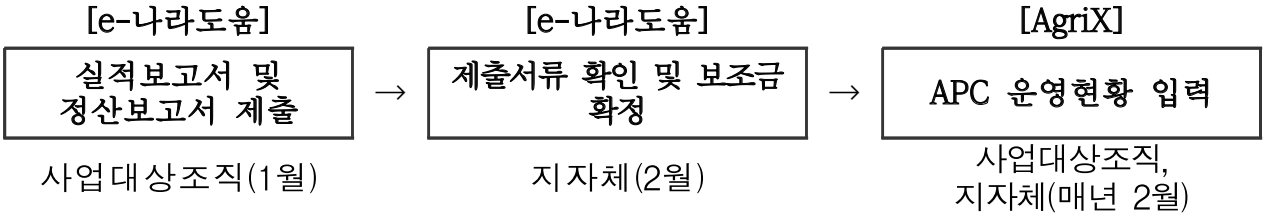

< 사후관리 >

○ 사후관리 · 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 · 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APC 운영사업자는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을 받지 않은 APC 등도 포함되며, 시·군 책임하에 사업자가 입력(사업자 선정평가 시 감점 반영)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 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 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 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 매년 3월말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해야한다.

○ 시 · 군 책임 하에 APC 운영사업자(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받지 않은 APC)가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AgriX 시스템에 입력토록 지도해야 한다.(사업자 선정 평가시 감점 반영)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되, 적용시기는 '15.1.1 이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신설・증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로 간주하여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게 10년 적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기본규정' 개정 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 ·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 · 장비(주요기계 · 장비) 등에 대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PC 운영현황 조사 · 분석

- APC 운영활성화 유도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성과지표 :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APC 경유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사업자) AgriX시스템 직접입력 → (지자체) 입력독려 · 마감 → (aT) 취합 · 분석

○ 분기별 APC건립 추진상황 점검

- 점검대상 : APC건립사업자 및 관할 사업관리주체(시 · 군)
- 점검항목 : APC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 추진상황에 따라 서면 · 대면(집합, 현장) 점검

Ⅳ 평가 및 환류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경영진단 평가

- 최근 지원된 정부지원 APC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 운영활성화 도모
- 평가대상 : 2016년 APC 건립사업자부터~
- 평가기간 : 매년 4~5월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항목 : 총 취급액, 조직화 취급액 및 가동율 등

V 기타 안내사항

1. 2022년도 사업 수요조사

○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1.2.1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1.2.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1.3.10.까지)
- aT : 기본요건 검토 후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3~4월)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1.6.21.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1.6.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1.6.30.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선정위원회, '21.7월)

○ 예비대상자 선정 · 통보(농림축산식품부, '21.8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선정위원회, '21.8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21.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22.1월)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붙임 1>

`2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입니까?		
지원자격		지자체 또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셨습니까? *단,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는 적용 제외		
기본요건		**직전 3년 동안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입니까?		
사업규모	지역연합, 품목광역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입니까?		
	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비율**이 **30%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입니까?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이상입니까?		
	산지유통 혁신조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APC 설치계획 등 운영계획을 승인 받았습니까?		
시설성격		**330㎡ 이상의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까? **"예"⇒보완시설,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보완시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시설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입니까?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입니까?		
		계획한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입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업회사법인만 해당)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합니까?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사업신청단계 10%, 가내시 이전 25%, 사업비 확정 단계 50%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대상품목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류를 주로 취급하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입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 투융자심의 결과는 사업신청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20억 미만인 사업은 생략 가능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APC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유형을 신청하려 하십니까?(보완사업 신청가능)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5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급 A	B	C	D	E	평점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지자체(품목) 단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한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o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 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산지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o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하며,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 여부?(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 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A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o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도 등)은 APC 운영 및 GAP시설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가? o 유통환경변화 및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자동화·첨단화 선별포장 장비류 도입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A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관련사업 연계	o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선정	3					
		o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소 계(2)		2개 지표	6점					
감점	운영현황조사연계	o APC 운영현황조사시 AgriX 데이터 미입력 사업자	-3					
	사업추진 이력	o 직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사업비의 재이월 또는 100% 이월 : -7점, 60~100% 이월 : -6점, 30~60% 이월 : -5점, 30% 미만 이월 : -3점)	-7					
소 계(1)		1개 지표	-10점					
합 계			**106점**					

<붙임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푸드플랜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급					평점
		A	B	C	D	E	
1. 부지선정 적절성	o APC건립 사업부지로서 입지여건이 적절한가?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접근성 여부?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 o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	25	20	15	10	5	
2. 건축, 시설의 적절성	o 취급 목표 물량에 따른 시설설치 및 규모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인근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도 등)은 APC 운영 및 GAP시설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20	16	12	8	4	
3.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운영전략 등의 적절성	o APC 운영주체가 독립 사업부서 운영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o 푸드플랜 APC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o 일관된 운영체계와 운영계획으로 푸드플랜 APC로서의 출하목표가 실현 가능한가?	15	12	9	6	3	
4. 취급물량 확보 계획의 적절성	o 푸드플랜 APC 건립으로 인한 세부적인 취급물량 확보 계획이 있으며,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취급물량 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가 등의 참여 확대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5. 자금운용 및 조달 계획	o 푸드플랜 A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6.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15	12	9	6	3	
합 계	(6개 지표)	100점					

< 별 첨 >

Ⅰ. 시설물 관리, 양도 · 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 · 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유통시설과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유통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를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동 산지유통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산지유통조직 등 우수 생산자조직에 우선적으로 처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산지유통센터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전,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 >

○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잔여 사후관리 기간까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목적 이외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의 위반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 잔존액을 반환해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제3항(별표 5)'에 따른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 >

○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자는 비수기에 그 시설물을 다음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보관창고용 : 농수산물, 농기계, 농어업용자재, 마을공동물품 등 보관
3. 공동작업장 또는 공공용 :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장, 농산물건조장,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가내 수공업장, 정부양곡 수매장, 농산물직판장 등
4. 마을공동행사용 : 영농교육장, 각종선거 투·개표장, 경노잔치, 예식장, 기타 마을애경사 행사장, 농산물품평회, 직판행사 등
5. 재해발생시 임시대피소 및 가재도구보관, 기타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 의뢰하여 계약체결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참고

○ 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부서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고, 지자체는「지방계약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 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 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선별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단, 파렛타이저, 제함기 등 단품 구입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 추진 시 지자체(시·군)가 대행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인접) 지역의 업체 선정 필요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 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는 지역 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유통정책과-2962호('15.8.13 :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 (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입찰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상인 경우 공조냉동기계 기술사가 설계를 하여야 함. 설계 이외 사업자가 별도 감리 또는 기술검토를 받고자 할 경우 사업비 집행 가능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 농산물선과기 및 선별기(비파괴센서 포함)는 업체별로 표준모델에 대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대가 지급을 위한 상품화설비의 검사는 1차(단순)검사와 2차(정밀)검사로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단, 1차 검사는 모든 농산물상품화설비 구입 시 의무 시행하여야 하고 2차 검사는 정밀검사 부품(별첨Ⅴ,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하여야 함. 1차 검사는 상품화설비 전체 부품의 2/3이상 현장 반입 시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 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가 공동 시행하고 2차 검사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등)이 성능시험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함

  * 상품화 설비 검사(1차, 2차)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가능(단,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한 경우에 한함)

  * 1차 검사자(전문가) 자격 :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 학위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5년, 학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7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기술사 이상 자격소지자 등 해당자격 전문가 1차 검사 가능(단, 최근 3년 이내 농산물상품화설비 제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자격 제외)

  * 검사 양식 : <별첨Ⅴ> 선별기 선정 시 준수사항 참고(지자체 양식도 진행 가능)

- 상품화설비 검사 과정 중 검사기준 미달, 부실설치, 다른 제품 납품 등 부실 부품(장비) 납품 또는 부실설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

-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해당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4조, 제23조에 의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컨설팅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1.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향후 1~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포기년도	제한기간	비고
경기	안성	산마루영농	2016	2021	사업자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 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사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하여야 한다.

1. 1차(단순) 검사

(1) 검사 품목

(가) 투입공정 : 디파렛타이저, 콘테이너자동투입장치, 콘테이너자동배출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콘테이너자동적재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비품과 배출장치, 중량측정기 등

(나) 전처리공정 :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이송장치 등

(다) 선별공정 : 중량측정장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이송장치 등

(라) 배출공정 :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장치, 비품과 배출이송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대기밸트, 수상판, 공트레이 집진장치 등

(마) 포장공정 :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파렛타이저, 박스공급라인, 상품박스 배출장치, 기타 이송장치 등

(바) 기타 : 이송장치, 콤프레셔, PLC 등 전기부품

(2) 검사 항목

- 품목별 사양(내역), 주요부품(모터 등)의 모델명, 품질인증서, 구매확인서(구매일자 또는 생산일시), 수량 등

※ 전체 품목 중 2/3 이상 입고 시 검사 실시 가능

2. 2차(정밀) 검사

(1) 정밀 검사 품목

(가)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디파렛타이저, 덤핑장치, 제함기 등

(나) 중량측정, 내부품질 측정, 색상측정, 형상측정은 성능검정을 실시

(2) 정밀 검사 항목

- 모델명, 수입여부(수입시 수입면장 제출), 구매확인서, 성능(처리능력(box/hr)), 정상동작 여부, 기타 이상 유무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필요시 현장 성능 검사 수행

3. 검사방법

(1) 1차 검사는 업체 대표나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 진행, 2차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군) 및 사업자에 통보

(2)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규격서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서식 1 >

1차(단순) 검사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 1차(단순)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설계서(장비 배치도), 규격서(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1차(단순) 검사 결과

* 검수 품목은 상품화 설비 설계서나 규격서 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
*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품은 서류검수(성능인증서, 구매확인서 등)로 확인, 주요 부품명은 설계서나,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 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투입	디파렛타이져				*(별첨)*									
	콘테이너자동투입 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 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콘테이너자동배출장치													
	콘테이너자동적재장치													
	덤핑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장치													
	파지 배출 이송장치													
	인디케이터(중량측정)													
	중량측정기													
	커브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 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전처리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이송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 장치													
	턴테이블													
선별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측정장치													
	색상측정 장치													
	형상측정 장치													
	중량측정용 이송 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 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내부품질측정용 이송장치													
	색상측정용 이송장치													
	형상측정용 이송장치													
	2조 합류 이송장치													
	인터벌 이송장치													
배출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장치													
	비품과 배출이송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분기이송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 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대기밸트													
	수상판													
포장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자동파렛타이징로봇													
	포장박스 공급장치													
	포장박스 적재 이송 장치													
	상품박스 배출장치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 변경	수입 품목 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상품박스 적재 이송장치													
	포장 작업테이블													
	커브형 이송장치													
	경사형 이송장치													
	유턴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기타	이송장치													
	콤프레셔													
	메인 컨트롤 PC													
	PLC, 주요 전기부품													
	이송접시/이송컵													

3. 1차(단순)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사업자 최종의견)* *(지자체 담당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자

사업자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대표자/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명 :

주소 :

담당공무원 : (서명/인)

검수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 서식 2 >

2차(정밀) 검사

□ 사업 개요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 2차(정밀)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설계서나 규격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정밀 검수 결과

(1) 정밀 검수 품목 및 검수 항목

(가) 중량측정 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다) 색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라) 형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마) 디파렛타이저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바) 덤핑장치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사) 제함기

- 모델명 :

- 성능 : 시간당 처리량(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추가 가능

3. 정밀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검 수 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dge(냉교[冷橋])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0℃) 기준

* 천장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 패널을 시공한다.

저온저장고 바닥시공 단면도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쿨러의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 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밸브를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및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을 실시한다.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2. 농산물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업무담당 : 김지연 ☎ 286-645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 주요내용	○ 농가 조직화, 공동 선별·계산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또는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산지조직 : 최대 200백만원 이내(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조직화취급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 조직화취급액 *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1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국고보조 지원한도액 * (A~B등급) 100%, (C등급) 80%, (D~E등급) 60% ○ 지방자치단체 : 최대 10백만원 이내
사업 신청	○ 지원연도의 전년도 8월에 수요조사 시행
지원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배정액, 지원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조직 최종 선정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7,500	7,500	7,000	2,000
국 고	2,250	2,250	2,100	600
지방비	2,250	2,250	2,100	600
자부담	3,000	3,000	2,800	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한태희	044-201-2223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사무관 강성일	061-286-6450
	유통시설팀	주무관 김지연	061-286-64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장 장호광 대리 오승주	061-931-1031 061-931-1032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에 따른 부정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해당지역에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자체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광역조직)

*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되, 자부담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광역조직도 지자체에서 지방비 지원 시 동일비율로 지원 가능

* 지방비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예시, 시·도 : 시·군·구 = 3 : 7)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관리 지자체는 조직 사무소 소재지나 필요시 참여조직 사무소 관리 지자체로 할 수 있음

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지조직 : 최대 200백만원 이내(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조직화 취급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 조직화취급액

지원범위	국고보조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국고보조 지원한도액 : (A~B등급) 100%, (C등급) 80%, (D~E등급) 60%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은 1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탈락조직은 지원 제외)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액은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하며, '22년부터는 지원 제외

○ 지자체 : 최대 10백만원 이내

다. 자금의 용도

○ 조직화(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농가 교육 · 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산지조직 담당 직원 조직화 및 마케팅 전문교육비 포함

○ 홍보 · 마케팅(통합마케팅조직)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의 관련 비용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또는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참여조직,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 참여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조직이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재교부 받아 직접 집행하였을 경우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정산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 ~ '21. 12. 31.

- 확정내시 시행 이후에 지방비 확보 여부, 요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기간을 교부결정일 이전으로 인정 가능(보조금 신청·정산 대상에 포함)

* 교부결정일은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한 날짜임

* 사업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부터 자금집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대상조직 선정 · 관리 · 집행 · 정산 관련 등의 사업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조하여 추진

- 사업대상조직은 정산자료를 사업기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결과를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2월초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Ⅲ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AgriX]		[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사전수요조사 신청	→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월)		사업대상조직(전년 1월)		농식품부·지자체(전년 7~8월)		산지조직 등(전년 8월)

사업대상조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aT의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전년 1월말)

* 사전 수요조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지자체는 제외)

○ 최종 사업신청은 각 시·도 또는 시·군·구를 통해서 해야 함(전년 8월)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20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 7~8월)

○ 각 시·군·구에서는 산지조직의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전년 8월)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 신청내역을 취합·조정하여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포함)에 제출(전년 8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대상조직 확정]		[e-나라도움/오프라인]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식품부(1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 및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중순)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하고 사업계획 제출 안내(전년 12월중순)

○ 각 시·도별 예산 배정결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1월)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12월)

○ 각 시·도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즉시 통지(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사업추진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전년 12월)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군·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승인 후 관할 시·도에 제출(전년 12월)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대상조직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자체 조정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군·구의 승인 필요

* 5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시·도)는 aT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 통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오프라인]
나라도움 / 오프라인	교부신청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	나라도움 / 오프라인	상시점검 / 상·하반기 점검
사업대상조직(전년 12월)		사업대상조직(연중)		담당 지자체·aT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조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이 신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일괄 또는 수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신청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청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 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세부항목별 집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실적 확인 등에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배정 요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자금배정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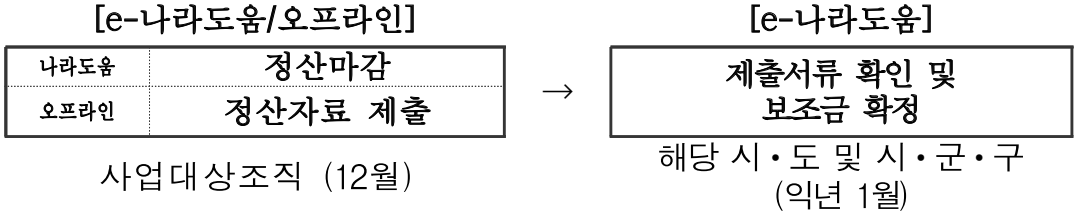

사업대상조직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고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12월말까지)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시 · 군 · 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 · 도를 통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차년 2월초)

《사후관리》

시 · 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사업점검은 시·도 및 시·군·구, aT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재》

시 · 도 및 시 · 군 · 구

○ 시 · 군 · 구 및 시 · 도는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포함)에 제출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조직화취급액 등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조직화취급 확대

* 산지유통종합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2~3월(연 1회)

《환 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우수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붙임 1>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포장제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홍보·마케팅 교육	
	○ 산지조직 담당직원의 조직화,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참가 - 전문교육기관의 장기교육(3개월 이상) 해당(온라인교육 제외)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별첨의 세부항목별 인정기준은 참조(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

<붙임 2>

2020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인정기준

사업지침 용도			인정범위 및 준비서류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공통사항 :** 사업비의 모든 집행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시군구에서 통지한 날짜) ~ '20.12.31일까지'**의 **아래 다섯가지의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 **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세부내역) **③계좌이체내역**(통장입출금내역) **④결과보고서**(검인수조서와 사진, 파일 등) **⑤방침문서**(관련근거)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 (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농가 대상 교육비만 인정(내부직원이 외부 교육을 받고 농가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결 방침 필요) -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교육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등)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3장 이상 - 식대 및 숙박비 : (식대) 1인당 20,000원 이내/1식당,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식대 및 숙박비는 교육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강사 : 500천원 이내(교통비 포함이며, 원고료, 식대, 숙박비는 별도) *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등을 준용하여 지급 * 식대 및 숙박비는 상기 기준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라 강사 수당(원고료 등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하여야함 (정산 시 원천징수액 포함) * 강사료는 서명 영수증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념품비, 선물비, 간식,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농가조직화와 관련이 없는 각종 평가회 및 보고회 비용 등은 불인정**
	○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 대상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조직화관련 컨설팅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이 실시한 컨설팅 불인정) -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컨설팅위원 수당 : 500천원 이내/1회당(교통비 포함이며, 원고료, 식대, 숙박비는 별도) * 원고료, 식대 및 숙박비 지급기준과 원천징수는 농가 교육비와 동일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위탁교육비		○농가 대상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만 인정(농가조직화 교육이며, 내부직원 위탁교육 불인정) -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외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농가원물 및 취급품목 등에 대한 외부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사비 및 검사비 인정(잔류농약, 토양검사, 수질검사 및 안정성 검사 포함, 시설개선 비용은 불인정) - 준비서류 : 조사 · 검사확인증 사본, 조사 · 검사비 지급내역(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농가 조직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 대상 자문은 불인정) -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자문위원 수당 : "농가조직화 컨설팅"의 컨설팅위원 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감사패 등 불인정**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국내 선진지 연수(농가 대상 국내연수만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연수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연수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연수내용)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식대 및 숙박 : "농가 교육비" 지급기준과 동일 * 연수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내부 직원 위주 연수, 직원 가족 참여 연수 및 관광성 연수는 전체 불인정, 연수관련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포장재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 부분은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포장 디자인 개발, 도안 · 동판 제작, 용기개발 등 상품개발 비용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상표 등록비용 등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 → 결과 및 검인수 보고서(예산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포장재 제작비용은 불인정(「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포장재비 별도 지원)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모바일, 온라인 등)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제작비용 인정**(유형고정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은 불인정)** - 준비서류 : "포장디자인"의 준비서류와 동일
	○ 판촉행사 소요 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국외판촉행사 :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및 관광성 행사 전체 불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및 도우미 참석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여행사에서 발행하는 INVOICE 첨부, 여행비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 여행사 지급비용 중 판촉행사관련 직원 및 도우미의 **항공료, 숙박, 식사비만 인정**하며, **일체의 부대비용(현지 교통비, 기념품,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등)은 불인정**하고, 여행사에 비용 일체가 포함되었을 경우 견적서에 반드시 그 정산대상 현황 구분 표시, 기타는 정산에서 제외토록 하여야함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현지업체의 경우, 입금요청서 등) - 도 우 미 : 도우미 근무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파견업체 위탁시 세금계산서 포함) 및 근무현장 사진 * 도우미 확인서는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이상 확인 서명 필요 - 시식원물 : 원물구매시 원가(단가) 및 수량의 적정성 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농가로부터 구입),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일반시장으로부터 구매), 원물 입 · 출고 확인서 *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이상 확인 서명 필요 - 홍보물 및 증정품(경품) : 조직명, 판촉 농산물의 로고 및 행사내용 등이 찍혀 있는 경우만 인정 * 로고 등 확인 사진 2컷 이상 필요 *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된 입 • 출고 확인서 필요(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등 2명이상 확인필요) ○국내판촉행사(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불인정) - 준비서류 : 국외판촉행사 중 여행사 지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동일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도우미, 시식원물, 홍보물 및 증정품 : 국외판촉행사와 동일 - 도우미 교육비 : 교육확인증, 교육기관의 교육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 등 - 식대 및 숙박 : (식대) 1인당 20,000원 이내/1식당,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행사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연중 실시하는 판촉행사는 불인정하고, 한 번의 방침문서로 매월 개최하는 형태의 행사 불인정**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판촉전, 시장개척단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국외시장 개척 :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및 해외연수 등은 전체 불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참석자 현황, 바이어 명함, 예산집행내역, 계약실적 등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이고, 시장조사일 경우 면담내용 등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 - 집행비용은 국외판촉행사와 동일

			○국내시장 개척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국외시장개척과 동일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타 집행비용은 국내판촉행사와 동일 *** 내부 직원 위주 행사, 직원 가족 참여 행사, 해외연수 및 관광성 행사는 전체 불인정하고, 기념품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유류비 등 불인정**
	○ 바이어 대상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바이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비만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현황, 집행내역, 설명회 및 협의회 내용 등)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2컷 포함 3장 이상 * 마케팅협의회일 경우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 - 장소임차 : 행사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한함(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식대 및 숙박 : (식대) 1인당 30,000원/1식당 이내,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설명회・협의회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단순 업추추진 성격의 협의회,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간식비 등 불인정**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방송, 신문, 잡지, 광고판, 온라인 등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 · 홍보비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농가 및 직원(참여조직 포함) 대상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비, 컨설팅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교육 · 컨설팅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결과내용 등)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자문 · 컨설팅위원 수당 : "농가조직화 컨설팅"의 컨설팅위원 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감사패 등 불인정**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신규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예산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 - 준비서류 : 거래 계약서, 보험증권 사본
③ 교육	○ 지자체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농가 대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 대상 조직화, 홍보 · 마케팅 교육만 인정 - 준비서류 : 위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산지조직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담당직원의 전문교육기관(온라인 교육 제외)을 통한 조직화, 홍보 · 마케팅 전문교육(3개월 이상)만 인정 - 준비서류 : 교육참석자 업무분장표, 교육 수료증,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지자체와 별도 협의 필요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결정 이후 집행할 경우 집행실적 불인정

[별지 서식]

2022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사업 신청서

법인 명칭		법인 대표	
주 소		전 화 (FAX)	
품목광역조직여부		전년도 매출액	

신청법인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전화	
			e-메일	

자본금	출자자별 출자금액(천원)				
	계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	기타

연차별 계획(백만원)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3차년도(2024년)
총 취급액			
계약재배매취액			
공동계산액			

기타국고보조내역(백만원)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계획 ◇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통합	품목			
2022년 사업신청액 및 추진계획	신청액 (백만원)	국고보조	30%	50%			
		지방보조	30%	-			
		자 부 담	40%	50%			
		계					
	사업 추진 계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상기와 같이 2022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안내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동의 시 반드시 □에 √ 표시)

2021년 월 일

첨부 : 산지통합마케팅계획사업 주요 추진계획 1부

신청인 : o o o 조합(법인) 대표이사 (인)

oooo시장 귀하

※ “사업추진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별도 작성

3.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선별비) 지원사업

[업무담당 : 김지연 ☎ 286-645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110조(자금지원)
사업 주요내용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소속 참여조직 포함) - 단,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내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사업 신청	○ 지원연도의 전년도 8월에 수요조사 시행
지원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배정액, 지원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조직 최종 선정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46,218	50,978	56,920	75,429
국 고	8,088	8,921	9,961	13,200
지방비	8,088	8,921	9,961	13,200
자부담	30,042	33,136	36,998	49,02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한태희	044-201-2223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시설팀	사무관 강성일	061-286-6450
		주무관 김지연	061-286-64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장 장호광 주임 장다혜	061-931-1031 061-931-1033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1]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2]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 기타 출하처(온라인판매 포함)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산지유통 혁신조직(참여조직 포함)은 취급 품목 모두에 대해 우선 배정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0년도 출하 실적이 있는 사업자의 시범사업 품목에 대해 우선 배정

- 시범사업 해당 품목에 대해 ’21년도에 지원을 받고 ’21년 8월말까지 온라인

---

1)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 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 브랜드

2)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시 불이익 부과

※ ’21년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대한 지원사항은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적용사항을 준용하고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

※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산지유통 혁신조직 포함)

- 참여조직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지원
- 지원 품목 :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① 시 · 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② 품목광역조직·산지유통 혁신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지방비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예시, 시·도 : 시·군·구 = 3 : 7)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5백만원 한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A등급 10백만원, B등급 5백만원 한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참여조직 기준)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Ⅲ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월)		농식품부·지자체 (전년 7~8월)		산지조직 등(전년 8월)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전년도 8월)

- 품목광역조직 등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사업 신청은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이 참여조직의 신청을 취합·조정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20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등)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7~8월)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시·도로 제출(전년도 8월)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포함)에 제출(전년도 8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예산 배정안 통보	→	사업대상조직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제출
농식품부(전년 12월)		해당 시·도 및 시·군·구(전년 12월)		해당 시·도(전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도 10월 중순)

○ 각 시·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도 12월)

시·도(시·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안)을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포함)에 제출(전년도 12월)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조직·지자체 · 농식품부(1~2월)		사업대상조직(~12월)		지자체(수시)

농관원 및 시·도(시·군)

○ 시·군은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월)

* 사업 신청량과 포장재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제작이 필요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제작협의서에 명기하여, 사업 정산 시 사업물량 검증 등에 참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농관원은 2년 마다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 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갱신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정산하여 그 결과를 사업기간 다음년도 1. 10. 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대상조직

○ 공동선별 · 출하 · 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서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 · 군 · 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월말까지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세부 일정은 시·군과 협의)

  *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1.1.~12월말) 내에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에는 농가별 선별비 지원내역 명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 · 군에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민간보조사업자(~12월)		해당 시·군·구(~12월)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aT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 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시 · 도(시 · 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 · 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 · 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정산시 농산물 정산 내역 확인(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지원 내역 명시)

《표준규격품조사》

농 관 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 · 도(시 · 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조직화취급액 등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조직화취급 확대

* 산지유통종합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2~3월(연 1회)

《환 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우수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별표 1】

2021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 기준)

구분	품목	선별비용(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단위 조직		품목광역 조직·산지유통 혁신조직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과실류	감귤	159	16	40	32	80
	단감	155	16	39	31	78
	떫은감	115	12	29	23	58
	레드향	318	32	80	64	159
	매실	105	11	26	21	53
	무화과	407	41	102	81	204
	배	214	21	54	43	107
	백향과	547	55	137	109	274
	복숭아	229	23	57	46	115
	블루베리	808	81	202	162	404
	사과	174	17	44	35	87
	양앵두	808	81	202	162	404
	자두	197	20	49	39	99
	참다래	186	19	47	37	93
	천혜향	318	32	80	64	159
	체리	808	81	202	162	404
	포도	333	33	83	67	167
	한라봉	318	32	80	64	159
	황금향	318	32	80	64	159
서류	감자	100	10	25	20	50
	고구마	163	16	41	33	82
채소류	가지	126	13	32	25	63
	곰취나물	808	81	202	162	404
	깐대파	279	28	70	56	140
	깐마늘	270	27	68	54	135
	깻잎	163	16	41	33	82
	꽈리고추	180	18	45	36	90
	단호박	93	9	23	19	47
	당근	228	23	57	46	114
	대파	351	35	88	70	176
	딸기	647	65	162	129	324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단위 조직		품목광역 조직·산지유통 혁신조직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마늘	451	45	113	90	226
채소류	멜론	113	11	28	23	57
	무	83	8	21	17	42
	미나리	639	64	160	128	320
	방울토마토	132	13	33	26	66
	부추	287	29	72	57	144
	브로콜리	132	13	33	26	66
	상추	499	50	125	100	250
	수박	48	5	12	10	24
	시금치	163	16	41	33	82
	애호박	83	8	21	17	42
	양배추	117	12	29	23	59
	양상추	91	9	23	18	46
	양파	94	9	24	19	47
	얼갈이배추	166	17	42	33	83
	연근	325	33	81	65	163
	열무	245	25	61	49	123
	오이	129	13	32	26	65
	쥬키니호박	99	10	25	20	50
	참외	182	18	46	36	91
	콜라비	63	6	16	13	32
	토마토	104	10	26	21	52
	파프리카	155	16	39	31	78
	풋고추	280	28	70	56	140
	풋옥수수	71	7	18	14	36
	피망	131	13	33	26	66
버섯류	느타리버섯	260	26	65	52	130
	새송이버섯	260	26	65	52	130
	양송이버섯	456	46	114	91	228
화훼류	국화	44(본당)	4(본당)	11(본당)	9(본당)	22(본당)
	장미	41(본당)	4(본당)	10(본당)	8(본당)	21(본당)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3. 2년 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4. 표고버섯(배지)은 버섯류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별표 2】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시·군·구 직 성명 (인)

확인사항(공통)	확인결과
①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의 충족 여부 - 규격포장재 사용, 표준규격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선별·출하·계산 실시 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 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② 자체 보관서류의 비치 및 기록 여부 - 공동선별 작업일지 기록 및 품질관리사(책임자) 서명 여부 -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기록 여부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 여부 - 기타 자체 보관서류의 관리·보관 여부 * 사업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 보완 후 사업비 지급	
③ 공동선별 출하물량과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수량과 일치 여부 - 출하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출하정산 내역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개인출하 물량은 지원 제외) - 포장재 사용량(매)=공동계산물량(kg)÷포장 단량 *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외포장재 단량(1~6kg)을 판매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품목별, 사업방식별 지원단가 적정 여부 - 사업시행지침의【별표 1】 지원단가 참고	
⑤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 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 여부 확인	
⑥ PB(Private Brand · 유통업체 자체상품) 제품의 공동선별비 신청 여부 - PB(Private Brand)제품 출하수량 확인 * PB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준수가 어려움(단, ①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⑦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 - 타 사업에서 수출물류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사업에 선별인건비 지원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수출농산물은 포장, 등급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도 지원가능	

확인사항(공통)	확인결과
⑧ 표준규격품 외(등외품) 선별물량의 공동선별비 신청 여부 및 포장품의 표준거래단위 준수 여부 - 수탁(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 여부 * 선별·출하물량은 농가의 수탁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규격의 등급(특, 상, 보통) 외의 등외품 및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제외됨	
⑨ 출하처에서 통보된 출하정산 내역서의 출하자가 사업대상조직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 작목반이나 개인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확인하고, 사업대상조직(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비 지급 제외	
확인사항(수탁)	확인결과
⑩ 공동계산 실시여부 확인 - 정산 내역에 따른 공동계산의 적정 여부 확인(농가별 출하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 공동계산은 사업대상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말함 (동일등급에 대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단가를 작목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동계산이 아님) * 정산일 당일에 공동계산 기간을 달리하여 2건 이상으로 각각 정산하는 것은 공동계산으로 미인정	
⑪ 정산서 집계표와 공동계산 정산서의 일치 여부 - 정산기간 동안 등급별 평균단가로 출하자별 정산 여부	
⑫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 여부 - 전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 여부 확인 * 정산서 집계표에 따른 신청금액과 개인별 입금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	
확인사항(매취)	확인결과
⑩ 매입물량과 출하물량의 일치 여부 * 일반적으로 매입량이 많아야 하며, 매입장부와 대금 지급한 자료(입금전표 등) 확인	
⑪ 물량 집계표와 공동선별·출하 내역서의 일치여부 *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⑫ 공동선별비 중복지급 여부 및 매입처 확인 *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신선편이 등) 후 출하한 농산물의 이중신청 여부 *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한 물량 등 생산자(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지 않은 물량은 지원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공동선별비지원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3. 현황

<table>
<tr><td rowspan="6">조직
현황</td><td rowspan="3">사업자</td><td colspan="2">사업자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표자</td><td colspan="2">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전화번호
(핸드폰)</td><td></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품질관리사</td><td>성명</td><td></td><td>국가자격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조직결성
일자</td><td colspan="2"></td><td colspan="2">조직원 수
(실사업 참여자 수)</td><td colspan="2">명</td></tr>
<tr><td rowspan="2">재배
현황</td><td rowspan="2">품목</td><td colspan="2">재배면적</td><td>생산계획량</td><td>공동선별
출하예상량</td><td colspan="2">출하완료예정일</td></tr>
<tr><td colspan="2">㎡
(ha)</td><td>톤</td><td>톤</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전년도
지원·
출하실적</td><td colspan="3">보조금(공동선별비)</td><td colspan="5">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td></tr>
<tr><td colspan="8">표준규격품 출하실적</td></tr>
<tr><td>계</td><td>공동
계산</td><td>친환경인증</td><td>규격출하</td><td>GAP</td><td>지리적표시</td><td>이력추적</td><td>일반
출하</td></tr>
<tr><td>톤</td><td>톤</td><td>톤</td><td>톤</td><td>톤</td><td>톤</td><td>톤</td><td>톤</td></tr>
<tr><td colspan="2">상 표 명
(브랜드명)</td><td colspan="3"></td><td>상표/의장등록
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타실적</td><td colspan="3">당도표시 물량</td><td colspan="2">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td><td></td></tr>
<tr><td colspan="3">톤</td><td colspan="2">회, 명</td><td></td></tr>
<tr><td rowspan="2">공동
시설
보유
현황</td><td>집 하 장</td><td>선별(과)장</td><td>저온저장고</td><td>일반창고</td><td colspan="2">선별(과)기</td><td>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td></tr>
<tr><td>동, ㎡
( )</td><td>동, ㎡
( )</td><td>동, ㎡
( )</td><td>동, ㎡
( )</td><td colspan="2">조
( )</td><td>( )</td></tr>
</table>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 신청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목	재배면적 (㎡)	수탁 계획량(kg)	매취 계획량(kg)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기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 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 신청·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 신청·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 참고 :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선정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 협의결과 >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kg,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mm)		
				길이	너비	높이

2. 포장재 표시사항

○ “표준규격품” 문구( ), 품목( ), 산지( ), 품종( ), 등급( ), 내용량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당도 및 산도 표시( ), 크기 구분에 따른 구분표 또는 개수 구분표 표시( ), 포장치수 및 포장재중량( ), 영양·주요 유효성분(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시·군·구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 실명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목	사업 방식	총 공동선별 수량(kg)	보조단가(원) (국비+지방비)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수탁, 매취, (수출 여부)					
합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기타 :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 서명

○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안내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시・군・구 :	일자 : . .	성명 : (인)

≪ 참고 :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① (수집·이용 목적)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 증빙

②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거래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③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근거: 국고금관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조금 지급 처리가 불가하여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호	성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국비 + 지방비)(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의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선별 · 공동출하 물량 집계표(계약재배 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하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 보관 철저)

【별지 제6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 변경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신청 내역

품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계						

○ 변경 내역

품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계						

5. 변경사유 :

6. 기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 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 신청·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 신청·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 참고 :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토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선정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첨 >

공동선별비지원사업 Q & A

[Q 1] 전년도 공동선별 조직이 금년도 농식품부에서 정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조직에서 탈락하였을 경우 지원가능한지?

[A] 전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금년도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음.**

[Q 2] 산지유통조직이 공동선별비를 지원받아 수탁 참여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선별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는 적정한 것인지?

[A]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원받은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공동선별 인건비로 직접 지출하면서,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제외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면 인정**(다만, 상계처리에 따른 확인과정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농가별 지급 원칙)

[Q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 · 소매 유통사업장에 개인별 전표를 작성 출하한 후 유통사업장으로부터 출하전표 또는 송품장 등에 출하자 명의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개인 또는 작목반 출하물량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에 맞는지?

[A]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는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에 미달하므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의 주체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면서 전표나 송품장이 개인 또는 작목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명의의 전표 및 송품장 기록**

[Q 4]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포장비, 운송비, 선별인건비 등)가 지원될 경우** 선별비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원이 제외됨

* 수출물류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Q 5] 대형유통업체에 MPB, PB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MPB, PB상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별비의 지원요건(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것임

[Q 6] 통합조직의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을 거치지 않고 개별 출하하거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참여조직의 개별출하 및 개별브랜드 사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Q 7]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정산기간(공동계산기간)은?

[A]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별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기간은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실시**하되, 같은 정산 일에 공동계산기간과 평균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 정산한 것은 공동계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Q 8]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거래 한 후 출하 관련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9]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물량 중 택배물량(우체국전자상거래, 직거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처의 사업자등록증 · 거래내역서 · 영수증 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 택배물량은 지원이 불가능함**

[Q 10] 동일품목에 대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공동계산이라 함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참여 생산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선별 · 출하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정산하는 제도임.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이 산지유통전문조직 이상이어야 하므로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은 지원대상이 아님**

[Q 11]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시 중량 측정은 해당 원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처리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A] 출하물량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처리후의 중량** 기준임

[Q 12]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이 타 시·도(군)에서 매취형 공동선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A] 매취형인 경우 공동선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적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13] 수박과 같은 과채류는 대부분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 기준은?

[A] 공동선별·출하하여 낱개 단위로 판매되므로 공동브랜드 및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은 **다단식 목상자에 일괄표시 또는 스티커 등으로 낱개 단위로 표기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Q 14] 공동선별조직에서 고용한 공동선별 인력이 선별장이 아닌 포전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전에서의 인건비 발생은 선별 인건비라기 보다 수확 인건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선별의 취지상 수확과 선별을 분리하여 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집하하여 선별해야 함**

[Q 15] 공동선별조직에서 농산물을 매취 할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법인, 작목반)외 일반 중간 상인(유통업자)으로부터 매취하여 공동선별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중간상인, 도매시장 등에서 매취한 농산물은 지원 불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매취한 물량만 인정**

[Q 16] 공동계산은 참여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단가를 공동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등급에서 크기 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은 경우, 크기별 구분하여 평균단가로 정산해도 되는지?

[A] 같은 등급일지라도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 **크기구분별 평균단가 정산 가능**(단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경우만 인정)

[Q 17] 공동선별 조직에서 **1~10월까지 출하한 물량**을 **1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11~12월에 출하한 물량**은 **다음연도 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회계연도 구분은?

[A]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즉 당년도 내('21.1.1. ~ 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당해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22.1.1.~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 동 사업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동계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상 회계연도 내에 3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절차인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보조금으로 지급(사과, 딸기 등 해를 걸쳐 진행되는 품목 감안)

** 실 집행 및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

4.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업무담당 : 김지연 ☎ 286-6451]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지조직에게 원물확보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고 산지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사업 주요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소속 참여조직 포함) * 세부사항은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지원 - 단, 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사용 의무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
사업 신청	○ 매년 1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공지
지원대상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시행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별 사업비 배정(차등금리 적용)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412,500	400,000	375,000	390,000
융 자	330,000	320,000	300,000	312,000
자부담	82,500	80,000	75,000	78,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한태희	044-201-2223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시설팀	사무관 강성일	061-286-6450
		주무관 김지연	061-286-645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유통부	차장 장호광 대리 오승주	061-931-1031 061-931-1032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인 농업법인의 경우 ①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②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③ 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생산자단체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취급액의 90% 이상을 출하했을 경우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모두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 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의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야 함

  *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5명 이상 및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해야 함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포함)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5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이 가능하며,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 취급률 요건 적용을 한시적 제외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에는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21년 예비 통합마케팅조직(품목광역조직에 한함)을 시범 운영하며, 자격 및 요건을 완화(총 취급액, 조직화 취급액, 조직화 취급률 개별 기준요건의 50% 이상)하고 지원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지원으로 제한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이 가능하며,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 취급률 요건 적용을 한시적 유예

  * 조직유형 변경(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기존 실적을 연결하여 인정하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간의 통합 또는 지역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의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산지유통 혁신조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품목 전문의 생산과 마케팅을 계열화하고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참여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 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 등 2억원 이상

- 참여조직의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20% 이상

  * 품목광역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참여조직이 당해조직의 미취급 품목을 다른 통합마케팅조직에 전속출하하는 경우는 <u>복수의 참여조직의 지위를 갖는 것을 예외</u>로 인정(공동선별비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에 한하여 적용)

- 상기 요건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요건으로, '산지유통 혁신조직'의 중장기 운영계획 상에 명시되어 전문품목 총 취급량의 60% 이상을 해당 혁신조직에 출하 등 별도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도 참여조직으로 별도 인정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1개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에게 자금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액(인센티브 포함) 차등 가능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이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산지유통혁신조직 또는 참여조직이 운영실적 확인 후 인정요건을 2년 연속 미달 시에는 기 지원된 자금을 전액 회수(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이며,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4월 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 적용)

* 대출취급기관은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통지를 시행

- 통합마케팅조직이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선정되면서 참여조직에서 제외된 조직은 신규자금 지원이 불가하며, 기 지원된 자금 전액에 대해서 최고금리 적용(1년 : 4.1일부터 다음연도 3.31일까지)

* 단, 산지유통 혁신조직 운영계획서 상에 참여조직으로 등록된 조직은 신규자금 지원중단 및 기 지원된 자금에 대한 최고금리 적용에 대해 1년간 유예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6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등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출하약정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계약재배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 구입 자금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1.0~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단,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처음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첫해년도에 한해 금리 0.5% 추가 인하 적용)

- 참여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소속 참여조직과 동일하게 별도 적용
-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지유통종합평가, 운영실적 점검(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 지원된 자금 전액에 대하여 최고금리 적용(1년 : 4.1일부터 다음연도 3.31일까지)

○ 금리 차등 적용시기 :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 적용금리 유지 후 상환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 등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평가 등급 및 적용금리		
평가순위	**평가등급**	**적용금리**
상위 10% 이내	A	1.0%
10%~30%	B	
30%~70%	C	1.5%
70%~80%	D	2.0%
80%초과	E	80~90% : 2.5% 90%초과 : 3.0%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순위	**적용기준**
상위 10% 이내	지원금액의 30% 이내
10%~20%	지원금액의 25% 이내
20%~30%	지원금액의 20% 이내
30%~40%	지원금액의 15% 이내
40%~50%	지원금액의 10% 이내
50%초과	없음

* 차등 적용금리 : 농업법인 등은 90% 초과 조직도 2.5% 적용

○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지원기간** : 1년

○ **인센티브(무이자) 지원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에 대한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총액은 250억원 한도

○ **페널티**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하여 탈락한 조직은 페널티 부과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이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지원된 자금 전액 회수

* 기 지원된 전체 자금(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의 회수에 따른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4월 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적용

*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2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이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지원된 자금 전액(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 참여조직은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사업대상자 요건 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을 경우 참여조직의 기 지원된 자금 전액(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당해연도(전년도 실적)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대상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인센티브 : 연차평가 결과 (A등급) 30억원, (B등급) 20억원, (C등급) 10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푸드플랜)을 체결한 지자체 소속 산지조직**
- 인센티브 : 연간 5억원 무이자(3년, 지자체 기준)

* 지역푸드플랜에 참여(푸드플랜지원센터 등과 협약 또는 계약체결)하고 있는 조직에게 배정
* 도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도에서 추천하는 조직에게 배정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3점) 처리 및 신규 자금 배정액 감액(30%)**

*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신규 자금 배정 이후 확인될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1회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 (예고) '21년 이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확인하여, 불성실 이월한 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자금 금리를 0.5%p 가산 적용

다.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인센티브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 금리 차등(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구분	우수조직	보통조직
기준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60% 이상이고 출하액 50억원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20% 이상
인센티브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금리 대비 0.5% 인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 가용액)하여 7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

* 단,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의 조직화 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 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산지유통 혁신조직은 조직화 취급률이 80% 이상일 경우에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산지유통혁신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산지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 혁신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 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 의무액 평가 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산지유통 혁신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제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조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 기관, 기존 산지조직, 농업 전문지,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신청서(1월) 및 실적(2월)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접수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 및 실적을 각각의 해당기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사업신청 및 실적 입력

- `21년 사업신청서(`22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수요조사 포함) 입력(1월)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2월)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인확인서 등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실사 시 제출

○ 산지유통 혁신조직은 별도 신청

- '21년은 통합마케팅조직으로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20년 사업실적 입력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등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대상조직으로 선정(3월 중순까지)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선정된 예비대상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조직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월 하순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조직의 신청액(참여조직 포함)과 산지유통종합평가 등급, 조직화 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의 조직형태별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산지유통 혁신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 배정기준(인센티브, 페널티 포함)을 준용하되 우선·우대하여 배정이 가능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월 하순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 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 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10% 이내)
○ 전년도 조직화 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30% 이내)
○ 전년도 조직화 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 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이내)
○ 전년도 조직화 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초과)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전년도 자금집행율을 고려하여 배정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0%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에서 배정 가능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대출취급기관에 안내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3월 말까지)

○ 배정 이후 융자포기, 예산 증액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수요조사 후 추가 배정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자금을 연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산지유통 혁신조직은 별도 검토 및 확정 공지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신청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자금 차입 전월 하순까지) 및 자금 차입(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 요청

○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기관에 반납

○ 자금 차입 및 대출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 제출(6월말, 12월말)

대출취급기관

○ 농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자금 신청 및 실행

* 사업대상조직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Ⅱ-1) 사업대상자 요건 등을 검토·확인 후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자금 신청 후 대출 완료

* 추가자금 배정조직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완료

*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금 미대출 시 미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 농식품부 한도배정 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나,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7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이율이 다른 융자건에 대하여 평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사업대상조직

○ 농협조직은 농협경제지주, 농업법인 등은 aT에 대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 (Ⅱ-1) 사업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 및 대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조직별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조직	대출취급기관
지역(품목)농협조직	농협경제지주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은행
농업법인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농업법인의 대출취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나, 해당 조직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여 농협을 통한 대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농협 이용 가능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

○ 추가자금 배정조직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완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aT,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aT, 농협경제지주)간 합동점검 실시

* 농협은행이 대출취급기관일 경우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농협은행 대출사무소에서 사업의무액 합동점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등을 실사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6월말)
- aT 및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보고(7월말)

* 사업의무액 점검 시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병행 실시

사업대상조직

○ 전년 실적에 대한 사업의무액 실적을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

○ 대출취급기관 실사(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포함)시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제출

《제재》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합동점검 및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연도 1월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8월)

○ 산지유통혁신조직 운영실적 점검(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유통혁신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사업실적 개선을 유도

2. 환류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 산지유통혁신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우대지원 지속 여부 등 결정

[별지 서식]

2021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table>
<tr><td>조 직 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대 표 전 화</td><td colspan="3"></td></tr>
<tr><td>담 당 자</td><td colspan="2"></td><td>담당전화</td><td colspan="2"></td><td>팩스번호</td><td></td></tr>
<tr><td>신 청 유 형</td><td colspan="3">지역연합조직 □, 품목광역조직 □</td><td>신규 및 재신청</td><td colspan="3">기 존 조 직 □, 재 신 청 □,
신 규 조 직 □</td></tr>
<tr><td colspan="2" rowspan="2">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취급액의 60%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출하액
및 개소수</td><td colspan="2" rowspan="2">출하액계( )
개소수( )</td><td colspan="2" rowspan="2">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td><td>aT</td><td>NH</td><td>계</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2">‘20년
총취급액</td><td colspan="3" rowspan="2"></td><td rowspan="2">‘21년
자금
신청</td><td>대출
희망기관</td><td>aT</td><td>NH</td><td>계</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8">*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td></tr>
<tr><td rowspan="3">‘20년
조직화취급액
(원예농산물)</td><td>계약재배
매취</td><td colspan="2"></td><td rowspan="2">자금의 용도</td><td colspan="3" rowspan="2">출하약정수탁 □,
계약재배매취 □
자가생산영농자금 □, 기타 □</td></tr>
<tr><td>공동계산
수탁</td><td colspan="2"></td></tr>
<tr><td>합계</td><td colspan="2"></td><td rowspan="2">담보제공 물건</td><td colspan="3" rowspan="2">부 동 산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기타 □</td></tr>
<tr><td rowspan="2">정부지원
타 자금</td><td>지원금액</td><td colspan="2"></td></tr>
<tr><td>지원사업명</td><td colspan="2"></td><td>물건 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출자금</td><td colspan="2"></td><td>물건 소유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td><td>감정가격(부동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8">첨부 : 1.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td></tr>
</table>

주) 1. 사업신청 조직은 아래 자료를 산지유통종합평가 현지실사 시에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 농협조직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2. 또한, 사업 신청조직 중 신규 신청조직일 경우는 아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① 사업자 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③ 정관사본 1부

* 위 1번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법인 확인한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Agrix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기타 조직자체 추정자료나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한 조직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 미제출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붙임 1>

통합마케팅 체계

지역연합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이상 참여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조직이 출하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한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률 35%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 취급률 요건 적용을 한시적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품목광역조직

○ **정의** :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확보(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 취급률 요건 적용을 한시적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참여조직

○ **정의** : 1개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서 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에 출하하는 산지조직

○ **주요형태** :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은 5억원 이상, 농업법인은 2억원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의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20% 이상인 조직만 선정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5명 이상 및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기초생산자조직

○ **정의** :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조직에 소속되어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조합원 또는 출하농가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규모화·전문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직원들의 수익 향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생산자조직

○ **주요형태** :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계약매취회 등

○ **요건** : 5인 이상 농가들로 구성하고 자발적 참여, 전략(약정) 출하의무, 판매마케팅 권한 위임, 자율적 운영, 규칙 제정·운영의 원칙 준수

<붙임 2>

산지조직 원물취급방식 및 실적인정기준

조직화취급 :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1. 조직화취급 개념 및 기본원칙

○ **도입목적** : 소비지 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 · 규모화 · 전문화를 유도하고, 생산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

- 개별 농가 단위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격교섭력이 취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조직에서 공동으로 선별 · 출하 · 판매를 실시하면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교섭력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가능

○ **개념** : 복수의 농가(5농가 이상)들이 공동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품종, 영농기술, 품질관리, 수확방식 등을 준수하여 생산 · 출하하고, 산지유통조직과 공동수탁, 계약재배매취 방식의 수직계열화된 유통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거래교섭력 강화, 거래비용절감,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 **기본원칙** : 조직이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참여(회원)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등급별 판매 · 정산하는 사업방식

- 산지유통시설 또는 일정한 시설에서 자동선별기 또는 수작업 선별 실시

  * 수작업선별시에는 품질관리사가 반드시 검품 실시 후 판매 • 정산

- 기본원칙을 준수한 매출액(공동계산수탁) 또는 매입액(계약재배매취)에 대해서만 조직화취급액으로 인정함

2. 공동계산 수탁사업

○ **개념** : 다수의 농가들이 마케팅 협력조직(공선출하회)을 결성하는 등 공동선별방식, 품질등급, 판매방식, 정산방식(정산기간, 상품화, 판매비용 등) 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방식

  * 수탁형 사업으로 상품의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책임 • 권리가 참여농가에 있음

- 조직농가 수 : 최소 5명 이상(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복수의 농가조직 운영 가능)
- 조직이 수립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품질등급별 공동판매, 판매기간 중 품질등급별 평균판매 가격에 기초한 공동정산 실시
- 공동판매기간(공동정산 적용기간) : 판매처가 1개소인 경우 최소 5일 이상, 판매처가 복수인 경우 1일 이상

○ **공동계산 수탁 요건**

- 계약(약정) 시기 : 농가와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약정) 이행 : 약정서에 명시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약정)시기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수탁하는 단순수탁은 불인정

○ **유형**(공동계산수탁 취급 인정유형)

유형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비 고
A	개 별		공 동		농가별 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특성 및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예시 : 엽채류, 풋고추 등
B	개 별	공 동			공동 기계선별 및 수작업선별 품목
C	공 동				공동수확단을 운영 수확 현장에서 선별 예시 : 무, 배추, 감자 등

*위의 A, B, C유형만 공동계산 수탁취급으로 인정(이외 특수사례는 별도 검토)

3. 계약재배 매취사업

○ **개념** :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계약(계약물량 및 품질등급별 매입가격 반드시 명시)을 체결하고, 수확 후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농가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방식

* 계약재배 농가조직(출하회 등)을 결성하여 품종·재배기술 통일, 영농기술 혁신, 공동수확 등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권장

○ **계약재배 요건**

- 계약시기 :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이행 : 계약물량과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시기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입하는 단순매취는 불인정(포전거래, 창고거래, 정전거래 등 포함)

4. 조직화취급 확인사항

가. 공동계산수탁

○ **[계약(약정)체결] : 출하약정서(출하권 위임 명시) 및 약정관리기록부**

① 출하약정서 : 약정농가명, 약정 농지의 위치 · 면적, 물량, 계약금(선급금) 명시

* 계약(약정)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② 약정관리기록부 : 농가별 약정,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관리기록부

○ **[조직] : 생산농가조직에 관한 사항(품목별, 농가조직별)**

① 공동계산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규칙(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 관련 내용 포함 및 산지조직 대표와 농가조직 대표의 서명)

② 공동계산수탁사업을 실시하는 생산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농가명, 주소, 참여연도, 참여 이후 출하실적 등)

○ **[공동선별] : 공동선별 작업에 관한 사항**

① 참여농가들의 출하물량 및 공동선별 결과(품질등급별 물량)에 대한 기록부(일자별, 품목별, 농가별)

* 참여농가별 대금정산(공동정산) 기록부와 동일한 기록부에 작성 가능

② 공동선별 작업일지(일시, 선별작업 품목, 출하농가별 및 당일 총선별 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의 기록)

* 개별농가에서 선별한 경우 품질관리사의 검품기록부(품목, 농가, 일시, 물량, 품질등급, 검품결과 등)

* 물량 입고원장(공동수확작업단 운영도 동일)의 물량이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

○ **[공동판매] :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① 공동선별한 상품의 품질등급별 판매내역(판매일, 품목, 판매처, 판매금액) 기록부 및 증빙서류(출하내역서, 송품장 및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 등)

* 출하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물량이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보다 크거나 같은 지 여부 확인

* 산지조직 자체 가공시설에 원물을 공급한 경우 : 가공시설의 원물매입 내역에 해당조직이 출하한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 기재 후 확인자료 제출

○ **[공동정산] : 공동정산 관련 사항**

①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판매 관련 기록사항(공동판매기간, 회원농가명, 품질등급별 출하량, 등급별 가격 등)

②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정산 관련 기록사항(농가 출하내역별로 상품화 및 운송비용 등 공제 후 농가에게 지급한 최종 정산내역)

* 공동선별비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동계산으로 불인정(단, 농가 개별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공동계산지침에 따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품질관리사의 품질등급 기준에 따른 검품관리기록부 제시)

나. 계약재배매취

○ **[계약체결]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 및 계약재배관리기록부**

① 계약서 : 계약농가명, 계약재배 농지의 위치·면적, 품질등급별 단가, 물량, 계약금 명시 및 계약금 지급내역 자료

* 계약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② 계약재배관리기록부 : 농가별 계약,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리기록부

* 포전거래, 정전거래, 창고거래는 불인정

* B2B거래를 통한 원물확보 시 원물공급 조직은 반드시 계약재배를 실시해야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매입] :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 확인서**

① 매입원장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에 명시된 품질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한 매입원장

* 계약기간 중 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품질등급별 조정단가 인정

② 원료매입확인서 : 원물을 출하한 농가 및 출하조직별 임금확인 내역

* 도·소매시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 및 조직으로 부터의 실적은 불인정

* 긴급한 원물확보 매입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은 가능하나 실적으로는 불인정

○ **[선별] 및 [판매] : 공동계산수탁과 동일 적용**

① 선별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산수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출하약정수탁

○ **개념** : 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처 선정 권한 위임(출하권 위임)이 명시된 출하약정을 파종(정식, 착과 등) 전에 체결하여 판매하는 수탁사업방식(공동계산수탁 포함, 단순수탁 제외)

○ **운영방식**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출하약정수탁은 개별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물량, 선별방식, 품질규격(등급), 판매처 선정, 정산방식 등에 대한 규약과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

* 출하물량의 약정, 공동의 품질규격, 출하권 위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출하처 선정 권한이 산지조직에게 있어야함)

* 개별농가에서 선별·포장하는 경우 산지조직은 반드시 출하 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검품(샘플 또는 전수)을 실시해야함

○ **확인사항**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실적은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 산지조직이 수립한 해당 품목별 공동품질규격 및 검품방식(매뉴얼 등)
- 출하약정서(출하물량 및 출하권 위임 명시), 출하관리장부(품목, 농가별 선별 및 검품일지 등), 공동판매장부(품목, 판매처, 판매일, 판매금액) 및 증빙자료(출하내역, 송품장, 판매처가 발행한 정산서), 농가별 정산내역 장부(운송비 등 제비용 공제, 수수료 납부, 농가별 판매대금 입금)

○ **정책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사용용도로 인정(계약금, 선도금 등 사용가능)

단순기표

○ **개념** : 참여조직이 거래처에 직접 출하한 실적에 대해 통합조직이 정산 등 단순 행정처리를 하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마케팅 실적으로 기표하는 행위

○ **페널티**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물량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 처리 및 자금 감액 배정 등 조치

<붙임 3>

2021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 농협조직 평가지표

항 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 고
규모화 (2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가중치 : (300억원 미만) 1.10, (500억원 미만) 1.07 (800억원 미만) 1.05 (1,000억원 미만) 1.03, (1,000억원 이상) 1.0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8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 - 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100	(300억원 미만) 10.0% (500억원 미만) 8.0% (800억원 미만) 6.0% (1,000억원 미만) 4.0% (1,000억원 이상) 2.0%	4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100	(300억원 미만) 10.0% (500억원 미만) 7.0% (800억원 미만) 5.0% (1,000억원 미만) 2.0% (1,000억원 이상) 1.0%	3	
조직화 (4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 가중치 : (200억원 미만) 1.10, (400억원 미만) 1.07 (500억원 미만) 1.05, (500억원 이상) 1.02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5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100	65%	15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100	15%	3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100	15%	3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통합마케팅조직 조직화 취급액)×100 * 기초생산자조직 : 공선/계약 출하회만 인정	60%	9	
전문화 (10)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 / 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6시간/인)×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시간 합산	100%	5	100% 이상 교육
통합 사업 역량 (20) (선택)	(지역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조직화농가 참여율)	① 참여조직이 있는 지역연합조직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60%	20	출하목표 비율
		② 참여조직이 없는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조직화 출하농가 수/전체 출하 농가 수)×100	60%		
	(품목광역) 전문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100 * 전문품목은 산지유통 혁신조직 전문 취급품목 분류에 의거 구분	50%	20	
합계	**11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온라인 거래실적	온라인 거래소 취급품목 기준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취급비율 1%이상≤2점<3%≤4점<5%≤5점<7%≤6점 * 농협 농산물거래소, 도매법인 전자거래,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거래실적에 한하여 인정		6	최대 10점
	유통·판매 관리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25시간/인)×100	100%	4	

	전담인력 전문교육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 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등 * 사업관련 요구자료 제출 등 비협조 : △2.0점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최대 △3.0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제출 지연 : △2.0점(1일당)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0점		△10	최대 △10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또는 평가회피, 미평가)		사업대상취소	

* 기초생산자조직은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추어야 하고, 공선/계약 출하액 5천만원 이상만 인정

❑ 농업법인 등 평가지표

항 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 고
규모화 (2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가중치 : (200억원 미만) 1.07, (300억원 미만) 1.05 (300억원 이상) 1.0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8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 - 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 ×100	(200억원 미만) 10.0% (300억원 미만) 5.0% (300억원 이상) 3.0%	4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100	(200억원 미만) 10.0% (300억원 미만) 8.0% (300억원 이상) 6.0%	3	
조직화 (4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 가중치 : (100억원 미만) 1.07, (200억원 미만) 1.05 (200억원 이상) 1.02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5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100	65%	15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100	10%	3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100	10%	3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통합마케팅조직 조직화 취급액)×100 * 기초생산자조직 : 공선/계약 출하회만 인정	60%	9	
전문화 (10)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6시간/인)×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시간 합산	100%	5	100% 이상 교육
부가가치 건전성 (5)	총부가가치율	총부가가치/총 매출액×100	10%	3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00%	2	
통합 사업 역량 (15) (선택)	(지역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 ×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60%	15	출하목표 비율
	(품목광역) 전문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100 * 전문품목은 산지유통 혁신조직 전문 취급품목 분류에 의거 구분	50%	15	
합계	**13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온라인 거래실적	온라인 거래소 취급품목 기준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취급비율 1%이상≤2점<3%≤4점<5%≤5점<7%≤6점 * 농협 농산물거래소, 도매법인 전자거래,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거래실적에 한하여 인정		6	최대 10점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25시간/인)×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100%	4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등 * 사업관련 요구자료 제출 등 비협조 : △2.0점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최대 △3.0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제출 지연 : △2.0점(1일당)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0점		△10	최대 △10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대상 취소	

* 총부가가치 : 매출액에서 판매상품에 투입된 원재료(다른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를 종합한 금액임(=매출과표-매입과표)
* 기초생산자조직은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추어야 하고, 공선/계약 출하액 5천만원 이상만 인정

<붙임 4>

원예산업종합계획

1. 개요

○ **목적** : 산지 조직화 · 규모화를 가속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군, 시도단위의 체계적인 원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산지유통정책과 연계 도모

○ **내용** : 지역별 원예농산물 생산 · 유통 종합육성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포함

- 지역별 생산 · 유통 현황과 산지유통시설의 지원계획 및 농가조직화 방안
- 지역단위 산지유통관련 유관기관 · 품목별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운영 방안 등

○ **기간** : 5년 단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발계획" 수립기간과 동일('18~'22)

  * 중도수립의 경우에도 농발계획 종료시점과 일치

2. 선정 · 평가 및 연차평가

농식품부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 · 평가, 이행실적 연차평가 계획 및 결과 확정 공지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지자체 등

○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지역 원예농산물의 생산 · 유통 방안에 대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농발계획" 수립기간과 일치하게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예농산물 현황(생산량, 재배면적, 생산시설 · 장비, 산지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차적 육성 방안에 대한 계획 중심으로 수립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 시도는 시군 및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보고서는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0월)

  * 필요시 시도, 시군, 품목광역조직이 각각 수립 가능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할 경우에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정계획 보고서는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0월)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및 품목광역조직은 매년(2월) 이행실적 연차평가를 받아야 함

- 이행실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현장실사시 증빙자료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 · 평가 기본계획(9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 세부계획(1월)을 농식품부와 협의 · 수립하고 산지조직, 농협경제지주 등에 안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신규 또는 수정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 · 평가(11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2월) 실시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 · 평가는 5년 단위로 하고, 수정계획 평가는 매년 실시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외의 신규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 • 평가는 수정계획 평가 시 실시

- 이행실적 연차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접수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 · 평가 결과(12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3월)를 농식품부 제출

3. 환류

○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지원 확대 및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부진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페널티 부여

- 지자체 소속 통합마케팅조직 무이자 인센티브 추가 지원

○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부진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및 보조금 지원 보류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승인취소 시점부터 보조사업 신청 제외

○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산지관련 보조사업(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등) 지원 제외

○ 원예산업종합계획 신규계획 승인 지자체(품목광역조직)는 사업계획 개시년도부터 보조사업 신청 가능

○ 산지유통 혁신조직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 없이 보조사업 지원 가능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점수	등급	환류
80점 이상	A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30억원 추가지원 ▸ 산지관련 사업 우선 선정 ▸ 담당자 해외연수 및 산지 조직화 등 언론홍보 기회 제공
70점 이상	B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20억원 추가지원 ▸ 담당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60점 이상	C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10억원 추가지원
50점 이상	D	
50점 미만	E	페널티 부여(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외) ▸ 2회 연속 :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취소 및 산지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외

<붙임 5>

2021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이행노력 (20점)	이행점검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점검 여부(자율평가 등) * 1회(5점), 2회(10점) / 도는 소속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종합하여 점검	10	
	거버넌스	▸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구성(4점) ▸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개최실적(6점) * 1회(2점), 2회(4점), 3회 이상(6점)	10	
생산 (35)	기초생산자조직 육성	▸ 원예농산물 기초생산자조직(공선출하회, 계약매취회) 육성 실적 -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통합마케팅조직 조직화취급액)×100 * 기초생산자조직 : 5명 이상으로 구성, 공선·계약매취 출하액 5천만원 이상 * 실적이 60% 이상일 경우 만점	20	
	조직화 출하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목표 대비 실적(10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농가와 사전(파종, 정식 등) 계약(약정) 실적에 한하며, 포전거래, 창고거래 등은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의 원예농산물 총매입액 대비 조직화취급액 비율(5점) * 실적이 60% 이상일 경우 만점	15	
유통 (45)	통합마케팅 확대	▸ (전체)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목표 대비 실적(15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지자체)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전년 대비 증가율 (10점) * 실적이 20% 이상일 경우 만점 ▸ (품목광역)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전년 대비 증가율(10점) * 각 실적은 20% 이상일 경우 만점	25	
	참여조직 참여도	▸ (지자체) 참여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대비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액 비율 * 참여조직 출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참여조직이 없는 합병농협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한 지자체는 품목광역 지표로 평가 ▸ (품목광역)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대비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 비율 *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20	
합계	**6개 지표**		**100**	
가점	GAP 인증	▸ 원예농산물 GAP 인증 면적(ha) 목표 대비 실적(2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2	최대 5점
	제도화	(시도, 시군) 생산유통 계열화 및 조직화를 위한 조례 제정 여부 (품목광역) 기초생산자조직 육성 · 지원 등에 대한 자체 계획 및 이행 여부	3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2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 △3점(1일당 △1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0인 취소	

* 도는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된 소속시군 등의 각 항목별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이행점검, 거버넌스, 제도화 제외)
* 농업법인은 회칙, 공급체계 운영규칙 등이 갖춰진 기초생산자조직(계약매취회 등)과 소속농가만 인정

5.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업무담당 : 최수명 ☎ 286-6454]

1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예산 (백만원)	1,300
사업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ㅇ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지원한도	3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지방비	2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융자	-	자부담	50 (생산자단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500,000	3,500,000	7,000,000	4,334,000
국 고	1,050,000	1,050,000	2,100,000	1,300,000
지방비	700,000	700,000	1,400,000	867,000
융 자	-	-	-	-
자부담	1,750,000	1,750,000	3,500,000	2,167,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 장 이용직	044-201-2271
		사무관 김중수	044-201-227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서기관 황신구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 · 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수확 후 관리 시설을 보유한 농가 또는 생산자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 · 군수(자치구 포함)

[우선 지원]

○ '21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대상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GAP 기준에 따른 내부심사자를 지정한 GAP 인증 단체, GAP 정보서비스 내 출하정보를 등록하는 GAP 인증 단체

○ '21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우선 선정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우선지원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지(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화장실·탈의실 등 별도 시설 확대에는 사용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별	구분	사용용도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 ·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건조저장시설	○ 곡온(穀溫)관리, 쥐 등 침입방지, 잔곡(殘穀)관리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시설물 공사
	작업장	○ 공정별(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내벽, 천장, 출입문, 창문, 집진시설, 채광 및 조명 등 공사
	가공설비	○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 및 선별장치 공사
	집진설비 및 부산물실	○ 집진설비, 부산물실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공사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 · 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작업장	○ 공정별(선별, 세척 및 포장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배수, 내벽, 천장, 출입구, 창문, 채광 및 조명, 환기설비, 집진설비 등 공사
	수확 후 관리설비	○ 농산물 수확 후 관리 · 취급 설비, 냉각 및 가열처리 설비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저장(예냉) 시설	○ 저온시설의 작업장과 분리 공사 ○ 벽체, 천장, 내벽, 창문, 출입문, 온도(냉장, 냉동, 냉각)관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폐수처리시설 공사
지원제외 대상		○ 시설물과 관련 없는 운송차량, 팰릿(pallet), 수송 · 운반 · 보관용물류기기 등 구입, 판매장 공사, 원료 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비 지원

<참고사항>

○ 시설별 사용용도에 따른 시설기준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참고

○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 및 관련 전문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의 자문을 받아 부적정한 공사 방지

○ 사용용도 외 GAP 농산물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장치나 설비 보완 허용하나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 제시

○ 전체사업비 5% 내 기술검토 비용 및 설계,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 · 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개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		지자체(10월)		생산자단체 등(11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 · 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 · 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 ·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분야별 전문위원 평가	→	사업자 선정 알림
시·군(11월)		시·도(11월)		시·군(1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 · 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 실시

시·도

○ 시 · 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사후관리 기관인 농관원 지원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및 시 · 군에 송부

* 보조금 상반기 집행 가능자 우선 선발

○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 차질이 없도록 예비사업자(후순위 사업자) 반드시 선정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주요 점검사항]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8조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 · 도의 사업성 평가 시 구비서류 준비 및 현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및 계획 등을 사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세부실행계획 등록	→	**세부실행계획 등록 확인**	→	**세부실행계획 승인**
민간보조사업자(1월)		시·군(1월)		시·군(1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 · 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실시하여 대상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추진
시·군(1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 · 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 · 도에서는 시 · 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 · 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 · 군에 자금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의 감리보고서를 첨부 (감리는 권장사항)
- 감리비는 사업자가 감리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직접 지급

* 시군 집행 여건에 따라 시군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가능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집행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1~12월)		민간보조사업자(12월)		농식품부,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 내)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할 경우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집행률은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 미흡 지자체 독려)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 · 군(시 · 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1(생산자단체용)]

'21년 GAP시설 보완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HP
	총출자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사업형태 (√표시)	□ RPC(미곡종합처리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소규모 농산물 단순처리 및 수확 후 전처리시설			
	사업체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설 립 일	년 월	'20년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생산(원물)	
				가 공	
				직거래	
	공장 주소지	주소: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세부사업				

GAP시설 보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3.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등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 · 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1부.
   ⑧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시설 개 · 보수 계획

1. 시설 개 · 보수 기간 : 21 . . . ~ 21 . . .

2. 시설 개 · 보수 내용

시설 개 · 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사진 *(시설개보수 사업내역)*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별지2(생산자단체용)]

‘21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GAP 참여농가 : 명(참여농가 현황 첨부)

나. 운영실적 : 설립일(‘00.00.00), ○○년 경영

< 그간 경영체 우수 운영실적 등 기재 >
○
○
○

다. 사업실적(전년도)

품 목	상표명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원)				주 요 출하처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주) 1.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주 품목 원료매입(자체생산도 포함) 실적 및 계획

품목명	‘20년도(톤)				‘21년도(톤)				증감(톤)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사 진	[위치도]	[사진]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사업량	단 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세부사업명 기재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 정 산 :

4. 사업계획

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 영 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나.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GAP 내부심사자 지정현황 및 활동계획 등

○ GAP 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확대방안(**구체적기재**)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 GAP 인증 취급물량 증대, 매출액 증대, GAP인증시설 획득 등

○ GAP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등

* 사업년도, 사업 후 향후 3년간 GAP 인증 농산물 취급 목표 기재

6. 기 타

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 업 명 :
- 연 도 :
- 사업품목 :
- 세부사업 : 내용 및 규모 등 기재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타 특기사항

[별지3(시군용)]

'21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이 총 사업비보다 높습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최근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유무 등) * 영농조합 경우만 해당		
대상품목	대상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시군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검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사업완료 후 GAP 인증 면적이 늘어 날 수 있습니까? * 연도별 계획 : '20년(농가 ha), '21년(농가 ha), ' 22년(농가 ha)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까?		
	시설 · 개보수 관련 관련기관(지자체 등)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 중 지원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되었는가?		
지원 제한 기 준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업체입니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3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인가요?		
가 점	사업대상자 가점 부분 확인 1. GAP 안전성 분석 대상(○),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여부(○) 3. GAP 내부심사자 지정 여부(○), 4.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가능자(○)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별지4(시도용)]

'21년 GAP 시설보완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계			120					
GAP인증 참여농가 (10점)	참 여 율 (10)	참여 농가수	10	30명이상 (10)	29~20 (8)	19~10 (6)	9~5 (4)	4명이하 (2)
유통시설 운영실적 (10점)	시설능력 (10)	선별장, 예냉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등 * 계획서의 유통시설 보유현황 확인	10	4종 이상 (10)	3종 (8)	2종 (6)	1종 (4)	0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 체 성 (15)	사업내용의 구체성·타당성	15	(15)	(12)	(9)	(6)	(3)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5	(15)	(12)	(9)	(6)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 사업경험 및 역량	10	10년 이상 (10)	9~7 (8)	6~5 (6)	4~3 (4)	2년 이하 (2)
	자 부 담 (10)	자부담능력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 능 성 (20점)	사업성과 기 여 도 (2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GAP 인증면적 및 매출액 증가 효과 등	20	(20)	(16)	(12)	(8)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가점(20점)			5	GAP 안전성 분석 대상				
			5	GAP 시설 지정 여부				
			5	내부심사자 지정 여부				
			5	상반기 조기집행 가능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심사자 서명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5 : 제91조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안 제55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 2 '21년 GAP 시설보완사업 세부사업 (예시)

1. 작업장 보완 공사

구분	주 요 내 용
작업장 분리 · 구획 공사	작업장 내 청정도가 다른 구역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분리 · 구획 공사 -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구역은 작업구역과 분명하게 분리 - 세척 농산물의 경우 세척, 포장 공정 등 청결 작업구역은 작업장내 다른 구역과 분리 공사전 공사후(세척실 분리) - 원료 농산물 입고(투입) 공간과 일반 작업공간 분리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 분리 · 구획 * 평균 공사비용 - 판넬사용 분리공사 : 2,600천원(10m×4m 기준)

구분	주 요 내 용
바닥공사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배수와 위생적 관리가 잘되도록 공사 -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변경 -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보완 - 평활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보완 - 운반기구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 - 바닥 코팅제 보수작업: 바닥의 코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 에폭시를 도포할 경우 3mm이상의 두께로 마감 공사전 ➡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에폭시 : 13,000천원, 레진몰탈 : 26,000천원
배수구공사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보완 (사각형 배수로) (U자형 배수로) (오메가형 배수로)
천장공사	-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공사 공사전 ➡ 공사후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td><td>-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분리공사와 함께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 · 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보완 시공
 ⇒
세척실 전청
보완(돌출부위 보완)　　세척실 전청
보완(헤파필터 설치)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17,000천원</td></tr>
<tr><td>출입문공사</td><td>설치류 침입이 불가능하게 틈새를 6.4mm(1/4 inch) 이하로 출입문 공사, 에어커튼 설치 권장

출입문 보완(에어커튼설치)
출입문
보완(스피드도어설치)
* 평균 공사비용(4m×4m기준)
- 행거도어(판넬문) : 3,500천원, 오버헤드도어 : 28,000천원
- 에어커튼(4m, 산업용) : 1,700천원, 스피드도어 : 7,000천원</td></tr>
<tr><td>조명공사</td><td>조명은 매입형태로 설치(매입이 어려우면 천정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파손이나 이물질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커버나 보호용 덮개 등의 보호장치 설치공사,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 유지 공사
<참조> 작업구역별 적정조도
- 육안으로 선별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구역 : 540 Lux 이상
- 일반 작업구역 : 220 Lux 이상</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td><td>- 기타 부대시설 (창고, 화장실, 탈의실) : 110 Lux 이상

공사전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100평기준) : 15,000천원</td></tr>
<tr><td>창문공사</td><td>창문은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 공사

공사전

공사후</td></tr>
<tr><td>환기 및
냉난방시설
공사</td><td>작업장 환기 급배기 시설 및 냉난방 설치 공사

공사전(일반 Fan)

공사후(공조기 설치)
* 평균 공사비용
- 환기 급배기 시설공사 : 25,000천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 냉난방 겸용 환기공사 : 115,500천원(230㎡ 온도 20℃ 기준, 입고공간제외)</td></tr>
</table>

2. 설비보완 설치 공사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수확 후
관리설비
공사</td><td>농산물을 수확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를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보완 설치
- 수확 후 관리시설의 청소용이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설비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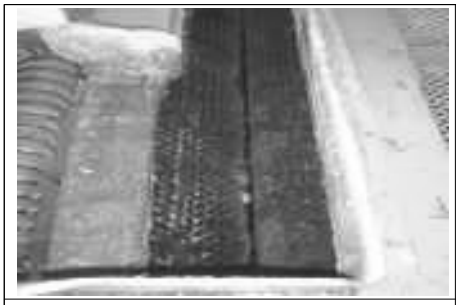
공사전 ➡
공사후</td></tr>
<tr><td>청소관리
시설공사</td><td>청소도구함 설치 및 청소관리 설비 설치

작업장 청소설비 설치

기계설비용 에어건 설치</td></tr>
<tr><td>위생시설
공사</td><td>위생장비/시설 설치공사

(포충등)

(손소독기)

(발판소독기)

(에어커튼)

(손건조기)

(에어샤워기)</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td><td>* 평균 비용(기능별 가격차이 있음)
- 손세정대 : 500천원, 손건조기 : 400천원, 발판소독기 : 150천원, 에어커튼 300천원 손 소독기 : 200천원, 포충등 : 450천원등
- 에어샤워기 : 수동문 6,500천원, 자동문 13,000천원</td></tr>
<tr><td>화장실공사</td><td>-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 설치공사
- 수세식으로 세면대 보완 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화장실 수세식 설비 공사
-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손 건조기 또는 페이퍼타월 설치 공사

화장실 세면대 보완

손건조기, 페이퍼타월 설치</td></tr>
</table>

* 평균비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산출된 내용임
*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다소 발생 할 수 있음

참고 3 '21년 GAP 시설보완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합당하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가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가 타당한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대상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정하게 지원하였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이 적절하며,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 (15점)	15	12	9	6	3	○GAP 인증농산물 확대에 기여하였는가?	
	3-2.사후관리 계획(10점)	10	8	6	4	2	○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합 계		100점						

V 주요변경사항

현행(2019)	변경(2020)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우선지원) (신설)	Ⅱ. 주요내용 (우선지원) GAP 내부심사자 지정 단체	○내부심사자 제도 활성화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사업계획 통보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사업신청 사업자 선정 및 공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단계 사업계획 통보(10월)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10월) 사업신청(11월) 사업자 선정 및 공고(11월)	○사업 포기 등 문제 발생시 차질없는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Ⅲ. 사업추진체계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설)	Ⅲ. 사업추진체계 2. 사업자 선정단계 예비사업자 선정 유사자금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 및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예비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 포기시 집행 차질 방지 ○ 유사자금 사용에 대한 명시화를 현장의 혼선 방지
GAP 심사기준표 (신설)	GAP 심사기준표 (가점) 내부심사자 지정여부, 상반기 내 조기집행 가능자	○ 내부심사자제도 활성화 ○ 집행률 제고

6.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업무담당 : 최수명 ☎ 286-6454]

1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예산 (백만원)	3,395
사업목적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과거 안전성 검사비용 3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 :** 지원한도액 250천원/점(토양117, 용수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0,616,000	11,514,000	7,790,000	6,790,000
국 고	5,308,000	5,757,000	3,895,000	3,395,000
지방비	5,308,000	5,757,000	3,895,000	3,395,000
융 자	-	-	-	-
자부담	-	-	-	-

* 2016~2018 재정투입은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 장 이용직	044-201-2271
		사무관 김중수	044-201-227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서기관 황신구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구분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자체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세분하여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

* 시·도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요조사에 따라 각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토양·용수 분석의 경우 대상지 발굴의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 하나만 추진할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 집행률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은 상반기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각 시·도별 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정기적인 집행률 점검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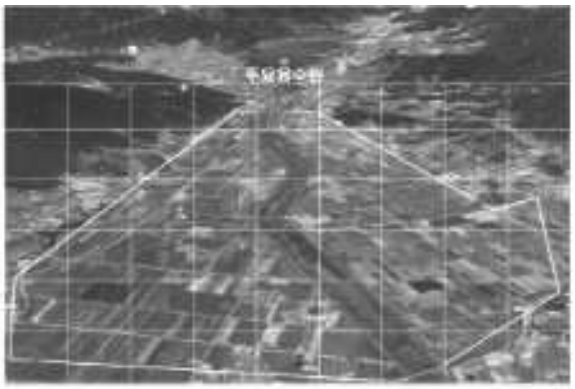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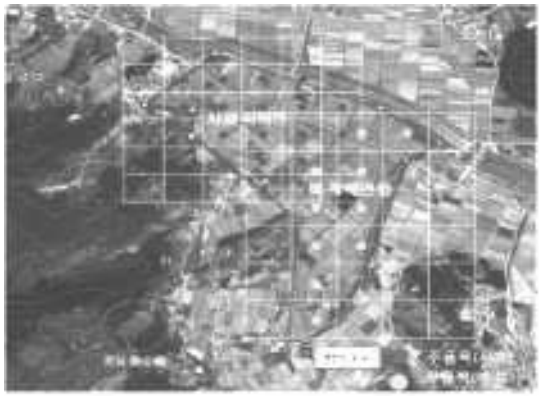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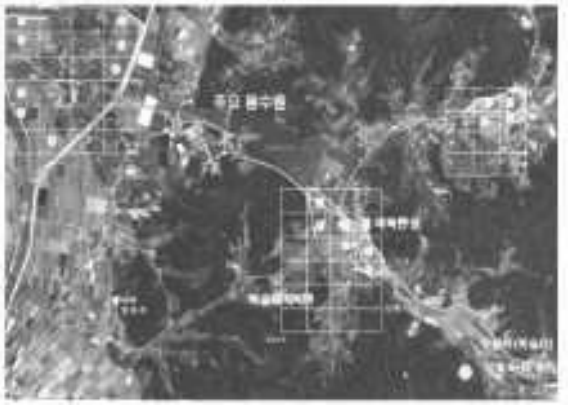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필지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석(예) >
2020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농업인이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1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20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했다면, '21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용수 111)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 250천원/점(토양 117, 용수 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Ⅲ 사업추진체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대상 발굴	▶	사업비 신청
농식품부('20.9월)		지자체('20.10월)		시·군('20.10~11월)		시·군→시·도('21.1월)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인증농가 비율, GAP 시설 수 반영)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동의(서명 등)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시군 모델 수립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 작성 교육

추진절차

○ 읍면동은 시 · 군 모델에 따라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시 · 군은 사업계획서를 시 · 도에 보고(별지 2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3호)와 참여농가의 필지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 물량 심사	▶	선정내역 통지	▶	선정내역 통지	▶	사업설명 간 담 회
(시 · 도)		(시·도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시·군→생산자단체)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 · 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GAP 인증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지자체 GAP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내부심사자 지정 단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 · 군에 통지

시・군

○ 사업 대상 선정결과를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사업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안내

○ 시 · 군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 ·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 · 도는 사업목적,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단순 사업대상자 변경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승인하고 시도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세부 실행계획수립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 · 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 및 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 · 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 군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 상황 관리(연중)

시 · 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 · 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시·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인증기관에 한함)이 다수일 경우 GAP 인증실적 우수 업체에 가점 부여

* GAP 인증실적 없이 토양·용수 분석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도록 수행기관 공모 시 시도별 GAP 인증실적(인증건수, 농가수, 인증면적, 우수관리시설 지정건수) 및 GAP업무 수행 인력현황(상근, 비상근 여부가 표시가 포함된 사무분장 현황표) 반드시 포함 (인증기관에 한함)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계약금액 등)을 시 · 도에 보고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 실행계획 및 월별 시료채취 계획 (별지 4호)을 수립하여 시·군에 송부

○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사전 동의 후 이장이나 생산자 단체장 등의 입회하에 수행

○ 분석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 내의 모든 필지를 재조사하여 부적합 필지 최소화

* 부적합 필지 정보는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사업결과보고	▶	자금집행
(지자체→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수행기관→시·군→시·도→농식품부)		(시·군→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시 · 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 · 도에서는 시 · 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및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1호)

○ 시 · 도는 사업 수요량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시 · 군에 자금을 교부

○ 시 · 군은 수요 및 사업실적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교육 실시 및 인증 홍보,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별지 10호)

* 농식품부 필요에 따라 월 단위 실적보고 (집행률 등)

사업 수행기관

○ 시료채취,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사업완료 후 정산서(별지 9호) 및 사업결과 제출

농관원

○ 분석결과를 D/B화 하여 분석성적의 유효기간(5년) 동안 보관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 · 도는 월별로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률 점검

- 시군의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률 등이 미흡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분기별)

○ 시 · 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집행률 등)을 월별로 시 · 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9호)와 안전성 분설 결과(별지 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토양·용수 부적합 결과는 지자체내 관련부서에 통보

○ 컨설팅 관련 사업은 하반기 중 시·군이 주관하여 점검 실시

○ 부정수급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전년 9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지

2. 자금교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도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1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1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농관원

○ GAP인증 현황을 시 · 도(지자체) 통보(GAP 정보서비스 실시간 제공)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격월 10일, 별지 7호)

시·도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제출(별지 8호)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 (별지 6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로 보조금 지원 불가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 절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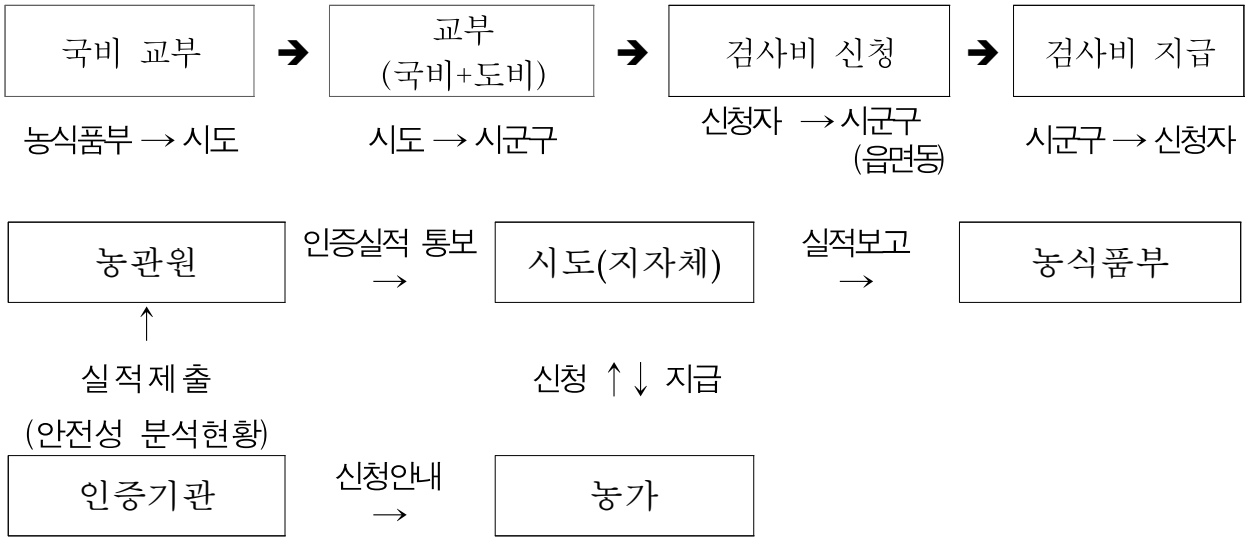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지자체 교부 결정 ○ 해당 지자체에 통보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농식품부〉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별 교부
〈시·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분석증명서가 사업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도의 지원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 GAP인증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GAP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농관원은 시·도에서 관련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률 등을 월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는 분기별 시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별 전배를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도에 제출(별지 제11호)(엑셀로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9호)와 검사비 지원 실적서(별지 1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제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기타사항》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

<별지 제1호 서식(지자체용)>

2021년도 GAP 안전성 분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1 GAP 안전성 분석사업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GAP 안전성 분석사업

나. 사 업 량 :

다. 사업대상 :

2. 사업목적

○

3. 사업기간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5. 보조금 사용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비 집행

6. 보조사업의 효과

○

<별지 제2호 서식(지자체용)>

'21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사업신청현황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 유형별 생산자단체 현황 :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사전 교육, 회의 등 기재)

3. 추진전략

○

Ⅱ. 사업추진 체계

○ 관계기관(농협, 농관원, 시군 관련부서 등) 역할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관계기관 협의 사항(회, 주요내용 등 기재)

Ⅲ. 세부실행계획

1. GAP 인증 확대계획

○ 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구체적 면적 확대 수치 등 기재)

2. 사업 추진절차

○ 일련의 추진절차를 시군실정에 맞게 수립

* 계약부서 협의 부분, 부적합 필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 단계별 모형도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작성할 것

3. 향후계획

○

<별지 제 3 호(생산자단체)>

'21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품목	대상농가	면적 (ha)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신청내용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21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1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작성 시 주의 사항(대지본)]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2. 사업유형별 검사대상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4호(수행기관용)>

2021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월별 시료채취계획서

일자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채취건수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토양	용수
계												

붙임 : 지적도 현황 1부.(시료채취 장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7. 12.5.	84	2017. 12.13.	68	2017. 12.13.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 3.20.	84		-	2018. 3.27.	152			236	김일동	신한	211-55-2311
3	서만길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 11.13.	120	2018. 11.15.	100	2018. 11.20	150			370	서만길	농협	123-55-2311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별지 제6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 원)

검사비 신청일	농가명	단체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유지여부(○,X)	검사 비용										임금 계좌 정보			지급액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별지 제7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현황

□ 분석기간 : ‘21. 1. 1. ~ ’21. 00. 00.(단위 : 건수)

인증기관명	시군구(주민등록지)	인증번호	신청자명	농지 소재지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 엑셀로 작성할 것(검사비 지급서류로 활용이 불가하며 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

<별지 제8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급실적

□ 시·도(시군구)명 :

□ 분석기간 : ‘00. 00. 00. ~ ’00. 00. 00.

(단위 : 건수, 원)

시군구(주민등록지)	신청자명	분석현황				지급현황							
		토양 (건수)	용수 (건수)	농산물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건수)	중금속 (건수)					잔류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분석 현황은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내용

** 집행실적 보고 시 누적자료 제출

<별지 제9호(수행기관, 지자체용)>

’21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국비예산(A)	집행액(B)	이자(C)	잔액(D)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 「’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분석결과 내역 1부.

2021.　　.　　.

보조사업자(지자체) :　　(인)

<별지 제10호(수행기관용, 지자체용)>

2021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결과(월별, 최종)

□ 기 관 명 :

□ 분석기간 :

(단위 : 건수, 원)

농가명 (단체명)	농가수	품목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 (계획)	집행내역								집행율
				계획	실적		계	시료채취			분석비용			사업 관리비	
								소계	토양	용수	소계	토양	용수		
합 계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이 서식으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21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실적

1 총괄

(단위: 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2 농가별 지원 실적

(단위 : 원)

신청 농가							신청비용										실제 지원 비용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신청월	시도	시군구	농가명	생산자단체	인증기관	인증번호	농약		중금속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농가별 작성(생산자단체라도 농가별 작성)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

[참고 1]

2021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비 가내시	9월	·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지자체 회의 · 사업량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지자체 가내시
⇓		
② 사업지침확정	~9월	· 품목군별 표본면적, 단가산출 현장분석 · 지자체, 관계기관 사업설명·홍보(워크숍 등) **· '21년 사업지침 최종확정 및 시달**
⇓		
③ 사업신청 및 홍보	10~11월	·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시·도, 시·군·구) · 주산지(대표품목) 농협·법인 등의 신청서 제출(→시·군) - 면적, 단가, 필지정보 등(신청서)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시군→시도)** - 지자체는 신청 주산지별 농지 현장 조사 등 사업검토
⇓		
④ 사업성 검토	11월	· 시·도는 시군별 신청품목 관련 사업성 검토 **· 사업대상 확정**
⇓		
⑤ 수행기관 선정	11월	·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계약부서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재입찰하여 불용액 최소화 · 사업수행방법 관계기관 회의(시도, 시군, 농관원, 수행기관 등)
⇓		
⑥ 토양, 용수검사	1~11월	· 토양, 용수검사(인증,검사기관) - 분석결과 시군에 보고(익월 10일한), 시군→시도→농림부 보고(분기별)
⇓		
⑦ 정산 및 보고	12월	· 시료채취결과 보고(수행기관→농관원, 지자체) · 정산실시
⇓		
⑧ 사후관리		· 토양, 용수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

[참고 2]

2021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추진절차도

□ 생산자 단체 신청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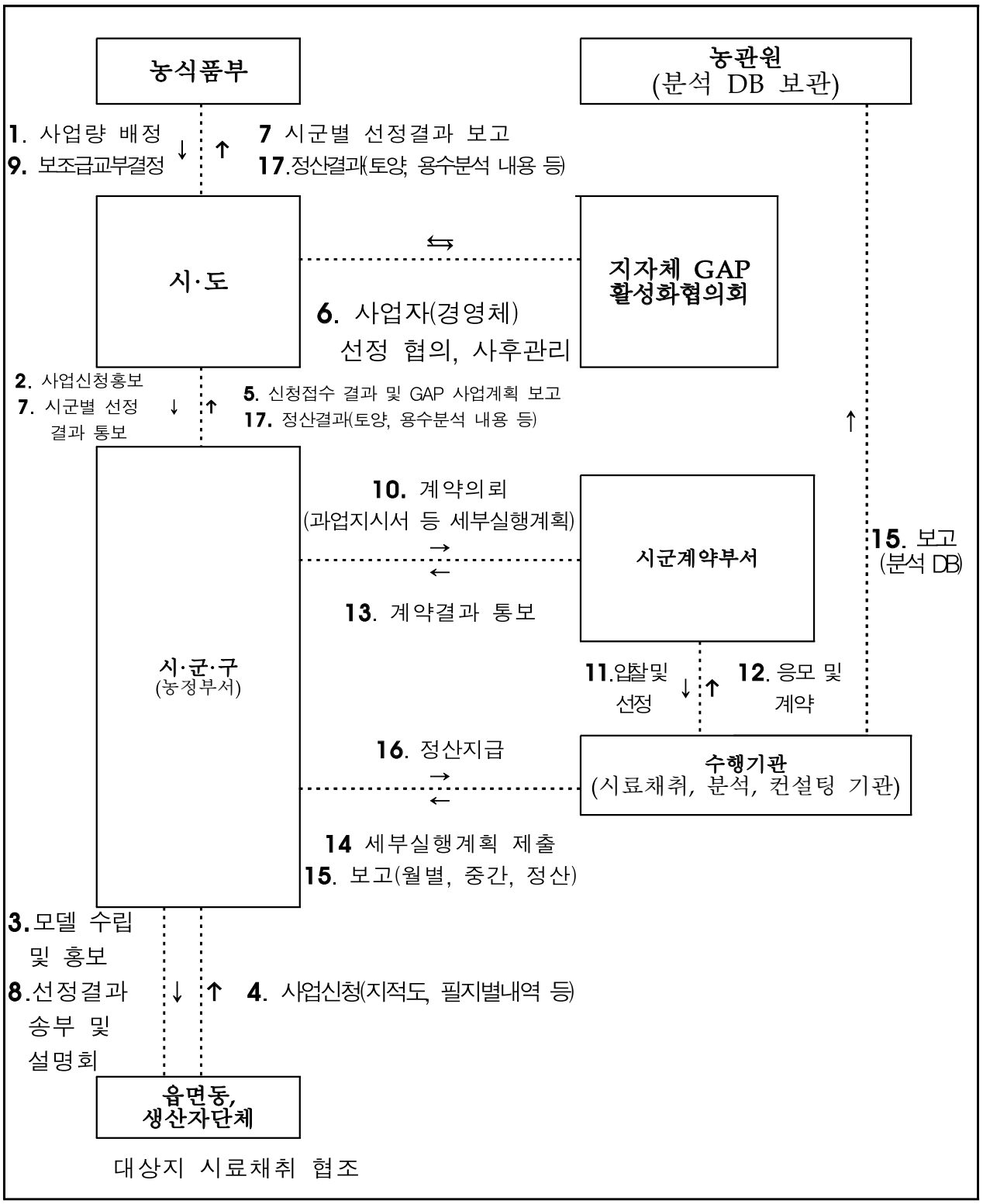

□ 관 주도로 추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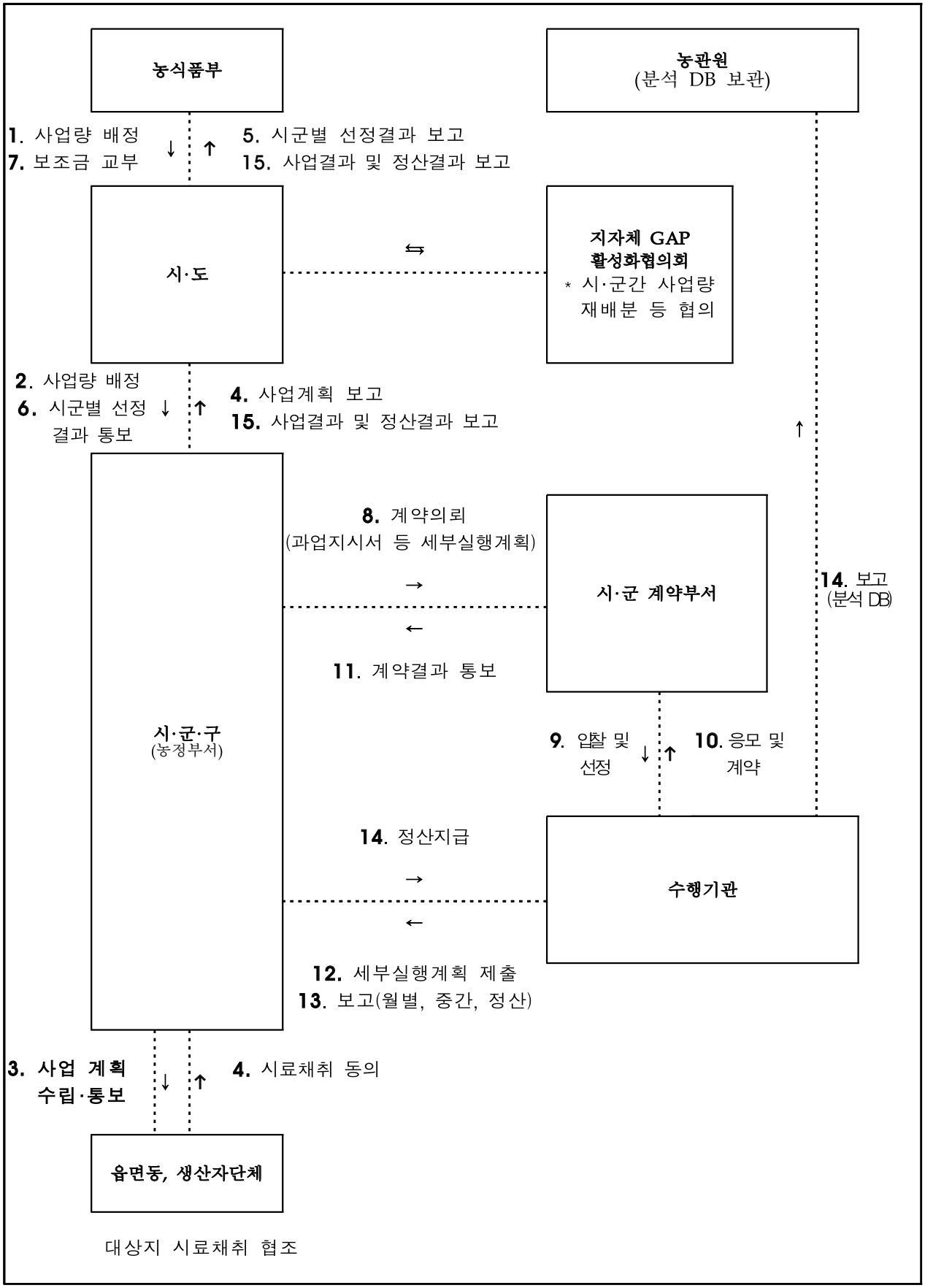
농식품부
농관원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7. 보조금 교부
5.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GAP
활성화협의회
* 시·군간 사업량
재배분 등 협의
2. 사업량 배정
6. 시군별 선정
결과 통보
4. 사업계획 보고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14. 보고
(분석 DB)
8.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시·군 계약부서
11. 계약결과 통보
시·군·구
(농정부서)
9. 입찰 및
선정
10. 응모 및
계약
14. 정산지급
수행기관
12. 세부실행계획 제출
13. 보고(월별, 중간, 정산)
3. 사업 계획
수립·통보
4. 시료채취 동의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참고 3]

2021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정

1 토양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2. 시료채취
- ○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 균일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분석활용, 나머지 1점은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3자를 입회

↓

3. 분 석
-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 ○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2 용수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2. 시료채취
- ○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10~15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 ○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단, 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3. 분 석
- ○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 ○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준수

[참고 4]

’21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양식)

1. 과 업 명

○ 2021년 토양·용수 안전성 시료분석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2021년 GAP 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확대를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1. 12. 까지

4. 추정금액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 총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유형	품목	대상지역	농가(호)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천원)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 2021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 발주자가 제공하는 과업대상 토지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지역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341호)에 따라 분석
- ○ 시료별 분석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1년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토양, 용수 기준 단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① 토양·용수 분석

○ 과업대상 토양·용수 시료 채취

- 토양·용수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시 요령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2호)'의 규정을 준용

※ 용수 분석의 경우, 복수의 과업대상지가 동일 용수원으로 중복되거나, 작물의 특성상 용수 분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량은 부적합지 추가 조사 또는 새로운 과업대상지 발굴로 대체할 수 있음

○ 채취된 시료의 토양 · 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 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 · 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실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 · 용수 시료 분석성적서,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6.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 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 · 군 · 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 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부적합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 기타, 대체 사업량 발굴 필요성이 인정될 때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지적도 포함)	2 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 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5]

토양·용수 분석방법 및 수행기관 요건

1.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현장입회를 갈음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2. 수행기관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 · 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참고 6]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 양: 95,400~309,400원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고
카드뮴	10,600	44,200	
구리	10,600	44,200	
납	10,600	44,200	
수은	18,300	44,200	
6가크롬	18,300	44,200	
아연	18,300	44,200	
비소	8,700	44,200	
계(7항목)	95,400	309,40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 용 수: 53,1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버섯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납(Pb)	6,100	
	불소(F)	9,300	

기준 (11항목)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_4$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2-}$)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질산성질소	5,400	
특 정 유해물질 (11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유 기 인	20,300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3,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9,400**	

○ 하천 · 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소 계	**57,6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소 계	**53,100**	

* 총유기탄소량(TOC)의 수수료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인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433호)

[참고 7]

’21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농협, 농관원, 시군 등 관계기간 협의를 수행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해당지역 및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현황에 대한 유형화 분류와 세부실행전략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계약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수행기관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대상필지에 대한 적정한 채취 및 분석점수에 대한 과업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사업참여조직간에 대한 사전 교육, 회의 등 활동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계획 (15점)	15	12	9	6	3	○향후 GAP 인증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2.부적합대응계획(10점)	10	8	6	4	2	○부적합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V 주요변경사항

현행(2020)	변경(2021)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설)	Ⅱ. 주요내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 GAP 인증 단체의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부심사자 제도 활성화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사업신청 홍보(1~2월) 사업대상 발굴(1~2월) 사업비 신청(2월)	Ⅲ.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9월) 사업신청 홍보(10월) 사업대상 발굴(11월) 사업비 신청(익년 1월)	○ 사업자 선정을 조기에 하여 집행률 제고 도모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신설)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수행기관은 GAP 인증실적 없이 토양용수 사업 참여 불가	○ 자격 미달의 GAP 인증기관 참여 제한
5. 사후관리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및 집행률 점검	5. 사후관리 시도는 매월 사업추진 상황 및 집행률 점검	○ 사업 추진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점검 주기 단축
참고6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용수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 (먹는물 기준)	참고6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용수 : 콩나물, 새싹채소, 버섯 재배 또는 세척수 (먹는물 기준)	○ 버섯의 재배 또는 세척수의 먹는물 기준 미생물 검사비 지원

7.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업무담당 : 최수명 ☎ 286-6454]

☐ 목 적

○ 도내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는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인증절차 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 농가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시 단지 단위 인증이 가능한 경우 개별 농가보다 단지별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 GAP 인증 농가 확대로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7조(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10조(자금 지원), 제113조(수수료)

☐ 지원계획

○ 지원조건 : 도비 25%, 시군비 75%

지원계획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100%)	도 비 (25%)	시군비 (75%)	
계	1,000	150,000	37,500	112,500	
1차(70%) 지원	700	105,000	26,250	78,750	상반기
2차(30%) 지원	300	45,000	11,250	33,750	하반기

※ 1차 집행하고(70%) 하반기에 시군별 실소요액을 재조사하여 사업비 조정(2차)

▢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 · 군수

나.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월(1년)

다. 사 업 비 : 150,000천원(도비 37,500$^{25\%}$, 시군비 112,500$^{75\%}$)

라. 사 업 량 : 1,000건(지원단가 : 150,000원/건)

마. 사업내용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바. 지원대상 :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기간 : 2021. 1. 1. ~ 2021. 11. 30.(1년)

※ '20년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미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포함, 이 경우 '20년에 신청받아 '21년 예산으로 사업비 지급

사. 지원기준

○ 지원비용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GAP 인증신청 수수료(평균) : 150천원 / 건당

① 수수료 : 50천원 / 5농가 기준

- 집단인증 시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 추가(40만원 한도)

② 출장비 : 100천원 / 1인 (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 심사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 신규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가능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 지원조건 : 본 사업비는 당해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

※ 단, 지원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시·군별 실정에 맞게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부족분은 시군 자체사업비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인증신청 수수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아.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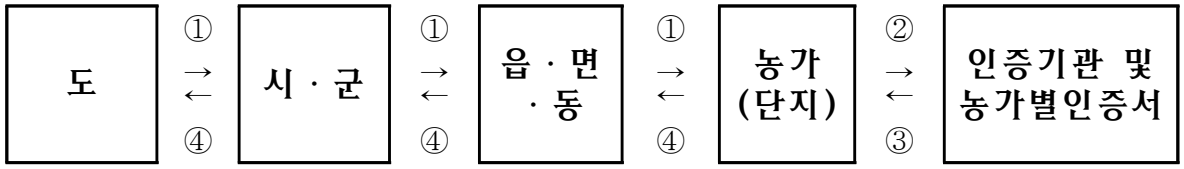

① 사업계획 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출장비)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시장·군수는 GAP 인증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이 부담한 인증 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 후 시·군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액만을 지급 (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업인(단체)이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 시 잔액 및 이자 반납

나.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결과 : ’21. 2. 28.

- 도 보고용

구 분	사업량 (농업인수)	지원대상			사 업 비(천원)		
		농가수	면 적	필지수	계	도비	시군비
계			ha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기타							

○ 인증비용 지원결과 및 정산 : ’22. 1. 31.

-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량(농업인수)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벼										
과 수										
채 소										
특 작										
전작물 기 타										

[별지 제 1 호]

2021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구분	□ GAP 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 · 군	읍 · 면	리 · 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 · 군 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 등) 1부

2021 GAP인증 신청 수수료 시·군별 배정내역

시 · 군	사업량 (건)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25%)	시군비 (75%)
계	1,000	150,000	37,500	112,500
목포시	7	1,050	262	788
여수시	37	5,550	1,388	4,162
순천시	42	6,300	1,575	4,725
나주시	117	17,550	4,388	13,162
광양시	83	12,450	3,112	9,338
담양군	85	12,750	3,188	9,562
곡성군	32	4,800	1,200	3,600
구례군	40	6,000	1,500	4,500
고흥군	42	6,300	1,575	4,725
보성군	54	8,100	2,025	6,075
화순군	33	4,950	1,238	3,712
장흥군	41	6,150	1,538	4,612
강진군	17	2,550	638	1,912
해남군	42	6,300	1,575	4,725
영암군	82	12,300	3,075	9,225
무안군	31	4,650	1,162	3,488
함평군	48	7,200	1,800	5,400
영광군	83	12,450	3,112	9,338
장성군	38	5,700	1,425	4,275
완도군	19	2,850	712	2,138
진도군	8	1,200	300	900
신안군	19	2,850	712	2,138

8.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담당자 윤희경 ☎ 286-6453】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추진방침

○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

○ 급식대상자 1인당 1일 1식 단가를 적용 하고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농약 잔류검사를 수시 및 불시에 실시하여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 2021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419개교, 251,377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대안)

○ 사 업 비 : 54,667백만원(도비 8,200, 시군비 24,600, 학교부담 21,867)

- 재 원 별 : 도비 15%, 시군비 45%, 학교부담 40%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 등) 구입차액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공급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금 지원 가능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 원 별 사 업 비			
			계(100%)	도 비(15%)	시군비(45%)	학교부담(40%)
계	2,419	251,377	54,667,480	8,200,122	24,600,366	21,866,992
어린이집	1,087	42,731	10,426,364	1,563,955	4,691,864	4,170,546
유 치 원	498	18,045	3,620,549	543,082	1,629,247	1,448,220
초등학교	429	93,114	18,682,393	2,802,359	8,407,077	7,472,957
중 학 교	249	46,787	10,205,180	1,530,777	4,592,331	4,082,072
고등학교	144	49,307	11,410,626	1,711,594	5,134,782	4,564,250
특수·대안학교	12	1,393	322,368	48,355	145,066	128,947

- 지원대상 및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20.8월 말 기준 재학생 수(확정)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일,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보조지원		
			계	도 비	시군비
어린이집	250	976	585	146	439
유치원 · 초등학교	190	1,056	624	156	468
중 학 교	190	1,148	682	170	512
고등 · 특수 · 대안학교	190	1,218	723	181	542

- 1식 단가는 주식 중 유기농쌀 공급가격을 반영한 단가임
- 사립유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비에서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요령

○ 공급체계

- 친환경식재료 공급요청(학교) → 납품(공급주체) → 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학교장 보조금청구 위임장 첨부) → 자부담 집행 확인 → 공급주체에 송금(시군)

○ 공급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 및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등외 등급제품은 공급 불가),** 등급유기가공 인증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원료(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을 주원료로 95%이상 사용)로 한 가공식품,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단, 장류, 발효식초에 한함) 지원 가능

※ 식재료 공급은 아래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① 친환경농산물 ② 유기가공인증식품 ③ 친환경축수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④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 도내 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보조금은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예산(40%)+보조금(60%)을 합하여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입 및 공급하되,
- 도내산이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아래 품목의 경우에 한하여 타 시도산 공급 허용

※ 타 시도산 허용품목 : 감귤, 양송이 버섯, 참외 및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콩나물, 숙주나물 포함)

☞ 타 시도산 허용품목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유기농쌀 공급

(원칙) 유기농쌀 전면 공급

- 유기농쌀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시·군은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을 구입 사용
- 자체 시군에서 생산된 전환기쌀이 있는 경우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보다 우선 공급 가능

○ 차등지원 의무 실시

-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와 많은 학교를 구분하여 지원단가 차등지원 필요성에 따라 시설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 (붙임 차등 지원율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부족예산은 시군비로 부담)

※ 어린이집, 유치원도 시설별로 전년도 또는 전반기 출석률을 적용,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도서벽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공급

- 현물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현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 가능

※ 보육시설(어린이집)은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공급 추진.

친환경농산물 공급지도

〈시 · 군〉

- 지역 교육청 및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출하, 인증농가 육성 등
- 반기별로 학교(교육청)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자단체에 생산 협조 요청
- 월별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학교(교육청)에 통보하여 생산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급식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산 부족시 타 시군 생산현황 파악 및 품목 교류
- 시·군간 공급가능 품목 및 지역별 생산 작황(공급 가능량 및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 계약재배 추진상황 점검 : 년 2회(반기)

〈시 · 군 교육청〉

- 연간 학교별·월별 소요량 파악,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

〈생산자단체(공급주체)〉

- 계약재배, 공동출하, 수집, 전처리 실시 및 배송 추진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및 제재

○ 공급주체 선정방법

- 매년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단, 시군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위수탁 중인 시군의 경우는 3년 이내로 위수탁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위수탁 운영 중인 나주시는 5년 이내로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를 시군당 1~2개 선정(친환경농산물 납품실적이 없어도 가능)
- 단, 소분·재포장을 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단순히 납품만 하는 공급업체일 경우는 취급자 인증 없이도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소분·재포장하는 공급주체 취급자 인증 의무화(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활용

- 시군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물량이 부족한 품목이나 타 시도산 허용품목을 구입할 때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우선 공급.
  단,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공급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함.

〈공급주체 선정 고려사항〉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산농가·단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많은 주체 우선 선정
- 식재료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간이)잔류농약검사·전문기관위탁 등 검사체계 구축 주체 우선 선정
- 친환경쌀 등 생산농가·단체가 직접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 안정과 가격 안정화 도모

○ 공급주체 제재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이거나, 가공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주체에 대한 제재
  -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 (위반 공급업체는 농관원 고발 조치) 병행 실시

※ 2회 이상 부정 공급주체는 도에 통보하여 각 시군에 전파(공개)

- 친환경농산물로 재포장 취급자 인증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한 주체에 대한 제재
  •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

○ 학교시설 제재
- 식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물 식재료를 고의적으로 구입한 학교 및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제재
  •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2개월 지원중단, 3회 적발시 6개월 지원중단
- 허위납품 등 부정한 행위 적발시 당해년도 지원중단 등 상응하는 조치

○ 공급주체 협조사항
- 선정된 공급주체의 계약재배 자료를 기초로 시군 주요품목(45개품목)에 대한 지역산(도내산, 시군산) 공급계획 작성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제출(서식 10) : '21. 3월중

공 급 가 격

○ 시·군 공급가격 결정협의회 구성
- 시군청, 지역 교육청, 공급주체 관계자, 영양(교)사 대표, 계약재배 농가 대표, 친환경 작목반장 등 구성

○ 공급가격 결정 및 알림
-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은 지역·학교별로 가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시중가격 및 인근 3개 시·군 이상의 가격을 사전 조사
-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서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 '학교급식정보망'에 게시(매월 20일까지)
-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도서가 있는 시군의 경우 육지지역(연륙도서 포함)과 도서지역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 가격을 별도로 결정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 농산물 구매 공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11.9.14)**의 Ⅴ.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시 학교별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학부모)부담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신청
- 신청 경로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 시군

❍ 보조금 집행방법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40%를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로 우선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친환경인증 라벨, 공급사실 확인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를 공급주체로부터 먼저 징구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선정된 공급주체를 통하여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40%)+보조금(60%)을 합하여 시군 또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권장**
- 학기중에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월별 사용가능 금액을 나누어 지원하고 매월, 격월간격으로 사업비 집행

※ 예산신속 집행 등으로 공급주체에 선 지급한 경우 상·하반기 또는 연말 일괄 정산 가능

-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지원된 예산으로 전량 공급이 어려운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우선 쌀)을 구입하고 이후 식재료비는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 등으로 충당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구입

❍ 사업비 정산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위임에 의거 공급주체 등에 대금 일괄지급 가능
- 보조금지급 이후 1개월 내 농가정산 확인(공급주체 경고·제외 등 조치)

4. 학교급식 교육실시 및 합동점검반 구성 · 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공급의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년 1회 이상 합동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명예감시원을 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안전성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적합여부 및 안전성 검사(분기 3회 이상) 의뢰

※ 점검·농약잔류검사는 가급적으로 공급주체를 우선 실시

※ 도 주관 도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등 관계기관·단체로 합동점검단 구성·운영(반기 1회)

○ 현장점검시 공급주체 구매 및 납품가격, 친환경 인증(수집농가, 인증상황), 품질검수 등 적정여부 중점 확인

○ 안전성 점검 관련기관(시군교육청, 시군 농관원) 업무협의회 개최 : 식재료 검사 계획 등 협의, 검사품목・업체 중복 누락방지, 취약업체 정보 등 공유(3・6・9・12월)

□ 행정사항

○ 2021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시군 자체 계획 제출 : 2.28.까지【서식 1】

○ 2021년 보조금 교부신청 : 상반기(1.31.까지), 하반기(7.31.까지)【서식 2】

○ 2021년도 사업비 정산 : ’22. 2.28.까지【서식 3】

○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 익월 5일까지【서식 4, 5, 6】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주체 신청시【서식 7, 8, 9】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 3.31.까지【서식 10】

○ 2021년 상·하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조사 : 친환경학교급식 정보망에 상·하반기(7월, 12월) 입력

2021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부담내역			
			계	도비(15%)	시군비(45%)	학교부담(40%)
합계	2,419	251,377	54,667,480	8,200,122	24,600,366	21,866,992
목포	302	40,909	8,877,219	1,331,583	3,994,748	3,550,888
여수	296	39,501	8,594,758	1,289,214	3,867,641	3,437,903
순천	341	45,820	9,965,562	1,494,834	4,484,503	3,986,225
나주	168	17,163	3,740,058	561,009	1,683,026	1,496,023
광양	208	24,486	5,354,791	803,219	2,409,656	2,141,916
담양	55	4,280	935,064	140,260	420,779	374,025
곡성	34	2,605	570,753	85,613	256,839	228,301
구례	35	2,258	486,833	73,025	219,075	194,733
고흥	75	4,990	1,087,467	163,120	489,360	434,987
보성	62	3,673	801,860	120,279	360,837	320,744
화순	90	7,329	1,596,652	239,498	718,493	638,661
장흥	59	3,662	792,651	118,898	356,693	317,060
강진	56	3,632	795,262	119,289	357,868	318,105
해남	77	6,864	1,485,640	222,846	668,538	594,256
영암	92	6,739	1,471,767	220,765	662,295	588,707
무안	109	12,662	2,723,947	408,592	1,225,776	1,089,579
함평	46	3,195	704,252	105,638	316,913	281,701
영광	58	6,004	1,307,907	196,186	588,558	523,163
장성	53	4,942	1,070,098	160,514	481,545	428,039
완도	87	5,431	1,175,429	176,314	528,943	470,172
진도	46	2,934	634,724	95,208	285,626	253,890
신안	70	2,298	494,786	74,218	222,654	197,914

- 붙 임 자 료 -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2. ’21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 계획(서식 1)

3.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4. ’21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서식 3)

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서식 4)

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서식 5)

7.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서식 6)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서식 7)

9.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서식 8)

10.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서식 9)

11.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서식 10)

12. 공급 세부추진체계, 담당기관별 업무순기(참고사항)

13. 학교규모별 1인당 1식 차등지원율

[붙임]

1. 주요 업무추진 흐름도

지침시달 및 통보 (전라남도)

- 지침시달 및 통보(전년 12월말까지)
- 도 → 시·군 및 도 교육청, 여성가족가족정책관실
  ※도 교육감은 자체지침 마련 시달
  (도 교육감→시군 교육장→학교 및 유치원)

↓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 시·군 교육장(4월말까지)→ 도 교육감(6월말까지)
  → 시장,군수 (6월말까지)
- 어린이집 → 시·군(4월말까지)→도 여성가족정책관(6월말까지)

↓

◎ 2021년도 보조금 신청(1. 31, 7. 31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검토 후 지원신청 (도 교육감, 여성가족정책관실)

- 자료취합,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별지 1,2,3호서식>
- 도 교육감, 여성가족정책관 → 도 농식품유통과(7월말까지)

<도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

지원규모의 확정 및 확보예산 통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통지(9~11월말까지)
- 심의위원회 → 도 교육청 및 시·군 → 지원대상자

↓

식재료사용경비 지원 및 정산 (시군↔식재료공급자↔지원대상자)

- 관계서류 첨부 지원신청 및 지급(연중)
- 사용경비의 정산 및 보고(시군 → 도)
  (다음해 2월말까지)

◎ 공급 및 사용 : 식재료공급자 ↔ 지원대상자
◎ 신청 및 공급 : 시·군 ↔ 식재료공급자
◎ 사업비정산 : 시·군 ↔ 도

↓

지원내역 종합결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시군 교육장은 식재료 지원신청시 도 교육청 및 시군에 동시 송부
※ 시군은 학교, 어린이집 등 모든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파악 일괄 도 송부

[서식 1]

2021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지원계획(시군)

생산자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관의 공급계획과 연계하여 급식학교, 시군, 지역 교육청의 상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서식은 시군자체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Ⅰ. 2021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휴명명조 - 20Point)

□ 추진방침(휴명명조 - 18Point)

○ 휴명명조 - 15Point

○

○

□ 식재료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대안 학교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유기농쌀 및 주요 45품목) 및 계약재배 계획

품목명 (45종)		소요량 (톤)	계 약 재배율(%)	계약재배량(톤)			
				계	시군자체 계 약 량	거점센터 위 탁 계 약 량	기 타 계약량
계			(※ 최대 100%)				
유기농쌀			(※ 최대 100%)				
곡류 (13)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채소류 (25)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과일류 (7)	소계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최대 100%)				

※ 품목명 : 유기농쌀 및 주요 45종

- 곡 류(13) : 백미, 현미, 찹쌀, 백태, 보리쌀, 율무, 찹쌀현미, 서리태, 차조, 발아현미, 기장, 검정약콩, 흑미
- 채소류(25) : 감자, 고구마, 오이, 풋고추, 애호박, 당근, 양배추, 깻잎, 청피망, 부추, 시금치, 아욱, 양파, 대파, 청상추, 느타리버섯, 미나리, 무, 깐마늘, 콩나물, 건고추, 쑥갓, 열무,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 과일류(7) :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배, 멜론, 사과, 딸기, 단감

식재료 지원체계(기관별 업무(역할)분담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시 군

- 농정업무 관련과

.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 지원방법 결정사항 기재

.

○ 시군 교육청

-

-

○ 급식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

-

○ 공급주체

-

-

공급주체 현황

지원 방법 ①	공급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주요시설 ②	공급품목③		공급처 ④	재포장 등 록 여 부 (○,×)	배송장비	간이농약 검 사 기 보유여부 (○,×)	납품업체 선정방식 ⑤	공급 가격결정 주기⑥	차등 지원 여부
				쌀	농산물							
계												
현물 + 현금	00 농산 (000)	00면.00리 265-12 (777-7777)	저온저장고18㎡ 소독시설6㎡ 포장실18㎡	○	○	24(초12, 중6,고6)	○	냉탑차3대		수의계약 (보조+자담)	매월	초,중,고 차등 지원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현황

○ 운영주기 : (매월, 격월)

연번	구성원 현황					비고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H.P)	
계						

※ 구분 : 시군, 교육청, 학교, 학부모, 영양사, 생산농가, 공급업체, 어린이집, 기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교육 및 지도점검 계획

○ 교육 횟수, 교육대상

○ 점검반 구성(시군, 교육청, 심의위원 등), 횟수, 점검대상

※ 기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관련 특기사항 등 기재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시기 :

○ 사업내용 :

○ 사업금액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 업 비				교부신청액 (도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위와 같이 2021년 (반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세부사업내역 1부. 끝.

2021. . .

신청자 : ○○시장 · 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세 부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시군	구 분	지 원 내 역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비고
		학교 (시설)명	학생수	계	지 원 액				
					소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소 계								
	어린이집								
	소 계								
	유 치 원								
	소 계								
	초등학교								
	소 계								
	중 학 교								
	소 계								
	고등학교								
	소 계								
	특수학교								

※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비고란에 학교부담 비율 명시)

[서식 3]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사업비 정산결과

☐ 총괄 및 시설별

(단위 : 원)

시군별	구분	사업비(교부액)					집행역					잔액				
		계	보조금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	계	보조금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	계	보조금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
			소계	도비 (%)	시군비 (%)			소계	도비 (%)	시군비 (%)			소계	도비 (%)	시군비 (%)	
	계															
	어린이집															
	유치·초															
	중															
	고·특수															

○ 학교수 : 개교(지원학생수 명)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서식 4]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교육 실적(시군)

일 시	장 소	인 원 수				교육내용 (강사)	교육성과	
		소계	영양교사	유치원	기타		잘된점	미흡한점
합 계								

※ 반기별 1회이상 실시(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서식 5]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점검실적(시군)

점검일	점검인원				점검대상(개소)				점검결과	
	계	행정	교육청	기타	계	농가	업체	학교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일										
월일										
월일										

※ 분기별 3회이상 점검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서식 6]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실적(시군)

채취일	채취장소(개소)		채취품목수(품목)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월 일	생산농가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 분기별 3회이상 농약잔류검사 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1회 3종이상 검사의뢰
- 엽채류는 간이검사후 의심이 나면 정밀검사(간이검사 1일, 정밀검사 5일 소요), 과실류 및 곡류는 정밀검사 실시

[서식 7]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지 원
신청자</td><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상 호</td><td colspan="3"></td><td>대표자성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td><td rowspan="2">공급기관
또는
시설명</td><td rowspan="2">공급
기간</td><td colspan="3">친환경농산물 공급내역</td><td colspan="3">보조금 신청내역</td><td rowspan="2">지 급
신청금액
(원)</td></tr>
<tr><td>품 목</td><td>수량
(kg)</td><td>금액
(원)</td><td>계
(100%)</td><td>지자체
지원금
(%)</td><td>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
(%)</td></tr>
<tr><td></td><td>예)합계만
작성</td><td></td><td>감자외
10종</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장 · 군수 귀하

※ 첨부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서식 8]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친환경농산물 총 공급내역

공급기간	생산지별	품 목	수 량(kg)	금액(원)	비율(%)
예)합계만 작성	계				100
	도 내 산				
	타 도 산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 · 군수 귀하

※ 첨 부 : 세금계산서

[서식 9]

친환경농산물 납품내역서

시설명 :　　납품일자 :　　.　　.　　.

품 목	생산지	전화번호	생산자	인증번호	인증단계	납품단가 (원)	수 량 (kg)	금 액 (원)
계	도내산							(　　%)
	타도산							(　　%)

입회자 :　　(인)

검수자 :　　(인)

※ 생산지 : 시군단위 까지 기재(예 : 전남 무안군)
　☞ 도내산, 타 도산의 비율을 전체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
※ 인증단계 : 무농약 → 무, 유기 → 유
※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 반드시 엑셀 작성 관리(통계자료 활용)
　- 상반기, 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적 제출 및 집행상황 관련됨

[서식 10]

공급주체별 계약재배농가 현황

(단위 : ㎡, kg)

공급주체	공급품목	계약재배 농가현황						비고
		농가명	인증번호	연락처	인증단계	인증면적	생산량	

[참고사항]

공급 세부 추진체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기한
학교공급 주체선정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 학교 공급주체 선정을 위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2021.1~2월 사이에 운영되도록 시군은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과 사전 협의 ※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까지 단일공급주체에서 공급하는 시군은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까지 공급주체와 공급계약 체결	시 군 (심의위원회) 각급학교, 공급주체	2021. 2월
식재료 구 입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금과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로 전량 사용토록 지도 • 학교별·시설별로 월별 공급요구 품목을 작성하여 1개월 이전에 식재료 공급주체에 통보 - 단,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예산의 **30%**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인증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원료(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을 주원료로 95%이상 사용)로한 가공식품, 도지사품질인증제품(단, 장류, 발효식초에 한함)** 지원 가능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물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순위 물품 공급** ① 친환경농산물 ② 유기가공인증식품 ③ 친환경(무항생제)축수산물 및 ④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 각급학교에서는 반드시 식재료 품질확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자료 관리 및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등 발급 철저 (친환경인증 라벨, 공급사실 확인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 단,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납품내역서와 납품된 물품의 친환경인증 라벨까지 발급·보관이 가능한 학교 및 어린이집은 친환경인증 라벨 부착 제외** ⇒ 공급주체에게 친환경농산물 검수시 인증라벨을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시군교육청 각급학교 각급학교	연 중
식재료 공 급	• 공급방법 - 식재료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현물공급(식재료 주품목은 계약재배 공급) - 각급학교·시설에서 통보된 공급품목에 의거 적기 공급	공급주체	연 중
공급비용 신 청	• 식재료 수령시 공급사실 확인서 발급 -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공급자 •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 - 각급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시군청 • 공급비용 신청 - 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 첨부하여 15일 주기로 신청 • 공급비용 지급 - 공급비용 신청서식 적합 확인후 공급주체에 15일 이내 대금정산	각급학교 〃 공급주체 시 군 청	연 중

담당기관별 업무 순기(연간)

구 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추진기한
식 재 료 지원신청	• 과년도 급식 식재료 사용내역 분석 후 익년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요청 - 전년도 급식비 내역의 식재료비와 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과 일치되도록 작성 • 지원대상인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검토 후 지원신청 - 시군청(보육), 지역교육청 →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도 교육청 • 학교 및 시설의 신청서를 취합, 계수 조정 후 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통보 - 대상별 지원요청액이 형평성 있게 연관계수 및 신청 비율 등 검토 후 통보	각급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시군청, (보육담당과) 교육청 여성가족정책관, 도 교육청	4월 6월 7월
지원 대상자 및 규모확정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道재정규모 및 가용재원 파악 후 지원금액을 심의 확정 - 지원금액 확정 후 道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반영 요구 - 군 학교급식 담당부서에 총괄 지원금액 내시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계획 시달 - 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침을 작성	농식품 유통과	**9월** 12월
시군지원 계획수립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수립·시행 -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공급주체선정, 지원방법 등)	시군청, 교육청	다음해 1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 시군청 → 도 • 도 → 시군청 →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도, 시군청, 지원대상자	다음해 1, 7월 다음해 2, 8월 (상, 하반기)
식재료 공 급	• 각급 학교 시설별 통보받은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용 ※ 공급세부 추진체계 참고		연 중
공급 지도감독	•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공급 및 사용여부 • 각종 보고서류 기일내 제출	도,시군청, 도교육청 등	연 중
정산	• 사업비 정산 및 보고(학교부담금 및 무상급식비 포함)		다음해 2월

학교 규모별 1인당 1식 차등지원 비율

구 분	학생수 규모별	급식일수	1식단가 차등비율	비고
초등학교	1,001명 이상	190일	71%	
	801~1,000명	190	72%	
	601~800명	190	74%	
	401~600명	190	81%	
	251~400명	190	91%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10%	
	50명 이하	190	119%	
중 학 교	1,001명 이상	190일	75%	
	801~1,000명	190	76%	
	601~800명	190	78%	
	401~600명	190	84%	
	251~400명	190	92%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08%	
	50명 이하	190	116%	
고등학교	1,001명 이상	190일	77%	
	801~1,000명	190	78%	
	601~800명	190	79%	
	401~600명	190	85%	
	251~400명	190	93%	
	101~250명	**190**	**100%**	
	51～100명	190	108%	
	50명 이하	190	115%	

※ 자료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9.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담당자 윤희경 ☎ 286-6453】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공급 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GMO 검사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급식 제공

☐ 추진방침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에서 시료 채취 후 분석기관에 안전성 검사 의뢰

○ 식재료 공급주체 및 입찰로 참가하는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2021년 지원계획

1. 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0. 1. ~ 12월(1년)

3. 사 업 비 : 572,000천원(도비 143,000$^{25\%}$, 시군비 429,000$^{75\%}$)

4. 사 업 량 : 2,288건

5.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 250천원/건

○ Non-GMO 식재료 GMO 함유량 검사 : 250천원/품목당

6. 사업내용 :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및 Non-GMO 가공품 검사비 지원

○ 학교급식 식재료(친환경농산물, Non-GMO 가공품) 공급업체와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잔류농약 및 GMO 검사 실시

- 시료채취 및 안전성 검사는 분기별 3회 이상 실시

7. 사업비 지원 및 운영 기준

○ 식재료 사용 현황 점검(친환경농산물, Non-GMO)에 따른 시료 채취 후 잔류농약 및 GMO 검사비용으로 집행

○ 공급주체 및 입찰로 참가하는 일반 업체를 우선해서 검사 실시

○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분석기관 등에 의뢰

*** 시료 채취 과정에 대한 전중후 사진(농가현황, 식품정보 등 확보)을 반드시 찍어 정산서에 첨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1.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준수

2. 사업 추진실적 보고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GMO검사) 실적(시·군)

채취일	채 취 장 소(개소)		채 취 품목수 (품목)	검사결과		시·군 자체검사 건수	
				지적사항	조치내용	분석기관 검사의뢰 (개소)	간이검사기 검사 (개소)
계							
월 일	생산농가(업체)						
	공급업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 시·군 자체검사 건수 항목란에 본 사업비 집행실적 건수 표기 제출

- 분기별 3회 이상 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결과 제출
  -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생산단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유통·판매단계)과 협의하여 검사의뢰
  - 엽채류는 간이검사 후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정밀검사(간이검사 1일, 정밀검사 5일 소요), 과실류 및 곡류는 정밀검사 실시
  - GMO 성분검사는 민간 인증기관을 별도 선정하여 품목별 검사 실시

○ **사업비 집행결과 및 정산서 제출** : 2022. 2. 28까지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건, 대, 천원)

구 분	사 업 량			예 산 액 (천원)			집 행 액 (천원)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잔류농약검사										
GMO 성분검사										

2021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사업비

(단위 : 개교, 건, 천원)

시군	2021 지원대상 (학교수)	사업량	사 업 비		
			계 (100%)	도 비 (25%)	시군비 (75%)
계	2,419	251,377	572,000	143,000	429,000
목포시	302	40,909	75,500	18,875	56,625
여수시	296	39,501	75,000	18,750	56,250
순천시	341	45,820	61,500	15,375	46,125
나주시	168	17,163	37,500	9,375	28,125
광양시	208	24,486	34,000	8,500	25,500
담양군	55	4,280	15,000	3,750	11,250
곡성군	34	2,605	8,500	2,125	6,375
구례군	35	2,258	12,500	3,125	9,375
고흥군	75	4,990	20,000	5,000	15,000
보성군	62	3,673	15,750	3,938	11,812
화순군	90	7,329	23,250	5,812	17,438
장흥군	59	3,662	13,500	3,375	10,125
강진군	56	3,632	15,000	3,750	11,250
해남군	77	6,864	24,500	6,125	18,375
영암군	92	6,739	23,500	5,875	17,625
무안군	109	12,662	17,500	4,375	13,125
함평군	46	3,195	13,250	3,312	9,938
영광군	58	6,004	20,000	5,000	15,000
장성군	53	4,942	12,500	3,125	9,375
완도군	87	5,431	20,000	5,000	15,000
진도군	46	2,934	17,500	4,375	13,125
신안군	70	2,298	16,250	4,063	12,187

10.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

【담당자 윤희경 ☎ 286-6453】

초·중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복지 증진

☐ 추진방침

○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교급식 현장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급식의 위생과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급식만족도 향상 도모

☐ 2021년 지원계획

○ **(지원기간)** '21. 1. ~ 12.

○ **(지원대상)** 722개교 140,177명

- (초등학교) 463개교, 93,114명 (중학교) 255개교, 46,787명
- (인가 대안학교) 4개교, 276명

○ **(급식일수)** 연 190일(학기 중 중식)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업일의 점심 급식일수(공휴일, 방학 제외)

○ **(급식경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 경비 부담률 : 식품비(도 50%, 시군 50%), 운영·인건비(교육청 전액 부담)

○ **(소요예산)** 139,803백만원

- (기관별) 도 27,437, 시군 27,436, 교육청 84,930
- (경비별) 식품비 54,873(도50%, 시군 50%), 운영·인건비 84,930(교육청100%)

☐ 사업비 산정기준(식품비 단가×학생수×급식일수)

○ **(지원구간)** 학생수 규모별로 8단계로 구분

○ **(소요예산)** 54,873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학 생 수)**

- '20. 10. 1. 기준 학생 수로 '21. 1.~ 2. 무상급식비 산정
- '21. 4. 1. 기준 학생 수로 '21. 3.~ 8. 무상급식비 산정
- '21. 10. 1. 기준 학생 수로 '21. 9.~12. 무상급식비 산정

○ **(급식일수)**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상 수업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제외)의 점심급식 일수로 1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급식일수가 190일을 초과할 경우,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사전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파업으로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대체 급식으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 (떡, 과일, 도시락 등)을 무상급식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구간별 지원 단가표(적용시기 : 2021. 1. 1)

(단위 : 원 / 1인 1식 기준)

구분		50명 이하	51~ 100명	101~ 250명	251~ 400명	401~ 600명	601~ 800명	801~ 1,000명	1001명 ~
초		2,650	2,450	2,250	2,050	1,850	1,700	1,650	1,620
중		3,000	2,800	2,600	2,400	2,200	2,050	2,000	1,970
대안	중	3,000	-	-	-	-	-	-	-
	고	3,150	2,950	-	-	-	-	-	-

- 정액급식비 지원단가(1인/1식) : 초등학교 6,000원, 중학교 7,000원
  - 학생수 25명 이하 학교로, 지역 여건상 인근 학교와 공동(운반)급식이 불가하거나 급식시설이 미설치 되어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 인근 식당, 도시락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 전남 체육중학교는 급식일수 320일(1인/ 3식), 1인 1식 3,050원

☐ 무상급식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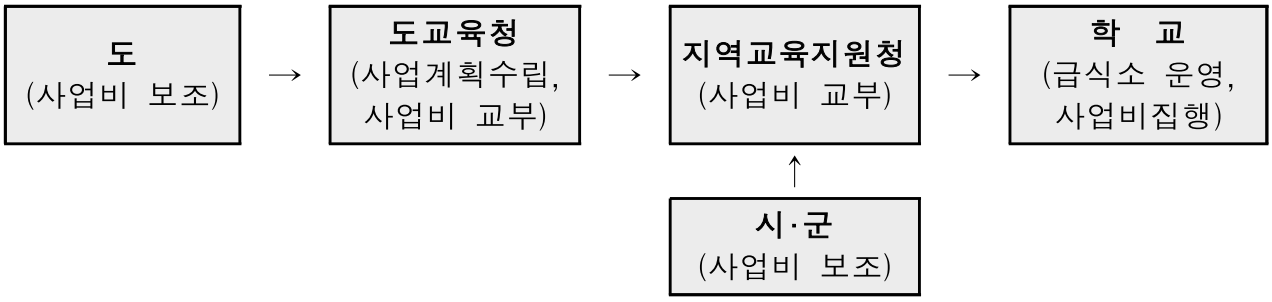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편성)

- 지자체 지원 식품비는 운영비·인건비 항목과 별도로 편성
- 공동 급식학교의 경우, 학교 급별로 별도의 세입으로 편성

  * (예)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동급식,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동급식

- 지자체 지원 식품비, 교직원 급식비, 타학교 학생 및 교생 급식비 등 그 외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하되 수입 재원을 구분하여 정확히 편성

○ (집행기준)

- 식품비 지원 단가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 낙찰차액 등)에는 전액 반납
-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연말 식재료 구입 추가발주 또는 과다집행 금지

☐ 사업비 정산

○ (보고기한) 사업기간(1.~12월) 종료 후 한 달 이내

○ (정산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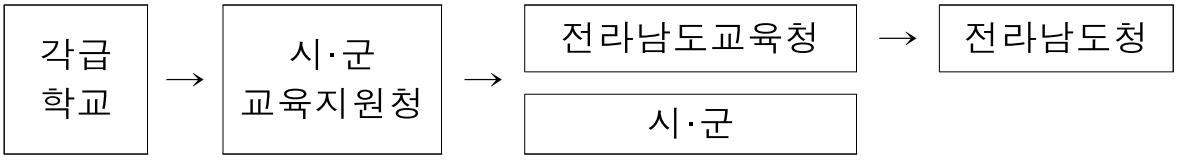

○ **(제출서류)** 정산서, 통합지출부

○ **(반납기준)** 지자체 지원 식품비는 집행 잔액 전액반납

○ **(반납절차)** 도에서 정산내역 최종 확인 후 정산결과 통보(시군, 도교육청)

- 도비 지원액 반납고지서는 도에서 학교별 발급(시군비는 시군에서 발급)

☐ 추진일정

○ 2021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 : ’21. 2월

○ 무상급식 보조금 교부신청(도교육청→도, 교육지원청→시군) : ’21. 3월, 10월

- (3월) 1~2월의 무상급식비(’20.10.1. 기준 학생수)와
  3~8월의 무상급식비(’21.4.1. 기준 학생수)
- (10월) 9~12월의 무상급식비(’21.10.1. 기준 학생수)

○ 무상급식 보조금 교부 : ’21. 3월, 10월

- (도비) 도→도교육청→시군교육지원청→학교
- (시군비) 시군→시군교육지원청→학교

○ 무상급식 운영실태 합동점검(도, 시군, 교육청) : 연 1회 이상

○ 정산보고서 제출(학교→시군 교육지원청→시군, 도교육청→도) : ’22. 1월

참고 1 2021년도 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기관별)

(단위 : 교, 명,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예 산 지 원 액(기관별)			
			계	도	시군	교육청
계	722	140,177	139,803,544	27,436,781	27,436,536	84,930,227
목포	50	22,958	17,390,997	4,201,038	4,201,021	8,988,938
여수	87	21,668	19,597,329	4,139,403	4,139,373	11,318,553
순천	66	25,165	21,475,574	4,625,913	4,625,886	12,223,775
나주	41	8,795	8,325,900	1,694,448	1,694,435	4,937,017
광양	42	13,635	12,211,366	2,533,330	2,533,315	7,144,721
담양	22	2,165	3,316,495	494,366	494,359	2,327,770
곡성	11	1,347	1,718,656	295,605	295,601	1,127,450
구례	16	1,400	1,905,837	320,497	320,489	1,264,851
고흥	35	2,889	4,312,790	633,323	633,315	3,046,152
보성	28	2,054	3,555,535	480,294	480,284	2,594,957
화순	27	4,145	4,216,040	800,572	800,561	2,614,907
장흥	24	2,162	3,266,293	466,698	466,690	2,332,905
강진	23	2,080	2,707,396	457,648	457,641	1,792,107
해남	32	4,087	4,811,591	823,806	823,796	3,163,989
영암	28	3,648	4,017,740	745,899	745,890	2,525,951
무안	31	8,033	7,439,448	1,640,012	1,640,001	4,159,435
함평	19	1,710	2,354,213	394,169	394,163	1,565,881
영광	24	3,376	3,947,347	702,872	702,865	2,541,610
장성	20	2,727	3,272,824	589,214	589,207	2,094,403
완도	37	3,041	4,500,509	677,804	677,793	3,144,912
진도	22	1,710	2,562,431	372,860	372,854	1,816,717
신안	37	1,382	2,897,233	347,010	346,997	2,203,226

참고 2 2021년도 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경비별)

(단위 : 교, 명,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예 산 지 원 액(경비별)			
			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계	722	140,177	139,803,544	54,873,317	7,028,575	77,901,652
목포	50	22,958	17,390,997	8,402,059	1,031,710	7,957,228
여수	87	21,668	19,597,329	8,278,776	1,037,705	10,280,848
순천	66	25,165	21,475,574	9,251,799	1,141,794	11,081,981
나주	41	8,795	8,325,900	3,388,883	419,788	4,517,229
광양	42	13,635	12,211,366	5,066,645	641,020	6,503,701
담양	22	2,165	3,316,495	988,725	141,970	2,185,800
곡성	11	1,347	1,718,656	591,206	82,616	1,044,834
구례	16	1,400	1,905,837	640,986	91,779	1,173,072
고흥	35	2,889	4,312,790	1,266,638	172,682	2,873,470
보성	28	2,054	3,555,535	960,578	141,615	2,453,342
화순	27	4,145	4,216,040	1,601,133	205,886	2,409,021
장흥	24	2,162	3,266,293	933,388	129,802	2,203,103
강진	23	2,080	2,707,396	915,289	122,232	1,669,875
해남	32	4,087	4,811,591	1,647,602	209,583	2,954,406
영암	28	3,648	4,017,740	1,491,789	199,398	2,326,553
무안	31	8,033	7,439,448	3,280,013	400,334	3,759,101
함평	19	1,710	2,354,213	788,332	110,281	1,455,600
영광	24	3,376	3,947,347	1,405,737	190,684	2,350,926
장성	20	2,727	3,272,824	1,178,421	164,503	1,929,900
완도	37	3,041	4,500,509	1,355,597	193,794	2,951,118
진도	22	1,710	2,562,431	745,714	97,853	1,718,864
신안	37	1,382	2,897,233	694,007	101,546	2,101,680

11.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담당자 윤희경 ☎ 286-6453】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유전자변형) 식재료를 Non-GMO*로 대체 공급하여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 추진방침

○ Non-GMO 식재료 공급으로 GMO 식품에 대한 우려 해소 및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도내 생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도내 공장이 없는 식용유(튀김유)와 옥수수콘은 타시도 생산품 허용

☐ 2021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대상 : 2,263개교, 201천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 어린이집(43천명), 유치원(18천명), 초등학교(93천명), 중학교(47천명)

○ 급식일수 : 어린이집 250일 / 유치원 · 초 · 중학교 190일

○ 지원품목 : 5품목(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 지원내용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Non-GMO 기준단가에서 일반식품가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

○ 사 업 비 : 4,517백만원(도비 1,129, 시군비 3,388)

- 재 원 별 : 도비 25%, 시군비 75%

○ 지원방법 : 시군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공급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 원 별 사 업 비		
			계(100%)	도 비(25%)	시군비(75%)
계	2,263	200,677	4,516,866	1,129,217	3,387,649
어린이집	1,087	42,731	1,185,785	296,446	889,339
유 치 원	498	18,045	380,569	95,142	285,427
초등학교	429	93,114	1,963,775	490,944	1,472,831
중 학 교	249	46,787	986,737	246,685	740,052

2. 품목별 소요량(2019년 기준)

(단위 : kg, L)

구 분	합계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계	1,103,913	126,885	118,981	350,146	472,976	34,925
어린이집	132,773	19,945	26,066	54,855	26,335	5,572
유 치 원	61,179	8,744	7,757	20,009	22,332	2,337
초등학교	572,861	59,339	58,916	195,657	247,382	11,567
중 학 교	337,100	38,857	26,242	79,625	176,927	15,449

3. 지원내용

○ 지원품목 : 5품목[간장류, 된장, 두부류, 식용유, 옥수수콘]

- 대분류 내 세부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단가산출 : '19년 연간사용량과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지원단가를 감안하여 산출

○ 지원단가 : 1식당 차액단가×학생수×급식일수

(단위 : 원/㎏,L)

구 분		Non-GMO 기준단가(A)	일반식품 단가(B)	차액단가 (C=A-B)	1식당 차액단가	연간소요량 ('19년기준)
합계(평균)		8,600	3,383	5,217	111	1,103,913
간 장		8,000	4,800	3,200	10	126,885
된 장		11,800	3,000	8,800	26	118,981
두 부		4,600	2,500	2,100	18	350,146
식용유	부침유 (유채유)	10,500	3,500	7,000	21	120,000
	튀김유 (현미유)	6,800	3,500	3,300	30	352,976
옥수수콘		9,900	3,000	6,900	6	34,925

○ 학교급별 차등지원

- 학교급별 또는 학생수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 할 수 있음.

4. Non-GMO 식재료 공급요령

○ 공급방법 : 시군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 지원

- 다만, 기존 Non-GMO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는 자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운영 가능
- Non-GMO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道에서 산정한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연초에 공급업체와 생산업체간 단가계약 체결(연간 공급량 확보)

○ 공급절차

식재료 발주		식재료 납품		납품 확인		사업비 집행		사업점검		사업종료
·학교에서 공급업체로 식재료 발주	⇨	· Non-GMO 생산업체를 통해 납품	⇨	·물품 검수 및 납품 확인서 등 발급	⇨	· 납품 확인서 등을 징구해 사업비 집행	⇨	·위생상태, 위반사항 등 분기별 점검	⇨	· 사업비 정산
(학교→업체)		(업체→학교)		(학교→업체)		(시군→업체)		(도/시군)		(시군→도)

○ 공급원칙 : 도내산 농산물을 100%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

- 도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품을 우선 사용하되, 도내산 원료가 부족한 경우 타 시도산 원료 허용
- 도내에서 생산되는 Non-GMO 식재료 가공품을 사용하되, 도내에 공장이 없는 식용유(튀김유)와 옥수수콘은 타시도 생산품 허용
  * 유기가공식품인증, 도지사품질인증, 전통식품인증 제품 우선 사용
- 구입 품목은 시군 실정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특정 품목 구입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입 하한비율 설정
  * 1개 품목당 5% 이상 구입(구입액 기준)

○ 기준 공급단가 : 道에서 산정한 Non-GMO 공급단가 적용

- 시군 가격 편차를 감안하여 <u>20% 범위내에서</u> 가감 조정 가능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예산범위 내)

○ 서류제출 : 공급업체는 생산업체에게 Non-GMO 증빙 서류를 징구하여 학교(납품시) 및 시군(사업비 정산시)에 제출

- 제출서류 : GMO 검사결과서,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가공식품 원료)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공급업체가 제출한 납품내역서, GMO 검사결과서 등을 검토해 차액 집행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위임에 의거 공급주체 등에 대금 일괄지급

○ 보조금지급 이후 1개월내 가공업체 정산 여부 확인

□ 기관별 업무분담

1. 전라남도

○ 전라남도 Non-GMO 식재료 지원업무 총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에 지원될 Non-GMO 식재료 지원 예산확보 및 지원결과 정산

○ Non-GMO 식재료 사용경비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식재료 사용에 따른 총괄적 지도·감독

2. 전라남도 교육청

○ 전라남도 교육청 관할의 초 · 중학교와 유치원의 Non-GMO 식재료 사용 지도 · 감독

○ 전라남도에서 요청한 학교현황 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협조

3. 시군 담당부서

○ 시군 Non-GMO 식재료 지원업무 총괄

○ Non-GMO 식재료 사용에 따른 사업비 집행(학교, 공급업체)

○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비의 시군 부담 예산 확보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의 Non-GMO 식재료 사용경비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식재료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4.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학교

○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Non-GMO 식재료 구입

○ 공급업체(농협, 축협, 기타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Non-GMO 식재료의 구입 '사실 확인서' 발급

5. 식재료 공급업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 · 중학교에서 요청한 Non-GMO 식재료 공급

○ 도,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Non-GMO 식재료 공급관련 지도·감독 시 협조

○ Non-GMO 식재료 지원계획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 신청

○ 학교(납품시) 및 시군(사업비 정산시)에 공급업체가 생산업체로부터 Non-GMO 증빙 서류를 징구하여 제출

- 제출서류 : GMO 검사결과서,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가공식품 원료)

▢ 행정사항

○ 2021년 시군 자체 지원계획 제출 및 보조금 교부신청 : 1.31.까지【서식 1, 2】

○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업체 신청시【서식 4, 5】

○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점검 실적 제출 : 매 분기별【서식 6】

○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점검 : 상 · 하반기

○ 2021년도 사업비 정산 : ’22. 2. 28.까지【서식 3】

- 붙 임 자 료 -

1. 2021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계획

2. ‘21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자체 지원 계획(서식 1)

3.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4. 2021년도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 정산결과(서식 3)

5.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

6. Non-GMO 식재료 납품내역서(서식 5)

7.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점검실적(서식 6)

2021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계획

(단위 : 개교, 명,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부담내역		
			계	도비(25%)	시군비(75%)
합계	2,263	200,677	4,516,866	1,129,217	3,387,649
목포	286	33,411	752,104	188,026	564,078
여수	280	31,615	712,828	178,207	534,621
순천	325	36,471	820,728	205,182	615,546
나주	155	13,658	309,665	77,416	232,249
광양	198	20,114	459,670	114,918	344,752
담양	50	2,936	65,424	16,356	49,068
곡성	30	1,832	41,115	10,279	30,836
구례	33	1,844	40,801	10,200	30,601
고흥	70	3,928	88,144	22,036	66,108
보성	56	2,704	60,244	15,061	45,183
화순	86	5,646	126,473	31,618	94,855
장흥	55	2,991	66,769	16,692	50,077
강진	50	2,752	62,003	15,501	46,502
해남	73	5,618	125,483	31,371	94,112
영암	84	5,344	121,336	30,334	91,002
무안	104	10,502	232,270	58,068	174,202
함평	40	2,053	46,028	11,507	34,521
영광	52	4,668	104,768	26,192	78,576
장성	49	3,867	86,197	21,549	64,648
완도	81	4,503	101,048	25,262	75,786
진도	42	2,392	53,384	13,346	40,038
신안	64	1,828	40,384	10,096	30,288

[서식 1]

2021년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자체지원계획(시군)

Non-GMO 식재료 지원 계획 목적, 추진방향 등을 작성

Ⅰ. 2021년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휴명명조 - 20Point)

☐ 추진방침(휴명명조 - 18Point)

○ 휴명명조 - 15Point

○

○

☐ 식재료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식재료 지원체계(기관별 업무(역할)분담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시 군

- 농정업무 관련과

.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 지원방법 결정사항 기재

.

○ 시군 교육청

-

-

○ 급식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

-

○ 공급업체

-

-

[서식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시기 :

○ 사업내용 :

○ 사업금액 :

5. 보조금 교부신청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교부신청액 (도비)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위와 같이 2021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세부사업내역 1부. 끝.

2021. . .

신청자 : ○○시장 · 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학교급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내 역					비고
	학교수	학생수	지 원 액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서식 3]

2021년도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

☐ 총괄 및 시설별

(단위 : 원)

구분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역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도비 (%)	시군비 (%)
계									
어린이집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 학교수 : 개교(지원학생수 명)

※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품목별

(단위 : kg/원)

구분	총사업비		집 행 내 역		집 행 잔 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간 장							
된 장							
두 부							
식 용 유							
옥수수콘							

[서식 4]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공 급 받은자	주 소			
	학교 또는 시설명		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 명	

지원신청 금액	**품목**	**수량**	**금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공 급 내 역

공급기간	생산지별	품 목	수 량(kg)	금액(원)	비율(%)
	계				100
	도 내 산				
	타 도 산				

상기와 같이 Non-GMO 가공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 ○ 학 교 장 직인

또는

○ ○ ○ 대 표 자 (인)

(시설장)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시장 · 군수 귀하

※ 첨부 : Non-GMO 가공식재료 납품 내역서, 세금계산서

[서식 5]

Non-GMO 식재료 납품내역서

시설명 :　　납품일자 :　　.　　.　　.

품　목	생산지	전화번호	생산자	증빙서류	규 격 (포장단위)	납품단가 (원)	수 량	금 액 (원)
계	도내산							(　　%)
	타도산							(　　%)

공급자(공급업체) :　　(인)

검수자(영양교사) :　　(인)

※ 생산지 : 시군단위 까지 기재(예 : 전남 무안군)

☞ 도내산, 타도산의 비율을 전체 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

※ 증빙서류 : GMO 결과보고서, 원산지증명서(가공식품원료), 품목제조보고서 등 기재
(증빙서류 반드시 붙임)

※ 인증단계 : 무농약 → 무, 유기 → 유

※ 지원금 및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 반드시 엑셀 작성 관리(통계자료 활용)

- 상반기, 하반기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적 제출 및 집행상황 관련됨

[서식 6]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 사업 점검실적(시군)

점검일	점검인원				점검대상(개소)				점검결과	
	계	행정	교육청	기타	계	농가	업체	학교	지적사항	조치내용
계										
월일										
월일										
월일										

※ 분기별 3회이상 점검실시(3・6・9・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12.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업무담당 : 김지연 ☎ 286-64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예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

○ 주산지 유통시설 공동 활용을 통해 **농산물 공동선별·공동출하 등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조직화 유도**

○ 원예농산물 유통과정의 품질 저하 방지와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원예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주산지** 생산농가·생산자 단체 등에 **저온저장 유통시설 지원**

○ 생산량은 많으나 **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한 생산자 단체가 작물**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중규모 시설 지원**

○ 원예농산물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시설을 공동이용 할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시설 견실시공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를 공모 선정**하고, 사업자 활용 계획에 맞게 **66㎡~165㎡ 이내 지원 규모 조정 가능**

- 저온저장 시설 설치 기준을 참고하여 기준 이상으로 설치 가능

○ 사업연도 **부지를 확보**하여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 **사업추진 기간 단축·사업 조기 완료로 시설 활용도 제고**

- 사업 예정지는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적격 지역 확인 필수

  * 임차 토지의 경우 10년 이상 사용 가능 근거가 있을 경우 가능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4. 2021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2,250,000	337,500	787,500	1,125,000	

Ⅱ 주요내용

1. '21년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1. 1 ~ 12월

○ 사 업 량 : 45동*(2,970㎡/900평) * 66㎡(20평) 설치 기준

○ 사 업 비 : 2,250백만원(도비 337.5, 시·군비 787.5, 자담 1,125)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2ha 이상 원예농산물 생산농가·생산자 단체(농업법인)

○ 사업내용 : 66㎡(20평)~165㎡(50평) 이내 철골조 냉동·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 지원규모 : 66㎡(20평) 저온저장고 1동 설치 기준

- 지원단가 : 3.3㎡(평)당 2,500천원

* 지원규모 66㎡(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체부담 설치

*** 사업 우선 지원 기준**

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마을단위 공동 활용
② GAP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 농가·단체
③ 개발행위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생산 농가·단체
④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보조·융자사업 미시행 농가·단체

※ 지원 제한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농업·농업인·생산자단체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저온저장고 사업 확정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당 농가·단체 2년간 동 사업 제외
- 원예작물 외 타 작목 저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쌀, 임산물 등)

  * 시군 실정에 맞춰 자체 검토 후 감자·고구마·옥수수 저장 목적 지원 가능
- 지원 시설물을 전남도 외 지역에 설치할 경우

  *** 사업대상자 주소지에서 사업 신청, 전남도 내에 설치할 경우만 지원**

Ⅲ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단계

전라남도

○ 사업 수요조사 : 사업 전년도 7~8월

○ 사업시행 지침 수립 및 가내시 시달 : 사업 전년도 10 ~ 12월중

시 · 군(읍 · 면)

○ 사업 수요조사 : 사업 전년도 7~8월

○ 사업 안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 전년 12 ~ 사업연도 1월

○ 유사 시설의 중복, 생산규모 대비 과잉투자, 부적격자 등 사업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

사업자

○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 구비 서류와 함께 읍·면에 신청(구비서류는 시군별 조정 가능)

2. 사업자 선정 단계

시 · 군(읍 · 면)

○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서류 검토·현지 심사 : 1~2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시군별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결과 통보 : 2월 말

- 사업지침의 기준을 적용하되 시군별 상황에 맞춰 자체 선정기준 마련하여 결정(예비 사업자를 선정, 사업포기자 발생 시 대체)

3.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추진체계

① 사업 시행 계획 통보	➲	② 사업신청 홍보·접수	➲	③ 시군 사업량 확정, 보조금 교부·송금	➲	④ 사업대상자 선정 시공업체 공모·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
도		시·군		도		시·군	

⑤ 설계내역 승인 농가·업체 계약체결 사업추진·공사감독	➲	⑥ 준공검사, 부기등기 후 보조금 청구	➲	⑦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	⑧ 사후관리
시군·사업자·시공업체		사업대상자·시군		시·군		시·군

전라남도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송금 : 3월

○ 시군별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량·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군간 전배 조치 : 8~9월 중

○ 시군의 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 정기적 점검(분기별) : 익월 10일

시 · 군(읍 · 면)

○ 공모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군 사업 시공업체 선정 : 3월 중

- 시공업체는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 인력을 확보한 업체이면서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선정(건축, 전기, 기계 등 시설 공정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가 시공 추진)

* 시공업체는 시군 상황에 맞춰 지침 자격 이상 업체로 선정(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시공업체와 병행 선정 가능)

○ 사업대상자와 선정된 시공업체 간 사업설명회 개최 : 3월 중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추진 절차 등 사업 종합 설명

- 사업 설치 기준 등 저온저장고 기본 사양 안내
- 설계서 작성, 계약 체결, 공사 착공·준공·보조금 청구 방법
- 개발행위 허가 이행 등 행정 절차 안내 등

○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시군 검토·승인

○ 사업대상자와 시공업체 공사계약 체결과 주요 공정 시공 시 담당 공무원 입회(공사 감독・준공 공무원 지정)

○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자, 사업 규모, 설치 부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가 자체 검토 후 승인

- 사업 포기 시 시·군에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도에 사업량·사업비 전배 신청

○ 사업자별 견실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 준공까지 지도·감독

- 인허가 관련 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자부담 확보 상황 등 확인

○ 사업 추진・집행상황을 [서식 2호]로 분기별 도에 보고 : 익월 10일

사업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설명회 참석

○ 사업 착공 전 행정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세부 설계내역에 대해 시군 검토·승인 후 착공

○ 시군에서 공모하여 선정한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 직접 체결

- 계약체결 및 주요 공정 시공 시 담당 공무원 입회

○ 지원 규모(20평) 이상 초과 설치 사업비는 농가가 자체 부담

- 시공업체와 지원 규모(20평) 이상 공사 내역 협의 후 최종 사업비를 결정·계약체결 후 시공

○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계획(사업 규모, 설치 부지) 등 변경 시 시·군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시공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에 맞게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

○ 시공업체는 착공 전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설계서 등 보조금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하여 산정(저온저장고 시설 직접 지원 외 비용은 자부담)

○ 사업의 활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가능한 상반기 완공

4. 사업비 집행·정산 단계

전라남도

○ 시군 사업 완료 후 [서식 3호] 으로 정산 : 사업 다음연도 1월

○ 정산 후 시군 불용액 반납 등 행정 처리 : 사업 다음연도 3월

시 · 군(읍 · 면)

○ 준공검사는 사업대상자·시공업체·시군 공무원 입회 하에 설치 기준 적합 여부와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확인

- 준공은 가급적 시군 기술직 공무원(토목, 건축, 전기) 입회 실시
- 설치 기준 부적합 시 시공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시운전 등 기준 재확인 후 준공 처리

○ 준공검사 완료 후 사업자(시공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법적 분쟁 사전 방지)

○ 시장 · 군수는 사업비 집행 시 현지 확인 및 각종 증빙서류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지침 보조금 비율에 따라 집행

○ 사업비(계약 및 중도금)는 별도 계좌(보조금, 자부담)에 관리하고 자부담부터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

○ 사업 완료 후 시장 · 군수 책임하에 정산을 실시하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서식 3호]로 사업 정산 결과 도에 보고 : 사업 다음연도 1월말

사업자 · 시공업체

○ 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완료하고 시운전 등 준공 검사 재실시

○ 준공검사 완료 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와 부기등기 추진

○ 준공검사 완료 후 사업실적과 자부담금 우선집행 확인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 보조금 청구서 및 청구인 통장 사본

* 보조금 지불 위임 시 위임장 및 사업대상자 인감증명서

· 주요물품 검사 확인 및 공사 사진(전·중·후)

· 건축물대장 및 부기등기 증명 서류

·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확인서, 하자보수보증서(하자담보기간 2년), 이행보증증권, 표준계약서(설계서, 도면 등), 착공·준공계, 준공조서 등

5. 지도 · 감독 및 사후관리

시 · 군(읍 · 면)

○ 시장 · 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 · 감독 추진

-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등 확인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여 상반기 중 사업이 추진되고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저온저장고 시설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 사후관리 기간 중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고, 매년 2회 시설물이 사업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 후 [서식 4] 관리카드 기록 비치 : 매년 7월, 12월

- 보조 설치한 시설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 시군의 자체심사를 거쳐 도지사에 승인 요청

○ 시행지침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하여 추진

○ 저온저장 시설물에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부착

- 표지판은 동판, 석판, 철판, 아크릴 등으로 시설물 전면에 부착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규격 60㎝ × 30㎝)**

전라남도 보조금지원 저온저장 건립 시설

○ 사 업 명 : 2021년「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사업규모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번호)
○ 사업기간 : . . . ~ . . .
○ 사후관리기간 : . . . ~ . . .

Ⅳ 행정사항

○ 지원사업 지침 안내(도→시 · 군) : ′20. 12월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1, 사업자→시 · 군) : ′21.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군→사업자) : ′21. 2월
○ 사업자, 시공업체 선정 결과 제출(서식 2, 시 · 군→도) : ′21. 3월
○ 시공업체 선정 및 사업설명회(시군) : ′21. 3월
○ 보조금 교부 및 송금(도→시 · 군) : ′21. 3월
○ 행정절차, 설계 등 사업 추진(시·군·사업자) : ′21. 3월~12월

○ 사업 추진상황 보고 (서식 2, 시 · 군→도) : 분기별

○ 보조금 정산보고(서식 3, 시 · 군→도) : ‘22. 1월

○ 지원시설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서식 4, 시군)

참고 저온저장 시설 설치 기준

○ 설치 형태 : H빔 + 화스너타입 우레탄 판넬(냉동용) 등

- 우레탄판넬 : 냉장 (100㎜ 이상), 냉동·급냉(120㎜ 이상)
- 바닥 우레탄 발포(100㎜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두께(150㎜ 이상)

○ 기계류(부하계산 반영)

- 냉동기 : 20평형 10~15마력, 30평형 20~25마력, 50평형 25~30마력을 기준으로 하되, 저장물의 종류, 1회 입·출고 물량, 장기, 단기보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계에 맞게 선정
- 보조장치 : 송풍기(유니트쿨러), 증발기 각 1대
- 냉동출입문 : 전동슬라이딩, 수동슬라이딩, 오버랩 형식 등 사업장 여건에 따라 선택 설치
- 환기창 : 팬을 부착하고 레버식 등 사용이 편리하게 설치
- 닥트시설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저장고는 설치
- 기타 부속장비 : 전압계, 전원 차단기, 경보등, 온도조절기 등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0.018㎉/h·m·℃) 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18㎉/㎡·h·℃(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75mm	저온저장고(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서식 1】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 별첨

<table>
<tr><td>신청자
(단체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d>단체
설립일</td><td></td><td>단체
회원수</td><td></td></tr>
<tr><td>경영 형태</td><td colspan="8">개인(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작목반( )</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4">Tel :
Hp :</td></tr>
<tr><td>원예농산물
재배 현황
(예시)</td><td colspan="8">○ 재배면적(생산량) : 6ha(26톤)
- 배추 4ha(생산량 20톤), 양파 2ha(생산량 6톤)
○ 주요출하처 : 농협 18, 로컬푸드 5, 온라인거래 3
○ 판매액(백만원) : 130(배추 100, 양파 30)</td></tr>
<tr><td>원예농산물
인증현황</td><td colspan="8">○ GAP(품목 , ha), 친환경(품목 , ha)</td></tr>
<tr><td>기 보유시설</td><td colspan="3">저온저장고 ㎡(평)</td><td colspan="2">보조지원 여부</td><td colspan="3">여·부 (지원연도 :)</td></tr>
<tr><td rowspan="2">건 립 위 치
및 규 모</td><td>사업대상지</td><td colspan="7">시·군 읍·면 동·리 번지(지목)</td></tr>
<tr><td>부지확보여부</td><td colspan="7">자가(㎡), 임대(㎡)</td></tr>
<tr><td rowspan="2">사업신청</td><td>사업비</td><td colspan="7">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td></tr>
<tr><td>사업내역</td><td colspan="7">㎡(평)</td></tr>
<tr><td>검토 사항</td><td colspan="8">○ 건축설계 및 허가 대상으로 적격부지 확보 여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 첨부)
○ 자부담금 확보 여부 (개인 또는 조직 공동명의 통장사본 첨부)</td></tr>
</table>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인)

시장 · 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
2. 신청자 확인서류(경영체 등록, 법인등기부, 작목반 규약 등)
3. 인증관련(GAP, 친환경) 서류, 사업 부지 확인서류, 자부담 통장사본
4. 기타(참여농가 회의록 등 공동이용 협의 서류 등)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계획서(변경)

1. 사업의 개요

○ 과수·채소 등 농산물 소규모 재배농가에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1. . . ~ 2021. . .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담(50%)
		도비(15%)	군비(35%)	
66㎡ (20평)	50,000	7,500	17,500	25,000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보조금액: 25,000천원

○ 산출기초: 50,000천원 × 50% = 25,000천원

5. 경비의 사용방법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후 보조금 정산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

○ 성 명 :

○ 주 소 :

○ 부담금액 :

○ 부담방법 :

7. 보조사업의 효과

○ 농산물 상품성 유지 및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8. 참여농가 영농현황

연번	농가명	농지소재지	지목	경지면적(㎡)	재배작물	인증현황(GAP, 친환경)	동의(서명)
	계						

9. 건축법 등 관련법 사전 검토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물 설치 가능 확인 여부 :

10. 사업계획 변경 내역(사업계획 변경 시 작성)

❍ 사업 기간 : (당초)　　→ (변경)

❍ 사업 변경 : (당초)　　→ (변경)

※ 설치 규모, 설치 장소 등 변경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 변경 사유 :

❍ 변경 후 추진 계획

- 사업 규모 변경 시 견적서, 자부담 확보 계획(통장 사본) 등 첨부
- 설치 장소 변경 시 토지 확보, 인허가 가능 확인 자료 첨부

※ 기타 시군에서 필요한 서류 별도 첨부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 · 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1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 ·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 시장 · 군수 귀하

【서식 2】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지원 대상자 및 시공업체 선정결과('21. 3월말)

① 사업지원 대상자 * Excel 서식으로 제출

(단위 : ㎡, 천원)

시군	사 업 자		규모 (㎡)	사 업 비(천원)				작목별 재배규모				활용 농가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과수	채소	기타	
계												

② 시공업체 공모 · 선정

공 모		응 모 업 체 수	선 정 업 체 수	비 고
기 간	방 법			

□ 사업 추진실적 보고(분기별)

① 사업 추진현황 * Excel 서식으로 제출

(분기)

사 업 자		사 업 량 (개소/㎡)	추 진 실 적 (○ · ×)				완 료 예정일
주 소	성 명		미계약	계약체결	설치중	설치완료	
계							

② 사업비 집행현황 * Excel 서식으로 제출

사 업 자		사 업 량 (개소/㎡)	사업비(원)				집행일
주 소	성 명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정산

□ 사업비 정산('22. 1. 31한) * Excel 서식으로 제출

(단위 : 동, ㎡, 원)

시군	사업자		사 업 규 모				교 부 액				집 행 액				불용액 (도비)	이월액 (도비)
			사업량(동)		면적(㎡)											
	주소	성명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발생 사유

○

○

□ 건의 및 애로사항

○

○

【서식 4】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관리카드(안)

사업자	주 소		**건축신고일 :**
			시설 준공일 :
	성 명	(연락처)	시공업체 : (☎)
사 업 개 요	규 모	㎡ (평) / 사업 지원년도	
	사업비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담)	
	~~활용용~~ 도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위치 약도>	<사진전경>

1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업무담당 : 김지연 ☎ 286-6451】

과수, 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사업대상자 농업인 선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및 중복지원 배제

○ 시설물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업체 공모 선정 추진

○ 저온저장고 조기 준공을 유도하여 활용도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0동(7,920㎡) * 9.9㎡(3평) 기준

○ 사 업 비 : 4,800백만원(도비 720, 시군비 1,680, 자담 2,400)

○ 재 원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대 상 : 과수·채소 등 2ha미만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내 용 : 9.9㎡~33㎡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기 준 : 9.9㎡(3평) 1동 기준, 6백만원 **(단가 3.3㎡당 2백만원)**

※ 지원규모 9.9㎡(3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절 차 : 농업인 선정 → 시공업체 공모·선정 → 사업 설명회 개최 → 계약체결 → 사업추진(착공, 준공)

☐ 중점 추진과제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공업체 공모·선정 및 지원 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계약체결(농업인 ↔ 선정 시공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 철저(시운전 포함)

○ 사업비 농업인 자부담 우선 집행 및 보조금 집행·정산

○ 시공업체 자격요건 (면허, 인력) 등 검증 철저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읍, 면, 동 통보

○ 사업내용 반상회·회보 등 게재 홍보 및 신청 안내

○ 설치희망 농업인 사업 신청서 <서식 1> 접수

2. 전문 시공업체 공모 · 선정

○ 자격요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또는 사업자등록증(종목 : 냉동·냉장취급) 보유업체로서 공장등록증과 냉동기기기능사 이상 자격의 인력을 확보한 업체

○ 선정방법

- 시·군 홈페이지에 시공업체 공고문 게재 및 평가·선정
- 시공업체 선정전에 응모서류, 서면평가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

3.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신청자격 : 과수·채소 등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농업인 선정 방법 :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자체 구성된 읍면동 심의회를 걸쳐 시군에 추천

○ 시군에서는 추천 농업인 대상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 농업인 선정

※ 사업대상 예비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파악하여 부적격자(비농가) 및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선정

○ 선정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서식 2> 등을 사전 확보하여 민원방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 사업비 농가 자부담 우선 집행

○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 이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제1호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 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 확보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2~3농가 공동이용 희망자
○ 친환경 · GAP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중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
○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참여 농가
○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필요로 하는 귀농 농업인
※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저온저장 시설에 대한 재해피해 농가 중 재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에서 자체 판단 후 지원

4. 사업 설명회 개최

❍ 시기/대상 : 2021. 3월 중 / 사업대상 농업인,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 등
❍ 내 용 :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공사 착공·준공 처리 사업비 농업인 부담액 우선집행, 부가가치세 환급, 보조금 지원 등

5.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 자재는 KS제품,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기준 준수
❍ 사업대상자의 저장품목에 따라 냉장·냉동 등을 겸한 저장고 설치 가능

〈 설 치 기 준 〉

○ 철판두께 : 0.45mm이상 (양면 합산 0.9mm이상)
○ 벽두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변 등) : 3평(2마력), 5평(3마력), 10평(5마력)
○ 유니트쿨러(증발기 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
- 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경보 등 ON/OFF 표시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 가림 시설 설치
※ 저장품목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6.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 ↔ 공모 선정 전문시공업체
❍ 계약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농가가 공모 선정된 전문시공업체를 선택 직접 계약체결, 다만 고령화 등으로 직접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계약체결 지원

○ 농업인이 계약대행 요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대행) 규정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이 일정한 설치기준을 제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설치 희망가격 등을 받아 설치가격 결정하고 시공

○ 시공업체 착공 전 제출서류 : 견적서, 시방서,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축조신고서 등 일체

○ 점검사항 : 농업인과 공모선정 시공업체 간 계약체결 이행 여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징구 및 첨부 여부

7.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 계약체결 및 주요공정 시공 시 담당공무원 입회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와 제반규정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확인과 시 운전 등

8.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도 → 시 · 군 → 농가

9. 보조금 지급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업인의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군, 시공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농업인의 지불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징구 확인 후 지급(법정 분쟁 사전 방지)

○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요구

○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처리

10.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지도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 · 점검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

※ 단 시장·군수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표지판 작성예시 >

< ○○○○년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도 지원) >	
○ 시 군 명	
○ 규 모	㎡(평)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 , 자담)
○ 사 업 자	
○ 업 체 명	(전화번호 :)

☐ 행정사항

- ○ 시장·군수는 저장고 시공업체로부터 설치기준에 의한 적정설치, A/S기간 등을 명시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건축법 또는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군의 건축물 관리대장(일반, 가설 등)에 등록
- ○ 공사 계약금액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운전 경비를 포함 결정
- ○ **대상 농가에게 시설물의 바닥면적 17㎡ 이하일 경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바닥면적 17㎡ 이하)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반납**
- ○ 저온저장고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서식 3>
- ○ '20년 지원 사업 포기, 이월 또는 '20년 사업 추진실적(9월말 기준) 부진, 사업지침 미 준수 등 시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량 페널티 적용
- ○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 <서식 4>
  - 사업대상자, 시공업체 선정결과 등 사업추진상황(연 2회 이상)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활용상황 보고 : 2022. 1. 31.일까지

[서식 1]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연령</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7"></td></tr>
<tr><td>설치장소</td><td colspan="7">(지목 :)</td></tr>
<tr><td rowspan="5">작 목
재배현황</td><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7">품 목 별</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재배면적</td><td>ha</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생 산 량</td><td>톤</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저장예상량</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7">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td></tr>
<tr><td>규 모</td><td colspan="7">㎡(평)</td></tr>
<tr><td>사 업 비</td><td colspan="7">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td></tr>
<tr><td>영농경력</td><td colspan="3"></td><td>정부지원유무</td><td colspan="3"></td></tr>
<tr><td>설치장소</td><td colspan="7"></td></tr>
<tr><td>활용방법</td><td colspan="7">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td></tr>
<tr><td colspan="2">저장고 소유실태</td><td colspan="7">기 소유 : ㎡(평), (지원, 자담), 미 소유</td></tr>
</table>

2021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

시장 · 군수 귀하

※ 1) 작목 재배현황 : 활용농가의 면적, 생산량 등을 합산 기재
2) 저장고 소유실태 : 활용농가의 저장고도 포함기재

[서식 2]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사 업 량 :　개소, ㎡(　평)

○ 사 업 비 :　　원(도비　　, 시 · 군비　　, 자담　　)

상기 본인은 2021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모 ·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농업인 자부담액 우선 집행,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약속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평) (지원년도)
	사업비	천원 (도비 , 시 · 군비 , 자담)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직	성 명		
관리 상태	2021					
	2022					
	2023					
	2024					
	2025					

	연도별	활용일	물 량 (품 목 별)						부가소득(천원)
			계						
활용 상황	2021								
	2022								
	2023								
	2024								
	2025								

< 사진전경 >

[서식 4]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실적

□ 사업지원 대상자 및 시공업체 선정결과('21. 3. 29.한)

① 사업지원 대상자

(단위 : 평, 천원)

시군	사 업 자		규모 (㎡)	사 업 비				작목별 재배규모				활용 농가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과수	채소	기타	
계												

② 시공업체 공모 · 선정

공 모		응 모 업 체 수	선 정 업 체 수	비 고
기 간	방 법			

□ 사업 추진실적 보고('21. 7. 31.한, 9. 30.한)

(　　분기)

사 업 자		사 업 량 (개소/㎡)	추 진 실 적 (○ · ×)				완 료 예정일
주 소	성 명		미계약	계약체결	설치중	설치완료	
계							

□ 사업비 정산보고('22. 1. 31.한) * Excel 서식으로 제출

(단위 : 원)

시군	사업자		규모(동수)		교 부 액				집 행 액				불용액 (도비)	이월액 (도비)
	주소	성명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4.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융자사업

【담당자 문미선 ☎ 286-6452】

중·대형 규모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융자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 도모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농산물 유통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 확대

☐ 추진개요

1. 융자자격

○ 농업인 및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임

· 귀농어가 및 학사농어업인,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따른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점주,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

· 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2. 융자대상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후 1년 이상으로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저온저장고 사업추진 및 담보능력이 있는 생산자 조직

3. 융자대상 사업 및 자금의 종류

○ 농산물을 위한 저온저장 시설 설치사업

○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설치)

4.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5.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6.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 3년 거치 7년 상환

7. 우선선정 대상

○ 가공 및 유통관련 사업자, 귀농어가, 수출업자

○ 기 지원자보다 신규 신청자 우선

□ 사업개요

1. 사 업 량 : 5개소 내외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배정

2. 사 업 비 : 2,500백만원

3. 지원내용 : 66㎡(20평)~660㎡(200평),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 설치단가 3.3㎡당 2,500천원

4. 지원조건 : 융자 100%(연1%, 연체이율 10%, 3년 거치 7년 상환)

5. 융자실행 기간 : 2021. 1. ~ 12.

○ **2021.12월말까지 사업 및 자금배정(송금) 완료**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및 수협중앙회 전남지역금융본부(시·군 지부)

7. 융자금 신청(사업신청자)

○ 시설자금 :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완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읍·면·동 : 완공확인서 발급 후, 시군에 자금배정 신청

○ 시·군 : 매월 20일까지 도에 자금배정 신청

☐ 융자절차(시군 → 도)

1.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농업인(단체)의 사업계획서[서식 2]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 가능한 한 농업기술센터, 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현지조사 실시

○ 선정 평가표[서식 3]에 따라 평가 실시

2. 지원대상자 선정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추진 총괄부서(농업정책과)에서 선정
  * 시군 추천 대상자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및 신청량 등을 고려 최종확정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금융기관의 철저한 신용조사(신용불량, 담보능력 등)를 거치도록 함

○ 시군에서는 평가표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선정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선정 통지서[서식 4]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시군별 예비후보를 선정(선정 후 사업포기자는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패널티 적용 조치)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체 선정은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절차 생략 가능

3. 융자금 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금액 및 실행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을 착수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하되,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가능[서식 6]

○ 시설자금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읍면동장에게 사업완공확인서[서식 5]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의 직인날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융자금 배정 및 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서식 7]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실적에 따라 도에 융자금 자금배정 신청[서식 8]

○ 도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융자금 배정요청 내용 등을 검토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 배정내역 통보

☐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2. 지원대상자의 지위 승계

○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장) 매매 등의 타당한 사유로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부부, 부자, 형제 등)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사실 확인 후 승인

3.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융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매년 12월말경에 융자금의 적정사용 및 활용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 융자금 상환이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원 받은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금 회수

○ 융자금 상환완료 전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他 시도로 전출한 경우

【사업추진 기관별 업무담당】

기 관 별	내 용
도	○ 사업추진상황 총괄 지도·감독 ○ 도 시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시군 사업비 배정 ○ 시군별 소요자금 배정 및 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여
시·군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 사업자별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장 관리 ○ 개인별 관리카드 비치·관리 및 사업대상자 사후관리 ○ 자금배정 신청 및 융자금 집행현황 보고
읍·면·동	○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 ○ 융자금 대출신청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 및 사업완공 확인서 발급
융자취급 금융기관	○ 자금 관리 및 융자 실행 ○ 융자금 대출현황 보고 ○ 융자 원리금 상환

▢ 사업추진 절차

기금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전년도 10월~12월초)	- 사업지침시달(도→시군) - 사업계획, 지원대상, 사업비, 신청요령 등
⇓		
융자사업신청서 제출	(전년도 11월~12월초)	- 신청서작성 제출(농어업인 등→읍면동→시군) - 신청서 취합결과 제출(시군→도) ※ 신청서 제출시 금융기관 신용확인
⇓		
사업비 배정 (도, 시군별 배정)	전년도 12월말까지	- 시군별 사업비 배정(확정) - 도 시책 사업별로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도, 시·군별)	당해연도 (1월)	- 도 : 시책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시군 :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도-시군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시군 → 사업자)	당해연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시군 → 농업인, 금융기관) - 도 사업대상자 선정통지(도 → 실과 및 금융기관)
⇓		
융자실행 및 융자사업비 송금 (도 → 금융기관)	당해연도 (1~12월)	- 사업완공 후 대출실행(시설자금 중도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협의,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 제출) - 사업완료시 융자금 대출신청(신청자 → 시군) - 융자금 배정신청(시군 → 도) : 매월 20일 - 융자사업비 송금(도 → 금융기관, 시군) - 융자금 실행(금융기관 → 사업대상자)
⇓		
융자실적 제출 (금융기관 → 도)	익월 3일까지	- 시 군 : 매월말 융자 실적제출 - 금융기관 : 매 익월 3일까지 제출
⇓		
사업비 정산 (시군, 금융기관→도)	익년 2.5.까지	- 기금 융자사업 정산보고((금융기관→도)

☐ 행정사항

1. 사업취소

○ 사업대상자 선정 일 이후 3개월 이내 공사 미 착공하는 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서 제출 한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업신청 불가

○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상환기일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타 시·도로 전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시장·군수가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사업비 정산(시군 → 도)

○ 시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정산 보고[서식 9] : 2022. 1. 31.

○ 시군, 금융기관은 2021. 12. 31.까지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3. 사업 추진상황 관리

○ 연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안내조치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 시 다음 순위 자에게 대체 선정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상황 제출

○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융자사업비 집행명세를 제출 받아 보관

○ 시군에서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신청 접수 및 현황 집계 보고

○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사업비 배정, 추진상황 및 정산서 제출

○ **융자금 집행실적[서식 10] 및 추진현황 [서식 11] 분기별 제출**

[서식 1]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저온저장고)신청서

<table>
<tr><td rowspan="3">①신청자</td><td>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td><td colspan="3"></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농업
종사기간</td><td>년간</td><td>신청
분야</td><td colspan="4">농산물 저온저장고( )</td></tr>
<tr><td>②귀농어
시 기</td><td>년 월 일</td><td>수 출
경 력</td><td>년 월</td><td>전 년 도
수출금액</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③사업명</td><td></td><td colspan="2">학사농어업인
인 적 사 항</td><td colspan="4">선정 : 년, 졸업 : 년
대학교 학과</td></tr>
<tr><td>④기융자
연 도</td><td>년</td><td>기융자
자금명</td><td></td><td>기융자
기 관</td><td>국 가 ( )
도 ( )
시군 ( )</td><td>기융자
금 액</td><td>백만원</td></tr>
<tr><td>⑤신 청
내 역</td><td>융자
금액</td><td colspan="2">백만원</td><td>자금
종류</td><td>시설( )</td><td>상환
기간</td><td>3년거치 7년 상환( )</td></tr>
<tr><td>⑥첨 부
서 류</td><td colspan="3">사업계획서 1부</td><td colspan="2">⑦대출희망
금융기관</td><td colspan="2">농협( ), 수협( )</td></tr>
<tr><td rowspan="4">⑧ 농협 대출
담당자 확인</td><td colspan="2">담보물종류</td><td>해당지번</td><td>가능금액</td><td rowspan="4">서명 또는
인장 날인</td><td rowspan="4"></td></tr>
<tr><td colspan="2">예) 축사, 농지</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able>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날인)

시장 · 군수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날인
5. 신청자는 융자를 위한 담보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 방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서식 2]

사업계획서(저온저장고)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총 사 업 비	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 자담)		
사 업 기 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주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 업 량
	예) 가 공 공 장	㎡	
	예) 기계 장비류	조	

□ 법인 현황

법 인 명		법인 대표자	
주 사업내용		설 립 일	년 월 일
자 산 규 모		법인 구성인수	명
사 업 규 모		연 소 득 액	만원

[서식 3]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사업자 주소 및 이름		사업명	

평 가 항 목	평 가 방 법 및 배 점 기 준	평점
총 계(100점)		
① 사업추진 의지 (10점)	○ 사업추진 의지 강함 : 10점 ○ 사업추진 의지 보통 : 7점 ○ 사업추진 의지 미흡 : 5점 ※ 조사평가자가 사업추진 의지의 강함, 보통은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상담 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미흡은 전년도 사업포기자가 해당	
② 신규신청 우대 (20점)	○ 최초 신청자 : 20점 ○ 2011년 이전 수혜자 : 15점 ○ 2012년~2018년도 수혜자 : 10점 ※ 연도별 지원실적 확인	
③ 우선지원 대상 (20점)	○ 귀농, 수출, 친환경농수축산물 인증 : 20점 ○ 일반 재배·사육 및 제품생산 : 15점 ※ 수출은 2011년 이후 수출실적 여부	
④ 금융 신용도(30점)	○ 융자금 대출 가능 : 30점 ○ 융자금 대출 불가 : 0점 ※ 신청서의 농협 대출담당자 대출가능여부 약술내용 확인	
⑤ 도·시군 농업정책 사업자(20점)	○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산업, 수출 등 도와 시군의 역점사업 추진 : 20점 ○ 기타 사업 추진 : 15점	

이와 같이 조사 평가함.

2021 . . .

조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소속 이름 (인)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table>
<tr><td rowspan="2">융자지원
대 상 자</td><td>이 름</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융자내역</td><td>융 자 액</td><td colspan="5">금 백만원</td></tr>
<tr><td>융자기간</td><td colspan="2">년 거치 년 균분상환
년 거치 일시상환</td><td>이율</td><td colspan="2">연 1%
(연체이율 연10%)</td></tr>
</table>

<유의사항>

① 상기 융자액은 '본인의 신용 및 담보능력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완공 확인서 또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집행계획서를 발부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3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금지됩니다.

⑤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다음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융자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망, 신병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⑥항의 경우 제외)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위와 같이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1 . . .

시장·군수

[서식 5]

융자사업(저온저장고) 완공확인서

<table>
<tr><td rowspan="2">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3">사업비
투 자</td><td colspan="5">계 획 (천원)</td><td colspan="5">실 적 (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주 요
추 진
사 항</td><td colspan="5">계 획</td><td colspan="5">실 적</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5"></td></tr>
</table>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서식 6]

융자사업(저온저장고) 추진상황(기성) 확인서

<table>
<tr><td rowspan="2">사업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td><td></td></tr>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6"></td></tr>
<tr><td>진흥기금융자금액</td><td colspan="3">백만원</td><td>중도대출 요구금액</td><td colspan="2">만원</td></tr>
<tr><td>사 업비 집행 비율</td><td colspan="3">총 사업비의 %</td><td>사 업 추진비율</td><td colspan="2">총 공정의 %</td></tr>
<tr><td rowspan="3">사업비 집행명세</td><td colspan="5">계 획(천원)</td><td colspan="4">집 행 실 적(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융자</td><td>자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사업 추진 상황</td><td colspan="3">계 획</td><td colspan="4">추 진 실 적</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7">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기성 확인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td></tr>
</table>

♣ 사업비 집행비율과 사업추진비율은 필히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기록할 것

♣ 금융기관에서는 추후 정산시 **중도대출 했더라도 1인 1건으로 취급**하고 동일인이라도 시설 및 운영자금은 별도 취급(2건)

[서식 7]

2021. 융자사업(저온저장고) 대상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연번	지원대상자				자금종류	융자금액	융자기간	사업내용	사업분야	금융기관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시설					

※ 기재요령

1. 자금종류 : 시설자금
2. 융자기간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은 “10년” 기재

[서식 8]

2021. ( )월분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 자금배정 신청

□ 총괄

(단위 : 백만원)

상환기간	배정액(A)			송금액									잔액 (A-B)		
				계(B)			기 송금액			금회 송금액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농협	수협
계															
10년															

□ 사업대상자 내역

(단위 : 백만원)

신청자			사업내용		대출은행	상환기간	송금내역			
주 소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량	사업내용			배정액 (계)	기송금	금회 송금	잔액
	홍길동	12.34.56.	330㎡	저온저장고	농협	10년				

[서식 9]

농어촌 진흥기금 정산서

□ 융자 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품사업가		신지식학사 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분야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일시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미 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서식 1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집행실적

- 2021년 /4분기 현재 -

○○ 시군

(단위 : 백만원, %)

금융기관	융 자 계 획(A)		융 자 배 정		융 자 실 행(B)		융 자 실행율 (A/B)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농 협							
수 협							

[서식 1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

- 2021년 /4분기 현재 -

1. 〔총괄〕

(단위 : 백만원)

시군	계획		추 진 현 황						미착수		사업포기		비고
			융자완료		사업완료		추진중						
	건수	사업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농업													
축산													
임업													
수산													

2. 〔추진 중인 사업〕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 예정일	현재까지 추진실적 (구체적)	연락처	
	주소	이름							전화	핸드폰
계										

3. 〔미착수 및 포기자 명세〕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대상자		사업 분야	사업비	사업 내용	착수 일자	완료예 정일	미착수사유(구체적으로)	비고
	이름	주소							
계									

4.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대출현황('20. /4분기 현재)

(단위 : 백만원)

시군별	대 출 현 황		비 고
	건 수	금 액	
계			
목 포			
~			
신 안			

※ 작성대상 : 농협 및 수협

1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담당자 문미선 ☎ 286-6452】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단속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소비자 보호

☐ 추진방향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운영 내실화

○ 위생, 축산, 수산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합동 지도·단속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명예감시원) 협업 지도·단속 효율성 제고

☐ 단속개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단속횟수 : 4회 이상 〔상·하반기 **정기 2회**, 설·추석 등 **특별 2회**〕

○ 단속내용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미 표시, 거짓표시 등)

○ 단속방법 : 시군 교차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교차단속

- 농관원과 협의하여 단속반 편성 및 단속시기 설정 운영
-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 최대한 활용

○ 단속업소 : 농산물 판매·가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

○ 단속기관 : 시·군(권한위임), 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 표시 단속품목 〔별지 제12호〕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646개 품목(국산농산물 220, 가공품 257, 수입 161, 음식점 8)

○ 표시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세부 추진계획

1. 중점 단속사항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 · 혼합 판매하는 행위

○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 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 원료농산물 원산지 표시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을 비치 · 보관 여부

2. 지도 · 단속시기

○ 정기 :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시·군은 농관원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도·단속기간 설정 운영

○ 특별 : 2회(설, 추석), 필요 시 수시

3. 단속절차

○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공무원증)의 제시

○ 출입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문서 교부

○ 단속과정 입회 요구 및 품목조사

○ 장부 및 보관서류 조사 등

4. 처벌규정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 표 시 : 5만원~1천만원이하 과태료

○ 표시의 이행 · 변경 · 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사항

1.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 단속계획 수립 · 시행

○ 단속시기, 대상, 방법, 내용, 적발시 조치계획, 홍보계획, 농관원 및 관련부서, 민간 명예감시원 합동 단속 참여 방안 등

2.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용

○ 농관원에 위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협조 받아 활용

○ 시군 자체 캠페인 및 원산지 합동지도·단속에 적극 활용

○ 시군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예산 확보 지원

3.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농식품공무원교육원(나주) 원산지 교육과정 의무 이수조치

○ 상 · 하반기 시군 원산지표시 담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4.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 정착 위한 홍보 강화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및 신고포상금제 홍보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표시방법 등 반상회 회보 등 게재 홍보

1. 2021년 설·추석 원산지표시 시군 교차 지도·단속 결과(시군명)

구분	①단속 인원(명)	조사 장소 (개소)	단속실적							
			합계 (개소)	거짓표시			미표시		④표시방법 위반 등	
				소계 (개소)	② 형사 입건 (개소)	③ 고발 (개소)	개소	과 태 료 처분금액 (천원)	개소	과태료 처 분 금 액 (천원)
총계										
⑤농산물 (축산물 포함)										
⑥음식점										

※ 작성 참고

①단속인원 : 원산지표시 단속에 투입된 총 인원 수

②형사입건 :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중 적발기관(지자체)에서 수사하여 입건한 대상 수

③고 발 :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중 지자체에서 단속에 참여(합동단속 등)하였으나, 타 기관(농관원, 검경 등)에서 수사하여 입건한 대상수

④표시방법 위반 등 : 표시방법 위반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위반

⑤농산물(축산물 포함) : 수산물만 판매하는 장소 제외

⑥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2. 처분현황

여번	구분	적발 기관명	주소	실처분자	상호	업종	위반 유형	위반 품목	처분 형태	위반 물량 (kg)	과태료 부과 금액 (천원)	단속 일자
예시1	농산물	○○시	○○시 ○○로 1	홍길동	고기 한점	음식점 (일반)	거짓 표시	배추 김치	형사 입건	200	-	
예시2	수산물	○○군	○○군 ○○로 1	김길동	삼겹 한점	음식점 (일반)	미표시	돼지 고기	과태료	500	-	

관인생략

시 정 명 령 서(예시)

대 표 자 :　　귀하

업 체 명 :　　(주소　　)

제　　목 :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시정명령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하시고, 앞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 농산물명 : *쇠고기*

나. 위반물량(거래행위금지 경우) :

다. 위반내용 : *원산지 거짓표시(“중국산”을 “국산”으로 표시)*

라. 시정방법 : *표시의 변경*

마. 시정기한 : *현장시정*

○ 위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 시정명령자 및 문의전화 :　○○시·군　○○ 과(☎　　)

○ 시정명령 기한 이전에 시정방법에 따라 표시를 시정한 경우에는 위 시정명령자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정명령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위반한 경우 추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여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미표시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됩니다.

시정명령 처분일자 : 20　　년　　월　　일

시정 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조사원 :　　○○ 시·군　○○ 과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작성기관 : ◯◯시 · 군)

발행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 고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지원별 일련번호로 작성
2. 비고란에는 발행 및 회수 사유를 간략히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건번호	

확 인 서

업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종류 (음식점)		면적 (음식점)	㎡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판매가격			
	재고수량		시료채취		시 료 구입비	

위 업소의 업주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아래내용을 확인합니다.

<내 용>

<2쪽에 계속>

주) 1. 시료채취 금액을 지급한 경우 “시료구입비”에 금액을 기재하고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뒷면>

년 월 일

※ 임의제출 내역

확인자 주 소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업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또는 서명)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간 매출액 확인서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소 재 지:

농산물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연간 매출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① 년 도	② 위반 품목	③ 위 반 품 연간 매출액	④ 비　　고
	제품명, 단량, 포장재명		※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 매출액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할 경우 그 근거를 기재

년　　월　　일

확 인 자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직　　명　　성　　명　　(인 또는 서명)

조 사 원 :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또는 서명)

조 사 원 :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시료 검정의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식품부고시)제6조에 따라 붙임 시료의 검정을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의 뢰 내 용
		예시] 원산지 또는 잔류농약분석 등

첨부 : 시료　　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직인)

제　　목 : 시료 검정결 통보

○○호로 의뢰한 시료의 검정결과를「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식품부고시)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품　　목								
② 시료번호								
③ 접수일자								
④ 검정(분석)일자								
⑤분석 및 검정방법								
⑥ 검정결과								
⑦ 참고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 있음( ),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농산물 → 품목 :　　수량 :　　kg(판매가격　　원)
(□음식점 → 품목 :　　회수 :　　회)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 · 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전화번호 :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각 지원 주소) :　　전화번호:

※ 과태료부과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는 최하금액은 5만원이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가공품(업자) 및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최하금액은 20만원이고 표시를 하지 아니한 해당 품목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부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조리음식의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 합니다.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 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 · 전화 · 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우편번호) ○○도 ○○시 ○○구 ○○동 ○○번길 ○○
○○시·군 ○○과장
○ 전화(FAX)번호 : ○○○-○○○○-○○○○(FAX: ○○○-○○○○-○○○○)
○ 인터넷 : www.jeonnam.go.kr.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면)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1. 회사(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실처분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과태료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조사기관	④품목명	⑤표시위반물량

6. 처분내역 :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O O O 장 직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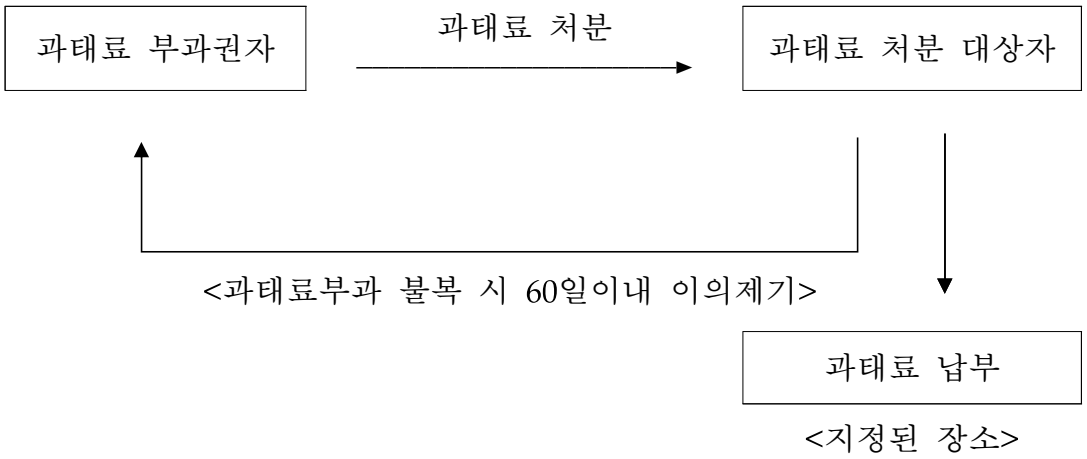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사항	
	품 목		수 량	
과 태 료 처분내역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제기 사 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시 · 군장(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6.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담당자 문미선 ☎ 286-6452】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 · 특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함으로써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 · 소비자 보호

☐ 추진방향

○ 시군별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지역특화품목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농산물 및 가공품 발굴

○ 등록된 지리적 표시 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확대 추진

☐ 추진개요

○ 대상품목 :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 국내외 등 명성이 알려져 있으며,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

○ 신청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별첨)

○ 지리적표시권 명문화 및 권리보호절차 도입('09. 12. 10. 개정)

- 지리적표시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 부여
- 지리적표시 권리침해 구제제도 도입

○ 등록절차 : 신청접수 및 심사요청 → 등록심사 → 현지조사 → 2차 등록심사 → 등록 신청공고 →등록 및 등록공고 → 표지, 표시의 사용

○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 등록효과

○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권을 가짐(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소유)

○ 배타적 사용권 인정으로 인지도 제고 및 수익증대

○ 등록품목 중심 농업 농업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이 결합된 판매망 구축 등으로 특화된 농업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시군 당 비교우위 특산자원 1개 이상 지리적표시제 적극 추진

- 지리적표시제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인 시군은 조기 신청 추진

○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촉진

- 지리적표시품 공영홈쇼핑 홍보 신청(농식품부)
- 각종 농산물 판촉행사시 「지리적표시 상품 판매코너」 설치운영

○ 등록 품목은 향토 산업육성 등 국비 사업과 연계(예산지원)

☐ 행정사항

○ 지리적 표시 등록 생산자단체 품질관리 수시 지도·관리

○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단체 협의회 실시하여 선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1년, 변경 90일

신청인	단체명 (사)안양사과협회	구성원수 100명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50. 1. 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전화번호 031-463-1598
	* 변경신청 시 등록품목과 등록번호를 본란에 기재	

등록신청 내용	품목 사과
	생산면적 100 ha
	생산지역 경기도 안양시 일원
	생산량 100 M/T
	포장 또는 가공공장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안양1 APC)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안양2 APC)

변경신청 내 용	기존 내용	변경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	한글명 안양사과
	영문명 Anyang Sagwa(Apple)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산림청장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대상품목 · 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7. 자체품질기준 1부 8. 품질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건당 10만원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첨부서류 (등록변경신청)	변경 사유 및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